

제35호 / 2008 · 9 · 1



교 양 사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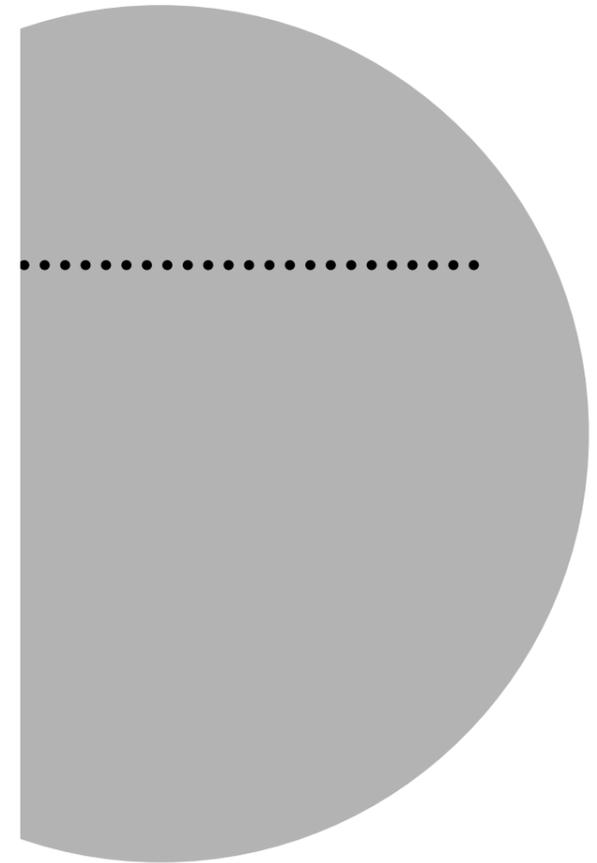
발행처 : 교양사회
주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82-10

편집 : 한국민족연구원
편집인 : 조정남(☎010-4716-3616)

발행일 : 2008년 9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바 03304 / 등록일자 2004.3.3

ISSN 1229-2796 / 값 15,000원

이 책은 <百想財團>의 지원으로 발간 되었음.



35 2008
Autumn



특 집 중국의 민족상황과 티베트

티베트의 민족문제

- 6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티베트 - 이재호
- 45 중국의 대 티베트 정책의 변화와 유형 - 김재원
- 75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구상 - 나영주

특별세미나: 中-韓 交流의 어제와 오늘

- 136 “韓流”의 發展段階와 原因 分析 - 金健人
- 150 崔溥《漂海錄》과 中-韓 文化交流 - 王金龍
- 168 韓-中 交流의 現況과 展望 - 金容贊

Archives

- 206 先住民族- Ainu Mosir 2008 - 편집부

Minjok Yeonku

Vol. 35

CONTENTS

China' s policy on national minorities and Tibet independence movement --- 6

Jae-ho Lee (Researcher of GA Communication)

Review of China' s Tibet policy --- 45

Jae-won Kim (Researcher of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Dalai Lama' s plan for Tibet --- 75

Young-ju Na (Lecturer of the Korea University)

The developmental stages and the cause of the Korean cultural wave phenomenon(韓流) --- 136

Jin, Jian-ren(金健人) (Professor of Zhejiang University - 浙江大學)

'Choi Pu' s Diary: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and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 150

Jin-long Wang(王金龍) (Writer and researcher on Pyo Hae Rok China)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 168

Yong-chan Kim (Professor of Cathoile University of Daegu)

특집 중국의 민족상황과 티베트

티베트의 민족문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티베트 - 이재호

중국의 대 티베트 정책의 변화와 유형 - 김재원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구상 - 나영주

특별세미나: 中-韓 交流의 어제와 오늘

“韓流”의 發展段階와 原因 分析 - 金健人

崔溥(漂海錄)과 中-韓 文化交流 - 王金龍

韓-中 交流의 現況과 展望 - 金容贊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

이 재 호 (GA커뮤니케이션wm연구원)
nababo71@hanmail.net



서론

‘달라이 라마의 나라’, ‘신비의 땅’으로 불리어지는 티베트가 요즘 들어 세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07년 7월 ‘칭짱철도(靑藏鐵道)’의 개통으로 하늘 길이 열리는가 싶더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최근에는 승려들이 중심이 된 독립시위와 중국정부의 강경진압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중국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다. 올림픽 성화봉송길²⁾은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대와 NGO단체들의 항의로 얼룩지고, 유럽 의회와 미 의회는 티베트 유혈사태에 대한 각종 성명서와 결의안을 채택하며 중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GDP에서나 교역규모에 있어서 이미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도의 경제성장 이면에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 동부 연해와 서부 내륙지역 간의 발전 격차, 실업



자 문제, 환경오염 문제,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민주화의 문제, 파룬궁(法輪宮) 문제 등과 함께 서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서부지역의 소수민족 분리독립 문제는 인권문제와 연계되면서 국제적으로 이슈화되어 중국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티베트의 독립요구나 분리독립 운동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티베트에서는 해마다 3월이면 1959년 '라싸(拉薩) 항쟁'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나 집회가 열리고, 이것을 계기로 항상 크고 작은 시위나 집단행동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티베트의 분리독립에 대한 문제는 티베트의 역사, 지리, 문화, 종교, 정치, 그리고 티베트 망명정부와 달라이 라마로 인한 국제사회의 관심 등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하고도 예민한 사안이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티베트의 분리독립 운동의 기원과 전개, 그리고 그에 따른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어떠한 방향과 목표로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탈냉전 시기 동유럽과 구소련이 민족분규나 국가해체의 경로를 겪었던 것처럼,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족³⁾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있어왔지만 그 위험성은 실제로 국가의 통합을 위협하고 체제위기를 가져올 만큼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티베트 역시 독립할 힘이 없다. 역사적 관계에서의 티베트 통치가 정당

1) 칭장철도는 1,956km 전체 구간 가운데 960km가 해발 4,000m 이상의 青藏高原을 지나감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건설된 철도 구간으로 이른바 '하늘열차'라고도 불린다. 중국 철도부의 통계에 따르면 칭장철도 개통 후 2007년 5월말까지 철로 이용 국내의 여행객수는 연인원 120여 만 명에 달하며, 이는 1980~1998년까지의 전체 여행객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2) 이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화는 5대양 6대주의 21개 도시와 중국의 113개 도시 등 모두 135개 도시, 137,000km이고, 소요기간은 130일이다. 성화 봉송로가 이처럼 역대 최장거리가 된 것은 과거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인데, 과거의 실크로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을 지나 서역으로 갔지만 21세기의 실크로드는 전 세계를 아우른다는 것이다. 특히 사상 최초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등정해서 옮겨질 계획인데, 이는 중국이 세계 최고에 우뚝 서겠다는 상징성과 함께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주간조선』 1999호(2008년 4월 7일자).

3) 실제로 분리독립운동의 과격성은 이슬람 분리주의를 표방하는 신장위구르 지역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7월 이봉(李鵬) 총리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여, 선린우호와 평화공존 견지, 호혜협력, 내정불간섭, 독립주권 존중, 지역안정의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정책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와 중국정부 지도자가 수차례 상호 방문의교를 통하여 우호관계 강화를 위해 애써왔다. 그리고 1996년 4월에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과 러시아 중국이 함께 상하이에 모여 '상하이-5'를 결성하였으며, 2001년 6월에 우즈베키스탄의 가입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로 되어 정치, 경제, 군사, 에너지 협력은 물론 민족분리운동을 반대하는 데 입장을 같이 해 나가고 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독립운동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재기, 『동투르크스탄(East Trukistan) 분리독립 운동과 중국의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제42집(한국동북아학회, 2007). 참조.

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 티베트는 1959년 이후 점차 중국의 일부로 동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티베트의 문화와 전통을 주도해 온 라마불교의 승려들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정치·경제적 권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현재 티베트가 티베트인 간부에 의해 통치되더라도 이들은 과거의 티베트의 전통과 종교를 가진 티베트인들이 아닌 거의 모두가 사회주의와 중화민족 사상을 교육받은 엘리트 층이다.

현재 티베트의 분리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는 티베트인들 역시 현실적으로 독립은 물론이고 고도의 자치 실현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다. 중국 정부의 막강한 공권력과 조직, 재정능력과 외교력 등은 티베트 망명정부의 취약한 물리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그리하여 티베트는 중국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서부대개발⁴⁾ 사업이나 강경정책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은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티베트 망명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활동과 여론 형성 역시 최근의 중국의 높아진 위상과 외교력으로 인해 그 입지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한족의 도시 유입 확대, 인도 망명정부로 피난해 온 난민들의 증가와 원주민들과의 갈등,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한 종교의 세속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티베트에 대한 지지의 변화 등으로 티베트 망명정부와 티베트인들은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게다가 이번 유혈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티베트의 분리독립 세력은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중도노선과 급진파인 티베트 청년회의 무장 독립투쟁 노선으로 분열되는 내부 갈등마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인지는 몰라도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이 아닌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현재 행정구역상의 ‘서장자치구’가 아닌 칭해성, 감숙성 남부, 사천성 서부, 운남성 서북부를 아우르는 청장고원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의 ‘대장구(大藏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이는 만일 대장구 지역이 자치독립 한다면 중국의 현 중심부가 직접적으로 민족문제나 분리독립 문제에 노출될 수 있으며, 또한 인근의 더욱 과격한 신장자치구나 내몽고의 분리독립 운동과 대만의 독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티베트인들이 유혈 사태와 각종 시위를

4) '西部大開發' 운동은 1999년 6월 江澤民 주석이 陝西省 시찰 중 행한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6개월의 준비를 거쳐 국무원 산하에 서부지역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西部開發領導小組辦公室'을 설치하고, 2000년 1월 4일에 '서부대개발 전략'을 발표하여 50년간의 전략적 국책사업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박장배, "중국의 '서부대개발' 과 티베트", 『중국사상의 지역사회-중국사학회 제42회 학술발표회 논문집』(중국사학회, 2004), p.58.

일으키는 것은 최소한 티베트 민족의 전통, 문화, 종교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이번 기회가 가장 좋은 마지막



티베트 망명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활동과 여론 형성 역시 최근의 중국의 높아진 위상과 외교력으로 인해 그 입지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1989년 이후 약 20년 간 중국정부의 ‘한화정책(漢化政策)’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위기의식이 폭발한 것이다. 티베트의 전통과 종교는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달라이 라마의 ‘고도의 자치’로의 선회 역시 티베트의 독립보다는 ‘티베트의 보전’이 더 절박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반면 중국은 개발주의 전략을 통해 끊임없이 한족의 서장자치구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대형 인프라 건설로 자연스럽게 한족 노동자들의 유입을 가져오고,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은 한족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늘 길’이라고 불리는 칭짱철도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건설된 정치적 기반시설인 것이다.⁵⁾ 하지만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도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강경 진압으로의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 형성은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중국정부에게는 국제사회 여론을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작금의 유혈진압 사태는 중국이 진정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 부상하려면 단순히 국력과 경제력의 성장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수준에 걸맞는 정치와 사회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국제사회에 중국의 한계를 노출시킨 사례가 되기도 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과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또 더욱 안정적인 정치 발전을 확보하는데 있어 민족문제의 해결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전제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민족적 갈등의 해결은 개혁개방의 성패를 쥐고 있는 핵심 열쇠이자 중국을 분열로부터 방어하면서 더욱 굳건한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안전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대한 전반적 개괄을 살펴본 뒤, 티베트

5) 칭짱철도의 정치적 목적으로는 和諧社會 건설 실현과 서부지역 소수민족의 소외감 해소 및 불만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정, 그리고 티베트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한 티베트 독립운동의 원천적 저지 등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서부대개발의 일환으로 서부개발 촉진, 중국 내 물류시스템의 혁신으로 경제발전 촉진, 중국 내 지역균형발전 가시화와 빈부격차 완화, 티베트의 중화경제권으로의 편입, ‘천디아 경제권’ 구축 등의 목적이 있다. 그 밖에 인도와의 국경 지역 안정과 동남아 지역에 대한 교두보 확보로 영향력 강화라는 군사적 목적이 있고, 사회·문화적 목적으로는 한족의 티베트 유입 가속화로 인한 한족과 티베트인 간의 동질성 강화 등이 있다. 자세한 것은 원천식,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과 정책적 시사점: 칭짱철도 개통과 ‘천디아 경제권’ 형성을 중심으로”, 『KIET 산업경제』 통권101호 (산업연구원, 2007) 참조.

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주의로 인한 분리독립 운동의 기원과 전개를 시기별로 고찰 해본 뒤, 현재 티베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혈사태에 대한 국내적·국제적 상황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더불어 티베트 분리독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달라이 라마의 활동과 리더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하겠다.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속해있는 민족의 갈래 또한 대단히 복잡하다. 수많은 민족 간의 이합집산과 투쟁의 역사를 이어 받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민족’, 즉 ‘중화민족(中華民族)’으로의 탈바꿈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곳에 살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민족들은 자기 민족의 순수성과 민족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쉽 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에 접어들면서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이른바 ‘4개 현대화’의 실현과 ‘민족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4개 현대화를 통한 근대화를 이룩하여 민족문제의 정확한 해결로 민족 간의 공존 협력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당면 최대 목표인 ‘공동부유’는 4개 현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이 4개 현대화는 무엇보다도 소수민족문제의 발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⁶⁾ 이는 또한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 간의 원활한 협동과 상부상조 속에서만 근대화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보다 실질적으로는 전체인구의 8.1%를 차지하고 중국 영토의 64%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여 낙후되어 있는 중국 변방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의 소수민족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첫째, 소수민족의 거주지역이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면서 구소련 해체 이후 독립국가로 성장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물론 몽골, 인도, 베트남 등 주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전략적 이유’⁷⁾ 둘째, 소수민족지구에서 산출되는 우라늄, 원유 등의 주요 자원과 육류, 양모 등의 목축제품의 보고라는 ‘자원상의 이유’ 셋째, 소수민족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희박한 지역으로 한족지구의 과잉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인구상의 이유’ 넷째, 소수민족의 통합과 안정 및 경제와 문화수준의 향상이 결국 사회주의 중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

6) 조정남, 『현대중국의 민족정책』 (한국학술정보, 2006), p.15.

7) 현재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부탄, 네팔, 인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 북한 등 13개국이며 이 지역은 모두 소수민족 집중거주지역이다.

로 제고시킬 수 있다는 ‘대외적 위신의 이유’ 등이 그것이다.⁸⁾

때문에 일부에서는 중국의 민족문제가 정치안정과 국가의 통합을 위협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의 분열’ 또는 ‘중국해체’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한다.⁹⁾ 그러나 표면적으로 중국의 민족문제는 구소련이나 동유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시위나 저항이 중국 민족문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민족분열과 국가의 통일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는 볼 수 없다.

중국의 소수민족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 진다. 중국의 역사는 한족형성의 역사이고 한족형성의 역사는 한문화의 발전과 전파의 역사이고 이는 한족과 소수민족¹¹⁾ 간의 관계의 역사이다. 한족과 소수민족의 관계는 항상 한족우월주의로부터 출발하였고 이것은 중국의 전 역사를 통해 그 맥을 같이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중국의 민족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족개념을 따르고 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민족주의란 한마디로 부르조아 유산계급의 이익을 숨기기 위해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위장하거나 부르조아 유산계급의 지배를 영속시키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²⁾

중국은 1950년 정무원에 중앙민족학원 및 그 분원인 민족문제¹³⁾ 연구실을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중국과학원 내에 소수민족 언어연구소 및 민족연구소를 설립했

8) 박병광,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형성과 전개: 민족동화와 융화의 변주곡에 관하여”, 『국제정치논총』 제40집4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pp.425-426.

9) 중국의 미래상에 대한 주장들은 대체로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 지는데, ‘중국분열/붕괴론’과 ‘중국위협/패권론’ 그리고 주권은 유지하되 중등국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현상유지론’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병광,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미래상에 대한 평가”,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2호(한국세계지역학회, 2004), pp.150-155.

10) 중국의 소수민족의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8%인 반면, 구소련이 가졌던 소수민족문제는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서 非러시아민족의 비율은 20%에 달했다. 위의 논문, p.152.

11) 중국의 소수민족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치적 소수민족(national minority)과 문화적 소수민족(ethnic minority)이 그것이다. 정치적 소수민족이란 과거 독립의 경험이 있거나 종교, 인구, 모국의 존재, 지역의 범위 등에서 특히 두드러진 특색을 가진 민족으로 그 분규가 쉽게 정치화할 수 있는 소수민족이다. 반면에 문화적 소수민족은 역사상 자신들의 독립국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인구, 지역, 모국의 존재, 관습 등에 있어서 비교적 작거나 한족에 동화정도가 심한 소수민족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로 藏族, 蒙古族, 維吾爾族, 回族, 朝鮮族이 속하고, 후자의 경우는 나머지 50개의 소수민족이 속한다. 廣西의 壯族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존재하고 인구도 가장 많으나 정치적으로 분리독립 성향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은 이 분류의 큰 영향을 받는다. 이진영,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민족연구』 9호(한국민족연구원, 2002), pp.26-27.

12) 노태구,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민족문제연구: 통일연구방법론』 8집(경기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 2000), p.32.

13) 중국의 민족이론가들이 내리는 민족문제에 대한 공통적 정의는 민족문제는 민족과 민족 사이의 문제와 개별민족 내부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민족문제는 민족들 간의 모순과 차별의 문제이며, 다민족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물질적 이익의 차이에서 생기는 모순이며, 민족문제의 실질은 민족평등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조정남, 앞의 책, pp.49-54.

다. 1953년 제1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할 각 민족대표를 선거하기 위해 민족평등 원칙에 따라 ‘민족식별작업’¹⁴⁾을 벌였으며, 당시 독자적인 민족단위로 제출된 민족은 400여 종이나 되었다. 이에 정부 당국은 공통의 지역, 공통의 언어와 문자, 공통의 경제생활, 공통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심리소질 등의 네 가지 특징을 기본 표준으로 하고 또 그들의 역사적 발전 등의 실정도 고려하여 55개 소수민족을 확정하고 국무원에서 정식으로 인정하여 공표하였다.¹⁵⁾

소수민족과 관련한 민족식별작업이 이루어진 후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한족을 주체로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민족’이라는 개념의 중화민족의 개념은 1988년 중국의 사회학자인 페이샤오통(費孝通)이 ‘중화민족다원일론(中華民國多元一論)’을 제기하면서 커다란 반향을 다시 일으켰다. 그는 중국의 각 민족은 오랜 역사기간 동안 중원을 장악하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을 하면서 동일세계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한족은 오랜 역사 동안 이미 여러 민족이 융합하여 형성된 민족이고, 한때 중원을 장악했던 만족이나 몽고족, 회족 등도 이제 ‘다원통일(多元統一)’을 이루어 중화민족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⁶⁾

이렇게 중국의 성립 이후 개념화 되었다가 1980년대 말 다시 제기된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은 다분히 정치적 함의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의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 그리고 개혁개방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의 시기에 다민족 통일국가인 중국의 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족과 더불어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공존하고 있는 중국 내의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중국 역사를 관통하는 중화사상을 기초로 한 한족 중심의 역사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중화민족론은 중국 내 모든 소수민족에 대하여 ‘중화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아우르면서 대가정의 일원처럼 모든 민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일가의식(一家意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과거 일방적 동화를 목적으로 하던 민족융합론과는 차별적인 성격을 지닌다.¹⁷⁾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이전의 중국의 민족주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대로의 도구적이고 위장적인 실체에서 벗어나 외국의 세력에 대항해서 중국의 자존을 지키고 새로운 국가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공산주의와 동

14) 중국은 1950년부터 3단계의 과정으로 민족식별작업에 들어가는데, 1956년에서 1957년까지 중국 경내의 민족에 대한 기본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민족식별작업은 간헐적으로 계속되어 1978년 모두 55개의 민족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분류되었다. 이진영, 앞의 논문, p.11.

15) 김병호, 『중국의 민족문제와 조선족』(학고방, 1997), pp.13~16.

16) 최우길, “현대 중국 민족문제에 관한 소고”,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4권(한국세계지역학회, 2000), pp.312~315.

17) 김재기, 『중국-티베트 민족갈등의 정치적 동학: 국내의 집단요인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43.

〈표 1〉 중국 소수민족의 명칭, 인구 및 분포

명칭	인구수(명)	거주지	명칭	인구수(명)	거주지
장족(壯族)	15,489,630	광서, 운남, 관동	석백족(錫伯族)	172,847	신강, 길림
만주족(滿洲族)	9,821,180	요녕, 길림, 흑룡강, 내몽고, 하북	마노족(仡佬族)	159,328	광서
회족(回族)	8,602,978	영하, 기타 내지	아이극자족(阿爾克孜族)	141,549	신강
묘족(苗族)	7,398,035	귀주, 호남, 광서, 운남, 관동	달간이족(達幹爾族)	121,357	내몽고, 신강
위구르족(維吾爾族)	7,214,431	신강	경과족(景頗族)	119,209	운남
이족(彝族)	6,572,173	사천, 운남, 귀주	첼남족(撒拉族)	87,697	칭해
토가족(土家族)	5,704,223	호남, 화북	포랑족(布朗族)	82,280	운남
몽고족(蒙古族)	4,806,849	내몽고, 동북3성, 감숙, 칭해, 신강	모난족(毛難族)	71,968	광서
장족(藏族)	4,593,330	서장, 서강, 칭해, 감숙, 사천, 운남	탑길극족(塔吉克族)	33,538	신강
포의족(布依族)	2,545,059	귀주	보미족(普米族)	29,657	운남
동족(侗族)	2,514,014	귀주, 호남, 관서	아창족(阿昌族)	27,708	운남
요족(瑤族)	2,134,013	광서, 서남부 산악지대	노족(怒族)	27,123	운남
조선족(朝鮮族)	1,920,597	길림, 요녕, 흑룡강, 내몽고	악온극족(鄂溫克族)	26,315	내몽고, 흑룡강
백족(白族)	1,594,827	운남, 서강, 귀주	경족(京族)	18,915	광둥
합니족(哈尼族)	1,253,952	운남	고충족(苦聰族)	18,021	운남
합살극족(合薩克族)	1,111,718	신강, 감숙, 칭해	붕용족(崩龍族)	15,462	운남
리족(梨族)	1,110,900	관동성, 해남도	오자별극족(烏孜別克族)	14,502	신강
태족(傣族)	1,025,128	운남	아라사족(俄羅斯族)	13,503	신강
여족(畲族)	630,378	북건, 절강, 강서, 관동	유고족(裕固族)	12,297	감숙, 칭해
울울족(僮僮族)	574,856	운남	보안족(保安族)	12,212	감숙
홀로족(仡佬族)	437,997	귀주, 강서	악윤춘족(鄂倫春族)	6,965	내몽고, 흑룡강
남호족(拉祜族)	411,476	운남	독룡족(獨龍族)	5,825	운남
동향족(東鄉族)	373,872	감숙	탑탑이족(塔塔爾族)	4,873	신강
와족(佧族)	351,974	운남	혁철족(赫哲族)	4,245	흑룡강
수족(水族)	345,993	귀주	문과족(門巴族)	2,475	서장
남서족(納西族)	278,009	운남	고산족(高山族)	2,909	대만
강족(羌族)	198,252	사천	낙과족(珞巴族)	2,312	서장
토족(土族)	191,624	칭해			

자료: 國歌民族事務委員會, 『中國民族工作50年』(北京: 民族出版社, 1999), 김재기, 『중국-티베트 민족갈등의 정치적 동학: 국내외 집단요인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46.에서 재구성.

일시되었다. 중국의 경우는 중국의 전통사상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조화에 그 기초를 두고 ‘민족구역자치’¹⁸⁾를 통해 소수민족의 권리를 어느 정도는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정통 마르크스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 공산당은 소수민족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로 한 혁명 초기에는 ‘민족자결’

18) 중국 공산당은 1940년 4월 「회회 민족문제에 관한 提綱」, 1941년 「陝甘寧邊區 시정 강령」17조에서 처음으로 소수민족 자치구 제도를 공개적으로 제출하였고, 1945년 10월 내몽고 공작방침을 확정하면서 민족구역자치제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여, 1947년 첫 번째 소수민족자치구인 내몽고자치구가 건립되었고, 1949년 9월 「공동강령」에서는 명확히 ‘각 소수민족 집단거주 지구에 민족의 구역자치를 실행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혜안, 2003), p.24.

을 약속하였지만, 소수민족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 다음에는 ‘민족자치’로 선회하였고, 티베트는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정책전환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1965년 티베트에도 소위 ‘민족구역자치제’의 실행으로 ‘서장자치구’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변화과정

그렇다면 중국의 소수민족에 관한 정책들이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집행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는데, 보통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시기부터 개혁개방 시기(1949년~1978년)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보고, 또 하나는 개혁개방 이후의 시기(1978년~현재)로 본다.¹⁹⁾ 물론 건국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이 성립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신중국 이후의 정책에도 녹아나는 것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성립하고 그 결과 모든 소수민족이 분류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구체적인 집행으로서의 중국의 민족정책은 1949년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개혁개방 이전

개혁개방 이전²⁰⁾ 중국의 민족문제에 관한 이론과 정책은 지도부의 정치노선과 이데올로기 투쟁 그리고 민족정책의 목표에 따라 초기 민족정책의 수립과 조사과정에서는 온건한 성격을 지니다가,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르러서는 급진적 성격을 띠는 변화과정을 거쳐왔다고 볼 수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중국공산당으로 하여금 소수민족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건국 이전의 소수민족은 전

19)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의 변동과정을 다섯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1)중국공산당 창당에서부터 소수민족을 한족의 지배체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으로 민족분리와 독립을 명분으로 한 한족의 고립화와 소수민족의 공산세력 가담을 획책하던 민족분리정책의 시기(1922~1949) 2)민족자치를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모든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고 더 이상의 민족분리를 허용하지 않는 민족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민족구역자치 정책을 강조하던 시기(1949~1959) 3) '민족문제의 실질은 계급문제'라고 하면서 투쟁의 형태를 통하여 현존하고 있는 모든 민족문제를 해결하며 민족과 민족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통일정책을 실시하던 시기(1959~1966) 4)민족자치제의 폐지로 요약되는 문화대혁명 시기(1966~1976) 5)민족구역 자치를 형식으로 하는 민족정책이 부활되고 사회주의 시기의 민족정책 목표가 민족 간의 평등과 단결, 상호협조에 있음을 내세우고 모든 민족정책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하여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족정책의 형식을 민족구역 자치의 확대와 발전에 맞추는 시기인 민족자치제의 회복기(1976~현재)이다. 조정남, 앞의 책, pp.89-93.

20) 개혁개방 이전의 소수민족정책도 다시 세분하여 다섯 시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1)중국의 건국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반포되고 그 속의 공동 강령이 선포된 1954년까지의 1단계. 2)민족정책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민족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민족식별을 하며 이를 출판의 형태로 표출한 1958년까지의 시기. 3)정풍운동에 이은 반우파 투쟁과 지방민족주의 반대운동이 실시되고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되는 1966년까지의 시기. 4)문화대혁명이 시작되고 소수민족정책이 정지되고 극단적 동화정책이 실시되던 1974년까지의 시기. 5)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나 서서히 변화를 보이는 1978년까지의 시기로 나누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진영, 앞의 논문, pp.16-21.

쟁과 혁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이들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중심목표였다고 할 수



영토적 통합과 구심력을 갖추게 된 중국정부는 민족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정치적·사상적 통합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있다. 그러나 건국 이후의 소수민족은 새로운 통치대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들의 주요 거주지역에 대한 ‘영토적 통합’을 완성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구심력을 강화하는 것이 민족정책의 주된 목표로 떠오르게 되었다.²¹⁾ 전체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수민족 거주지역은 영토비중이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국경지역이라 주변 국가와의 대외관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새로이 편입된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영토적 통합의 달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민족정책의 기본목표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공산당 초기에 결의한 대로 소수민족에게 자결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분리를 승인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이익이나 정책목표와는 상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지도부는 기존에 주장되어왔던 자결권과 연방제 구상을 대신할 새로운 민족정책이 필요했으며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민족구역자치’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일차적으로 구역자치를 통해 분리독립의 가능성을 제한하면서도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정체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언어, 문자, 종교, 풍습 등의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민족간부교육²²⁾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건국 초기 온건한 성향을 보이던 중국의 민족정책은 1950년대 후반에 들어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그들의 전통과 풍습을 부정하는 배타적이고 강압적인 동화정책으로 변모하게 된다.

초기의 온건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영토적 통합과 구심력을 갖추게 된 중국정부는 민족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정치적·사상적 통합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목표는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

21) 박병광(2000), 앞의 논문, pp.432~433.

22)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지구에서 민족자치를 주도할 민족간부양성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1951년 북경에 중앙민족학원을 설립하였으며, 1958년 말까지 각 지역별로 중남민족학원(武漢), 서북민족학원(蘭州), 서남민족학원(成都), 광서민족학원(南寧), 운남민족학원(昆明), 청해민족학원(西寧), 광둥민족학원(廣州) 등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건국 초기 12,000명 이었던 소수민족간부는 1958년에 약 48만 명으로 늘어났다. 위의 논문, p.433.

의 국내정치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급진적 동화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또한 이 시기에 발생한 ‘중·인 분쟁’과 ‘중·소 분쟁’ 역시 변경지역에서의 긴장감을 고조 시킴으로써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정치적·사상적 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²³⁾

② 개혁개방 이후

1978년 12월의 당중앙위원회 제11기 3중전회는 중국에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노선의 도입을 가져왔다. 이러한 정치노선의 변화는 소수민족정책의 전개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중국은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민족지구에 대한 각종 특혜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개혁개방 이후 확대된 다양성과 근대화로 인해 소수민족의 정체성의 재발견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한족지구와 소수민족지구의 발전격차의 확대²⁴⁾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²⁵⁾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민족 간의 현실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통합을 추진하는 민족융화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화대혁명 시기 추진되었던 강제동화정책의 실패는 중국의 민족문제가 단기간에 급진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경제발전 시기에 민족지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소수민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의 자율성과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민족융화정책으로 선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민족지구에 대한 경제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경제통합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통합을 통해 소수민족의 국가의식을 강화하고 민족이익의 보장을 통해 민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현대화에 있어서 소수민족지구의 균형적 발전은 가장 시급한 중국의 선결과제가 된 것이다.²⁶⁾

개혁개방 시기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족정책은 크게 인구정책과 문화정책, 그리고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구정책의 경우 중국정부는 한족에

23) 위의 논문, pp.435-436.

24) 실제로 1990년의 경우 중국에서 가장 잘사는 지역인 상해시의 1인당 연소득이 4,822위안이었고, 가장 빈곤한 지역인 귀주성의 경우는 654위안이었다(7.4:1). 그러나 2003년에는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상해시는 46,718위안, 귀주성은 3,061위안으로 나타나 15.3:1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식, 앞의 논문, p.51.

25) 개혁개방 시기의 소수민족정책을 다시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첫 단계(1978-1984)는 정책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모택동시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여 1950년대 초반의 상태로 회복하는 시기이고, 두 번째 단계(1984-1997)는 등소평 시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소수민족정책의 시기이며, 세 번째 단계(1998-현재)는 전면 개방기의 시기로 소수민족정책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진영, 앞의 논문, pp.21-26.

26) 박병광(2000), 앞의 논문, p.437.

대하여 적용하는 ‘1가구 1자녀’의 원칙을 소수민족에게는 예외 시행 내지는 완화된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민족의 인구는 개혁개방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민족문제가 한족과 소수민족의 압도적인 인구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보장하는 문화적 요소 역시 문화대혁명 이전의 시기로 회복하고 있으며, 각종 특혜와 우대정책으로 소수민족지구의 발전격차를 감쇄시킨다는 목표의 경제정책도 ‘서부대개발’ 등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문화대혁명 시기와 달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면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한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수민족정책은 단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목표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소수민족지구를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비폭력적이며 유화적인 형태의 민족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 시기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 통일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그 저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겠다.²⁷⁾

티베트 민족정체성과 민족주의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하나의 민족이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다민족국가의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의식’과 함께 최소한의 영토, 종교, 언어, 문화가 존재해야 한다. 즉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민족 문화의 ‘영토’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영토는 우선 주거 상태의 집중과 외부와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황을 기초로 한다. 다음으로 통일된 ‘민족 종교’를 신봉하는 민족은 쉽게 동화되지 않는다. 심지어 외부문화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더라도 그들의 민족종교를 구심점으로 민족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 언어가 없더라도 민족종교가 있다면 그들은 문화를 계승하면서 쉽게 동화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주변 문화보다 발달되거나 고유한 자기만의 문화를 소유한 민족은 그 문화에 대한 민족의 자긍심이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동화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일정 영역 내에서 하나의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이 된다면 ‘우리’라는

27) 위의 논문, p.439.

28) 김재기(2001), 앞의 논문, p.72.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⁸⁾

티베트 민족정체성의 기원과 형성

중국의 서남변경에 위치한 티베트(西藏自治區)는 평균해발 4천 미터 이상의 세계에서 보기 드문 고원지대로 '세계의 지붕'이라 널리 알려져 있다. 인도·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면적이 123만km²로 중국의 8분의 1을 차지하여 신강 다음으로 넓다. 인구는 약 223만 명으로서 전체 자치구 인구의 96.9%가 장족(藏族)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제적인 장족의 단일 주거지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정치·경제·문화·종교·언어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역사적으로도 강한 독립적 성향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장족은 스스로를 '페파'라고 부르나 일반적으로는 티베트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7세기 당초(唐初)에 티베트인들이 건설한 왕국을 당나라 사람들은 '토번(吐蕃)'이라고 불렀으며 이 명칭의 '번(蕃)'이 티베트인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페'의 음역인 듯하다. 토번이라고 하는 말은 실크로드를 거쳐 서방에 전해졌는데 당초에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있던 '돌궐인(突厥人)'들은 그들을 '치벳'(Tuput)이라고 불렀다. 이 투르크계의 발음이 유럽으로 전해져 결국 '티베트'(Tibet)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⁹⁾

<표 2>는 티베트인들의 민족자치 지역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한족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티베트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민족정체성의

<표 2> 티베트인(장족) 자치구·자치주·자치현 현황

	행정단위	면적(km ²)	설립일자	藏族 인구비율(1983)
西藏民族自治區	自治區	1,228,400	1965.9.1	96.0%
青海省	玉樹藏族自治州	197,791	1951.12.25	97.0%
	果洛藏族自治州	75,752	1954.1.1	90.1%
	海南藏族自治州	17,902	1953.12.6	61.9%
	海北藏族自治州	44,952	1953.12.31	57.2%
	黃南藏族自治州	45,785	1953.12.6	92.1%
	海西蒙古族藏族自治州	320,970	1954.1.25	23.5%
四川省	阿壩藏族自治州	83,460	1953.1.1	70.2%
	甘孜藏族自治州	153,002	1590.11.24	80.0%
	木理藏族自治縣	12,000	1953.2.29	74.6%
雲南省	迪慶藏族自治州	23,870	1957.9.13	83.9%
甘肅省	甘南藏族自治州	38,748	1953.10.1	54.4%
	天祝藏族自治縣	7,150	1950.5.6	32.0%

자료: 黃光學, 『新中國的民族關係』(福州:江出版社, 1998). pp.458~468, 김재기, 『중국-티베트 민족 갈등의 정치적 동학: 국내의 집단요인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73에서 재인용.

29) 조정남, 앞의 책, p.231.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보다도 티베트인 다수가 함께 모여 사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티베트인들이 집거하는 민족영토 없이는 혈통, 언어, 문화, 종교 등 모든 것이 다수민족에게 동화될 가능성이 높다. 작금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영토 분쟁이 이러한 민족 영토에 대한 필요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둘째, 언어로서 티베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티베트 문화나 종교는 더 이상 살아 움직이는 전통이 아닌 죽은 문화이다. 일정한 지역에 동족이 모여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티베트인들의 민족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셋째, 티베트인들을 더욱 티베트인답게 만드는 것은 티베트 전통문화이며 이는 불교라는 보편적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넷째, 티베트 민족주의에 정당성과 보편적 가치를 더해주는 것은 불교이다. 티베트인의 정체성은 민족적인 요인보다는 종교적인 일체성이 더 작용한다. 티베트인의 민족정체성은 종교와 문화라는 객관적인 존재에 달라이 라마라는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³⁰⁾

이와 같이 티베트인들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생활해온 고유한 영토가 있었으며, 그 영토를 기반으로 티베트만의 불교와 언어들이 결합되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여 티베트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티베트인들의 민족정체성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티베트 민족주의에 의한 분리 독립 운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티베트 민족주의와 불교

티베트 분리독립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는 종교의 문제이다. 티베트 지역에서 자기 특유의 민족문화 전통을 형성케 한 것은 종교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티베트인의 종교적인 정신세계에 대한 추구는 물질에 대한 추구보다 훨씬 강하다. 티베트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곧 정치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며, 그들의 종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동시에 정치 지도자인 것이다. 티베트에서 발생한 시위의 절대 다수가 종교적인 이유에서 촉발된 것이며, 참여자의 다수가 승려인 것으로만 보아도 티베트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적 동기가 매우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티베트는 청 말 제국주의의 침략과 중공의 침략으로 티베트 불교라는 종교에 근

30) 김재기(2001), 앞의 논문, p.73.

거한 문화적 민족주의 경향이 주요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였다. 티베트인에게 종교에 기반한 민족정체성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인식시키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외부의 침략에 대해 민족적 저항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티베트인의 민족정체성은 종교에 기반한 문화적 민족주의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종교가 민족주의와 관련을 맺을 때 종교는 자기 민족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티베트 불교는 해탈이라는 출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가 세속적 권력을 등에 업고 성장했으며, 국교로서 또한 한 사회와 문화 전체를 지배하는 종교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티베트는 국가와 불교, 왕법과 불법이 역사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불교적 '신정(theocracy)국가'를 형성한 것이다. 정치와 종교, 국가와 불교가 하나의 질서로 통합되어 버린 티베트의 신정은 16세기부터 시작하여 1959년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하고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기까지 약 400년간 지속되었다. 아직도 대다수 티베트인들은 옛 티베트의 부활을 꿈꾸면서 세계를 향해 정치적·정신적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다. 티베트 하면 불교를 연상할 정도로 불교 없는 티베트는 상상도 할 수 없으며, 티베트 불교 하면 달라이 라마를 연상할 정도로 달라이 라마를 떠나서 티베트 불교를 생각할 수 없다. 400년 불교 신정국가를 이끌어 온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인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간주되며, 티베트의 최고 종교 지도자 일뿐만 아니라 세속적 권력을 지닌 왕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³¹⁾

특히 티베트에서 종교는 그들 생활의 중요한 근거이며, 티베트의 정치, 사회, 경제 구조는 모두 이러한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점령 초기 종교문제에 대해 관용과 수용의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1954년 8월 이후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³²⁾를 티베트에 강제 이주시켜 사상개조를 진행하였으며, 점차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티베트의 정치·종교체제를 바꾸지 않겠다던 중국은 약속을 저버리고 티베트인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동부지역에서 민주개혁³³⁾과 사회주의 변혁이라는 기치 아래 종교개혁을 진행하여 거센 저항과 반

31) 김희성, "티베트 불교 민족주의의 역사적 고찰" 『동아연구』 제36집(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8), pp.19-21.
 32) 판첸 라마(Panchen Lama)는 티베트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탈과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달라이 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판첸 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판첸 라마는 달라이 라마에 이은 서열 두 번째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달라이 라마와의 정치적 지위는 평등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사도(師徒)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달라이 라마가 세상을 떠나면 생존해 있는 판첸 라마가 환생한 활불 달라이 라마에게 법계를 주고 경전을 가르치고, 판첸 라마가 죽으면 달라이 라마가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33) 중국정부는 봉건제의 붕괴로 95%의 대다수 티베트인을 착취해 온 봉건 영주들이 몰락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1959년의 '라싸 사건'을 '민주개혁'이라고 부른다. 이 민주개혁은 중국정부의 시각에서는 '인민해방'이지만, 티베트 승려들의 눈으로 보면 티베트의 문화를 위협하고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박탈하는 대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원의 재산권 상실로 인한 정치·경제적 변화가 승려들이 분리독립운동의 핵심세력으로 나서게 되는 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민자, "티베트 독립운동의 경제적 배경", 『동아연구』 제36집(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8), pp.216-227.

발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급기야 1959년 라싸 봉기로 이어졌던 것이다.

티베트는 전통적으로 정교합일에 의해



중국과 티베트 간의 갈등이 진행되어 온 지난 50여 년간은 '긴장된 평온'과 '갈등의 분출'의 반복과 동시에 민족갈등이 정치적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원과 승려 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중국 공산당에 의한 민주개혁으로 사원의 재산권이 상실되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여, 정치는 당에서 담당하고 사원은 제한된 종교의 역할만 담당하게 되었다. 민주개혁 이전의 사원은 경제적으로 중국 최대의 영주였고, 정치권력의 핵심이었으며, 티베트 전통문화의 산실이었다. 개혁개방으로 자유가 허용되었으나 정치적 권한이나 경제권이 없는, 당의 통제를 받는 제한된 종교 활동이었다. 종교 중심의 사회에 재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예산권 없는 정부의 자치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원의 정치 경제적 권한의 약화는 승려들의 불만을 가져왔고 이들을 체제 저항세력의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³⁴⁾ 이렇듯 티베트 민족주의에 정당성을 더해 주고 보편적 가치를 더해 주는 것은 바로 불교이다. 불교는 티베트와 세계가 만나는 통로이자 매개체이다. 불교를 통해 티베트는 세계와 만나고 불교로 인해 세계는 티베트에 관심을 가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공산당이 그 이데올로기적 한계로 인해 간과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자신들의 유교적 전통마저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던 중국 지도자들은 불교를 기반으로 한 티베트인들의 뿌리 깊은 신앙과 문화적 자긍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³⁵⁾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의 전개과정

중국과 티베트 간의 갈등이 진행되어 온 지난 50여 년간은 '긴장된 평온'과 '갈등의 분출'의 반복이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민족갈등이 정치적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민족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은 국가의 개입 및 억압정책이 현저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소수민족의 저항은 국가 혹은 정부에 대한 도전 및 항의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긴장의 연속과 갈등의 분출은 중국의 '강압정책'과 '유화정책'이라는 변수와 티베트인들의 '적극적인 저항'과 '소극적인 저항'이라는

34) 김재기(2001), 앞의 논문, pp.77-78.

35) 김희성, 앞의 논문, pp.58-59.

변수에 의해 시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패턴을 보이게 된다.

갈등의 생성과 분출(1950년~1959년)

1950년에 중국이 티베트에 진입하고 1959년 라싸 봉기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기는 중국의 강압적 동화정책에 대한 티베트인들의 적극적인 저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중국의 무력점령과 사회주의 개혁 그리고 한족의 이주와 같은 요인들이 갈등 분출의 요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1950년 10월 중공군은 창도(昌都)를 점령하고 1951년 초기에는 티베트의 지배계급을 통해 그 지역을 통치하고자 하였다. 1951년 5월 23일 중국과 티베트는 '17조 협의'를 체결하였는데, 이 '17조 협의'³⁶⁾는 티베트의 주권귀속과 민족자치의 실행, 종교자유와 풍속 습관 및 종교지도자 지위보장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불강행 등을 명백히 규정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관한 최초의 문건으로, 그 주된 의도는 티베트의 자치 보장과 달라이 라마, 판첸 라마 등의 통치지위를 승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국군의 티베트 주둔과 귀속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³⁷⁾

그런데 이 협상안은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한 안을 가지고 논의하였는데 초기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협상안에는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국방과 외교 업무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인정하라는 것으로 주권을 넘겨주라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는 1951년 10월 24일 모택동에게 전보를 보내어 인민해방군에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하였고, 이에 중국 공산당은 합법적으로 티베트에 군대를 주둔할 근거를 갖게 되었고, 모택동은 훈령을 내려 장국화가 이끄는 18군으로 하여금 티베트에 진주하도록 명령을 내려 합법적으로 진주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⁸⁾

1952년 3월 티베트인들은 인민회의를 조직하고 라싸에서 시위를 벌여 '17조 협의'와 중국군의 주둔을 반대하였다. 이에 모택동은 "서장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시행하지 말고, 잠시 늦추어 생각하자"고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의해 중

36) 당시 서남국 제1서기 등소평은 1950년 1월에 '서장해방에 군사문제가 있어 일정 수량의 군사 역량이 필요하다. 단 군사와 정치를 비교하면 정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17조 협의의 기초가 되는 '10항 정책'을 직접 작성한다. 중공 중앙은 5월 29일에 10항 정책을 비준하였으나 티베트 협상단이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는 전제하에서 작성했다 해서 합의를 거부하였다. 결국 이 10항 정책에 7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한 중국측 안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17조 협의이다. 등소평의 10항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 그 역사적 관계에 대한 연구사적 이해』(소나무, 2000), pp.299-301.

37) 김재기(2001), 앞의 논문, p.63.

38) 티베트를 점령한 중국인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티베트의 외교권 탈취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 서장군구(西藏軍區)가 성립된 후, 중앙 인민정부의 주서장외사방관판공실(駐西藏外事幫辦辦公室: 1956년에 西藏外事處로 개칭)이 1952년 9월에 개설되고 원래 있던 티베트 외교국이 철폐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인은 티베트의 군사,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으며 티베트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영구히 상실하게 되었다. 김한규(2003), 앞의 책, p.53.

국은 환경변화에 따라 티베트에 통치를 점진적으로 실시하였다.

1954년 8월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는 북경에서 열린 '제1차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였는데, 중국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서장지방 통일정권의 설립을 상의하였고, 1956년 4월 22일 라싸에서 '서장자치구주비위원회'를 성립시켰다.³⁹⁾ 서장주비위 성립 후, 서장지방의 통치권은 중국 중앙의 손에 놓이게 되었다. 그 후 중국은 당·정·군 간부들을 대량으로 티베트에 들여보내 서장 지방정부의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 했을 뿐만 아니라 서장에 대한 전면적인 통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강압적인 조치와 동화정책은 서장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티베트인들의 저항이 일어나게 하여 티베트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1957년에는 인민해방군 8개 사단 150,000명을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이에 많은 티베트인들은 같은 해 5월 라싸에서 '사수육강(四水六崗)⁴⁰⁾이라고 하는 각 지역 무장 저항의 연합조직을 건설하는 등 게릴라 군에 가담하여 무력저항을 하게 되고 티베트의 중심인 라싸에 까지 밀려들게 되었다. 이러한 무력충돌 속에 1959년 3월 10일 라싸 주둔 인민해방군 사령관이 달라이 라마를 가무단 공연에 초대해 그를 납치하려는 것으로 음모⁴¹⁾가 알려지자 티베트인들이 노블링카 궁전을 에워싸고 달라이 라마를 보호했으며, 포탈라궁에서는 민중회의를 소집하여 티베트 독립을 선언했다.

중국의 행위는 티베트인으로 하여금 기만당했다고 느끼게 하여 반감을 유발시켜 결국 1959년 라싸 봉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서장독립국민확대회의(西藏獨立國人民擴大會議)'의 이름으로 '티베트 독립'과 '한인을 쫓아내자'라는 구호

〈표 3〉 중국의 무력침공 당시 사망자 통계(1949~1979)

사망원인	우창 지역	캄 지역	압도 지역	합계(명)
투옥	93,560	64,877	14,784	173,221
교문	27,951	48,840	15,940	92,731
사형	28,267	32,266	96,225	156,758
시위	143,253	240,410	49,042	432,705
아사	131,071	89,916	121,982	342,970
자살	3,375	3,952	1,675	9,002
합계	427,478	480,361	299,648	1,207,387

자료: 티베트 망명정부 홈페이지 (<http://www.tibet.com/WhitePaper/white5.html>)

39) 달라이 라마가 자치구주비위원회 주임위원을 맡고, 판첸 라마는 제1부주임위원, 장국화는 제2부주임위원을 맡았다. 위의 책, p.56.

40) 원명은 추니강주(曲細崗珠)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달라이 라마에게 금보좌를 바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현금활동을 전개하면서, '종교 보위', '티베트 독립', '개혁 반대', '공산당 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1957년 가을부터 1958년 봄까지 무장저항 세력의 대표자와 티베트군 및 3대 사찰의 승려 대표들이 비밀집회를 갖고 동맹을 결성, 모든 무장 역량을 사수육강으로 통일시켜 총 4,000여 명의 위교지원군(衛教志願軍)을 성립시켰다. 위의 책, pp.58~59.

41) 당시 사건의 당사자의 한 사람인 아포 아왕지메가 최근에 피력한 바에 의하면 달라이 라마 납치 사건은 거짓말이라고 한다. 김한규(2000), 앞의 책, p.352.

42) 김재기, "티베트의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운동의 기원과 전개",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3호(대한정치학회, 2006), p.43.

를 주장하였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11월 진압부대를 동원하여 봉기를 평정하였고, 1963년 3월 진압작전은 종료되었다. 라싸 봉기로 4만 명의 티베트인이 사망하고, 동년 티베트 중부지역에서만 8만 7천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²⁾ ‘화평해방’과 ‘민주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진행된 티베트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은 한족과 티베트인 사이에 민족전쟁으로 변해버렸다.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티베트는 대규모 살육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두 민족 간에는 심각한 원한이 생겼다. 이러한 원한은 티베트에서 한족을 몰아내고 티베트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원망으로 변하였다.

문화대혁명과 갈등의 퇴조(1960년~1978년)

1959년 티베트인들의 저항이 무력으로 진압되고 문화대혁명이 끝나는 1978년까지는 중국의 강압적 동화정책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달라이 라마 정부의 해외 망명으로 정치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는 강력한 동화정책에 티베트인들은 소극적인 저항만이 가능하였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극좌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소수민족들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티베트인들의 분리독립 운동은 ‘강압에 의한 봉합’ 내지는 ‘일시적 잠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라싸 봉기 이후 달라이 라마 14세는 인도로 망명하여 임시 망명정부를 세우자, 중국은 서장 지방정부의 해산을 명령하고 ‘서장주비위’로 하여금 그 직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그 해 4월 제2기 인민대표회의 1차회의는 ‘서장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켜, 서장지역에 민주개혁 실행을 결정하였다. 이 민주개혁은 일차적으로 ‘삼반쌍감(三反雙減)⁴³⁾을 추진한 다음 전면적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사원토지와 재산은 폭동 시 참가 여부에 따라 몰수 혹은 유상몰수하였고, 서장 인민과 사원의 토지재산은 점차적으로 몰수하였다. 중국은 민주개혁 기간 동안 교통개발, 문화교육, 토지개혁, 간부배양과 지방선거 등을 실시하여 서장의 기층 사회구조를 철저히 사회주의화하여 통치를 공고히 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개혁에 저항하는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지방정부와 상층 지배계층이었으며, 이제 그들이 없는 티베트는 상층부와 협의할 필요 없이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계급의식과

43) 三反은 反對反亂, 反對烏拉差役制度, 封建奴役制度, 反對奴役이고, 雙減은 減租, 減息이다.

44) 제10대 판첸 라마는 북경으로 압송되어 감옥생활을 하다가 1974년 출옥하였으나 가택연금을 당하였으며, 1978년에야 복권되어 1982년 라싸로 돌아와 1989년 사망했다. 김재기(2006), 앞의 논문, p.44.

투쟁을 선동하여 과거 지방정부의 관료, 귀족, 사원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하여 농노와 소작인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농민조직을 통해 집단농장화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기근은 중국인들이 티베트를 더욱 착취하게 만들어 많은 불만을 초래하였고, 중국에 협조적인 판첸 라마조차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게 되자, 1964년 8월 '사회주의 장애물'이라는 낙인아래 숙청되었다.⁴⁴⁾

1966년 문화대혁명의 발생은 중국의 서장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계급투쟁의 구호 아래 티베트인들은 계급의 적으로 취급되어 엄중한 탄압을 받았다. 티베트 인민들의 종교활동이 금지되고, 라마들은 환속을 강요받았고, 이러한 강압적 동화정책으로 티베트에서의 분리독립의 움직임은 약화되게 되었다.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강압적 동화정책은 4인방(四人幫)의 몰락과 함께 끝을 맺었지만, 그것은 향후 중국의 티베트 통치에 많은 난점을 가져왔다. 첫째, 티베트 전체 인민들의 정신적 핵심인 종교와 그 문물에 대한 파괴는 티베트인의 자존심과 감정을 크게 손상시켜 한족과 티베트인 간의 갈등을 격화시켰으며, 더 나아가 티베트 내 반 중국 감정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티베트에 대한 탄압은 해외 망명정부의 독립주장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셋째, 국제사회에 중국의 티베트인에 대한 억압을 재확인 시켰으며, 이후 세계 각국의 티베트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개혁개방시기 대화의 모색과 갈등의 재분출(1979년-1989년)

1978년 개혁개방 이후 티베트에 대한 유화정책은 결과적으로 티베트인들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달라이 라마와 망명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티베트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 1987년과 1989년 티베트인 봉기와 같은 적극적인 저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곧바로 무력으로 점령이 되고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또다시 '긴장의 평온'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 티베트에 대한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개혁개방의 자유화 조치는 1959년 이후 억압되었던 민족주의 감정을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원의 복구와 불교의 부흥은 티베트인들을 단결시키는 구심점이 되었다. 중국 식 교육을 받았던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문화적, 종교적 전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티베트인들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귀환시키기 위해 1978년과 1980년 두 차례에 걸쳐 그의 형제들을 초청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1985년 이후에는 중국

과 티베트 간의 대화가 사실상 단절되었다. 달라이 라마 측은 티베트 문제를 국제 사회에 호소하면서 문제를 국제화시켰고, 중국은 티베트의 개발과 한족이주를 통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서로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소원한 관계 속에서 1987년 9월 21일 달라이 라마가 미국 의회에서 '평화 5조안'⁴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지지하는 시위가 티베트 전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10월 1일 라싸에서 2,000여 명의 시위자가 검거되었고 7명이 사망하였다. 10월 3일에도 3,0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에 달라이 라마는 폭력에 의한 독립을 반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중국과 티베트인 간의 무력충돌은 계속되었다. 1988년 3월에도 조강 사원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발생하여 1,000여 명이 투옥되었고 이후에도 소규모 시위가 계속되었다.⁴⁶⁾

달라이 라마는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티베트 독립을 포기하라는 등소평의 전제조건을 수락하고, 티베트의 미래에 대해 홍콩과 대만과 같은 "일국이체제의 정치적 연합"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⁴⁷⁾ 이에 대해 티베트 청년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으나 이러한 제안은 1989년 달라이 라마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1989년 1월 27일에 판첸 라마가 사망하고 그의 장례식이 무력시위로 변하였다. 처음에는 판첸 라마의 장례행렬이 독립을 요구하는 대중 집회로 변하였으나 별 충돌 없이 공안에 의해 해산되었다. 3월 5일이 되자 또 한 차례의 시위가 벌어져 수백 명의 라싸 청년들이 시위에 가담했고 시위는 전투적인 양상을 보였다. 시위대에 공안당국이 발포하여 사태가 심각해지고 그 뒤 이틀 동안 수많은 티베트 청년들이 대규모로 라싸의 서장구역을 장악하고 한족 가게와 회사들을 방화하고 자기 구역을 바리게이트로 방어하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장 독립투쟁은 국가에 도전하였고 잠시나마 승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 성 위원회 서기를 서장의 민족주의에 대해 유화적인 대처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시키고, 3월 8일 계엄령을 발표하여 수천 명의 특수부대가 서장에 투입되었다. 대량체포, 구타 그리고 총격전이 뒤따랐고 라싸는 그 해 내내 계엄령 하에 놓이게 되었다. 티베트인들은 3일간의 시위에

45) 'Five Point Peace Plan for Tibet' 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조안은 1987년 9월 21일 워싱턴의 미국 의회에서의 발표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1) 티베트의 국민 모두를 평화지역으로 이주시킬 것. 2) 티베트 국민의 존재를 위협하는 중국의 이주정책을 포기할 것. 3) 티베트 국민들의 근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 4) 티베트 자연환경을 복구시키고 보호하며 핵무기를 생산하고 핵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티베트를 이용하지 말 것. 5) 티베트의 장래는 물론 티베트의 국민과 중국 국민들 사이의 관계에 관해 성실한 협상을 시작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tibet.com/Proposal/5point.html> (검색일 2008. 1. 25).

46) 김재기(2006), 앞의 논문, p.46.

47) 1981년에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가 '달라이 라마를 대우하는 5조 방침'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달라이 라마의 귀국을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반드시 북경에 거주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티베트로 돌아가 시찰할 수 있으며, 달라이 라마가 귀국한 뒤에 그의 정치경제적 특권은 1959년 이전과 같으며, 동시에 인민대표자 부위원장이나 정협 부주석을 맡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1988년의 스트라스부르의 성명은 달라이 라마가 이에 화답한 것이다. 김한규(2003), 앞의 책, p.31.

서 12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다. 이러한 저항은 1959년 이래 최대 규모의 중국에 대한 도전이었다.



달라이 라마는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의회에서 티베트 독립을 포기하라는 등소평의 전제조건을 수락하고, 티베트의 미래에 대해 “일국이체제의 정치적 연합”을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 대학살이 일어나고 계엄령 하의 라싸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었다. 10월 11일 달라이 라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발표되자, 수백 명의 승려들이 계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하하는 시위를 벌였고 중국은 탱크 등을 동원하여 또다시 이들을 무력 진압하였다.

이렇듯 개혁개방 이후 티베트에 대해 상당한 유화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재분출된 것은 첫째,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개혁정책이 대중의 지지를 얻어냈지만, 소수민족의 경우 단순히 정권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사회주의 통치 자체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티베트에 대한 통제완화와 종교 활동의 허용은 민족의식 및 전통문화의 부활을 가져왔고, 이는 티베트인들의 민족 자각과 독립 정서를 고취시키는 계기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정부는 경제개혁을 통한 생활수준의 개선이 소수민족의 불만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연해지역과의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불만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는 소수민족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와 연해지역의 공산품 간의 불평등 교역은 소수민족에 대한 한족의 착취로서 소위 ‘내부식민지(internal colonialism)’ 현상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넷째, 티베트의 대외개방은 현대화된 가치관과 사고의 유입으로 낯은 관념을 깨뜨리는 것으로 기대했으나, 외부와의 접촉은 오히려 서구의 민주주의, 인권, 민족자결 및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개방화가 민족정체성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으나 오히려 소수민족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또한 한족의 이주로 소수민족 집거구의 해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더욱 더 응집력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천안문 민주화운동 이후 갈등의 잠재(1990년~현재)

천안문 민주화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강경 진압과 계엄령 해제 이후 강압과 유화 정책을 통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저항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

는 티베트 문제의 미래는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원과 무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국제사회의 反중국 및 국제 NGO의 지지를 받고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 간의 대립이라는 국제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천안문 민주화운동 이후 라싸에서의 조강 사원 승려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저항이 계속되었으나 대규모의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1991년과 1992년에도 승려들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시위가 발생되고 그들은 체포되었다. 1993년 5월에는 1989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1995년 5월 14일 달라이 라마는 6살인 겐둔 최끼 니마(Gendhun Choekyi Nyima)를 제11대 판첸 라마로 인정했는데,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적으로 간주하고 무효화를 선언한 뒤 판첸 라마를 납치한 후, 다른 어린이를 직접 골라 진짜 생불이라고 자리에 앉힌 사건⁴⁸⁾이 발생하여 티베트 망명정부와 첨예하게 갈등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4월 20일에는 달라이 라마의 미국 의회 연설을 들은 티베트인들이 라싸에서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며 관공서를 습격하고 자동차를 부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⁴⁹⁾

또한 2000년 7월에는 서장 사원에 보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각 가정에 불상을 모두 없애는 등 서장 지역에 대한 극도의 불교 말살 정책을 펼쳤으며, 중국 정부는 각 기관장 연석회의를 열어 절에 돈이나 물건을 보시하지 말 것, 금년부터 절의 새 행자를 받아들이지 말 것, 비구-사미계를 주지 말 것, 절에 외부인이 머무르게 하지 말 것,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명령하였다. 7월 6일은 매년 열리는 달라이 라마 탄신기념일 행사와 관련해 행사를 금지하고 강행할 경우 사격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티베트인들은 종교행사를 강행하였다고 한다.⁵⁰⁾

2002년에는 티베트 망명정부와 중국의 대화가 다시 재개되어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중국은 9월 9일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 2인이 북경을 방문하도록 허락하여, 티베트 망명정부 미국 담당자인 로디가디(Lodi Gyaltsen Gyari)와 유럽지역 담당자 로상 겐찬(Kelsang Gyaltsen)의 방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달라이 라마는 분리독립을 철회하고 홍콩처럼 '고도의 자치' 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 자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티베트는 홍콩이나 마카오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달라이 라마는 2004년 5월 18일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문화와 환경이 보호된다면 티베트가 중국 내 자치

48) 중국에 의해 5월 17일 납치된 판첸 라마는 아직까지 생사 여부를 모르는 상태이며, 피랍될 당시의 나이 6살로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 정치범'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국제티베트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전 세계 85개 인권단체들이 최근까지도 그의 석방운동을 펼치고 있다.

49) 김재기(2006), 앞의 논문, p.48.

50) 「법보신문」 2000년 8월 16일자, 위의 논문, p.48.에서 재인용.

구로 남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2005년 3월에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와 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티베트의 종교, 문화, 환경을 보호해 준다면 자치권을 포기하고 중국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이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이며, 티베트의 문화와 불교는 중국문화의 일부”라며 “티베트 주권 주장을 포기함으로써 티베트 주민은 중국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⁵¹⁾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의 현재와 달라이 라마

티베트의 분리독립운동에서 달라이 라마는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 정치지도자로 존재한다. 달라이 라마라는 정치제도는 제5세 달라이 라마가 정치권력을 통합하여 자신의 통치 하에 전국을 통일한 17세기 이래로 줄곧 티베트인들의 종교적·세속적인 지도자가 되어왔다. 이때 이후로 티베트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를 ‘자비의 붓다’인 관세음보살의 물질적인 현시라고 여기며 티베트인들의 신화적 선조로 모시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는 이전 라마의 환생이라고 여겨지며, 한 명의 달라이 라마가 입적하면 섭정인이 권력을 쥐고 새로운 환생을 찾아야 할 의무를 진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들에겐 살아있는 부처로 숭앙 받는 절대적 신앙의 대상이며 또한 정치적인 최고 결정권을 갖는 국가 통치권자이다. 현재의 달라이 라마 가왕 로상 텐징 가췌(Tenzin Gyatso)는 14번째 환생이다.⁵²⁾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의 현재

천안문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 세력이나 소수민족 분리독립 세력에 대한 인권 탄압은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이 증가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⁵³⁾과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하는 시점에서 참가 국가와 선수들의 올림픽 개막식 및 경기 보이콧 조짐이나 티베트 청년회의 폭동 등으로 야기되는 국제적 관심은 중국정부를 더욱 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2008년 3월 14일 인기 있는 관광지 티베트의 수도 라싸는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51) 위의 논문, p.49.

52) 달라이 라마, 김철·강건기 역, 『티벳 나의 조국이야』(정신세계사, 1998), pp.9-61.

53) 실제로 올림픽은 인류의 스포츠 제전이지만 정치적 야심이나 경제적 도약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36년 베를린, 1964년 도쿄,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되었다. 조강 사원의 승려 300~400 명이 인근에서 중국의 티베트 지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이를 해산하려는 중국 공안과 승려들이 충돌하면서 대규모 집단 시위로 이어진 것이다. 이어 라싸 시내 곳곳으로 시위가 번지면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수천 명의 티베트인들이 중국 무장경찰과 충돌했고, 중국 정부는 도심 곳곳에 탱크를 배치했다고 한다. 이 날 시위는 당일 바로 투입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신속한 진압에 일단 수그러든 상태다. 하지만 사천성, 감숙성, 칭해성의 티베트인 거주 지역에서 봉기가 계속되고,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란저우의 티베트족 대학생들이 연좌농성과 촛불시위를 벌이는 등 티베트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는 나흘째 계속된 시위에서 13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티베트의 망명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라싸에서만 80명, 감숙성에서 19명 등 최소 99명의 티베트인이 숨졌고 사망자는 최대 수백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에 대한 유혈진압이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 사태로 연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⁵⁴⁾

중국 정부는 티베트와 티베트 자치주 거주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라싸에서는 대대적인 가택 수색과 검거가 벌어지고 있다. 유력한 라마승들은 티베트 주요 불교사원 내에 강제 연금된 채 중국 공안의 감시를 받고 있고, 일부 라마사원에 대한 식량 및 식수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

〈표 4〉 2008년 티베트 관련 주요 사건일지

날짜	내용
05/31	승려 12명 재교육 명목으로 구속
05/29	Kardze에서 평화행진에 총격
05/26	Kardze에서 4명의 여승 구속
05/26	평화행진하는 2명의 여승 고문과 구속
05/22	Kardze에서 2명의 젊은 승려 구속
05/21	Kardze에서 3명의 여승 구속
05/19	Kardze에서 대중종교인 구속
05/19	Lhasa에서 최근 학살 증언
05/17	Kardze에서 여승 2명 구금
05/17	55명의 여승 체포
05/15	16명의 승려 재교육 명목으로 체포
05/09	Xiahe의 미디어 투어에서 저항하던 승려들 실종
05/09	Chushul에서 32명의 승려 구금
05/09	Ngaba Kirti 수도원의 달라이 라마 초상화 파괴
05/05	티베트 여인 고문으로 사망
05/03	티베트 대중 항쟁에 대한 법적 논쟁 제기
05/02	Phenpo에서 고문으로 티베트인 사망
04/29	형식적이고 신속한 재판으로 17명의 티베트인 감금
04/29	Amdo에서 티베트 유목민 총격 사망, 수백 명 체포
04/25	관첸 라마 가택구금에서 19번째 생일 보냄

54) 「주간동아」 2008년 4월 2일자.

55) 「오마이뉴스」 2008년 3월 27일자.

04/24	중국정부 '애국적 재교육' 전 티베트에서 착수
04/18	Rong Gonchen 수도원 전입 원장 위독 상태
04/17	Taktsang Lhamo Kirti 수도 학교 폐쇄
04/17	Rebkong에서 티베트인 100여 명 이상 체포
04/17	중국군과 경찰에 의해 총격 사망한 티베트인들 사진 공개
04/15	Kardze에서 종교지도자 Geshe Sonam Phuntsok 사망
04/14	Drepung 수도원의 승려들 애국적 재교육 캠페인에 저항
04/09	Ramoche 사원의 70여 명의 승려들 야간 참입에 항의
04/09	고문 당한 승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방치
04/05	티베트에서만 2300명 이상의 티베트인 체포
04/05	Kardze의 Tongkor 수도원에서 최소 8명 총격 사망
04/04	Amdo의 Ngaba에서 2명의 승려 자살
04/04	Tawu에서 여승들 최근의 탄압에 대한 기도회 개최
04/03	Tsolho에서 티베트인 기도 행진
04/03	사천성의 Sertha와 Kardze 지역에 중국군 수만 명 배치
04/01	Kirti 수도원에서 이틀에 걸쳐 572명 이상의 승려들 체포
03/28	Kirti 수도원에서 100명 이상의 승려들 체포
03/27	타운쉽 모임에서 늙은 여인 무차별 폭행
03/26	Drango에서 사망자 추도대회 이후 저항 발생
03/25	티베트에서 79명 사망, 1200명 이상 체포, 100명 이상 실종
03/24	Drango 시위에서 총격으로 한명 사망, 한명 중태
03/23	칭해성 Chentsa에서 수백 명 시위
03/21	감숙성에서 티베트인들에게 항복에 대한 최후통첩 공고
03/20	티베트에서 시위대응 대량 체포 직면
03/20	Ngaba에서 중학생 총격 사망
03/19	Achok Tsenyi와 Dzoge 수도원에서 시위대 증가 추세
03/19	감숙성의 Kanlho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 저항
03/18	Kardze 시위에서 최소 3명 총격 사망
03/18	Amdo 지역에서 수백명의 시위대 저항
03/18	Kardze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 저항
03/18	Lithang에서 새로운 형태의 체포와 구금이 발생
03/18	감숙성 Kanlho에서 500명의 승려들 시위
03/18	Toelung Dechen에서 30명의 시위대 체포
03/17	Amdo Golog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 저항
03/17	Tsoe에서 티베트 학생 시위대 저항
03/17	감숙성 Lanzhuo에서 대학생 시위대 저항
03/17	Amdo Mangra에서 시위대 저항
03/17	Meldrogungkar and Phenpo Lhundup에서 산발적 시위 발생
03/17	Marthang에서 40명의 중학생 체포
03/16	Lhasa에서 대규모 공권력 야간 침탈
03/16	티베트 동부지역에서 학생 시위대 저항
03/16	Ngaba Kirti 수도원에서 8명의 시체 발견
03/16	Rebkong에서 시위대 저항
03/16	Ngaba에서 최소 7명 총격 사망
03/16	Amdo Ngaba의 Kirti 승려들 저항
03/15	Amdo Labrang에서 시위대 저항
03/15	UN에 티베트 저항 관련 사실 확인 요구
03/15	감숙성 Amdo와 Sangchu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 저항
03/14	Amdo Labrang에서 격렬한 시위 발생
03/14	Lhasa에서 격렬한 시위로 긴장 고조
03/14	Chutsang 수녀원 여승들 시위
03/11	Lhasa의 시위대 수백 명 체포

자료: <http://www.tchrd.org/>에서 저자 재구성.

고 있다.⁵⁵⁾ 중국은 티베트 전역에 대한 통제에 나서는 한편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달라이 라마 14세에 대한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언론 매체는 관영 CCTV를 통해 시위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키는 화면만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티베트 사태를 취재하려는 외국 언론의 취재를 방해하다 3월 26일에야 외교부 인솔 아래 외신 10여 개 사의 라싸 방문을 허용했다.

티베트에서는 매년 3월 10일 크고 작은 시위가 발생하여 왔지만 올해 3월의 시위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티베트인들은 이번이야말로 티베트의 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주권과 인권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매년 발생되었던 시위를 중국 정부가 너무 베이징 올림픽을 의식한 나머지 과잉 진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달라이 라마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티베트인들이 결국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평화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한 과잉 무력진압으로 라싸의 상황은 진정되었지만 시위가 티베트 자치주 전역으로 번지는 역효과를 나타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티베트청년회가 벌이고 있는 ‘걸어서 티베트까지’라는 활동도 사실 이러한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하고, 1989년 티베트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한 후진타오 국가 주석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도 볼 수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당시 티베트 자치구의 당 서기였다.⁵⁶⁾ 온화한 분위기의 외모와는 달리 후진타오 주석은 티베트의 독립 운동을 매우 강경하게 진압했다. 티베트를 반드시 중국의 행정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는 중국의 기본정책에 충실한 조치였다. 이는 후진타오 당시 당서기가 등소평 등 중앙지도부의 신임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그가 작성한 ‘티베트의 현 국면과 이에 당면한 우리의 임무’라는 보고서에도 그의 티베트 정책의 골자를 잘 알 수 있다.⁵⁷⁾

중국은 국운을 걸고 올림픽 준비에 나서고 있으나 티베트 시위 무력진압과 관련해 국제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미 공화당 하원 정책위의장인 타데우스 맥코터 의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 등 미국 관리들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의 힐러리 의원도 부시 대통령에게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연합 정상들이 베이징 올림픽의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불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일왕 내외 등 왕족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56) 1959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7명의 ‘당위서기’-장국화(張國華), 증용아(曾雍雅), 임영(任榮), 음법당(陰法唐), 오정화(伍精華), 호금도(胡錦濤), 진규원(陳奎元)-가운데서 이족(彝族)인 오정화를 빼고는 모두가 한인이다.

57) 「주간동아」 2006년 7월 18일자.

58) 「연합뉴스」 2008년 4월 8일자.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반체제인사를 일제 검거하는 등 중국 내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티베트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지원으로 티베트의 인권이나 환경문제와 같은 인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우려를 표하고, IOC와 세계 지도자들에 대해 중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소리를 높이라고 촉구하고 있다.⁵⁸⁾ 하지만 라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뒤 지난 3월 14일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티베트에서 민족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중국이 '자제력 있게' 행동하고 달라이 라마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작년 10월 미 의회가 달라이 라마에게 황금메달을 수여하고 부시 대통령이 회견하는 등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불사하던 태도와는 전혀 판판인 것이다. 유럽 각국도 중국정부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을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에 신중한 반응이다. 티베트 망명정부를 받아들인 인도도 중국과의 동반자적 관계 강화를 위해 중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낮추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방국가들이 외교의 원칙상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국제적 현실주의 논리를 거부하고 달라이 라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주는 국가는 거의 없다. 달라이 라마 망명정부에 대해서도 서방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식적인 지지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티베트 망명정부와 해외 지원단체

1959년 3월 18일 달라이 라마 14세는 망명길을 떠나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을 통하는 긴 여정 끝에 인도에 도착했다. 망명길을 따라 약 만여 명의 티베트인이 함께 하였다. 3월 29일 달라이 라마 일행은 인도 정부에 망명허가를 신청했으며, 4월 3일 인도의 네루 총리는 달라이 라마 일행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4월 13일 네루와 달라이 라마의 회담이 이루어졌다.⁵⁹⁾

달라이 라마는 1960년부터 매 3월 10일에 다람살라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티베트 독립의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 국무원은 1964년 그의 서장자

59) 박종귀, 『중미인권분쟁』(새로운 사람들, 2001), p.401.
60) 김한규(2003), 앞의 책, pp.27-28.

지구주비위원회 주임위원직을 철회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그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철회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로써 마치 청말(靑末)에 청조가 13세 달라이 라마의 봉호를 철회하였을 때처럼, 이제 달라이 라마와 중국 정부의 제도적 관계는 모두 단절되었다.⁶⁰⁾

달라이 라마의 망명과 망명정부의 수립으로 인해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티베트는 명실상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놓여지게 되었지만, 티베트의 독립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국제화 된 것이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네루 수상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람 살라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는데, 망명정부 조직에는 주택, 외무, 종교와 문화, 교육, 재정, 안보 등 6개 직위의 내각을 구성하고 인도 뉴델리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국제적인 활동을 위해 뉴욕과 제네바, 카트만두, 모스크바, 도쿄, 런던 등에 대표사무소를 열어 비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달라이 라마는 1960년 대표기구인 인민대표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첫 민주적 선거를 공포하였다. 1963년 4월 10일에는 불교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결합한 수단으로서 '티베트 헌법'을 공포하였다.⁶¹⁾

그리고 해외 지역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대표하는 사무소를 개설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 대표사무소들은 티베트의 외교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티베트의 인권문제에 대해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인권단체들이나 중국의 반체제 인사 및 소수민족 독립단체(위구르족 및 몽고) 등과 연계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⁶²⁾

망명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지원으로 티베트의 인권이나 환경문제와 같은 인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세계 각지에 있는 지지모임과 후원단체들의 수에서 알 수 있으며, 특히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평화운동을 통한 노벨평화상 수상은 망명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사실상의 인정을 확인한 것이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조직이나 규모에 있어서는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

61) 김재기(2001), 앞의 논문, p.104.

62) 1990년대 들어 구소련의 해체와 '과계민족(Cross-boarder Ethnicity)'의 존재는 중국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망명정부와 위구르족과 몽고족들의 분리독립 단체는 연합체를 만들어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1985년 7월 14일 성립된 '동투르키스탄·티베트·내몽고 연합위원회(Allied Committee of Eastern Trukistan, Tibet and Inner Mongolia)'는 달라이 라마를 대표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공동의 소리(Common Voice)'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위의 논문, pp.147~148. 참조.

지만 이처럼 왕성한 활동과 안정된 정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달라이 라마라는 정치종교지도자의 리더십과 망명정부의 민주적 운영, 그리고 해외 독립운동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제사회의 지지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티베트 청년당(TYC: Tibetan Youth Congress)’ 과 같은 조직은 티베트 망명정부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단체이다. 1970년에 설립되어 다람살라에 근거지를 둔 이 단체는 전 세계 80여 개의 지부 3만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⁶³⁾ 티베트의 독립과 문화와 전통, 종교를 발전시킨다는 목적 아래 해외에서의 각종 포럼에 참석하고, 거리홍보, 평화행진, 공공시위 등을 조직하며 ‘Rangzen’ 이라는 잡지도 출판하여 티베트의 현실과 독립에 대한 투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독립투쟁의 방식에 반대하며 폭력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여 내부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International Friends of TYC (IFTYC)’ 를 조직하여 티베트 문제의 국제 이슈화를 진행하고 있는 티베트 독립운동에 있어 가장 조직적이고 중추적인 단체이다.

1959년 설립되었다가 1984년에 재정비된 ‘티베트 여성연합(Tibetan Women’s Association)’⁶⁴⁾도 다람살라에 본부를 두고 1만 3천 명의 회원과 전 세계 47곳에 지부를 두며 활동하고 있다. TWA는 주로 여성인권 확장과 티베트 종교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대한 사업을 펼치며, 2008년 북경 올림픽 보이콧과 중국물품 불매운동 등의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1988년에 설립된 ‘국제티베트 캠페인(ITC: 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 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미국의 워싱턴과 유럽에 근거지를 두고 티베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세계에 알리고, 중국과 티베트 간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대화를 주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티베트인의 인권증진과 민족자결, 문화와 환경 보호 활동을 하며, 티베트와 네팔, 인도 등지에서 사실 조사 활동을 통해 UN이나 국제기구 또는 미국의회에 사실을 보고하고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⁶⁵⁾ ITC는 1989년 미 의회에 ‘미국의 소리’ 방송에 티베트어로 매일 2시간씩 방송하도록 하였고, 1990년에는 티베트 난민 1천 명의 비자 발급에 참여하였으며, 미 의회로 하여금 인도적 차원에서 티베트 난민에게 매년 5,000만 불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1991년에는 UN 인권소위원회에서 티베트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노력하였고, 1999년에는 세계은행이 중국의 ‘서부빈곤퇴치계획’ 에 대한 차관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티베트 청년당, 티베트 여성연합, 티베트 민주인권센터 그리고 티베

63) <http://tibetanyouthcongress.org/aboutus.html> (검색일 2008.04.22).

64) <http://www.tibetanwomen.org/about/> (검색일 2008.06.06).

65) <http://savetibet.org/about/index.php> (검색일 2008.04.22).

66) <http://savetibet.org/about/accomplishments.php> (검색일 2008.04.22).

트 국민당과 함께 노력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어내었다.⁶⁷⁾

또한 국제티베트독립운동(ITIM: International Tibet Independence Movement)는 1995년 설립된 단체로 티베트 독립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판첸 라마의 석방과 티베트 망명정부를 지원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세계 각지의 걷기 행진을 실시하여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⁶⁷⁾

이와 같이 티베트 독립운동 단체들의 조직이나 규모는 소규모이나 이들의 활동 무대가 국제사회인 관계로 UN이나 국제 NGO와의 연대를 통해 티베트 문제나 중국의 문제에 국제적으로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이들의 활동이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상호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미국 의회나 행정부 그리고 UN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미국이나 국제기구의 중국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법률 통과나 재정지원이 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 중국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중국의 서부 대개발 사업과 관련된 세계은행의 차관 지원이 이들의 반대운동으로 무산되었다는 점은 과거의 일회성 시위나 비판이 아닌 실질적인 압력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⁶⁸⁾

달라이 라마의 외교적 활동과 국제사회의 개입

달라이 라마는 망명정부에서나 국제사회에서 비폭력 평화주의 활동을 신조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그는 1959년 라싸에서나 지금의 인도 다람살라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나 티베트의 민족지도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는 지도자로서 중국 공산당의 비난만 제외하면 엄연히 실존해 있는 티베트인의 민족지도자인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들의 분리독립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정치적·종교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티베트 문제를 이슈화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국제사회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존중되면서, 소수민족에 대한 대량학살이나 난민이 발생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에는 비록 국가 내 분쟁일지라도 국제사회가 '국제인권레짐(International Human Right Regime)'을 형성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개입의 명분을 부여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을 '코소보'나 '동티모르'의 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국내분쟁의 국제적 개입 현상은 민

67) <http://rangzen.com/> (검색일 2008.04.22).

68) 김재기(2001), 앞의 논문, p.112.

69) 위의 논문, pp.133~134.

족문제가 단순히 일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⁶⁹⁾

달라이 라마는 1967년에 망명정부 이후 최초로 인도를 벗어나 일본과 태국을 방문하였으며, 1973년에는 유럽 국가들을 첫 방문하여 티베트에 대한 지지와 독립을 호소하였다.⁷⁰⁾ 1991년과 1993년엔 미국을 방문하여 각각 부시와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으며, 1996년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등을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티베트 자치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UN 등의 국제사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1997년에는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 측과 문화, 종교의 교류 촉진을 위한 주(駐)대만 티베트 사무소 개설을 타진하며,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탄압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티베트의 문화보전을 위한 진정한 자치권 획득을 역설하였다.

달라이 라마는 줄곧 티베트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거부해 왔으며, 이것은 중국에 대한 티베트와 해외의 폭력적 보복을 막는데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많은 젊은이 특히 티베트 청년당(TYC) 같은 단체에서 중국의 폭력적 억압에 대해 폭력대응을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도 비폭력을 주장하여 내부 갈등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는 중국과 협상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여 1987년 미국 의회 연설에서 ‘평화 5조안’을 제안하였고, 1988년 6월에는 스트라스부르에서 ‘평화 5조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어 유럽의회에 제시하였다. 1989년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평화와 비폭력 투쟁에 헌신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게 된다. 이는 망명정부의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며, 티베트 문제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다.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그는 티베트 고원을 비무장화시킴으로써 티베트를 ‘아힘사(ahimsa: 비폭력)’ 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⁷¹⁾

〈표 5〉 티베트와 관련해 채택된 각종 국제사회 결의안 (1959~2001)

일시	장소	제목 및 채택 단위
1959	New York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353 (XIV)
1959	Geneva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 Report on: The Questions of Tibet, The rule of Law
1960	Geneva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report on Tibet and the Chinese Peoples Republic
1961	New York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723 (XVI)
1965	New York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079 (XX)
14 Oct. 1987	Strasbourg	European Parliament
15 Oct. 1987	Bonn	West German Bundestag
16 Sep. 1988	Washington DC	United States Congress, S. Con. Res. 129

70) 이 당시 방문 국가로는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영국, 서독, 오스트리아 11개국이다.

71) 매튜 번슨, 김기훈·이상훈 역, 『달라이 라마, 티베트에서 온 편지』(혜음, 1998), p.172

5 Oct. 1988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Written Declaration NO. 173
15 Mar. 1989	Strasbourg	European Parliament
15 Mar. 1989	Washington DC	United States Congress, S. Con. Res. 82
12 Apr. 1989	Rome	Italian Parliament - Commission of Foreign Affairs
16 May 1989	Washington DC	United States Congress, H. Con. Res. 63
5 Oct. 1989	Washington DC	United States Congress, S. Con. Res. 79
1988 & 1989	Washington DC	United States, 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 Fiscal Years
6 Dec. 1990		Australian Senate Resolution
6 June 1991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23 Aug 1991	Geneva	UN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Resolution 1991/10 ,
27 May 1993	Washington DC	United States Congress, H. Con. Res. 106
15 Sep. 1993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17 May 1995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13 July 1995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15 June 1995		Canada-China Relations
8 Sep. 1995	Washington DC	United States Congress, H. Con. Res. 106
30 Nov. 1995		Australian Senate Resolution
12 Dec. 1995	Spain	Basque Parliament, Basque Autonomous Country
13 Dec. 1995	Washington DC	United States Congress, S. Con. Res. 43
14 Dec. 1995	Strasbourg	European Parliament
18 April 1996	Strasbourg	European Parliament
23 May 1996	Strasbourg	European Parliament
26 May 1996		The statement from the Saami Parliament
20 June 1996	Bonn	German Bundestag
20 June 1996		Belgian Parliament
21 June, 1996		Parliament of the Principality Liechtenstein
17 Sep. 1996		Australian Senate Resolution
5 Mar. 1997		Australian Senate Resolution
13 Mar 1997	Strasbourg	European Parliament
11 Mar. 1997		United States Senate Resolution
29 May 1997		Australian Senate Resolution
24 Nov. 1997		Australian Senate Resolution
20 Mar. 1997		The Parliament of the Czech Republic
16 Jan. 1998	Strasbourg	European Parliament
13 May 1998		European Parliament
21 July 1998		Joint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 Irish Parliament
17 Sep. 1998		United States Senate Resolution
12 Feb. 1999		United States Senate Resolution
3 Mar. 2000		Saami Parliaments' resolution on Tibet
13 April 2000		European Parliament
10 Mar. 2000		United States Senate Resolution
30 Sep. 2000		Resolution on Tibet by Saami Parliament
15 Feb. 2001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Religious freedom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5 Feb. 2001		Resolution on the Situation in Eastern Turkestan and Tibet
		Senate Urges U.S. to Spotlight China's Rights Record at Geneva
		House Resolution Urges China to End Religious Persecution
5 July 2001		Beijing's application to host the 2008 Olympic Games

자료: <http://www.tibet.com/Resolution/index.html>에서 저자 재구성

달라이 라마 14세는 1989년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부터 2007년 10월 미국 의회에서 골드메달을 수여할 때까지 세계 30여개 국가에



미 중앙정보국 CIA는 지난 60년대 反 중국정책의 일환으로 달라이 라마에게 연간 18만 달러 지원금과 티베트인 독립운동가들에게 해마다 17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무려 83회에 달하는 수상과 명예학위를 받았으며, 또한 1954년 북경에서 마오쩌둥 주석을 만난 이래로 지금까지 세계 58여 개 국가를 방문하여 396명의 정부 및 지역의 대통령 및 관계 장관 등의 고위 인사와 면담을 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⁷²⁾

<표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티베트의 망명정부가 탄생된 시기부터 티베트의 인권과 중국의 침탈 행위에 대한 결의안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었는데, 1959년 UN의 티베트 문제에 대한 결의안부터 2001년 중국의 2008 베이징 올림픽 신청에 대한 유럽의회의 결의안까지 모두 55건의 결의안과 선언문이 세계 각국의 의회나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채택되었다.⁷³⁾

UN이 티베트 문제에 처음으로 관여하게 된 것은 1951년 달라이 라마의 지원 호소문 때문이다. 이 편지는 UN이 티베트 문제에 개입할 것과 UN의 최종결정에 위임할 것을 호소하였으나,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인도의 비협조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전쟁에 UN군의 파견이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이다.⁷⁴⁾ 결국 UN총회는 1959년 10월 21일 티베트 문제에 관한 세 가지 결의안 중 첫 번째 결의안(제1353호)을 통과시켰다. 이어 UN은 1961년(제1723호)과 1965년(제2079호)에도 티베트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중국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91년 10월 UN 인권위원회의 티베트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1992년 UN 사무총장의 티베트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 1995년 고문에 대한 특별보고서, 종교 탄압에 대한 특별보고서 발췌안, 1996년 고문반대위원회 보고서, UN 인종차별금지위원회 조사보고, UN 유아권리위원회 등에서도 티베트의 인권탄압과 종교말살 행위에 대한 중국의 행위를 반대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72) <http://dalailama.com/page.58.htm>(검색일 2008.04.22).

73) <http://www.tibet.com/Resolution/index.html> (검색일 2008.04.23).

74) 반 프라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UN총회는 한국 문제에 아주 열중하여 여념이 없었다. 티베트의 호소가 있기 이를 전에 중국 공산군의 한국전 개입이 확정되었으며, 엘살바도르의 티베트 관련 결의안이 일반위원회에서 검토되던 날에는 맥아더 장군이 한국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였다. 결국 인도와 영국, 미국의 토론 연기 제안으로 UN에서는 티베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듯 한국전쟁에 대한 열강들의 열변 몰두와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높은 평가가 결과적으로는 티베트에 대한 중공군의 진군이라는, 티베트인들에겐 절대적 의미를 갖는 사건을 매몰시켜 버린 결과가 되었다. 김한규(2000), 앞의 책, pp.294~295.

국제 NGO 단체 중 하나인 ‘국제법률가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는 1960년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수민족 말살의 현황을 폭로했으며, 1987년 유럽의회를 시작으로 독일에서도 티베트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1988년 10월 미국 상원은 티베트에서의 중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달라이 라마를 지지하는 결의안(제129호)을 통과시켰다. 이어 1989년에는 이탈리아가, 1990년에는 호주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해 티베트 문제의 국제적 개입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1990년 2월 UN 인권위원회 제46차 회의에서 EC와 미국, 캐나다, 스웨덴, 그리고 호주를 포함한 각국 정부가 티베트 문제를 제기하였고, 인종차별과 자결권, 그리고 계엄령에 대한 NGO 보고서들이 UN에 의해 출판되었다.⁷⁵⁾

1991년 11월에는 호주의 대중국 인권대표단이 티베트를 방문하여, 티베트는 확실히 계엄령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티베트인 사이에 반중국 감정이 팽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교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 교육 고용 및 표현의 자유도 결여되어 있으며 승려들은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년 11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민족상설재판소(Permanent Tribunal of People: PTP)’는 티베트 인민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소한 내용을 청취했다. 재판소는 1950년 이래 중국이 티베트인들의 자결권과 기본적 인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한 사실을 밝혔고, 유럽의회는 이러한 PTP의 평결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티베트의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과 국제적십자사의 감옥방문을 요구했다.⁷⁶⁾

1993년 베이징이 2000년 하계 올림픽 개최신청을 하자 세계 곳곳에서 항의가 빗발쳤으며 티베트와 중국에서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소리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베이징은 시드니와의 경쟁에서 탈락했다.

1994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티베트가 피점령국가임을 선언하는 미국의회의 결의내용이 담겨있는 ‘1994~95 대외관계 수권법’에 서명했다. 이어 달라이 라마는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을 만났으며, 1997년 클린턴 행정부는 국무부 내에 티베트 문제를 조정할 직위를 신설하여 티베트 문제 특별조정관에 크레이그(Gregory Craig)가 임명됐다.

1998년 4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6월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에게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달라이 라마가 클린턴 대통령을 다시 만나 티베트 문제의 대화 재개를 위해

75) 박종귀, 앞의 책, p.411.

76) 위의 책, pp.411~412.

미국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최근 기밀 해제된 미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티베트 독립운동에 소요되는 비밀자금을 지원하였다고 알려졌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지난 60년대 反중국정책의 일환으로 달라이 라마에게 연간 18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해외 망명한 티베트인 독립운동가들에게 해마다 17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국이 중국,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벌인 공작의 일환인 것이다. 여기에는 티베트 게릴라 지원, 미 콜로라도 소재 비밀 군사훈련장 지원, 뉴욕 및 제네바의 티베트 문화진흥사업인 '티베트 하우스', 코넬 대학에서 실시된 티베트인 공작원 교육, 그리고 첩보 팀들에 대한 지원 등이 있었다.⁷⁷⁾

2008년 4월 9일 미 하원은 중국에 대해 티베트에 대한 무력진압을 중단하고 비폭력적인 시위를 하다 체포된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주도로 찬성 431대 반대 1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채택했다. 유럽의회도 같은 날 티베트 소요사태와 관련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거부할 것을 EU 27개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⁷⁸⁾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티베트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화로 되어 당분간은 EU와 미국 등의 서방 국가와 중국 간의 긴장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지구촌은 지금 국가경계의 약화와 민족연계의 강화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다. 소연방과 유고연방의 해체, 중동사태, 티베트문제 등은 모두 민족문제이며 현대의 정치는 민족문제와의 연관성이 갈수록 확대·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된 국가환경과 민족환경을 수용하여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는 민족문제를 '멜팅 팟(melting pot)'에서 '오케스트라 협연'이나 '샐러드 볼(salad bowl)'로 바라보아야 할 시기인 것이다.

세계의 변화와 중국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의 변화는 가속화

77) 「LA Times」2001년 5월 15일자, 「조선일보」1998년 9월 16일자, 김명희, 「중국의 다민족통일체 논리와 정책: 티베트민족 독립문제 중심으로」(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에서 재인용.

78) 또한 유럽의회는 지난 2008년 4월 9일 중국의 티베트 소요 사태와 관련 27개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가 보이콧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4월 23일에는 중국의 對아프리카 관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23일 채택한 對중국 비난 결의안은 중국이 석유를 비롯한 원료자원 확보를 위해 폭압적인 아프리카 정부들에게 무분별한 구매를 하고 있다는 비난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유럽의회는 이 결의안을 618대 16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중국이 특정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유엔의 금수조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이 자원외교를 앞세워 물량공세를 펴며 아프리카 국가들을 급속도로 잠식해가고 있는 현실에 상당한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데일리NK」, 2008년 4월 27일자.

되고 있다. 소수민족이 이런 변화의 와중에서 근본적인 해체와 통합을 경험하면서 중국사회에 좀 더 융화될지 아니면 중국정부의 정책이 좀 더 다원성과 다양성을 가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변화에 대응하면서 진행되는 소수민족 자체의 민족주의나 분리독립 성향에 따라서도 그 방향이 많이 변화될 것이다. 현재의 중국에서의 소수민족문제는 이런 다원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티베트는 다양한 면에서 서구화되고 변화되고 있다. 수도 라싸는 벌써 옛 티베트의 전통과 색채를 잃어가고 있다. 외국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으며, 많은 호텔과 위락시설이 지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상인들은 모두가 한족들이다.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해 질수록 티베트의 전통문화 역시 그 독특함을 잃어 갈 것이며, 이러한 서구화, 개방화의 물결은 티베트인들의 정치적, 종교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티베트처럼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중국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동요시키는 분리주의적 운동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저지하면서 국가통합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체제의 방침에 동의하는 집단이나 소수민족에게는 유화적인 방식을 통해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의 이중적인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티베트 간의 갈등구조는 중국의 헤게모니 하에 티베트인들이 저항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중국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상호 대립적 입장과 동화 정책으로 인하여 해결될 전망이 불투명하며, 양측의 충돌은 조직적인 무장력과 외교력을 가진 중국정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정부의 분리독립 세력에 대한 중국화정책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분리독립 문제가 체제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요소로서의 의미가 퇴색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분리독립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이 소수민족의 불만과 저항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단지 억제하고 봉합하는 차원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독립 문제가 단기간 내에 국가의 체제안정과 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체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변수로서의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혁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불안요인과 불확실성은 항상 서로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도 항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럴 경우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문제는 그 자체의 영향력 이상의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급격한 체제변화가 도래하지 않는 이상 티베트의 분리 독립을 통한 독립 국가로서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망명정부는 이번 베이징올림픽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제적 여론 형성에 노력할 것이나 중국의 국제적 지위로 인한 국제사회의 관계 속에서 티베트의 독립문제는 점점 더 소외되어 갈 것이다. 달라이 라마가 주장하는 ‘고도의 자치’는 중국과 협상 가능한 대안이나 중국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 정부는 계속 대화를 외면한 채 달라이 라마가 죽거나 그들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소멸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배하에 있는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체제 안에서 장기적으로 동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티베트 망명정부를 비롯한 해외 분리독립 집단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티베트 문제의 국제화에 더욱 열중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티베트 유혈사태에서도 보였듯이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고도의 자치’를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할 것이다. 티베트인들에겐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제안은 아니라고 본다. 인민해방군이 티베트에 들어서면서부터 쌓여왔던 서로간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이제는 서로가 윈-윈 하는 게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김병호, 『중국의 민족문제와 조선족』(학고방, 1997).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혜안, 2003).
 ———, 『티베트와 중국: 그 역사적 관계에 대한 연구사적 이해』(소나무, 2000).
 달라이 라마, 김철·강건기 역, 『티벳 나의 조국이며』(정신세계사, 1998).
 매튜 번슨, 김기훈·이상훈 역, 『달라이 라마, 티베트에서 온 편지』(혜음, 1998).
 박종귀, 『중미 인권분쟁』(새로운 사람들, 2001).
 조정남, 『현대중국의 민족정책』(한국학술정보, 2006).

〈논문〉

- 길희성, “티베트 불교 민족주의의 역사적 고찰”『동아연구』 제36집(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8).
 김명희, 『중국의 다민족통일체 논리와 정책-티베트민족 독립문제 중심으로』(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병호, “중국의 지도자별 민족이론”, 『민족연구』 9호(한국민족연구원, 2002).
 김재기, “동투르크스탄(East Trukistan) 분리독립 운동과 중국의 대응”, 『한국동북아논

- 총』 제42집(한국동북아학회, 2007).
- , “티베트의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운동의 기원과 전개”,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3호(대한정치학회, 2006).
- , “중국의 민족문제와 ‘서부대개발’: 정치경제적 배경과 딜레마”, 『한국동북아논총』 제18집(한국동북아학회, 2001).
- , 『중국-티베트 민족갈등의 정치적 동학: 국내외 집단요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노태구,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민족문제연구: 통일연구방법론』 8집(경기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 2000).
- 박병광,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미래상에 대한 평가”,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2호(한국세계지역학회, 2004).
- ,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형성과 전개: 민족동화와 융화의 변주곡에 관하여”, 『국제정치논총』 제40집4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 박장배, “중국의 ‘서부대개발’ 과 티베트”, 『중국사상의 지역사회-중국사학회 제42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중국사학회, 2004).
- 원천식,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과 정책적 시사점-칭짱첼도 개통과 ‘친디아 경제권’ 형성을 중심으로-”, 『KIET 산업경제』 통권101호(산업연구원, 2007).
- 이동철, “소수민족 분리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국가전략』 제10권3호(세종연구소, 2004).
- 이민자, “티벳독립운동의 경제적 배경”, 『동아연구』 36(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8).
- 이진영,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민족연구』 9호(한국민족연구원, 2002).
- 최우길, “현대 중국 민족문제에 관한 소고”,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4권(한국세계지역학회, 2000).

〈정기간행물〉

- 「데일리NK」, 2008년 4월 27일자.
 「연합뉴스」, 2008년 4월 8일자.
 「주간동아」, 2008년 4월 2일자.
 「주간동아」, 2006년 7월 18일자.
 「오마이뉴스」, 2008년 3월 27일자.

〈인터넷 웹사이트〉

- <http://www.tibet.com>
<http://rangzen.com>
<http://savetibet.org>
<http://tibetanyouthcongress.org>
<http://dalailama.com>
<http://www.tibet.org>
<http://www.tibetanwomen.org>
<http://www.tchrd.org>

중국의 대 티베트 정책의 변화와 유형

김재원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kju0028@hanmail.net



중국의 대 티베트 정책의 시기별 고찰

청나라 시대- 티베트에 대한 내정간섭 시기

과거 티베트를 지배했던 원나라는 몽골족의 국가였지 중국의 국가가 아니었다. 비록 중국 측은 원나라 때부터 중국의 티베트 지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국제법학자 반프로그(Van Praag)의 말대로, 몽고인-티베트인 관계와 몽고인-중국인의 관계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몽고인-티베트인 관계와 티베트 통치를 위한 제도는 쿠빌라이의 중국점령 이전에 이미 확립되어 있던 것이었다. 몽골의 통치 아래에서 두 나라의 통치는 언제나 구분되었고 중국인이 티베트의 통치에 참여한 적도 없다. 향소길(項小吉) 등 중국 반체제 인사도 중국의 논리대로라면

캐나다, 호주, 인도 등 영연방 국가들은 모두 미국의 일부라고 봐야한다고 비판하고 있다.¹⁾

한족의 국가인 명나라 때는 티베트가 전혀 중국의 세력권이 아니었다. 당시 명나라에게 있어서 티베트는, 명나라와 치열한 세력경쟁을 벌이고 있던 북방 몽골족과의 전투에 필요한 말을 수입하는 대상이자 차를 수출하는 무역상대일 뿐이었다.

중국과 티베트의 지배-피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은 만주족의 청나라 시대부터였다. 청나라가 티베트에 세력을 뻗치게 된 계기는 티베트와 티베트불교를 숭상하던 몽골부족들 사이의 전쟁 덕분이었다. 1705년 서몽골에 속하는 호쇼트 부족(固碩特部)이 티베트를 침공하여 티베트의 실권을 쥐고 있던 섭정을 죽이고 호쇼트 부족과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던 청나라로 달라이라마를 압송한다. 달라이라마는 북경으로 가는 길에 병사하고, 호쇼트 부족은 새로운 달라이라마를 임명한다. 당연하지만, 티베트인들은 호쇼트 부족에게 크게 반발하게 된다. 이 기회를 틈타서 몽골의 강력한 부족인 준갈이(準噶爾) 부족이 1717년 티베트를 침공, 호쇼트 부족에 의해 달라이라마로 추대된 자를 죽인다. 처음에는 티베트인들이 이를 환영하지만, 이들이 라싸의 성지를 약탈하는 것을 보고 크게 분개하여 이들에게 적개심을 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나라의 강희제는 호쇼트 부족과의 동맹관계를 이유로 1718년 티베트에 군대를 보냈다. 청나라 군대는 1720년 준갈이 부족을 몰아내고 17대 달라이라마를 1721년 옹립한다. 당시 티베트인들은 청나라 군대의 진주를 환영했으며 그들에 의해 정통성 있는 달라이라마가 옹립된 것에 고마움을 느꼈고, 티베트 지역은 자연스럽게 청나라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청나라는 티베트를 하나의 행정단위로 편입시키지 않았고,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동북부 지방인 압도(安多) 지방은 1724년 청나라의 영역이 되었고, 1728년에는 동부인 캄(康巴) 지방도 청나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청나라는 티베트에 '암반'(Amban)²⁾이라는 관리를 파견하여 원나라의 '다루가치'처럼 티베트의 내정에 간섭하는 권리를 얻었다. 1788년에는 네팔이 티베트에 침공해 와서 여러 지역을 함락시켰는데,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와 격파할 수 있었다. 1791년에 네팔이 재차 침공해오자 청나라 건륭제가 1만 7천의 군대를 보내 1793년 이들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네팔을 격퇴한 청나라는 티베트와 '흠정장내선후장정이십구조'(欽定藏內善後章程二十九條)를 체결하여 청나라가 달라이라마 임명에 간섭할 권리, 고급관리의 임명에 청의 암반이 간섭할 권리, 티베트가 네팔,

1) Michael C. Van Walt Van Praag, *The status of Tibet history, Rights, and Prospects in international Law*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1987, p. 121,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소나무, 2000), p. 79에서 재인용.

2) 만주어에서 유래한 말로 '높은 관리'를 의미한다. 가장 상급인 주장대신(駐劄大臣)은 티베트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티베트 영토에 배치된 2천 명의 청나라 군대에 대한 지휘권이 있었다.



청나라 말기 티베트에 파견된 '암반'들의 모습. 이들은 보통 3년씩 티베트에 머물렀다고 한다.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티베트 정보센터 <http://zt.tibet.cn>

인도 등 외국과 상업교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상업에 간섭할 권리 등 티베트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켰다.

비록 '암반'을 파견하고 티베트에 2천 명 정도의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티베트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청나라의 티베트 지배

정책은 자국의 일부로서 직접 통치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원나라가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통치에 영향력을 미친 것과 같은 간접통치의 방법이었다. 또 다른 이민족 지방인 운남성에 대한 청나라의 정책과 뚜렷이 구분되는 이 방법은 청나라 때부터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였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청나라는 운남성에 대해 이미 1726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직접통치 방식인 '개토위류(改土爲流)'를 실시하고 있었다. 반면에 티베트에는 중앙에서 지방관을 직접 파견하는 방식을 택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이 점에서 이미 청나라의 영토로 여겨지던 운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청나라가 티베트를 속국으로 대우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티베트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국주의 시기, 흔들리는 청나라의 티베트 지배

청나라가 티베트에 군대를 파병한 이후 수십 년 동안 티베트는 청나라의 세력권 안에 들어간다. 이러한 청나라와 티베트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티베트에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부터였다. 식민지인 인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사이에 완충지를 확보할 필요성을 느낀 영국이 19세기 말에 티베트에 통상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티베트의 속국이었던 시킴³⁾과 부탄이 각각 1861년과 1865년에 영국의 속국이 되었고, 네 팔마저 1860년 영국-네팔 조약을 맺어 영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다. 결국, 1888년

3)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위치. 과거에는 독립국이었으나 지금은 인도의 한 주에 속함.

영국은 티베트와 국경분쟁을 문제 삼아 2천 명의 병력을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들 영국군은 티베트군을 격파한다.

이 시기에 청나라는 1839~1842년 영국과의 1차 아편 전쟁, 1856~1860년 영국 및 프랑스와의 2차 아편전쟁 모두 패배하고 무력감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영국의 위협과 침략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티베트에 아무런 원군도 보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티베트에 상주해 있는 청국관리들이 오히려 티베트의 항전을 막으려고 하였다. 이에 티베트 정부는 청나라에 실망을 느꼈으며, 기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영국은 티베트와의 통상 추진이 잘 되지 않자 1904년 또다시 티베트를 침공하여 티베트군을 격파하고 1904년 8월 수도인 라싸에 입성하였다. 이때도 청나라는 아무런 원군을 보내지 않았다. 수도가 함락되기 전에 달라이라마 13세는 몽골로 망명하여 외국의 원조를 얻으려고 하였다. 달라이라마가 없는 상태에서, 1904년 9월 티베트 정부와 영국 사이에 조약이 맺어져 영국은 티베트와의 통상권, 상사 주재원을 둘 권리 및 이들을 보호할 군대를 주둔시킬 권리, 통상에 필요한 우편, 전신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권리 등을 얻었다. 몽골에서 이 조약이 맺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달라이라마는 이 조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힘을 빌릴 만한 곳이 없었다. 당시 러시아는 러일전쟁의 패배 및 국내 불안정으로 티베트에 힘이 되지 못했고, 일본은 영국의 동맹국이어서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못하였고, 러시아 다음으로 방문한 청나라 역시 힘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청나라는 달라이라마에게 청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해 달라이라마에게 불쾌감만 주었다.⁴⁾ 결국 달라이라마 13세는 영국과의 조약을 인정하고 수도인 라싸로 돌아온다.

이후 청나라는 티베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만,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티베트인들의 독립의지를 강하게 하는 결과만 가져온다. 일례로 청나라는 프랑스세력을 끌어들이 영국을 견제하려고 하지만, 그 방법이 또다시 티베트인들을 크게 자극하여 티베트인들의 무장봉기를 가져왔다. 청나라는 1905년 당시 청나라 영토였던 캄 지방(Kham)의 바탕(Batang) 등지에서 티베트 승려의 수 감소, 20년 동안 티베트 승려 모집 금지, 프랑스 카톨릭 신부에게 토지 공여 등을 약속하며 프랑스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에 불만을 품은 티베트 승려들이 이끄는 무장 봉기를 맞게 되고, 이 반란은 2년 넘게 끌다가 1908년에야 평정된다.⁵⁾

여러 방법이 여의치 않고 반발만 가져오자, 청나라는 자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4) 전통적으로, 달라이라마는 청나라 황제의 스승 대접을 받았으며,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

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티베트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군대파병이라는 무리수를 둔다. 1909년 겨울에 청나라는 티베트를 완전히 확



중국과 티베트의 지배-피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은 티베트와 티베트불교를 숭상하던 몽골부족들 사이의 전쟁으로 티베트에 세력을 뻗치게 된 계기이며 만주족의 청나라 시대부터였다.

보하기 위해 사천성의 육군병력을 라싸로 보냈다. 이때 달라이라마 13세 등은 또다시 라싸를 떠나 1910년 2월 인도로 망명하는데, 티베트를 점령한 청나라는 달라이라마 13세의 명호를 일방적으로 박탈하여 티베트인들의 분노를 샀다. 청나라군은 이들 티베트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무력이 약했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1911년 10월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 1912년 청나라가 붕괴하였다. 이에 티베트인들은 무력 봉기하여 티베트 영내의 청군을 격파하고 청군 3천명을 포로로 잡아 무장 해제시킨 후 추방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인도로 망명했던 달라이라마 13세가 귀국하여 1913년 1월 라싸로 귀환하고, 티베트에 있던 중국 관리들과 한인들을 추방한다. 이 시기에 티베트는 과거의 속국 상태를 벗어나, 완전히 중국의 영향력 밖으로 나가 버린 것이다.

제국주의 시기의 청나라는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는데다 영국의 침략을 당하는 티베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했다. 또한 무리하게 티베트를 압박하고 모욕감을 주었으며, 심지어 군대를 파병하여 티베트를 점령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은 성공적이지도 못했고 티베트인들의 반청 감정과 독립의지를 강하게 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중화민국 시기 -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라는 공식적인 선언

신해혁명 이후 수립된 중화민국 시기에는 티베트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지만, 중국 측은 티베트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티베트를 속국으로 보는 것에 가까웠던 청나라의 대 티베트 정책을 탈피하여, 티베트를 중화민국의 영토로서 그리고 다른 성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지방행정단위로 삼자는 주장이 나온 시기가 이 중화민국 시기였다.

1912년 2월 15일 중화민국의 총통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 임시약법'을 선포하면서 "중화민국 영토는 22행성, 내외몽골, 티베트, 신강으로 한다."고 선언했다. 또

5) Meluyn C. Goldstein, *A history of modern Tibet 1913-195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89), p. 45.

한 같은 해 4월 22일에 중화민국 정부는 몽골, 티베트, 신장이 함께 중화민국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선언했다. 1912년 6월22일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는 티베트를 행성으로 편입시키자는 안건이 논의되었지만, 이 계획은 티베트는 물론 영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1904년 라싸조약으로 티베트 내에 특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계속적으로 티베트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12년 5월 수천 명의 티베트군이 캄 지역으로 진격하고 티베트 각지에서 중화민국에 저항하는 반란이 일어나자 중화민국 정부는 중앙군대를 보내 이를 진압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영국은 중국 정부에게 만약 티베트에 군대를 보낸다면 무력으로 티베트의 독립을 돕겠다고 위협하여 중국군의 진군을 멈추게 만들었다.

중화민국 정부는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임을 강조하면서 이탈을 막으려고 했지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영국을 무시한 채 밀어붙일 수는 없었다. 영국은 영국, 티베트, 중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고, 이로써 1913년 10월 13일 심라(Simla)회의가 성사되었다. 티베트 측은 독립국가 명문화를 요구했고 중국은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고 계속 주장하였다. 이에 영국이 중재를 하여, 세 나라 사이에 심라 협정(Simla Convention)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티베트를 몽골처럼 외티베트, 내티베트로 나누어 외티베트는 중국이 명목상 지배권만 가지는 독립국으로 하고, 캄 지역 등은 내티베트로 하여 중국의 영역에 두어 양자의 독립요구 및 지배권 요구를 만족시키려하였다. 또한 중국은 특사(amban)와 그 호위병 300명 외에는 일절 군대를 티베트 내에 주둔시킬 수 없도록 하고, 영국도 그 정도의 병력만 주둔할 수 있도록 하여 티베트의 자주를 돕고자 하였다. “단, 티베트는 중국을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중국 측을 달래기 위한 명목상의 조항에 지나지 않았다.⁶⁾ 그러나 이 조약은 티베트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 아니므로 조약을 맺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중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아 실효성을 얻지는 못하였다.⁷⁾

같은 시기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소수민족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 대상 중 하나가 티베트였다. 1922년 7월 2차 전국 대표회의에서 선언한 ‘민주자치연방안’에서는, 몽골, 티베트, 신강에 자치를 실시하여 중국을 연방국가로 만들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1928년 7월 6차 전국대표

6) *Ibid.*, p. 74.

7) 이 조약에서 인도와 티베트의 국경지역을 설정하였는데, 당시 티베트는 자국의 영역 중 일부가 인도의 땅으로 설정된 것에 반감을 가졌지만 영국의 지원을 바랬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때 설정된 티베트-인도 국경선을 당시 영국 측 협상대표 이름을 따서 맥마혼 라인(McMahon Line)이라고 부르는데, 이 국경선을 둘러싸고 훗날 중국과 인도 사이 국경분쟁이 생긴다.

대회에서는 소수민족의 분리, 연방의 권리도 제시되었다. 1931년 11월에 개최된 노농병(中華勞農兵) 소비에트 1차 대표대회에서는 '중국 경내 소수민족문제에 관한 결의안' 과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헌법 대강' 을 채택하면서는 중국 내 소수민족이 완전한 자결권을 가져, 중국소비에트연방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탈할 수도 있으며 자치구역을 건립할 수도 있다고 명기하였다.

그러나 '연방제' 의 약속은 중국 공산당 내의 세력 구도가 변화하면서 사실상 폐기되어버렸다. 당초 소련식의 민족연방제 국가를 주장했던 것은 박고(博古), 왕명(王明), 장문천(張聞天) 등 '28인의 불세비키' 로 불리는 소련 유학생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6차 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하였는데, 그들은 소련의 방식을 추종하고 있어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주장하는 모택동과 대립관계에 있었다. 모택동이 주장한 유격전술을 채택하지 않고 소련식의 정규전을 선택한 '28인의 불세비키' 들은 정규전의 결과로 일어난 참패와 대장정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1935년 1월 귀주성 북부 도시인 '쑤이' 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인 '쑤이회의' (遵義會議)에서 모택동에게 군사지휘권 등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모택동은 이들 소련 유학파가 추진하는 소련식 사회주의 개혁이 중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비판적이었고, 그 비판대상에는 소련식의 민족연방국가 건설안도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모택동도 강대한 국민당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통일전선전술' 로 소수민족의 힘을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자치안은 일단 유지되었다. 단, 민족집단의 이탈이 가능한 '연방제' 안에서 이탈이 불가능한 '민족자치안' 으로, 공산당의 티베트를 비롯한 대 중국 내 소수민족 정책이 변화했다는 것은 '티베트는 중국의 영토' 라는 중화민국의 그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중국은 비록 티베트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강하게 펴기는 했지만 신해혁명 후 각 지방의 군벌이 웅거하고 중앙정부에 반항하는 자국 내의 혼란 상황에다가, 1927년 발발한 국공내전, 1937년에 일어난 중·일전쟁 등으로 티베트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티베트에서 달라이라마 13세가 1933년 서거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1951년 티베트 병합까지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이 공산당의 홍군의 승리로 끝나, 이들은 국민당 세력을 몰아내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 티베트 정책은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중화민국 시

기 국민당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과는 달리 티베트에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자국 내 사정과 대외 사정이 안정되었다는 점이였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경 라디오 방송은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비롯하여 신장, 해남, 타이완 등 모든 중국의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고 선언하여 과거 중화민국의 영토관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티베트 정부는 1949년 11월 2일 모택동에게 사절단을 파견하여 중국과의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또한 모택동에게 보내는 외교문서의 복사본을 인도, 영국, 미국에 보내 이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단호하였다. 중국은 북경에 온 사절단에게 티베트의 군사력을 중국이 통제할 권리,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로 인정될 것 등 티베트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티베트를 압박하였다.

영국, 미국 등의 연합국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티베트에 대한 개입의 방법 및 시기를 저울질하던 중국에게 있어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큰 호기였다. 연합국은 한국에서 북한군에 대한 대응에만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 티베트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⁸⁾ 중국은 이 기회를 살려서 인해전술로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불과 보름 전인 1950년 10월 7일에 2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티베트를 공격하였다. 애초부터 티베트군은 중국군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 당시 티베트 군은 정규군 5,300명 정도에 민병대 수천 명이 포함된 소수인데다, 정규군마저도 이름만 정규군이 지 훈련이 제대로 안된 오합지졸이었고, 50대, 60대, 16세 이하 소년병도 다수 있었다. 반면 침공한 중국군은 국공내전 및 일본과의 전쟁으로 실전경험이 풍부했던 2만 명의 정예였고, 배후에는 인민해방군 500만의 병력이 있었다. 이는 당시의 티베트 전체 인구에 맞먹는 숫자였다.⁹⁾ 중국군은 단기간에 티베트 군을 격파하였다. 중국 측은 전투가 시작된 1950년 10월 7일부터 25일 사이에 5,700명의 티베트군을 사살하고 2,000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한다.¹⁰⁾ 중국군이 전과를 과장하였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티베트군이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중국군은 1950년 10월 25일에 티베트의 동부 캄(康)주의 주도(州都)인 참도(昌道)를 점령하였다. 이에 티베트 의회는 1950년 11월 비상 회의를 소집하고 당시 16세에 불과하던 달라이라마 후보자를 원래의 시기보다 이르게 달라이라마 14세로 즉위하도록 했으며, 새로 즉위한 달라이라마 14세에게 수도인 라싸(拉薩)

8)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해안, 2003), p. 43.

9) Meluyn C. Goldstein, *A history of modern Tibet 1913-195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89), pp. 638-639.

10) A Survey of Tibet Autonomous Region (Tibet People's Publishing House, 1984), 티베트임시정부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http://www.tibet.com/WhitePaper/white5.html>

떠나 인도와의 국경 쪽으로 피신하게 하였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티베트를 고립시켰다. 우선 영국이 물러간 상황에서 티베트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 훈련에 협력하는 등 티베트의 가장 큰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 정부에 1950년 10월 30일 각서를 보내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 라고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6일에는 인도 정부에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설명하는 문서를 보내 이해를 요구하였다. 한편, 티베트 정부는 1950년 11월 7일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청하였는데, 중국은 국제사회에도 압력을 가하여 티베트의 요청을 기각시켰다. 1950년 11월 17일 엘살바도르가 티베트 침략 문제를 유엔 총회의 의제로 올릴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국은 이것이 미국의 조종을 받은 소국의 움직임이라고 폄하하였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전쟁이 티베트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주저한 영국과 미국 등 연합국은 이의 승인을 주저했고,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충돌을 꺼려한 인도의 대사가 평화로운 해결을 주장하는 바람에 국제 사회의 개입은 유엔 총회에서 의논되지도 못하였다.¹¹⁾ 급해진 티베트 정부가 1950년 12월 8일에 재차 요청서를 보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패배와 수도로의 위협, 그리고 미적지근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티베트는 1951년 4월 협상사절단을 북경에 다시 파견하였다. 북경에 간 티베트 사절단은 1951년 5월 23일 '서장의 평화적 해방 방법에 관한 협의'(關於和平解放西藏辦法的協議), 약칭 '17개 조항의 협정안'에 서명하였으며, 중공은 이를 근거로 티베트를 합병하였다.

17개 조항 협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티베트 민족은 하나로 통합되어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티베트에서 몰아낸다. 이로써 티베트 민족은 조국인 중화인민공화국에 복귀한다.
2. 티베트 지방정부는 인민해방군의 티베트 진입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국가 방위에 이바지한다.
3.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공동 강령에 내재된 민족 정책에 따라, 정치 티베트 민족은 중앙인민정부의 통합된 지도 아래 민족적 지역 자치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4. 중앙정부는 티베트의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달라이라마의 지위, 기능, 권력을 바꾸지 않으며, 여러 관리들은 종전과 같이 유임한다.
5. 판첸라마의 지위, 기능, 권력은 유지된다.
6.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는 13대 달라이라마와 9대 판첸라마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

11)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해안, 2003), p. 43.

졌을 때와 같은 지위, 기능, 권력을 갖는다.

7.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공동 강령에 내재된 종교의 자유 정책은 유지된다. 중앙정부는 승려들의 수입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8. 티베트 군은 점차적으로 재조직되어 인민해방군이 편입되어 국방의 일익을 담당한다.

9. 티베트 민족의 말, 글,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언어는 티베트의 실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시킨다.

10. 티베트의 농업, 목축, 산업과 상업은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의 생활은 티베트 실상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11. 티베트의 여러 개혁은 중앙 정부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다. 티베트지방정부는 민중이 개혁을 요구할 때 이에 따라 개혁을 추진한다.

12. 과거 친제국주의자, 친국민당 관료라도 이들과의 연계를 끊고, 파괴행위 및 저항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13. 티베트에 진입한 인민해방군은 위에 언급된 정책을 준수하고 상업 거래에 공정하게 임하며 바늘이나 실 같은 것이라도 인민에게서 자의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

14. 중앙정부는 티베트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인접국가와 우호관계를 맺으며 평등, 상호 이익, 영토와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에 기초하여 공정한 상업, 무역 관계를 확립, 발전시킨다.

15. 이 협약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 인민정부는 군사, 행정 위원회와 군 지역 사령부를 티베트에 설치하고, 중앙 인민 정부에서 파견된 인원 외에는 티베트 토착민을 가능한 많이 참여시킨다.

16. 군사, 행정 위원회와 군 지역 사령부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인민 정부가 제공한다. 티베트 지역 정부는 인민해방군의 식량, 사료 및 기타 생필품의 구입 및 운송을 지원한다.

17. 이 협정은 서명과 조인 후 바로 효력을 가진다.



17개 조항 협정안에 서명하고 있는 티베트 사절단.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티벳정보센터. <http://zt.tibet.cn>

그러나 티베트 임시정부 측에서는, 티베트 사절단은 중국 측에 의해 협박과 모욕을 당했으며 심지어 티베트 본국과의 접촉까지 금지당한 강제적인 구금상태의 조약이었던 데다가, 서명을 한 사절단들은 티베트 정부의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전권을 위임받지도 않았으며, 서명에 사용된 인장마저도 중국 정부 측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협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티베트 임시정부는 자신들이 1951년 5월 26일 북경 라디오의 '17개 조항의 협정안'을 발표 때에서야 이러한 조약이 맺어졌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조 협약이 체결된 것이 1951년 5월 23일인데 비해 모택동이 달라이라마로부터 17조 협약 수용의 전

문을 받은 것은 그해 10월 24일이라는 사실에서 적어도 사절단들과 티베트 정부 사이에 긴밀할 연락이 없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티베트를 침공한 중국의 대의명분은 티베트가 원래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 외에도, '티베트를 라마승과 귀족, 지주로부터 해방 시킨다'는 사회주의적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무력 앞에 이 조약을 뒤집을 힘이 티베트에는 없었고, 결국 이 조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티베트를 침공한 중국의 대의명분은 티베트가 원래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 외에도, '티베트를 라마승과 귀족, 지주로부터 해방 시킨다'는 사회주의적 명분이 있었다. 처음 티베트에 진군한 인민해방군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명분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군 임무를 맡은 인민해방군 18군은 '강장(康藏) 진군을 위해 유의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만들어 티베트인들의 인심을 얻도록 병사들을 교육시키는 한편, 중국공산당의 전통적인 전략인 통일전선전술의 수단으로서 대중 집회, 영화 및 연극 상영, 연설회 개최 등으로 티베트 민중에게 우호적인 인상을 주면서 이들을 포섭하려고 노력하였다.¹²⁾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노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대적인 티베트인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여러 지역에서 중국군에 저항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1951년부터 1959년 달라이라마의 망명까지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한 후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티베트의 외교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티베트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던 티베트 외교국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가 1952년 9월 6일 철폐되어, 중국이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인도와 네팔 등이 티베트에서 갖는 특권은 전면 철폐되었다. 1904년 체결된 라싸 조약으로, 영국은 티베트에 주재원과 군대를 파견하고 우편, 학교, 병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특권과 치외 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1951년 당시에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가 그 특권을 계승한 상태였다. 중국은 이 특권을 완전히 무효화시켰고, 네팔 역시 티베트에 자국군대를 주둔시킬 권리를 박탈당하고, 티베트에 주둔한 자군 군대를 모두 철군하게 된다.

이 시기에 중국은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티베트의 엘리트들을 배제하지 않았으

12) Warren W. Smith, "The Nationalities Policy of the CCP", Edited by Robert Barnett,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 63.

며, 오히려 이들을 이용하여 통치의 정통성을 얻으려고 하였다. 1956년 4월 22일에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는, 달라이라마, 판첸라마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장자치구 준비위원회(西藏自治區籌備委員會)를 만들 것을 결정하였다. 말 그대로 서장자치구의 창립을 준비하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록 달라이라마였지만 그는 명목상의 의장일 뿐 실권은 없었다. 준비위원회의 모든 위원의 임명은 중국정부의 비준이 필요해 사실상 모든 인사권은 중국에게 있었고, 티베트에는 결정권이 없었다.¹³⁾ 티베트임시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 준비위원회는 실권이 전혀 없어, 사실상 티베트에 관련된 모든 기본 정책이 별개의 기구인 '티베트 중국공산당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이 기구에 티베트인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티베트 임시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준비위원회의 인사권이 사실상 중국 측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달라이라마의 지위, 기능, 권력을 보장한다고 했던 17개 조의 4조의 내용은 부정된다. 이는, 중국의 티베트 엘리트들에 대한 인식이 지배의 협력 파트너와는 거리가 먼, 명분을 쌓기 위한 이용 대상이라는 측면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7개조의 11항에서 티베트에 강요되는 개혁이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1956년에는 중국공산당이 '집단농장화'를 압도와 감 지역에서도 강요하였고, 나머지 티베트 지역에서도 이것이 확산되었다. 게다가 사회주의적 관리의 원활함을 위해 유목민들에게 정착생활을 강요하면서 유목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티베트인들의 반발이 더욱 확대되었다.¹⁴⁾ 이는 17개조의 10항에서 약속한 "티베트의 농업, 목축, 산업과 상업의 단계적 발전"이라는 약속도 깨뜨리는 것이었다. 이에 강요되는 개혁에 대한 무력 저항이 동부 티베트의 캄과 압도에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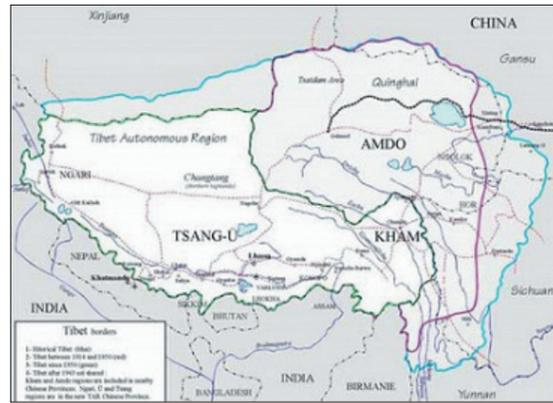
티베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조치에 대한 반감이 조직화되고 있었다. 1951년 11월에는 티베트의 첫 민중 향의 조직인 미망종두(People's Assembly), 즉 티베트 인민회의가 조직되어 중국군 사령부에 인민해방군의 철군과 중군의 티베트 개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1952년 3월 라싸에 티베트 독립과 인민해방군 철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뿌렸고, 인민회의의 움직임에 맞춰 티베트 승려 천여 명이 시내로 진입하여 시위를 벌였다.

티베트의 군 조직인 티베트군 제 2단도 이에 호응하여, 티베트공작위원회 대표의 거주지를 포위하고 과거 중국과의 17개조에 서명했던 아포 아왕지메의 집을 공격하여 무력시위를 하였다.¹⁵⁾ 중국은 티베트의 이런 저항에 탄압으로 대응하였다.

13)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해안, 2003), p. 53.

14) Warren W. Smith, "The Nationalities Policy of the CCP", Edited by Robert Barnett,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p. 64-65.

15)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해안, 2003), p. 53.



과거 티베트 영토의 구분. 서남쪽이 오늘날의 티베트 자치구 지역이고, 동북쪽이 암도 지역, 동쪽이 캄 지역이다. 암도 지역과 캄 지역은 티베트자치구에서 분리되어 중국의 다른 성으로 흡수되었다.

1951년 말 인민회의의 서한에 대해서는 중국의 지배와 17개조 협약에 반대하던 두 명의 티베트 장관을 해임하고, 5명의 인민회의 지도자를 투옥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1952년에 있었던 일련의 항의 움직임도 인민해방군을 투입하여 철저히 진압하였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의 저항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

었다. 1956년 여름에는 티베트의 동부와 북동부에서 대규모의 무력 저항이 시작되었다. 이에 인민해방군은 무력진압으로 대응하였고, 인민해방군의 탄압과 양자의 충돌을 피해 티베트 동부와 북동부를 떠난 난민들이 라싸로 몰려들었다. 티베트인들의 저항은 점점 조직화되어, 1957년 5월 라싸에서는 각 지역 무장저항세력의 연합조직인 '사수육강' (四水六崗)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종교보위', '티베트독립', '개혁반대', '공산당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티베티 민중을 선동하였으며, 달라이 라마에게 '금보좌'를 바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현금활동을 전개하여 저항자금으로 활용하였다. 1958년에는 사수육강 소속의 무장저항 세력 대표자들, 티베트군 대표들, 3대 사찰 승려들 등이 회합을 갖고 동맹을 결성, 무장역량을 결집시켜 총병력 4천여 명에 이르는 '사수육강위교지원군' (四水六崗衛教志願軍)을 만들었다.¹⁶⁾ 티베트 임시정부 측의 주장에 따르면 1958년 가을에 저항군의 병력이 무려 8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¹⁷⁾

중국은 이 봉기에 대해서 강온양면으로 대응하여 인민해방군으로 이들을 탄압하는 동시에, 티베트인들이 불만을 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사회주의적 개혁정책을 향후 6년간 중지시키는 '육년불개' (六年不改)를 1956년 약속하면서 티베트인들을 달래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인 간부 수를 줄이고 티베트인 간부 수를 늘려 민심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티베트인에 대한 무력 탄압은 이러한 민심무마책의 효과를 반감시켰으며, 과거 티베트 영토로서 티베트인이 많이 사는 티베트 자치구 외의 여러 지역에서는 그나마 개혁 유예와 티베트인 간부 증원 등의 약속의

16) 같은 책, pp. 56-58.

17) '사수육강'은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투쟁 호소에 의해 1970년대에 자진 해산하게 된다.

대상이 되지 않았다.¹⁸⁾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1959년 3월 중국이 달라이라마를 납치하려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의 발단은 중국군사령관이 달라이라마를 1959년 3월 10일 군부대에서 개최되는 연극을 보러오라는 초청을 받게 된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런데 티베트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심스럽게도, 중국 측은 중국 군부대를 방문할 때는 달라이라마가 호위부대를 대동할 수 없다는 통보를 달라이라마 호위대장에게 전달하였다.

달라이라마는 어딜 가더라도 호위부대를 대동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¹⁹⁾ 민감한 시기에 달라이라마를 군부대로 초청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러한 특권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히 티베트인들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 티베트 임시정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캄과 압도 지역 등에서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문화 행사 등에 참석한 라마승들과 지역 지도자들의 여러 차례 의문의 실종을 겪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본심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달라이라마를 초청한 것은 충분히 의심받을만한 일이었고, 만약 호의로 초청을 했다고 한다면 중국 측의 부주의한 조치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초청일인 1959년 3월 10일에 티베트인 수천 명이 달라이라마의 여름 궁전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며 달라이라마의 중국 군부대 연극 관람을 막았다.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며칠 후 라싸에서 중국의 티베트 개입 중단과 티베트의 완전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달라이라마는 3월 17일 라싸를 떠나 인도로 탈출하여, 같은 해 3월 26일 티베트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인민해방군 서장군구에 철저한 진압을 명령한다. 또한 1959년 3월 28일 중국 수상周恩래의 발의로 중국 국무원은 기본의 티베트 정부를 해산시켜 그 권위를 말소했으며, 서장자치구 준비위원회가 티베트 정부의 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으며, 판첸라마로 하여금 달라이라마의 직위인 주임위원 직무를 대신하게 한다.²⁰⁾

1959년 1965년 티베트자치구 성립까지

이 시기에 중국은 달라이라마를 배제한 상태에서 중국의 완전한 행정단위로서

18) Warren W. Smith 'The Nationalities Policy of the CCP' Edited by Robert Barnett,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 65.

19) Tsepon W. Shakabpa, Tibet: A political history (Yale University Press, 1967; Potala publication, 1984), p. 318.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김한규 (해안, 2003), p. 17에서 재인용.

20)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해안, 2003), p. 19.

‘티베트자치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티베트인들의 저항이 거의 수그러든 1963년에는 티베트공작위원회와 티베트자치구주비위원회의 주도로 티베트자치구가 될 지역의 현(縣)들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각 현의 대표를 뽑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65년에는 티베트자치구 지역의 모든 현, 향(鄉)²¹⁾ 선거가 완료되었고, 티베트공작위원회와 티베트자치구주비위원회는 1965년 9월 1일 티베트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제 1차 회의를 열어 공식적으로 티베트자치구 수립이 완료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 대회에 출석한 301명 대표 중 티베트인이 226명, 먼바족 등 다른 소수민족이 16명, 나머지 59명은 중국인이었다. 이러한 배분은 인구배분에 따른 것이었고, 명목상 티베트자치구 최고기구인 티베트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티베트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티베트자치구가 티베트인의 그것이 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목적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9월 1일 서장 공작위원회를 서장자치구 위원회로 개명하여 티베트인들의 참여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²²⁾ 그러나 실제로 티베트자치구 정치의 실권은 티베트인이 대다수인 티베트자치구 인민대표대회가 아닌, 중국인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티베트공산당지부에 있었다.

1960년과 1962년 중국의 대약진운동의 영향을 받아 티베트도 큰 식량난을 겪었다. 가뜩이나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재난을 당하여 분노하고 있는 티베트인들에게서, 중국 당국은 ‘같은 중국이므로 서로 도와야한다’는 명목으로 식량을 공출하여 티베트 내의 중국인들에게 나누어주고 티베트의 인근 지역으로 운송하였다. 이 때문에 티베트인들의 분노는 더 심해졌다. 더구나 티베트의 전통적인 경제 체제를 사실상 파괴하는 농장집단화는 계속 추진되고 있었다.²³⁾

거기에는, 196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여파는 티베트에까지 미쳤다. 티베트에서 주로 중국인들에 의해 조직된 홍위병들은 티베트의 문화, 종교를 파괴하고 다녔다. 이들은 티베트 불교사원을 파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 1966년 8월 26일에는 티베트인들에게 신성시되는 라싸의 절인 조캥 사원(Jokhang temple)²⁴⁾이 이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참다못한 티베트인들은 1968년에 티베트 자치구, 캄, 암보 지방의 51개 지역 중 21개 지역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당시 무장봉기는 그 강도가 심해서 중국당국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지역인 북서군구에서 온

21) 중국의 성, 자치구 바로 아래의 중급 행정단위가 현(縣)이고, 현 아래의 하급 행정단위가 향(鄉)이다.

22)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해안, 2003), p. 29.

23) Warren W. Smith 'The Nationalities Policy of the CCP' Edited by Robert Barnett,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 68.

24) 7세기 중엽 송첸 감포왕에게 시집은 당나라의 문성공주와 네팔의 공주가 가져온 석가모니 불상을 모시기 위해 세운 사원으로, 티베트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신성한 사원이다.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아서야 진압할 수 있었다.

1965년에서 현재까지

1976년 모택동의 사망 이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매년 수백 명의 티베트 정치 활동가들이 체포되어 투옥되거나 처형되었다.

1987년은 티베트 독립 시위의 분수령이었다. 1987년 6월, 미국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티베트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9월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다. 이때 달라이라마와 미국의회는 중국군의 철수와 한족 이민정책의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고무되어 1987년 9월 27일 라싸에서 시작된 대규모의 티베트 시위는 중국 당국에 의해 무참히 진압되었다. 티베트 자치구 경찰은 같은 해 10월 초에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다. 중국의 티베트 병합 37주년 기념일인 1987년 10월 7일부터는 티베트와 외부의 통신을 차단하고 라싸 주재 외국인 기자 15명을 강제 철수시키며 티베트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을 하였다. 1987년의 대규모 티베트 시위 동안에 티베트인이 최소 2,500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체포되었다. 당시 이 진압을 지휘하던 사람이 지금의 중국 주석이자 당시의 티베트 당 서기였던 후진타오(胡錦濤)였다.

1988년 12월 1일 조강사원에서 있었던 티베트 시위에서도 발포가 있어, 최소 15명이 사망했고, 150명이 중상을 입었다. 1989년 3월은 티베트 무장저항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 해 3월 5일부터 사흘 간 계속된 시위에서 시위자들은 티베트 깃발을 흔들고 독립을 외쳤다. 거기에다가 1989년 1월 21일 입적한 10대 판첸라마가 중국에 의해 암살당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10만에 가까운 티베트인이 시위에 참

가하였다. 중국공안은 또다시 무력진압으로 응했다. 당시 시위 진압에는 기관총도 사용되었으며, 중국 측 공식발표로는 11명, 티베트임시정부 측 추산으로는 최소 80명에서 최대 400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진압에도 완전진압이 어려울 정도라서, 1989년 3월 7일에는 라



2008년 3월 티베트 시위대의 행진 모습.

싸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후 계엄령은 1년이 훌쩍 지난 1990년 5월 1일에야 해제되었다.



티베트 임시정부와 달라이라마가 중도정책을 공식적인 입장을 채택하였으나 중국은 이 제안도 거절하면서 '티베트는 완전한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려하고 있다.

중국의 티베트 병합

40주년이었던 1991년에는 4월 10일에만 146명의 티베트 활동가들이 체포되었고, 1992년 2월에는 200명 이상이 달라이라마의 사진, 책, 테이프 등 '반동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1993년 5월에도 무상의료 시스템이 중국 당국에 의해 진료비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과,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물가가 폭등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티베트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였다.

1997년에는 티베트 임시정부와 달라이라마가 중도정책(Middle Way Policy)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였다. '중도정책'이란 외교와 국방은 중국이 담당하되, 티베트는 행정권을 완전히 가지는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는 정책이다. 즉, 달라이라마는 1997년부터 공식적으로 '독립'이 아닌 다른 길을 갈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서방국가의 지원이 줄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방향전환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티베트 임시정부와 달라이라마의 이 제안도 거절하면서 '티베트는 완전한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려하고 있다.

중국의 대 티베트 정책의 유형

분할통치

중국은 지배의 편익을 위해 티베트를 분할하여 통치하려는 방법을 사용한다. 분할통치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로, 기존의 티베트 영토를 행정구역으로 여러 갈래로 병합하고 이를 분리하여 통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티베트 민족을 여러 민족으로 세분하여 서로에게 다른 정체성을 심어주었다. 셋째, 달라이라마 세력과 판첸라마 세력 사이의 갈등을 이용하는 이이제이책(以夷制夷策)을 사용하였다.

행정구역 상으로, 중국은 기존의 티베트 영토를 여러 조각으로 분할시켜 중국의 일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다. 1950년 11월 24일부터 1953년 10월 19일에, 중국은



갈라진 티베트의 땅. 동쪽의 여러 지역은 티베트자치구에서 떨어져나가 중국의 사천성, 운남성, 칭하이성, 감숙성 등의 일부가 되었다. 남쪽의 일부 지역은 1913년 청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싼라(Simla) 협정의 결과, 인도의 영토가 되어 지금도 중국-인도 사이의 국경분쟁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감(康巴) 주를 중국 사천성으로 편입시킨다. 감 지역은 두 개의 티베트 자치주와 한 개의 티베트 자치현으로 나누어져 사천성에 편입되었고, 1957년 9월 13일에 이외 나머지 남부 감 지역이 '적경(迪慶) 티베트족 자치주'라고 이름 붙여져 운남성에 편입되었다.

암도(安多) 지역도 여러 구역으로 갈라져서, 일부는 중국의 성인 칭하이성의 일부로 되었고, 또 다른 암도 지역은 사천성과 통합되어 아파(阿俱) 티베트족 자치주가 되었다. 나머지 암도 지역은 1953년 10월 1일 간난(甘南) 티베트 자치주로서 감숙성에 통합되었다.

중국은 상당히 자의적인 민족분류를 시행하여, 스스로 티베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셰르파족(Sherpas, 夏爾巴),²⁵⁾ 먼바족(Monpas, 門巴),²⁶⁾ 뤼바족(Lhoba, 珞巴s)²⁷⁾ 족 등을 별개의 중국



달라이라마 14세

10대 판첸라마

소수민족으로 분류하여 티베트족을 분할시키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다른 소수민족의 경우 아창족(阿昌)에 속하는 후싸아창족, 마오난(毛南)족에 속하는 안환족 등이 자신은 아창족이나 마오난족과는 다른 별개의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25) 동부티베트부터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민족이다. 사용하는 언어도 티베트어와 매우 유사하다. 히말라야 산맥에 오는 탐험대의 짐꾼 및 안내인으로 유명한 민족이다. 인구는 소수로, 네팔에서는 2001년 인구 기준으로 15만 4천 명 정도이고, 중국에서는 현재 1천 명 정도의 소수만 살고 있다.

26) 현재 티베트를 비롯하여 현 중국 영토 내에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소수민족. 티베트어가 통용되고 티베트 문자를 사용하며 티베트불교를 신봉한다.

27) 티베트어를 사용하고 상당수가 티베트불교를 믿고 있는 소수민족, 1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개의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 정책은, 중국 당국이 티베트 민족의 일체성을 약화시키려는 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티베트 내의 기존의 정치권력도 분할하여 서로를 견제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중국은 달라이라마와 티베트불교의 2인자인 판첸라마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 사이에는 청나라 때부터 갈등관계가 존재했다. 1910년 청나라가 티베트를 점령하여 달라이라마 13세가 인도로 망명하고 달라이라마의 명호마저 청나라에 의해 박탈당했을 때, 판첸라마는 그대로 티베트에 머물러 있었고, 비록 판첸라마가 응하지는 않았지만 청나라는 판첸라마를 라싸로 불러들여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세우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1912년~1913년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였을 때도, 판첸라마의 추종자들은 중국에 맞서는 달라이라마의 군대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여 달라이라마 13세의 분노를 샀다.²⁸⁾ 사실 판첸라마 일파는 청나라 시기와 제국주의 침략 시기에 중국 및 영국의 외세를 이용해 달라이라마 세력을 압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 달라이라마 측은 판첸라마 측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²⁹⁾ 1950년대의 달라이라마는 달라이라마 14세였고, 판첸라마는 판첸라마 10세로서, 과거 갈등 관계에 있던 달라이라마 13세와 판첸라마 9세와는 별개의 인물이었기는 했지만, 과거 달라이라마 지지자들과 판첸라마의 지지자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중국은 이들의 갈등 관계를 통치에 최대한 활용한다. 서로를 대립시켜 전통적인 이이제이책(以夷制夷策)을 쓰면서, 달라이라마보다 좀 더 친중적인 입장에 있는



남치당한 11대 판첸라마. 남치당시 6살이었고 지금은 생사조차 알 수 없다. 중국정부에 의해 임명된 11대 판첸라마. 티베트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첸라마를 우대하여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17개 조 협정안의 5조와 6조에서 판첸라마의 지위, 기능, 권력의 보장을 언급한 것은 이를 위한 포석이었다. 중국은 1954년 북경에서 열린 제 1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가 모두 참석시키는데 성공하여 대외적으로 중국

28) Meluyn C. Goldstein, *A history of modern Tibet 1913-195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89), p. 63.
29) *Ibid.*, p. 252.

이 사이가 나쁜 이 둘을 중재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달라이라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판첸라마는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으로 선출되어 티베트가 중국의 완전한 일부라는 명분을 굳혔다.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한 후에는 판첸라마 10세를 티베트정부의 전권을 행사하게 된 서장자치구 주비위원회의 주임위원에 임명하여 달라이라마의 공석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티베트 통치에 활용하였다.

1995년 5월에 있었던 중국정부의 판첸라마 납치사건도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1995년 5월 14일에 달라이라마는 1989년에 사망한 10대 판첸라마의 뒤를 이어 6살인 '겐둔 최끼 니마' 를 11대 판첸라마로 인정하였다. 이에 중국당국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불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7일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판첸라마를 납치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판첸라마의 자리에 앉힌다. 중국정부로서는 새로 임명된 판첸라마가 달라이라마의 감화를 받아 기존의 달라이라마 추종세력-판첸라마 추종세력의 갈등이 약해지게 되는 것, 그리고 달라이라마를 대신하여 자신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줄 카드를 잃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고 싶어 전 세계의 비난여론마저 감수하고 6살짜리 어린애를 납치한 것이다. 현재 중국에 의해 납치된 11대 판첸라마는 생사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납치된 11대 판첸라마를 대신하여 중국 당국에 의해 판첸라마로 임명된 '갈첸 노르부' 라는 소년의 부모는 중국 공산당원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갈첸 노르부' 는 명실상부한 중국정부의 꼭두각시이다. 티베트인들은 티베트 전래의 판첸라마 계승방법이 아닌 중국정부의 독선적 방법으로 임명된 이 판첸라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과 경제성장을 통한 회유책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티베트의 경제는 중국의 지원 아래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티베트자치구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려, 10억 위안 이상의 연간 보조금을 티베트 자치구에 지급하여 티베트 경제 발전을 돕고 있다. 이 보조금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800억 위안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티베트자치구의 GDP는 117억 4천 6백만 위안에 달해, 1995년의 2배, 1990년의 4배, 중국의 티베트 지배 이전의 수준에 비하면 무려 30배나 증가하였다.³⁰⁾

30) <http://www.china.org.cn/e-white/20011108/3.htm>

티베트지역의 경제 발전 속도는 근래에 들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신화통신이 2006년 1월 31일 보도에 의하면, 2005년 티베트자



‘갈첸 노르부’는 명실상부한 중국정부의 꼭두각시이며 티베트인들은 티베트 전래의 판첸라마 계승방법이 아닌 중국정부의 독선적 방법으로 임명된 판첸라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치구의 1인당 국민소득은 도시지역이 8,411위안, 비도시지역이 2,075위안으로 2000년에 비해서 각각 30.4%, 55.9% 증가하였다.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도시지역에서는 6만 4천 개에 이르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 도시지역의 실업률은 4.3%까지 내려갔다. 교육 여건도 개선되어 2005년에는 60%에 이르는 주민들이 9년의 의무교육을 받고 있고, 젊은 계층의 문맹률은 15%까지 내려갔다.³¹⁾

중국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해 1992년 티베트 지역을 해외투자에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하여, 티베트는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5년 동안, 1억 2,500만 달러의 해외투자를 받았다. 또한 2001년과 2005년 사이 총 690억 위안이 티베트지역에 투자되었다. 이는 5년 만에 3배로 증가한 액수이다. 이 투자액 중 70%가 넘는 508억 위안이 산업기반시설의 건설에 주로 투자되었다.³²⁾

티베트의 산업구조도 근대화되어, 1차 산업의 비율은 50년 전의 99%에 비해 2000년에는 30.9%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각각 23.2%, 45.9%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에너지, 경공업, 섬유, 기계공업, 벌목, 광산, 건축자재, 화학, 제약, 인쇄, 식품가공 등의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2000년에는 482개의 기업이 티베트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3차 산업은 상업, 관광, 우편, 유통, 정보산업 등 과거 티베트에는 생소하던 산업이 지금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산업개발과 투자의 결과 2000년 이 지역의 무역량은 1억 3천만 달러에 달했고, 이중 수출량은 1억 1천 3백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2000년에 59만 8,300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였고, 이중 14만 8,900명이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티베트의 관광업은 번창하고 있다. 관광업으로 티베트는 직접적인 수입만 매년 7억 8천만 위안으로, 전체 GDP의 6.6%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관광의 파급효과까지 치면 29억 8천만 위안으로 GDP의 25.38%가 관광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 주민 생활의 질도 크게 개선되어, 티베트인들은 집집마다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2000년에는 티베트의 라디오 수신율은 77.7%에 달했고, TV 수신율은 76.1%에 달했다.³³⁾

31) 신화통신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6-01/31/content_4121887.htm

32) 신화통신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06-01/31/content_4121796.htm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과 개발정책으로 티베트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티베트인의 생활수준도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혜택을 계속 맛보게 되는 티베트인들은 혜택을 느끼는 만큼 독립의지도 약해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중국정부는 1989년부터는 해외로 망명한 티베트인의 귀국사업도 시작하였다. 독립운동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귀국만 하면 집과 직업이 제공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된 이 정책은, 그러나 효과가 미미하여 15만 명의 해외 거주 티베트인 중에서 이 정책에 따라 돌아온 사람은 단 2천 명 정도였다.³⁴⁾

티베트 임시정부는 중국 측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있다. 이들은 1990년에 티베트 자치구의 1인당 국민소득은 80달러, 문맹률은 21.7%이었고, 1991년 UNDP의 인간개발지수는 0.087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티베트인들의 생활수준은 낮다고 주장한다.³⁵⁾ 무엇보다, 중국의 투자로 인한 혜택은 티베트인이 아닌, 티베트로 이주한 중국인들이 얻고 있어 티베트인들의 불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티베트의 경제발전으로 얻은 성과를 그들의 고향으로 송금함으로써 티베트의 경제발전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그들은 중국인들이 경제개발의 효과를 대부분 가져간다는 주장의 근거로, 중국의 투자 및 개발이 중국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중국 측의 통계를 봐도 2005년 기준으로 티베트자치구의 1인당 국민소득은 도시지역이 8,411위안, 비도시지역이 2,075위안으로 무려 4배의 차이가 난다. 중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도 사실 도시의 산업이자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오는 중국인들이 많이 담당하게 되는 분야이다.

티베트 임시정부 측의 주장에 따르면, 1970년 후반과 1980년 초반에 중국정부의 보조금이 도시 거주민에게는 1인당 128달러, 농촌 거주민에게는 4.5달러만 지급했는데, 도시지역에 중국인 거주민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불공평한 처사이다.

또한 티베트의 도시지역 경제권은 중국인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라싸 시에 있는 12,827개의 가게와 음식점 중 티베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30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들은 중국의 지배 이후 티베트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졌다는 주장에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티베트인들의 기초교육을 담당하던 사찰의 기능이 중국의 지배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티베트인들의 교육수준은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33) <http://www.china.org.cn/e-white/20011108/3.htm>

34) 동아일보 2006년 9월 21일자.

35) 유엔 개발 계획이 매년 각국의 교육 수준, 국민 소득, 평균 수명 따위를 주요 지표로 삼아 국가별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낸 지수.

〈표 1〉 티베트 정부가 추산한 티베트에서의 사망자 수

죽음의 유형	티베트 자치구	캄 지역	암도 지역	총합
감옥에서의 고문	93,560	64,877	14,784	173,221
처형됨	28,267	32,266	96,225	156,758
전투에서 전사	143,253	240,410	49,042	432,705
식량부족으로 아사	131,072	89,916	121,982	342,970
자살	3,375	3,952	1,675	9,002
기타 저항과정에서 사망	27,951	48,840	15,940	92,731
총합	427,478	480,261	299,648	1,207,387

출처: 티베트 임시정부 홈페이지(<http://www.tibet.com/WhitePaper/white5.html>)

무력 탄압의 강경책

중국군이 티베트를 점령한 이후,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티베트인들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비록 중국정부가 자신들의 티베트 지배가 ‘평화적인 해방’ (peaceful liberation)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 티베트임시정부는 중국 측의 추산을 따르더라도 라싸와 그 주위 지역에서 1959년 3월과 10월 사이에만 티베트 저항세력 8만 7천 명이 죽었다고 주장한다.³⁶⁾ 이 시기에 중국군을 피해 8만에 달하는 티베트인들이 인도, 네팔, 부탄 등에 피신하였다. 티베트 임시정부는 1949년과 1979년 사이에 120만에 달하는 티베트인이 중국 침공 및 탄압의 결과로 인해 사망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들의 집계에 따르면, 티베트 자치구와 과거 티베트 지역인 캄, 암도 지역에서의 티베트인들은 감옥에서의 고문, 처형으로만 33만 명이 죽음을 당하였고, 전투와 무력저항 과정에서 전사한 사람만 43만 명이 넘는다. 식량부족으로 아사한 사람을 34만 명으로 집계하여 피해자의 수에 넣은 것은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1960년과 1962년 중국의 대약진운동은 티베트에게 큰 식량난을 준데다 중국당국이 ‘같은 중국인끼리의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티베트인들의 식량을 공출하여 티베트 내의 중국인들과 티베트 주위의 중국 지역으로 운송하여 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중국의 지배가 없었다면 식량부족으로 인한 아사자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무력탄압을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티베트 통치가 ‘평화적’이라는 것을 계속 선전하였다. 중국은 1959년 티베트에서 일어난 저항이 소수

36) Xizang Xingshi he Renwu Jiaoyu de Jiben Jiaocai (PLA Military District's Political Report, 1960), 티베트 임시정부 홈페이지(<http://www.tibet.com/WhitePaper/white3.html>)에서 재인용.



티베트 승려복을 들고 입는 인민해방군들. 시위를 폭력시위로 격화시킴으로써 중국의 무력진압 및 티베트 지배에 명분을 얻으려고 군인, 공안이나 중국에 협력하는 티베트인을 시위대에 잠입시키고 있다는 의혹은 여러번 제기되었다.



3월 16일 중국정부의 무력진압으로 희생당한 티베트 시위대.

티베트 반동분자들이 미국 CIA의 지원으로 일으킨 무력 '반란'이라고 선전했고, 이 반란은 '단호한' 티베트 민중의 반대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달라이라마가 감금된 상태로 인도로 갔다고 주장하며 티베트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였고, 자신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티베트 저항세력은 7천명이 채 안되고 이틀만에 간단히 진압되었다고 주장하여 대다수의 티베트인이 중국의 지배에 복종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러한 선전은 1987년, 1988년, 2008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중국은 티베트의 병합이 '평화로운

해방' (the peaceful liberation)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⁷⁾

2008년 3월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중국의 무력 탄압 정책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2008년 라싸에서 일어난 시위의 원인은 중국정부의 '애국훈련' 과 시위하는 승려들에 대한 무차별 구타였다. '애국훈련'이란, 티베트 승려들을 사찰에 모아놓고, 달라이라마를 비난하거나 심한 경우 달라이라마의 사진을 밟으면서 중국정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중국정부의 강제적인 훈련을 말한다.

3월 7일 티베트 승려 수십 명이 공안청사 앞에서 2007년 가을 중국경찰의 애국훈련을 거부하다 잡혀간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했는데, 중국정부는 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체포하였다. 이에 다른 티베트 승려 4백 명이 3월 10일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중국 공안은 최루탄과 곤봉으로 응사하여 수십 명이 부상, 투옥되었다. 3월

37) 중화인민공화국 티베트 정보센터. <http://zt.tibet.cn>

11일 또다시 티베트승려 6백 명의 항의시위가 라싸에서 벌어졌지만, 또다시 중국 공안은 폭력진압으로 대응하였다. 참다못한 티베트인들도 승려들의 시위에 가세하여 14일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지만, 공안의 무력진압으로 큰 희생만 치렀을 뿐이었다.

2008년 라싸에서 일어난 시위는 공권력이 투입되어 바로 진압이 되었지만, 라싸 시에서 전개되던 시위는 캄과 압도 지방을 비롯한 비도시지역으로 폭넓게 확산되었다. 티베트 임시정부가 4월에 집계한 시위발생지역 50여 곳 중 80% 이상이 이 지역들이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시위에도 무력진압을 하여, 2008년 4월말 티베트 임시정부는 최소 200명이 사망하고 4천 명이 구금되었다고 집계하였다. 라싸 중급 인민법원은 라싸 시위에 참여했던 42명에 대한 재판을 열어 이중 30명에 대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의 중형을 선고했다.

티베트자치구의 민족구성 변화 정책

티베트자치구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일한 성급 행정구역이다. 또 다른 독립요구 지역인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이 자치구 인구의 45%를 차지하는데 비해 티베트자치구에서는 티베트인의 비율이 90%를 가볍게 넘는다. 만약 이러한 민족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티베트의 중국으로의 동화는 훨씬 용이할 것이다.

티베트자치구의 민족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정책은 크게 산아제한과 본토로부터의 이민 두 가지로 구분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1부부 1자녀 정책을 추진하여 산아제한정책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 1984년부터 티베트 지역정부도 티베트인을 대상으로 1부부 2자녀의 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티베트 자치구에서는 1984년 이전까지 한족에게만 산아제한정책이 적용되었고, 티베트인은 산아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1984년 티베트인에게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긴 했지만, 지역 인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티베트 농부와 유목민에게는 가족계획 정책이 강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³⁸⁾

중국 측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티베트 지역의 출산율은 1970년 이후 25.3%에서 1980년 21.4%, 1990년 22.6%로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1995년 20.6%, 2003년 14.2%로 떨어졌다. 1부부 1자녀 정책이

38) <http://www.china.org.cn/english/null/163492.htm>

〈표 2〉 티베트 자치구의 자연적인 인구 변화율

연도	출산		사망		자연증가율 (%)
	출산수(만 명)	출산율(%)	사망수(만 명)	사망률(%)	
1970	3.75	25.3	1.52	10.2	15.1
1980	3.93	21.4	1.51	8.2	13.2
1985	4.62	23.3	2.01	10.1	13.2
1990	4.91	22.6	1.61	7.4	15.2
1995	4.82	20.6	1.77	7.6	13
2000	4.42	17.6	1.65	6.6	11
2001	3.6	14.2	1.67	6.6	7.6
2002	3.47	13.6	1.57	6.1	7.5
2003	3.64	14.2	1.71	6.7	7.5

출처: <http://www.china.org.cn/english/null/163485.htm>

〈표 3〉 티베트 자치구의 민족구성

	1985	1990	1995	2000	2002	2003
총 인구	1,994,808	2,180,520	2,355,540	2,512,300	2,554,423	2,592,113
티베트인(藏)	1,909,693	2,095,561	2,268,749	2,421,856	2,449,231	2,464,742
한족(漢)	70,932	67,407	67,772	72,122	85,166	105,379
먼바족(門巴族)	6,445	7,463	8,084	8,471	9,308	9,584
뤄바족(珞巴族)	2,036	2,325	2,690	2,856	3,461	3,565
회족(回)	1,529	2,269	2,357	2,123	2,140	2,513
셰르파족(夏尔巴)	1,403	1,819	2,131	2,152	1,604	1,645
등족(僮)	1,097	1,248	1,494	1,395	1,238	1,514
나시족(納西)	871	1,260	1,092	1,024	1,109	1,139
누족(怒)	227	378	394	430	52	468
기타 소수민족	42	34	76	98	175	409
투족(土族)	90	116	150	151	194	249
만주족(滿)	81	168	171	213	215	243
먀오족(苗)	42	70	82	89	134	170
몽골족(蒙古)	72	79	118	104	102	161
바이족(白)	36	173	61	61	81	101
이족(彝)	21	36	35	39	74	88
좡족(壯)	31	50	31	50	62	57
부이족(布依)	12	7	5	15	22	31
두룽족(獨龍)	80	32	21	32	26	30
리미족(傣米)	62	15	23	41	18	18
위구르족(维吾尔)	6	10	4	10	11	7

출처: <http://www.china.org.cn/english/null/163485.htm>

티베트 지역 한족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에도, 그 대상이 도시 지역 티베트인에게로 확대된 1984년 이후에도 출산율의 감소는 매우 완만한 수준이다. 이 통계대로라면 산아제한정책이 티베트인들에게 무리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03년 사이에 티베트인은 1,909,693명

에서 2003년 2,464,742 명으로 약 29%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티베트 전체 인구가 30% 증가하였고, 한족은 티베트 외부에서의 유



등소평은 1987년 6월에 2백만의 인구로는 이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는데 역부족이므로 중국인이 더 많이 티베트로 이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8%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티베트인이 티베트 자치구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95.7%에서 95.1%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한족은 언제나 5% 내외의 낮은 비율에 불과했다. 티베트인이 18년 사이에 30% 가까이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티베트인에게는 관대하게 적용되었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신빙성을 실어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티베트 임시정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티베트 임시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티베트를 침공한 이후인 1952년부터 꾸준히 중국인을 티베트 지역에 이주시키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실제로 등소평은 1987년 6월에 2백만의 인구로는 이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는데 역부족이므로 중국인이 더 많이 티베트로 이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³⁹⁾

티베트 임시정부는 1983년부터 티베트로의 중국인 이주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1985년 라싸에는 중국인 거주민이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밖에 없었는데, 1989년 3월에는 라싸에 10만이 넘는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압도와 캄 지역을 포함한 과거 티베트 지역에 거주하는 한족의 수가 490만이라는 1990년 중국 인구조사 결과를 지적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중국인의 수를 합하면 티베트 지역들에 사는 중국인의 수는 750만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 티베트로 이주하는 한족들에게 주택, 보건, 문화 및 교육 시설 이용, 배급 등에서 티베트인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줬다고 주장한다. 또한 티베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중국 본토에 거주할 때보다 87%나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에 있을 때보다 휴가가 훨씬 길어서 18개월 일할 때마다 3개월씩 중국 고향으로 휴가를 가고, 그 비용도 중국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티베트인이 티베트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비해, 중국인 사업가는 세금면제와 저금리 대출의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39) Deng Xiaoping, during his meeting with ex-US President Jimmy Carter, 29 June 1987, reported by Reuters, Beijing, 30 June 1987, 티베트 임시정부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40) 인민일보 1959년 11월 10일자, 티베트 임시정부 홈페이지 재인용.

1984년부터 티베트인에게 부여된 1부부 2자녀의 산아제한이 12%의 티베트인에게만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은 3번째 자녀에 대해 과도한 액수의 벌금을 매겨 사실상 산아제한이 되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벌금액은 1,500위안에서 3,000위안, 미화 400달러에서 80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거기에 3번째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자녀는 배급표를 받을 수 없으며, 그 부모는 최대 50%까지 임금이 삭감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구금당한다고 한다. 또한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불임수술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티베트임시정부는 현 중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티베트인의 인구가 병합 당시 4백만보다 2백만이나 증가했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 티베트인의 인구는 병합 당시에도 6백만 정도가 되었다고 반박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이 통계를 낼 때도, 1959년 11월 티베트 자치구 지역에 1,273,969명이 거주하고, 과거 티베트 지역인 캄 지역에는 3,381,064명, 감숙성에 통했던 티베트인 거주지역에 사는 티베트인의 수는 1,675,534명으로 파악하여, 병합 당시 이미 티베트인 인구가 6,330,567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¹⁾

사실 중국정부는 중국인의 티베트로의 대규모 이주를 원하고 있다는 속내를 가깝 드러낸다. 2006년 7월에 개통된 칭짱철도(靑藏鐵路)은 그러한 속내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칭짱철도는 1958년 제 1공정이 시작된 후 48년이나 되는 공사기간 끝에 완성된 철도로, 북경부터 라싸까지 4,064km에 이르는 철도이다. 그러나 48년이나 되는 공사기간, 4천 km가 넘는 엄청난 규모, 철도건설과 유지·보수가 어려운 티베트고원지대의 특성 등을 생각하면, 칭짱철도는 경제성이 매우 의심되는 철도이다. 실제로 2001년 6월부터 5년 동안에만 37억 달러가 추가 투입되어 1,142km 구간을 완공할 정도로 칭짱철도 건설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다.⁴¹⁾ 전 주석인 장쩌민은 2001년 8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아직 개통될 예정이었던 칭짱철도에 대해 경제성보다 정치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하며 칭짱철도가 중국정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하게 해 준다.⁴²⁾

“어떤 사람들은 이 계획이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으니 그만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 이것이 정치적인 결정이고(political decision), 우리가 어떤 비용을 치러서라도(at all costs), 상업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성사시켜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쩌민 전 주석의 2001년 8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 중에서

41) 동아일보 2006년 7월 1일자.

42) <http://news.bbc.co.uk/2/shared/spl/hi/guides/456900/456954/html/n5page1.stm>

칭짱철도로 티베트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부대를 보내는 것이 더욱 용이해진 것은 물론, 중국인들의 티베트로의 이주 및 티베트의 중국에로의 경제적 종속을 더욱 부추겨 중국의 티베트 지역을 더욱 강화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이 ‘어떠한 비용을 치르고’, ‘상업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칭짱철도를 건설했던 이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중국은 청나라 때 티베트를 자신의 영향권으로 넣었으나, 청나라는 티베트를 자국의 영토 일부로 병합한 것이 아닌, 속국으로 다스리는 것에 가까웠다. 실제로 티베트가 자신의 영토라는 주장은 티베트가 완전한 독립을 성취한 중화민국 시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만약 국공내전과 일본과의 전쟁으로 그 시기의 중국이 혼란스럽지만 않았다면, 중국의 티베트 병합은 중화민국 시기에 이미 시행되었을 것이다.

중국은 1951년 무력으로 티베트를 병합한 이래, 여러 정책을 사용하여 티베트를 자국의 확고한 영토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은 티베트의 영토를 분할하여 티베트자치구, 운남성, 사천성, 칭하이성, 감숙성 등으로 나누어 티베트인들을 지배하였고, 티베트 계통의 민족을 별개의 민족으로 분류하여 티베트 민족 자체를 분할시켰으며,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 사이의 갈등을 이용하는 서로를 견제시키는 이이제이책을 고수하였다.

또한 티베트에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로 티베트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중국의 지배에 안주시키는 회유책을 쓰는 한편, 독립이나 자치권강화를 요구하는 시위에는 무력을 사용한 강경책을 계속 고수하여 티베트인들의 독립의지를 분쇄시키려 하고 있다. 티베트인에 대한 산아제한과 중국인의 티베트로의 이주 촉진 정책은 티베트를 궁극적으로 중국의 영토로 고착화시키는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칭짱철도 개통 이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여러 정책의 결과, 결국 티베트 임시정부와 달라이라마는 1997년에 독립요구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티베트의 행정적인 자치권만 대폭 강화하는 중도정책(Middle Way Policy)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여 중국과 협상하는 쪽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중국은 티베트가 완전한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들의 중도정책도 거부하고 있다. 그만큼 자신들의 대티베트 정책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 (소나무, 2000).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해안, 2003).
김규현, 『티베트 역사산책』 (정신세계사, 2003).
다바타히사오(田畑久夫) 외 저, 원정식·이연주 역, “중국소수민족 입문”, (현학사, 2006).
Edited by Robert Barnett, Resistance and Reform in Tibet,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Michael C. Van Walt Van Praag, The status of Tibet history, Rights, and Prospects in international Law,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Meluyn C. Goldstein, A history of modern Tibet 1913~195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89)
Xizang Xingshi he Renwu Jiaoyu de Jiben Jiaocai (PLA Military District's Political Report, 1960)
A Survey of Tibet Autonomous Region (Tibet People's Publishing House, 1984)
Tsepon W. Shakabpa, Tibet: A political history (Yale University Press, 1967: Potala publication, 1984)
티베트임시정부 홈페이지 <http://www.tibet.com>
중화인민공화국 티베트 정보센터 <http://zt.tibet.cn>
중국홍보사이트 <http://www.china.org.cn>
신화통신 <http://news.xinhuanet.com>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BBC 뉴스 <http://news.bbc.co.uk>
여호수아 프로젝트 <http://joshuaproject.net>

도서안내

21세기의 정치상황을 이론과 실제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
현대정치이해

격변기의 시대상황에 대응하면서 다면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대의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한 기본서!!

■ 주요목차

- 1부/ 현대 정치학의 기본
- 2부/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 3부/ 현대의 정치현상

교양사회 조정남 편 / 값 20,000원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구상

나 영 주 (고려대학교 강사)
Lyz08@yahoo.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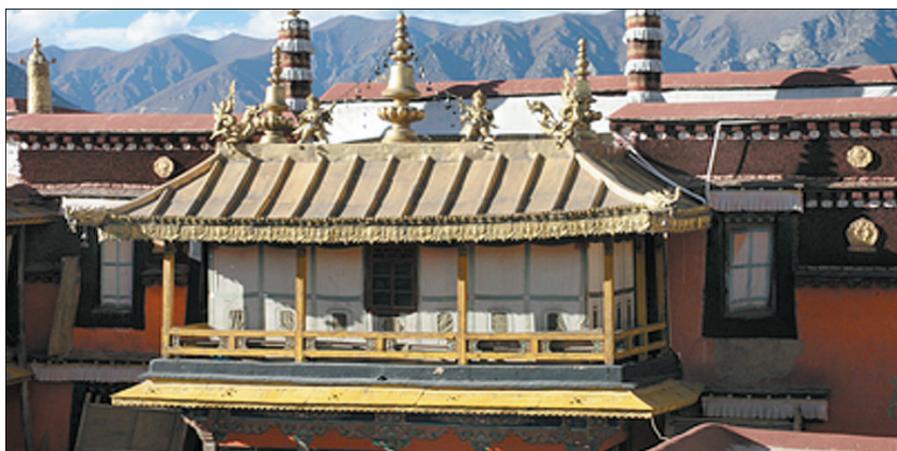


머리말

2008년 3월 중국이 국운의 비상으로 기획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티베트¹⁾ 지역을 중심으로 티베트인이 거주하는 주변 성과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네팔 등지에서 폭력적 시위가 발생하였다. 시짱(西藏)의 성도인 라싸에서 시작된 시위는 거칠게 확산되었으나 쓰촨(四川)성의 가공할 지진으로 묻혔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돌출될 수 있을 것이다.

티베트의 분리 독립 문제 - 중국의 입장에서는 '티베트 문제' 라고 호칭할 수도 있겠다 - 라는 논의 중심에 달라이 라마가 있다.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티베트에 관한 달라이 라마의 구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1) 티베트라는 이름은 몽고어 투베트(Thubet)에서 유래했으며 그 의미는 '눈 위의 거주지' 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티베트와 현재의 중국 행정명칭인 시짱(西藏)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변화해 왔으며, 그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은 티베트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티베트 문제에서 달라이 라마의 중차대성은 달라이 라마에 대한 중국의 의도적 무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달라이 라마가 그렇게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2008년 3월 시위와 소요의 배후 책임자와 주동자로서 달라이 라마를 지적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의 신임을 받고 있는 달라이 라마의 매도,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가 차지하는 종교적, 정치적 의미의 의도적 무시를 통한 티베트 문제의 탈민족화, 탈종교화, 탈문화화, 탈정치화 기획 등이다.

본 연구는 중국이 보는, 중국 쪽 시각과 입장에서 티베트 문제에 관한 정책이나 구상이 아니라 그 동안의 정치적, 종교적 행보에서 보여준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구상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고 분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비적 논의로서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를 역사, 정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티베트' 문제가 자리하는 역사적 연원을 살펴본다. 티베트 문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 제도의 정착과 정치, 종교적 위상에 관해 살펴본다. 이런 역사적, 제도적 논의를 배경으로 달라이 라마가 보여준 티베트의 독립과 자치 및 헌정체제에 관한 티베트의 구상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2008년 3월 티베트 시위의 현상적이고 구조적 원인을 추적해 본다. 티베트의 잦은 시위와 소요의 기원과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보고 이런 시위와 소요 과정에서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에 관한 구상이 갖는 한계를 티베트의 정치사회적 상황의 분석과 흔들리고 있는 달라이 라마의 위상을 조망함으로써 분석하고자 한다.

티베트가 정치 사건화되고 이에 대응하는 달라이 라마에 관한 1차 자료는 다음의 웹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다람살라에 있는 망명정부의 사이트와 티베트 관

런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는 티베트 온라인(tibet online),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티베트에 관한 사정을 알릴 목적으로 만든 씨장즈예



중국은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가 차지하는 종교적, 정치적 의미의 의도적 무시를 통한 티베트 문제의 탈민족화, 탈종교화, 탈문화화, 탈정치화 기획 등이다.

(西藏之頁) 사이트의 자료들이다.²⁾ 주로 티베트의 연대기 및 중국과 티베트의 대화 자료, 달라이 라마의 대중국, 국제 사회에 대한 발언들을 모아 놓은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요컨대 본 논의는 목하 티베트의 분리 독립 문제에서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에 관한 구상과 정책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주장을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신중국 건설과 비슷한 시기에 티베트의 독립을 도모하였던 달라이 라마의 구상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존중하는 고도 자치로 그의 구상을 바꾸었다. 중국 측의 정치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위상의 변화가 우선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나 현실적인 티베트의 정치경제적 역량의 문제도 고려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고도 자치의 내용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 티베트와 중국의 단월 관계(檀越 關係)의 복원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 달라이 라마는 그의 종교적 신념과 철학에 따라 비폭력적 평화주의, 국제주의 노선에 따라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명백한 현실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티베트 내의 일부 청장년 승려집단으로부터 그의 중도주의적 평화 노선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티베트 문제와 정치적 소요의 배후자로 지목되어 진정한 대화상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티베트 문제에서 달라이 라마를 무력화시키려는 중국 측의 전략적 의도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셋째, 티베트 문제의 해결에서 상황은 티베트에게 많이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의 정치 종교적 위상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그의 중도주의적 평화 노선은 현실에서 시험받고 있다. 그의 국제주의 노선을 통한 티베트 문제의 환기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논리 앞에서 실제로는 무기력해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티베트 문제의 끊임없는 환기는 오히려 소란스러운 정치적 소요와 시위에 의해서만 가능할 따름이다. 봉건적 신정체제의 문화적 잔재가 여전한 티베트의 사회구성체는 중국에 저항할만한 물질 토대가 심각하게 부실하다고 할 수

2) www. tibet. net; www. tibet. org; www. xizang-zhiye. org

있다. 시민사회는 형성되지 못했거나 빈약하여 티베트 민족주의가 힘으로 전화될 수 있는 토대와 근거는 상당히 부실하다.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의 딜레마이자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티베트 정치적 지위와 달라이 라마 제도

중국과 티베트의 역사적 관계와 티베트의 정치적 지위

중국의 한(漢代)에는 산시(陝西), 간수(甘肅), 쓰촨(四川) 지방에 살았으며 저(底), 강(羌)이라 불리었던 유목민족이 티베트족으로 추정되고 있다. 7세기 초 중국 서부 일대 중앙 티베트를 중심으로 토번(吐蕃)이 발흥하였으며 손찬감포(松贊干布) 왕은 티베트 족을 통합하여 통일 국가를 형성하였다. 당시 당 태종은 문성공주(文成公主)를 감포왕에게 시집 보냈는데 중국의 제지, 주조 등의 기술이 전해졌다. 또한 티베트에 불교가 전파되고 티베트 문자가 제정된 것도 이 시기라고 한다.

중국 내륙에 어떤 왕조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의 친소는 있었으나 특히 몽고족이 대륙을 장악한 원 시기에 몽고가 티베트에 미친 영향은 대단한 것으로 단일관계 및 조공-책봉 관계가 공식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대에 중국과 티베트는 독특한 관계를 맺었는데 티베트 불교의 샤카파 종파가 원나라를 세운 몽골족의 도움을 받아 정교합일의 정권을 수립한 것이다. 1247년 당시 징기스칸의 손자 쿠오단(闊端)과 티베트의 고위 승려 사카 판디따(薩迦班智達) 사이에서는 티



베트가 원나라 황실에 대한 종교적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고 대신 원나라는 티베트에 대한 군사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는 '최원' 관계(檀越關係)를 수립하였다.³⁾

중국은 티베트과 원과의 이런 관계를 근거로 티베트가 원나라

3)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 그 역사적 관계에 대한 연구사적 이해』(서울: 소나무, 2000), pp. 57~85.

때 이미 자국 영토의 일부였노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만청(滿淸) 시기에 티베트는 달라이 라마 제도가 확고해 지면서 신정적 통일국가의 면모를 다시 보여주게 된다. 청조는 초기 정치적 고려에 따라 달라이 라마를 우대하다가 몽골 세력 축출을 명분으로 강희제 때인 1720년 티베트 전역을 장악하게 된다.⁴⁾ 청말 시기 영국과 러시아가 지정학적인 전략적 입장을 가지고 티베트를 공략할 때 청은 티베트의 종주권을 주장하나 티베트를 보호하지는 못했다. 청조의 정세가 불안한 틈을 타 티베트의 13세 달라이 라마는 청조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하였다. 티베트는 현재 중국의 일개 성으로서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이다. 그 성이 중국의 일개 성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이 현재의 티베트 문제를 이루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티베트와의 관계는 당나라 시기의 화친 관계에서 비롯하여 원과 청을 거치면서 단월 관계(檀越 關係) 및 조공 책봉 관계(朝貢 冊封 關係)를 유지하였다는 것이 역사적인 정설이다. 단월 관계는 불교국가인 티베트와 중국의 특수한 관계를 특징화하는 것인데 티베트의 독립 공동체, 혹은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가 보다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조공 책봉 관계는 종주국과 조공국이라는 정치적 지위의 예속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중화 질서의 국제 관계 방식의 하나로 관계 맺기의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중국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공국이자 피책봉 국가는 국가로서의 고유한 나름의 주권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과 티베트와의 관계에서 단월 관계를 강조하느냐, 조공 책봉 관계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티베트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⁵⁾

따라서 티베트의 문제는 일견 단순해 보인다. 중국은 역사적 정복과 연고권을 주장한다. 청조의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시기를 거치면서 티베트의 복속을 강조하며 원나라 때부터 이미 티베트는 중국의 영토였음을 주장한다. 티베트는 티베트의 역사적인 주권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과 티베트의 특별한 관계가 강조된다. 따라서 청조의 몰락과 이어지는 중화민국과 내전 시기에 티베트는 확실한 독립 국가였음이 주장된다. 그렇다면 신중국 설립 이후 1950년의 인민해방군의 티베트의 침공은 중국의 일개 성에 대한 새로운 해방이 아니라 주권 국가인 다른 국가의 침공이 되는 것이다.⁶⁾ 이런 역사적 논란을 배경으로 현재 티베트는 과거의 티베트 지역의 상당부분을 주변의 성으로 넘겨주고 1965년 중국의 자치구로 편제되었으며, 달라이 라마를 포함하여 티베트의 일부 지도자와 인민들은 1959년 인도 북부

4) 김한규(2000), pp. 57~168.

5) 김재기, "중국의 민족문제와 티베트 이슈 : 화평해방 17개조 협의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0집(2004), p. 81.

6) 김한규(2000), pp. 277~278.

의 다람살라에서 망명정부를 세워 중국에 저항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 제도의 역사와 위상

티베트 역사에서 일별한 바와 같이 달라이 라마 제도가 성립된 것은 오랜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라이 라마 제도와 함께 티베트의 근대사가 발전해 온 것이며 문제는 이 달라이 라마 제도가 현재의 티베트의 명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성속의 법왕이자 원수인 까닭에 티베트의 인민들의 일상을 규율하는 신앙이자 율법인 것이다.



달라이 라마 (Dalai Lama)

16세기 말인 1578년 몽고의 알탄 칸(Altan Khan)은 후일 3세 달라이 라마가 되는 소남 카초의 예방을 받고 그에게 '달라이 라마' 라는 칭호를 주었다. '달라이' 는 몽고말로 큰 바다를 의미한다. 소남 가초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신들의 통치자이며 진리의 왕이라는 칭호를 몽고왕에게 답례하였는데 달라이 라마의 칭호는 그로부터 비롯되었다. 2명의 앞선 교주들에게도 달라이 라마의 칭호가 부여되었다. 1642년 5세 달라이 라마 갈와 나왕 롱상 가초(Ngawang Lobzang Gyatso)가 몽고의 구스리 칸(Gusri Khan)⁷⁾과의 동맹을 이용하여 겔룩파(Dgelugspa, 格魯派, 黃帽派)의 적대세력인 홍모파(紅帽派)를 제거하고 종교, 정치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 때부터 달라이 라마가 정치 종교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달라이 라마 제도가 확실해졌으며 티베트의 실제적 권력자로 군림하게 된다.⁸⁾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자 현실적인 정치권력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다. 티베트의 역사와 함께 그리고 종교 문화적 특성이 지금의 달라이 라마 제도를 만든 것이다. 티베트 불교의 최고 권력과 티베트의 현실 권력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수장으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망명정부의 달라이 라마 역시 이전의 달라이 라마가 누렸던 형식적 위상과 다른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티베트 망명정부의 원수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티베트 인민들에게는 툴구(tulku,

7) 몽고의 구스리 칸은 전 불교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5세 달라이 라마를 옹립하는 한편 자신은 스스로 티베트 왕의 칭호를 가졌다. 두사람은 후원자와 성직자의 관계로 후원자는 성직자의 종교적 지위를 보장해주었고 성직자는 후원자의 세속적 지위를 지지해 주었다. 1655년 몽고의 구스리 칸이 죽자 그의 후계자가 티베트 경영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자 5세 달라이 라마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에 이른 것이다. 5세 달라이 라마는 1652년 신흥왕조인 청나라 순지제의 초청으로 북경으로 가 원대 이후의 관습대로 봉호와 옥인을 받았다.

8) 케네스 첸, 『불교의 이해』, 김희성 외 역(분도출판사, 1994), p.230; 山口瑞鳳, 『チベット 下』(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4), pp. 88-122.

活佛)로서 여전히 존경과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⁹⁾

14세 달라이 라마는 1935년 티베트의 동부 지역인 압도, 탁스터라는 작은 마을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속명은 라모 돈드루프. 13세 달라이 라마가 1933년에 입적하고 곧바로 환생했다는 암시가 있었다고 한다.¹⁰⁾ 1940년 14세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로 등극하였다. 섭정 정치에 이어 열다섯의 나이에 티베트의 속권과 교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는데 인민해방군의 침략으로 정식 등극보다 3년 빨랐다. 14세 달라이 라마는 그의 이력에서 보듯이 등극에서부터 현대 티베트의 굴곡진 역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¹¹⁾

14세 달라이 라마의 대 티베트 정책과 구상의 변화

14세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독립 정책 (1949 ~ 1979)

한국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시기인 1951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티베트의 성도 라싸에 진입하여 무력으로 티베트를 병합시켰다. 티베트는 불안하기는 하였지만 중화민국 시기를 거치면서도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해 왔으나 대륙에 새로운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새로운 권력이 등장함에 따라 그 명운 역시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14세 달라이 라마의 새로운 고난의 구도행이 시작된 것이다.

1951년 5월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무력으로 티베트의 사절단을 협박하여 티베트의 평화적 해방을 위한 17개조에 합의하게 하였다. 덩샤오핑이 작성한 ‘10항 정책’은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는 전제에서 만들어져 티베트 협상단이 거부하였다. 7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한 중국측 안이 체결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약의 제1조는 ‘시짱 인민은 씨장에서 침략적인 제국주의 군대를 몰아내고 단결하여야 한다. 씨장 인민은 모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대가족으로 돌아와야 한다.’ 제2조는 ‘시짱 지방 정부는 인민해방군이 시짱에 들어가서 국가의 방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8조는 ‘시짱군을 중공군에 흡수시

9) 역대 달라이 라마에 관해서는 토머스 레어드, 『달라이 라마가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 황정연 역(서울: 용진 지식하우스, 2008) 참조.

10) 13세 달라이 라마의 환생으로 14세 달라이 라마를 찾는데 라모이 라초(Lhamoi Lhatso)가 선지를 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달라이 라마를 찾는 작업에서 환생을 예시하는 곳으로 티베트에서 최고로 신성한 호수로 여겨지고 있다. 제2세 달라이 라마 갈와 겐둔 가초는 4살 때 초대 달라이 라마 겐둔 등의 환생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환생을 라모이 라초 호수가 알려주었다 한다. 제13세, 제14세 달라이 라마를 찾는데 중요한 단서와 암시를 제공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만큼 달라이 라마의 선택에는 현대의 과학으로 풀 수 없는 티베트만의 독특한 역사적인 종교적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15세 달라이 라마를 구하는데도 라모이 라초는 여전히 신비한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가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다. 14세 달라이 라마를 찾는 과정은 영화 <관둔>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11) 게일런 로웰, 『달라이 라마 나의 티베트』, 이종인 역(서울: 시공사, 2000), p. 194.

킨다.’ 제 14조는 ‘시짱의 외교권을 중공 중앙정부가 담당한다.’ 고 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시짱의 정치 체도를 변경하지 않으며 달라이 라마의 지위와 기능 권한은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업을 개발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민들에게 개혁을 받아들일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협의안 역시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국방과 외교 업무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인정하라는 내용이 주권을 넘겨주라는 것과 같아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다. 14세 달라이 라마는 1951년 10월 마오쩌둥에게 전보를 보내 인민해방군에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다.¹²⁾

훗날 인도로 망명한 후인 1959년 14세 달라이 라마는 중국이 먼저 이 협약을 파기 하였음을 지적하고, 본래 강압과 무력에 의해 맺은 것이기에 이 17개조의 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사실 중국 공산당과의 티베트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1954년에 14세 달라이 라마는 북경으로 건너가 마오쩌둥과 조우언라이를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9년 3월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해방 아닌 강압적 점령 정책과 문화적 학살로 말미암아 라싸에서 봉기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중국은 이 소요를 진압하면서 87,000여명의 티베트인들을 학살하였다. 14세 달라이 라마는 8만 여명의 티베트인들을 데리고 티베트를 빠져 나와 인도로 망명하였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 중국 공산당의 조우언라이는 티베트 정부가 해체되었노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959년 라싸 봉기 이후 14세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하여 임시 망명 정부를 세웠다. 중국은 시짱 지방 정부의 해산을 명령하고 ‘시짱 준비위’로 하여금 그 직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1959년 4월 제2기 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는 ‘시짱 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켜 시짱 지역에 민주 개혁 실행을 결정하였다.

이 민주 개혁은 일차적으로 ‘삼반 쌍감’ (三反雙減)¹³⁾을 추진한 다음 전면적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사원 토지와 재산은 폭동 시 참가 여부에 의하여 몰수 혹은 유상 몰수 하였고 씨장 인민과 사원의 토지 재산은 점차적으로 몰수하였다. 중국은 민주 개혁 기간 동안 교통 개발, 문화 교육, 토지 개혁, 간부 배양과 지방 선거등을 실시하여 시짱의 기층 사회 구조를 철저히 사회주의화하여 통치를 공고히 하였다.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티베트의 상층부를 형성했던 달라이 라마와 지배계층의 전통적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계급 의식과 투쟁을 선동하여 과거 지방 정부의 관료, 귀족, 사원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하여 농노와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농민 조직을 통해 집단 농장화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대약진 운동의 실패와 기근은 중국인들이 티베트를 더욱 착취하에 만들어 많은 불만을 초래하

12) 김재기(2004), p. 85.

13) 三反: 反對 叛亂, 反對 烏拉差役制度(封建 奴隸制度), 反對 勞役; 雙減: 減租, 減息.

였고, 당시 중국에 협조적인 10대 판첸 라마 조차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하자 숙청하였다.¹⁴⁾

1966년 문화 대혁명의 발생은 중국의 시짱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계급 투쟁의 구호 아래 티베트인 간부와 인민은 계급의 적으로 취급되어 엄중한 탄압을 받았다. 티베트 인민들의 종교 활동이 금지되고 라마들은 환속을 강요받았다. 사원은 3천 7백여 채가 있었으나 문화대혁명 이후 남은 사원은 10여 채 뿐이었다.¹⁵⁾ 본토 티베트의 자생력은 중국의 이런 말살 정책으로 한없이 약화되었으며 망명 정부 역시 중국 본토의 광란의 정치로 인해 대화의 기회를 가질 수도 없었다.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공세는 종교적, 문화적 학살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티베트의 대화는 거의 단절되었으며 중국은 1971년 티베트의 압도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티베트 지역을 핵지대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14세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의 독립에 대한 입장은 13세 달라이 라마보다 조금 더 간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4세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에 관한 독립 요구는 앞서 만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무력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공산당 정부와 군대에 대항하여 독립을 주창하였기 때문이다. 14세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독립 주장은 티베트의 고유한 민족혼을 지켜 내기 위한 것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중국 대륙의 권력의 세련되지 못한 폭력에 맞서는 것이었다.

비록 티베트의 이런 모욕에 대해 분개한 전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힘이 대세를 뒤엎기는 역부족이다. 무기와 전투원들의 절대적 열세 속에서도 그들을 티베트 독립을 향한 의지는 견결한 것이었으며 생을 초월한 것이었다.¹⁶⁾ 이 당시에도 달라이 라마는 무력 투쟁을 지양할 것을 강조하며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이 티베트 독립의 주요한 수단임을 천명하면서 대화를 통해 베이징과의 평화적 교섭을 희구하였다.

14세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구상의 변화 (1979 ~)

1) 티베트의 평화 방안 5개항

중국과 티베트와의 대화가 복원된 것은 그나마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덩샤오핑은 “티베트의 독립 문제만 아니라면 어떤 문제도 의논할

14) 김재기, “티베트의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동의 기원과 전개,” 『대한정치학회보』, 13집 3호(2006), pp. 17~18.
15) 楊開煌, “中共治藏的難題-宗教人素的考察,” 『西藏現況研究』, 第5輯(1987), 김재기(2006), p. 18에서 재인용; 문혁 시기의 참상에 관해서는 達瓦次仁, “文革: 恐懼主導的浩劫,” <http://www.xizang-zhiye.org/gb/arch/writings/wenge/dawa.html> (검색일: 2008. 7.21).
16) 쿤가 삼텐 테와 창, 『티벳 전사』, 흥성녕 역(서울: 그물코, 2004) 참조.

수 있다”며 대화의 물꼬를 텃다.¹⁷⁾ 14세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의 독립이라는 노선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품고 그의 티베트 구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도 이런 덩샤오핑의 제안에 의해서였다. 이른바 티베트의 독립을 주장함으로써 겪을 티베트의 현실적인 정치적 경제적 고립과 중국의 자존심 손상 등을 비켜가면서 양자가 나름대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중국의 티베트 압제의 한 극과 티베트의 독립이라는 어쩌면 불가능한 목표의 한 극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협상 목표를 선택함으로써 양쪽의 최대 만족 수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갈등을 회피하고 무력 사태를 지양하며 티베트 문제의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즉 양극을 지양하고 중간을 지향한 중도적 접근이라는 그의 티베트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대화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태도는 단호하였다. 1981년 7월 당시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은 달라이 라마에게 티베트 문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대티베트에 관한 방침(五條方針)을 전달하였다.¹⁸⁾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며, 달라이 라마를 한낱 티베트의 정치적 지도자의 일부로 폄하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첫째, 우리의 중국은 정치적으로 장기간 안정을 구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번영의 길을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기에 각 민족은 더욱 더 단결과 협조를 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인 것이다. 달라이 라마와 그를 따르는 티베트인들은 모두 지혜와 현명을 갖추고 있기에 우리를 절대 믿어야 한다. 만일 의심이 있다면 앞으로 두고 보라.

둘째, 달라이 라마와 그가 파견한 인사들은 당연히 공개적이어야 한다. 은밀한 방법과 접촉은 곤란하다. 지난 과거의 역사는 접어두자. 특히 1959년의 아픈 역사는 지나간 과거 속에 묻어두자.

셋째, 우리는 달라이 라마와 그를 따르는 티베트인들의 귀국을 대단히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귀국이 국가 통일과 다른 민족과의 단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믿으며 현재 실행중인 4개 현대화 정책에도 공헌할 것으로 믿는다.

넷째, 달라이 라마 귀국 후의 정치적 대우와 생활상의 보장은 과거와 다를 바 없다. 당 중앙 정부는 협의를 거쳐 달라이 라마에게 전국정협부주석의 자

17) 1979년 3월 12일 덩샤오핑은 14세 달라이 라마의 둘째 형인 가로 돈둡(Gyalo Thondup)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씨장이 국가의 개념으로 중앙정부와 대화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http://www.tibet.net/en/diir/sino/std/chronology/1978-87.html> (검색일: 2008. 7. 21)

18) “中共對達賴喇嘛的「五條方針」,” <http://www.xizang-zhiye.org/gb/hhdl/zhonggong.html> (검색일 : 2008. 7.19)

리를 권유할 것이다. 티베트 지역의 직무는 겸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물론 달라이 라마가 원하는 경



달라이 라마는 무력 투쟁을 지양할 것을 강조하며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이 티베트 독립의 주요한 수단임을 천명하면서 대화를 통해 베이징과의 평화적 교섭을 희구하였다.

우에 한하여 고향인 티베트 지역으로 시찰을 나갈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달라이 라마를 따라서 귀국한 티베트인들에게도 직무와 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다섯째, 달라이 라마가 언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며 시기가 결정되었을 때는 전 세계에 간단한 형식으로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그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돌아올 것인지를 정확히 우리 정부에 통지만 해주면 된다. 만약 육지(홍콩, 혹은 광저우)를 통해서 귀국하려 한다면 우리는 고위급의 인사를 배려하여 직접 나아가 환영할 것이다.

중국이 달라이 라마에 제안한 5조 방침은 1985년 티베트 망명 정부 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거부되었다. 티베트 문제를 달라이 라마의 중국 귀환이라는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였다는 것이 거부의 주된 이유였다. 또한 달라이 라마 귀국 후 티베트에서의 거주를 금지하고 정치적으로 구금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도 거부 이유 중의 하나였다.¹⁹⁾ 이런 중국의 5조 방침에 대한 거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망명 정부의 의중을 명확히 한 것이 1987년 9월 미국 의회에서의 달라이 라마가 강연 중 제안한 5조항의 평화 계획이다.²⁰⁾

첫째, 티베트를 하나의 평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중공 군대의 완전한 철수를 시행하라.

둘째, 중공은 티베트 지역으로 한족 이민 정책을 중지하라.

셋째, 티베트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라.

넷째, 티베트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티베트 동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핵실험을 금지하라.

다섯째, 중국과 티베트의 미래에 관해 대화를 가져야 한다.

19) <http://www.tibet.net/en/diir/sino/std/chronology/1978-87.html> (검색일 : 2008. 7. 19)

20) “西藏和平五點方案.” <http://www.xizang-zhiye.org/gb/hhdl/heping.html> (검색일 : 2008. 7. 20)

티베트의 독립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티베트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를 확실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당시 티베트의 요구 사항은 비록 독립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티베트 문제의 접근 원칙과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티베트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공식, 즉 일국양제 정도의 고도 자치를 주장하였고, 과거 티베트의 영토를 회복하는 대(大)티베트를 구상하고 있으며, 티베트 지역에서의 인민해방군의 철수를 희망하고 있었다.²¹⁾

중국과 티베트 간의 지루하고 비생산적인 대화와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동화정책 등으로 1987년부터 티베트 지역 곳곳에서 간헐적인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1989년에는 1959년 티베트 시위의 30주년을 맞아 시위가 격렬해졌다. 티베트는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앞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새로이 등장한 장쩌민 집권 시기에서도 티베트는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은 지속되었다. 그러한 원칙은 1997년 10월 장쩌민의 미국 방문 중 하바드 대학 연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질문인 즉 달라이 라마가 더 이상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달라이 라마와 만나는 것을 중국은 거부하는 것인가 이었다. 당시 중국과 티베트는 1993년 8월 이후 공식적인 교류가 단절된 이후 복원되지 않은 상태였다. 장쩌민은 이런 질문에 “중국의 달라이 라마에 관한 정책은 명백한 것으로서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티베트의 독립을 포기할 것을 언급하며, 중국을 분열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대응하였다.²²⁾ 달라이 라마의 중도주의적 접근 방안마저도 티베트의 독립으로 치부함으로써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에 관한 조건의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2) 티베트 문제의 국제화와 중도주의적 접근

비록 1989년 달라이 라마가 그의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는 하였지만 망명정부를 이끈 달라이 라마의 활발한 활동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서방 국가들이 공개적인 지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은 중국의 반발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²³⁾ 사실 14세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과의 직접 대화를 염두에 두면서도 티베트 문제의 국제화를 통해 티베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21) Xinhua News Agency, 1984. 12. 2.

22) <http://www.tibet.net/en/diir/sino/std/chronology/1994-2001.html> (검색일 : 2008. 7. 19)

23) 1959년 라싸에서의 시위 이후 티베트에 관한 세 차례의 유엔 총회 결의가 있었다. 1959년[1353(X IV)], 1961년 [1723(X VI)], 1965년 [2079(X X)]로 티베트인들의 문화적, 종교적 삶에 대한 존중, 자결과 인권, 근본적 자유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된 이후 티베트 문제는 유엔에서의 논의보다는 개별 국가의 의회나 유럽 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http://www.tibet.net/en/diir/sino/intnlre/> (검색일 : 2008. 7.20) 참조.

조성하여 티베트의 정치적 지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제 국제화 노선은 나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자국의 외교 이익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식적 관심을 보여 왔을 뿐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달라이 라마는 자기의 명성과 카리스마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티베트의 독립에 관한 대외적 언명을 삼가 해오고 있다. 오히려 티베트의 독립 보다는 티베트인의 자유, 인권 및 문화 그리고 생태 보호 등의 주장에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다. 14세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구상에서 이러한 변화는 당시 중국의 정치 변동과 티베트 망명 정부의 정황으로부터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은 중국의 국제적 역량과 위상 강화에 따른 국제적 관심이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의 인권은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받았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이 인권 문제로 인해 상당정도 꺾끄러운 시간을 가졌다. 반면 역설적으로 티베트의 인권과 독립에 관한 상황은 중국의 인권보다도 덜 관심을 받았으며 중요한 국제적 의제가 되지 못했다.

둘째, 티베트 망명정부 내부의 갈등과 모순이 갈수록 심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망명 1세대와 2세대 간의 관념과 민족의식은 미래의 티베트에 관한 논의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드러내는데 다수의 망명 2세들은 장기간 망명 생활로 본토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런 요인들은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독립 노선을 검토하게 만들었으며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이전보다 완화된 형태의 '고도 자치' 를 구상하고 제안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는 달라이 라마의 위상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봉건적 신정체제에서 달라이 라마의 말은 율법과 진배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2008년 3월의 시위에서도 드러났듯이 흔들리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다. 평화적인 수단을 강조하는 달라이 라마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수많은 인명 살상과 파괴를 동반한 폭력적인 것이었다.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폭력적 노선이 지배적이라면 14세 달라이 라마는 달라이 라마를 그만둘 것이라는 것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티베트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입장과 티베트의 미래에 대한 노선과 이념의 갈등이 현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주도한 이들은 '티베트 청년동맹' 으로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평화적 중도주의 노선에 관하여 비판적이다.

이러한 달라이 라마의 독립 노선에 대한 포기 징후가 포착된 것이 1980년 말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의 국제적 연설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으나²⁴⁾ 망명 정부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도주의적 접근((中間道路, middle-way approach)의 형성 과정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

니며 덩샤오핑의 집권과 개방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티베트 독립 노선의 포기와 이른바 고도 자치로 알려지고 있는 14세 달라이 라마의 현실적인 중도주의적 접근은 1997년 9월 망명 정부의 의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인정받았다.²⁵⁾

달라이 라마는 1988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 의회에서 평화 건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하였다. 흩어져 있는 3개 지역의 티베트가 하나의 티베트가 되어야 하며(大西藏), 완전한 자치를 향유해야 하나, 티베트의 안보와 외교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²⁶⁾ 구체적으로 첫째, 티베트는 중국과 공동으로 하나의 민주적 자치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앞으로도 티베트의 외교를 책임질 수 있다. 하지만 티베트 정부는 외부와의 비정치적인 교류 활동, 즉 종교, 상업, 교육, 문화, 여행 과학 등의 교류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보장 받는 국제적 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셋째, 헌법에 기초하여 티베트 정부를 세울 수 있으며 이 티베트 정부는 티베인들이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넷째, 이러한 티베트 정부는 마땅히 라사에 설립해야 하며 이 기관에는 행정 장관과 입법기관, 그리고 독립된 사법체제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티베트의 경제, 사회 제도는 티베트인들에게 맡겨야 한다. 여섯째, 야생 동물의 보호를 법으로 규정하며 핵무기의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일곱째, 티베트가 진정한 비군사 평화지역으로 설정되기 전에는 티베트의 안보를 위해 중국 관할의 군대를 주둔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유럽 의회에서 이 연설은 1987년 미국 의회 인권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5개의 평화 제안의 연속선 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에서 보듯이 중국과의 결별을 통한 독립이 아니라 중국의 도움을 받는 고도의 자치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9년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과 티베트의 대화는 뜸하다가 이마저도 1993년 공식적으로 단절되었다. 이런 상태는 오래 지속되어 장쩌민 집권 시기에는 이렇다 할 대화의 진전이 없었다.

티베트의 독립 노선으로부터 티베트의 고도 자치로 티베트의 미래 구상을 전환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망명정부와 달라이 라마 본인 자신이 티베트의 미래를 고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로서 달라이 라마의

24) 심혁주(2003);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의 독립에서 자치로 요구수준을 후퇴시킨 시기를 1987년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 이시하마 유미코 편,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나라』(서울: 이산, 2007), p. 314. 티베트 평화 방안 5개항을 내놓은 시기를 전후로 하고 있다.

25) <http://www.tibet.net/en/diir/sino/std/imwa.html> (검색일: 2008. 7. 21). 1997년 9월 18일 12차 티베트 인민 대표 의회 제4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다.

26) <http://www.xizang-zhiye.org/gb/hhdl/yanshuo.html> (검색일: 2008. 7. 20)

27) 그러나 스트라스부르의 제안은 중국이 티베트에 대한 한족 이주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1991년 다람살라에서 망명정부의 주석인 卡隆 嘉樂通達(Kalon Gyalo Thondup)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http://www.xizang-zhiye.org/gb/ex/sitou.html>(검색일: 2008. 7. 20) 참조.

생물학적 나이도 하나의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가 활불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다시 다른 몸을 통해 환생을 해야 할 고령인 것도



티베트는 올림픽의 성화 봉송을 계기로 티베트 민족의 핍박과 설움을 전세계에 알리려는 티베트 문제의 국제화를 중국과 협상의 한 지렛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14세 달라이 라마는 자기가 열반에 들기 전에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이며, 환생하여 15세 달라이 라마가 등장하기를 고대할 것이다.

둘째, 그의 비폭력 중도주의 평화 노선은 비록 그에게 노벨 평화상과 평화 수호의 모범으로서 가치를 드러내 주었지만 정작 티베트를 위해서는 마땅히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른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그의 평화주의 중도노선과 국제적 지명도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정은 과거와 같지 않으며 국제정치의 현실은 냉정하다. 2008년 3월 시위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이 보여준 행태가 이를 증명해 준다.

셋째,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보여준 물질적 성공과 국제적 위상의 성장에 따라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의 미래에 대해 최소적 강령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고도자치'마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중국 측의 티베트 문제에 대한 강경책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과 상황에서 티베트 망명정부와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에서 자치로 그들의 티베트에 대한 구상을 변환시켰을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의 발전과 성장에 근거한 자신감과 국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 등으로 볼 때 화해할 수 없는 요구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의 조건이 좀 더 협상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티베트의 정치적 역량과 달라이 라마의 딜레마

2008년 티베트 시위의 기원과 원인

중국은 2008년을 국운을 재도약시키려는 계기로 삼은 반면 티베트의 안팎은 이를 이용하려 했음이 분명하다. 14세 달라이 라마가 소요의 진정과 평화적 방법에 의한 의사 개진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와 전국적인 소요는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티베트는 올림픽의 성화 봉송을 계기로 티베트 민족의 핍박과 설움을 전세계에 알리려는 티베트 문제의 국제화를 중국과 협상의 한 지렛대로 생각하고 있

었다. 왜 티베트에서의 정치적 소요는 그치지 않는 것일까? 부처의 나라로 불릴 만큼 평화지향적이고 내세 지향적인 티베트에서의 정치적 소요는 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일까? 미래 관세음보살이 환생하는 곳이기도 하고 부처를 숭상하는 곳이지만 관세음보살의 도래는 미래의 기약일 뿐이고 현실은 여전히 고해이다.

2005년 14세 달라이 라마가 공식적으로 티베트의 독립을 포기한다고 언급하였음에도²⁸⁾ 불구하고 티베트의 미래에 대한 중국과의 대화의 진전은 성과가 없었고 티베트인들은 박탈감이 여전히거나 증가한 것이 정치적 시위와 소요의 주요한 동인이다. 가장 핵심적 요인은 티베트 지역의 한족화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티베트 문화의 자율적 보존을 넘어 전형적 중앙 민족 국가를 논리를 앞세운 획일적인 교육과 문화 방식으로 티베트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중국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역설적으로 티베트 일반 인민들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티베트 지역에서 성공한 한족들이나 중국에 우호적인 티베트 일부 인민들에 국한될 따름이었다. 요컨대 티베트인들의 정체성 파괴와 문화적 학살이 티베트인들의 잦은 정치적 소요와 시위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1) 한족 동화정책

2008년 3월의 정치적 시위와 유혈 소요는 티베트 고유의 불교문화를 압살함으로써 티베트를 '무색무취' 하게 만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지나친 동화정책에 그간 누적된 티베트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티베트에 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 '서남 공정'을 통해 역사왜곡을 해 왔다는 것은 이제는 잘 알려진 사실이 되었다. 1950년 군사적 강압으로 티베트를 장악한 뒤 1959년의 독립 봉기를 무산시킨 중국 정부는 이후 티베트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이자 세속적 권력의 정점에 있는 달라이 라마와 사회 지도층인 승려 사이의 정신적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이간정책이다. 장쩌민 정권 시기와 후진타오 집권 시기의 최근 10년간 중국은 티베트 승려들에게 달라이 라마를 부정할 것을 강요하는 한편 티베트인들에게는 달라이 라마를 위한 기도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불교가 곧 일상생활이고 달라이 라마를 여전히 자신들의 지도자로 떠받치고 있는 티베트인들에게 중국의 이런 강압적 정책은 쉽게 먹혀들지 않았다.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인들에 대한 이간 정책이 다소 차질을 빚자 중국은 얼마 전부터

28) <http://www.tibet.net/en/diir/sino/std/chronology/2002.html> (검색일: 2008. 7.22)

학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상교육'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무리한 정책이 오히려 수십 년간 억눌린 티베트인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으로 작용하면서 속세를 떠난 승려들까지 거리로 내몰았다고 볼 수 있다. 티베트에서 승려들은 식자층에 속한다. 무리한 사상 교육을 강요당한 그들은 결국 그러한 중국의 정책에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⁹⁾ 특히 2006년부터 달라이 라마에 대한 공개적인 공세를 재개한 것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로비 바넷(Robbie Barnett) 콜럼비아대 교수는 분석하기도 한다.³⁰⁾ 라싸에 대한 한족의 집단 이주 등의 식민정책을 그저 지켜보아야만 했던 티베트 승려들이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티베트에서는 전통적으로 승려들이 일반 평신도들을 하나로 묶는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해 왔고, 중국의 티베트 정책 역시 승려들의 불만을 사회 전체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승려들이 주도하는 시위에 일반 시민들이 대거 동참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한족 이주와 경제 문화적 소외

중국 정부는 1965년 옛 티베트 땅 절반 가량을 '티베트 자치구'로 지정하고 나머지 땅은 칭하이나 간쑤 등에 통합하였다. 티베트 자치구의 면적은 120만 km²로 프랑스 국토의 두배에 이르며, 한반도의 약 6배로 중국 국토의 8분의 1을 차지한다. 인구는 약 274만명으로 중국 31개 성 시 가운데 최소이다. 여기서 티베트 족의 인구 비중은 93.94%로서 점차적으로 이 비율은 한족의 정책적인 이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 짱족 인구의 45%가 티베트에 거주한다. 15세 이상 문맹률은 47.55%로 역시 중국 내에서 최고치이다. 황량한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거기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은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상품가치가 있다. 석탄, 크롬, 금강석, 마그네슘, 철 등 광물자원이 70여종, 수자원 보유량이 2억 Kw로 중국 전체의 30%이며, 삼림 축적량은 14억m³으로 중국 내에서는 5위이다.³¹⁾ 전통적으로 티베트인들은 목축업으로 생계를 이어 왔으며 2007년 이 지역 주민 1인당 소득은 중국에서 가장 낮은 2천 788 위안(한화 39만 700원)이었다.

티베트 자치구 주민 10만명 가량이 한족인데 티베트 망명 정부는 이들이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해 온 한족은 티베트의 도시를 비롯해 곳곳에 이주해 터전을 잡음으로써 본래의 티베트인들은 점점

29) 『연합뉴스』, 2008. 3.16

30) 『연합뉴스』, 2008. 3.16

31) 티베트 자치구 통계공보(2006), 『조선일보』, 2008. 3. 16.

더 오지로 밀려나고 행정적 편의까지 이들 위주로 이들을 위해 제공됨으로써 티베트의 고유한 영토적, 민족적 정체성이 해체되고 있다고 티베트인들은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개발과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나 티베트의 입장에서 볼 때 티베트의 개발은 티베트인들의 일상과는 무관하다고 인식한다. 이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인프라 개발은 티베트의 천연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것이고, 삶의 개선이란 이식된 한족과 주둔군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³²⁾

티베트 분리 독립 운동의 한계

1) 정치적 독립 역량의 부족

1992년 달라이 라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전 세계에 공포하였다. ‘티베트의 미래 정치와 헌법 요지’ (西藏未來政體及憲法要旨)라는 서방식 민주정치의 기본 강령이다.³³⁾ 그 내용의 골자는 티베트의 정치 방식과 운용이 서구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적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람살라(Dahramsala)에 거주하고 있는 망명 정부 뿐만 아니라 대륙 내지의 시짱 자치구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실제로 중국 대륙의 시짱 자치구에서 공개 투표를 통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을 경우 티베트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나 문제는 대륙 내지의 티베트인들은 투표가 무엇인지, 중국 본토와의 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며, 실질적으로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그저 하루하루의 생활과 종교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다. 독립을 갈망하며 투표하는 티베트인들은 극소수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시 중국은 달라이 라마의 이런 구상을 일축했다.³⁴⁾

물론 인도 서북부에 근거지를 둔 망명정부의 상황은 다르다. 그들은 장기간 해외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왔으며 서방 세계와의 접촉도 낮설지 않다. 티베트인 2세들은 1959년 다람살라로 피난 온 그들의 선조와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들은 서방의 민족 관념을 통해 국가 건립의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대다수 청장년 티베트 2세들의 모임을 통해 티베트의 미래에 관해 고민하고 조직을 결성하여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2008년 3월의 시위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상상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아직 체념하지 않고 있다는 것

32) “티베트 망명 정부 동아시아 대표 락파 초고 인터뷰,” 『조선일보』, 2008. 3.17; 유사한 논의로 경제적 박탈로 인한 티베트 독립 운동의 근거를 논의한 이민자, “티벳 독립 운동의 경제적 배경,” 『동아연구』, 제36집(1998) 참조.

33) <http://www.xizang-zhiye.org/gb/ex/weilaixianfa/index.html> (검색일: 2008. 7. 22)

34) 심혁주(2003), p.88.

이다.³⁵⁾

광활하고 척박한 고원의 대지 속에서 흩어져 사는 티베트 민족들에게 시민사회라는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여



티베트 자치구 주민 10만명 가량이 한족인데 티베트 망명 정부는 이들이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8년의 산발적 시위에서 나타나듯이 그것은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직업적 승려집단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과격하게 표출되었다. 그런 시위와 소요를 지속적인 정치투쟁으로 묶어줄 인물이나 걸출한 조직은 현재화 되지 않았으며 티베트 시위의 이념적, 이론적 투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체적인 사회 의식 역시 수준 이하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요컨대 티베트인들의 대중국에 대한 분노를 이념화 이론화 하여 티베트 민족주의의 자양분으로 삼고 이를 중국과의 투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한 인물이나 조직-적어도 중국을 상대하거나 망명정부 조직을 대체할 정도의-은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것 같다.

이는 근대화적 시각에서 티베트 전체 인민의 이익과 미래를 고민하며 대중국 투쟁의 근거지를 규정할 물질 토대로서의 시민사회가 부재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티베트의 정치사회 분석에서 시민사회를 운위한다는 것이 낯설을 수 있으나 길항 관계의 한 축으로서 티베트인들의 전체적 역량을 평가할 때 이러한 분석은 시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경제적 자립 능력의 결여

인도와 네팔 북쪽에 위치한 티베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에 위치해 '세계의 지붕'으로 불린다. 수도 라싸는 해발 3,700m에 자리잡고 있으며 티베트 자치구의 평균 해발은 4,000m가 넘는다. 이렇듯 험준하고 황량한 땅이 대부분인 티베트를 중국이 고집스레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경우 티베트는 과연 시대적 대세인 세계화의 풍랑에서 최소한의 자립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티베트는 천연 자원은 금강석, 마그네슘, 철, 석탄, 크롬 등 70종이 넘게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가 엄청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7월 칭짱(靑藏)철도 개통 이후 1년 동안 철도 주변에서 대규모 구리, 납, 아연 매장지 16곳이 추가로 발견

35) 심혁주(2003), p.89.

되었다. 이 중 5곳은 2천만 톤의 구리와 천만 톤의 납, 아연을 매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다 방대한 삼림 목재와 수자원 및 태양열 자원 등이 미개척 상태로 남아 있고, 초대형 우라늄 광산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대화를 넘어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원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소중한 전략 지역인 것이다. 이런 자원의 보고로서 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적 가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고원 지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티베트는 무기 배치와 개발에 이상적이다. 중국의 원자력 연구 중심지로 기능해 온 '제9 아카데미'가 수년 동안 티베트의 북동부에 주둔했었고, 중국과의 잦은 분쟁 국가였던 인도와의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로서 티베트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⁶⁾

그러나 이러한 천연자원의 개발은 티베트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중앙 정부인 중국의 계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의 가공과 상품화 역시 한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티베트는 '내부 식민지'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고작 티베트의 문화를 파는 관광 문화 사업에 종사하거나 전통적인 목축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장 개발이 더디고 그래서 가장 소득이 적은 티베트의 이런 불평과 불만을 장기적 측면에서 해소하기 위해, 또 나름대로 해안 특구 지역과의 원활한 물자 공급의 편의를 위해 중국은 서부대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파생하는 수익의 창출과 분배는 다수의 한족을 위한 프로젝트가 되고 산악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티베트인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부 대개발로 더 많은 돈벌이 기회를 갖게 되는 외부 민족은 티베트로 유입될 것이고 생존력을 상실한 티베트인들은 더 오지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적 상황에서 과연 중국으로의 분리 독립 이후 최소한 그들은 경제적 자주와 자립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선 문맹률이 현저하게 높다. 고도의 산업 기술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산업 시설을 가동하고 운영할 인사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둘째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이 종래의 목축업을 바탕으로 한 생계유지를 변화시킬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셋째 중국 중앙의 재정에 의존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간 산업과 에너지 등 장치 산업에서 외부 의존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많은데 시장성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된다.³⁷⁾

36) 『조선일보』, 2008. 3. 16

37) 독립된 은둔 국가로서 신정 국가를 국가 정체성으로 가진다면 이런 근대화나 산업화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루 하루 자연과 부처의 신성을 닦아가면서 생을 유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근대화나 산업화에 바탕한 경제적 자립의 문제를 바탕으로 티베트 분리 독립의 한계를 논하는 것은 논리적이기 못할 수도 있다.

달라이 라마의 딜레마

1) 티베트 시위에 나타난 분열과 달라이라마의 위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의 위상은 말 그대로 활발이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다. 봉건적 신정 체제의 유제가 여전한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의 행동과 말 한마디는 어찌면 그래도 율법일 수도 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종교 문화적 습속이 정치 사회화 과정을 거쳐 티베트 인민들에 내면화된 신앙의 대상이다. 달라이 라마의 말과 행동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인 개인이나 집단은 아직 없었다. 달라이 라마가 가진 티베트의 구상으로서 중도주의적 접근은 망명정부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티베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내외적으로 공표되었다. 그러나 시위와 소요의 관성이 그렇다하더라도 2008년 3월 티베트 일원에서 시작된 정치적 시위는 달라이 라마의 거듭된 폭력 금지의 '말씀' 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무력 및 무장 투쟁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과격한 폭력 노선의 배후에 티베트 청년 동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이 라마는 연일 이런 폭력 노선과 시위의 확산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러한 사태가 확산일로를 걷는다면 달라이 라마 직에서 물러나겠노라고 배수진을 쳤다. 분명 티베트의 미래와 장래를 둘러싼 이견 노출이 내부적으로 있었으리라고는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공개적인 불화로까지 표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시위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달라이 라마의 말씀이 어느 시기에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달라이 라마의 위상이 티베트인들의 마음속에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말이 절대선이 아니라는 달라이 라마에 대한 신심의 균열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수 있다. 비폭력 평화주의를 설파하는 그의 대화 노선에 극렬한 무장투쟁만이 대안일 수 있다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주었고 달라이 라마가 주장하는 고도 자치가 아닌 티베트의 완전한 분리 독립만이 티베트인들의 최종 목표라고 해석할 수 있는 행동도 보였다.

중국 역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달라이 라마의 위상을 현저하게 흔들었다. 중국은 과거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정치제도와 억압적인 봉건 노예 사회에서 시름하고 있던 티베트를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민주 개혁을 단행하여 100만명이 농노들이 해방되었으며 지금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며 중국의 티베트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중국은 2008년 티베트의 시위를 철저하게 달라이 라마 집단이 이번 시위 사태를 획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짱 자치구를 분리 독립시키려는 정치적인 기도로 해석하였다. 이런 달라이 라마의 배후에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 통일

을 와해하고 민족단결을 무너뜨리려는 서방의 음모가 가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³⁸⁾

티베트 문제의 해결을 위한 14세 달라이 라마의 국제화 노선에 대한 공박을 통해 그의 위상과 영향력을 호도함으로써 달라이 라마를 무력화시키고자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티베트의 폭력 과격 노선의 배후로 달라이 라마를 지목함으로써 그의 평화주의적 노선의 국제적 이미지를 폄하하고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리를 비약하자면 대테러 전선에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티베트의 시위와 정치적 소요는 얼마든지 테러로 지목될 수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달라이 라마는 이제는 평화적 방법과 분쟁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평화의 사도나 평화의 전범이 아니라 테러 집단의 수괴가 되는 것이다. 중국이 노리는 음험한 의도라고 할 수 있으며 역설적으로 티베트의 정서적 심리적 통일의 구심점인 달라이 라마를 와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 전술이라고 할 것이다. 당연히 그것을 야기한 구조적 원인의 제공자는 중국임에도 티베트 인민과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미래에 대한 노선 불일치를 이용한 중국의 정치적 공세인 것이며 궁극으로는 이런 티베트 인들의 노력을 와해할 수 있으며, 이용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음험한 기도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³⁹⁾

2) 중국의 분할 지배 대응

사실상 티베트를 강제 합병해 시짱 자치구로 부르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달라이 라마는 국가적 통합을 저해하는 불편한 인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14세 달라이 라마는 생전에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티베트의 분리 독립의 정신적, 정치적 구심점으로 달라이 라마를 지목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고령의 달라이 라마가 유명을 달리하면 티베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심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생전에 달라이 라마를 지명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티베트의 분란 소요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를 '분리주의자'로 폄하하고 14세 달라이 라마가 지명한 판첸 라마를 유괴하고, 그들의 입맛대로 나이 어린 판

38) 중국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서방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어 내려하거나 이란 핵 문제나 이라크 문제 등 다른 국제 정치 문제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달라이 라마를 면담하는 등 티베트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39) 반대로 대화와 협상을 추구하는 달라이 라마를 중국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73세의 고령인 달라이 라마의 퇴장을 중국은 기다리고 있지만 그가 없이도 독립 운동이나 망명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사태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맞는 것보다 달라이 라마와 대화를 통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논리를 중국이 겁내는 것은 달라이 라마에 대한 정치, 종교적 위상이며 중국과의 타협으로 그 위상은 더욱 강화되고 티베트인들은 강고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첸 라마를 (티베트 불교의 제2인자)를 옹립한 것은 달라이 라마의 위상과 티베트인들의 구심점 역할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할 것이다.



14세 달라이 라마의 국제화 노선에 대한 공박을 통해 그의 위상과 영향력을 호도함으로써 달라이 라마를 무력화시키고자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4세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는 물론이고 망명 정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티베트인들 대다수에게 여전한 정신적 지도자임이 분명하다. 그는 2007년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골드 메달도 수상하였다. 이렇듯 아직도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달라이 라마가 있기에 중국에 강제 통합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티베트의 독립과 분리를 외치는 전 세계적 시위가 나름대로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14세 달라이 라마는 50년에 가까운 망명 생활 동안 그는 티베트의 독립과 자치를 주장하였고, 티베트와 같은 소수 민족의 보호와 종교적 화합을 위해 국제 사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해 왔다. 중국과의 대화가 원만하게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티베트 문제의 국제화를 통해 그나마 티베트의 실상을 세계적으로 알려온 것은 그의 활약과 역할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티베트인들과 티베트 망명정부에 대한 대응은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전형적인 분할지배(Divide and Rule)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주입식 교육과 이데올로기적 선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1996년 중국은 티베트에 대한 동화정책의 맥락에서 애국주의적 재교육, 정신문명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티베트에서 실시하였다. 그것은 목적은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종교적 추앙을 받고 있는 달라이 라마에 대한 믿음을 일반 티베트인들로부터 제거하는 것이었으며, 수도원을 집중적인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둘째는 일종의 통일전선 전술로서 중국은 해외 거주중인 티베트인들을 대상으로 물질적인 유혹과 파격적인 대우-거주, 취업 등의 문제에서-로 본토로의 귀국을 종용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셋째는 중국식 물량 공세와 세속적 자본주의화를 통한 양적 성장을 배경으로 티베트인들의 물질적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일상 속에서 물질적, 경쟁적 이윤양식과 생활 패턴을 이식함으로써 티베트의 고유의 정체성을 이간시키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티베트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부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티베트인들의 달라이 라마에 대한 신념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끊임 없

는 분란과 소요의 배후로 달라이 라마를 지목함으로써 달라이 라마의 국제적 위상과 국내적 권위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려 하고 있으며 티베트 일반 인민들의 신심 속에서 달라이 라마에 관한 종교적 신심을 들어내거나 희석시키는 공작을 통해 달라이 라마를 종교적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수법을 통해 원주민들의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분리시키거나 순응 세력과 저항 세력을 분리해 대응하려는 중국 측의 민족 동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달라이 라마가 생각하고 있는 티베트 구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명 1950-70년대의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에 대한 정책은 티베트의 분리 독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 독립의 구상은 티베트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정세와 티베트 내의 여러 가지 역량의 문제로 자치를 공식화하게 된다. 중국과 티베트와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할 때 분리 독립은 결코 쉬워보이지 않는다. 달라이 라마는 이것을 고민했을 것이다. 아마 분리 독립도 현대적 의미의 영토를 포함한 주권의 복원과 주권의 완벽한 행사라는 의미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중국과 티베트 역사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단월 관계의 복원이었을 것이다. 현재 달라이 라마가 독립 대신에 자치를 주장하는 그 내용도 사실은 중국-티베트 역사에서 나타나듯이 역사적 단월 관계 차원의 관계 재구축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정책을 분리 독립과 자치로 구분하다는 것이 어찌면 무의미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달라이 라마로서는



중국이 우려하는 독립이라는 카드를 버리고 자치의 내용성에 관해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중국이 홍콩이나 대만과 관계 맺는 고도자치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에서 나타난 단일 관계의 복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의 곤혹스러운 딜레마가 2008년 3월의 시위와 소요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이다. 달라이 라마의 위상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 전략이라는 비폭력 중도주의 노선은 티베트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현실적 논리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듯하다. 기껏해야 티베트에 우호적인 할리우드의 스타인 샤론 스톤이나 리처드 기어의 발언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티베트 문제와 달라이 라마를 이간하려 한다.

2008년 3월 티베트의 정치적 시위와 소요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감정의 골만 깊어졌을 뿐이다. 티베트 문제는 세계의 평화 축제라는 올림픽이라는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또 다시 잠시 가려진 상태이다. 모든 티베트 문제의 중심에 14세 달라이 라마가 있다. 아니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제도가 있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14세 달라이 라마는 고령이다. 중국은 티베트 문제를 지구전과 소모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흔히 강자가 하는 수법의 하나로서 무시함으로써 지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14세 달라이 라마의 열반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14세의 달라이 라마는 여전히 활발로서 티베트 인민의 추앙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14세의 달라이 라마는 다시 환생해서 15세의 달라이 라마로 이어질 것인가? 티베트 문제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나 그런 툴쿠(tulku)나 부처의 가피(加被)로 현실의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 김재기, “중국의 민족문제와 티베트 이슈 : 화평해방 17개조 협의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0집(2004).
- 김재기, “티베트의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동의 기원과 전개,” 『대한정치학회보』, 13집 3호(2006).
- 게일런 로웰, 『달라이 라마 나의 티베트』, 이종인 역(서울: 시공사, 2000).
- 길희성, 1997. “티베트 불교 민족주의의 역사적 고찰.” 『동아연구』제36집, 17~59.
- 김규현, 『티베트 역사 산책』(서울: 정신세계사, 2003).
-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 그 역사적 관계에 대한 연구사적 이해』(서울: 소나무, 2000).
- 노진선미,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 소수민족 정책 연구: 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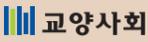
로』(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山口瑞鳳, 『チベット 下』(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4).
 심혁주, 2003. “‘티벳지위’에 관한 중국정부와 달라이 라마의 태도 분석과 전망
 (1950~2020): ‘티벳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57~92.
 아시아마 유미코 편저, 『티베트 달라이라마의 나라』, 김한웅 역(서울: 이산, 2007). 이민자,
 “티벳 독립 운동의 경제적 배경,” 『동아연구』, 제36집(1998).
 쿤가 삼텐 데와창, 『티벳 전사』, 홍성녕 역(서울: 그물코, 2004).
 토머스 레어드, 『달라이 라마가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 황정연 역(서울: 웅진씽크빅,
 2008).
 『연합뉴스』
 『조선일보』
 영화 <쿤둔>
 www. tibet. net
 www. tibet. org
 www. xizang-zhiye. org



도서관내

사상과 혁명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러시아와 중국혁명이 갖고 있는
 진면목과 혁명의 뒤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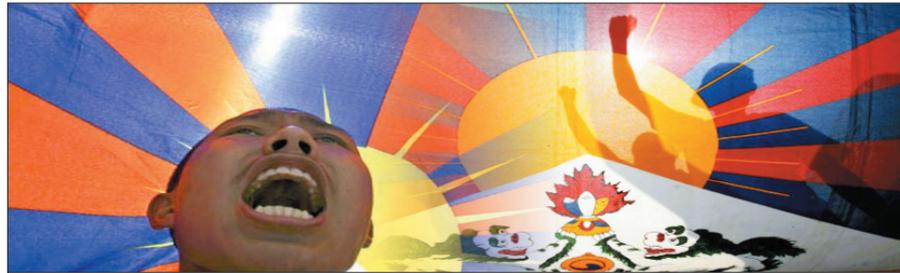
교양사회

조정남 편역 · 현대정치외 민족문제 / 값 10,000원

주요 목차

제1부 프랑스 혁명사상과 유토피아
 제2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
 제3부 러시아혁명
 제4부 중국혁명

THE GOVERNMENT OF TIBET IN EXILE

**Resolutions on Tibet**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353 \(XIV\) New York, 1959](#)

Calls for respect fo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Tibetan people and for their distinctive cultural and religious lif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723 \(XVI\) New York, 1961](#)

Solemnly renews its call for the cessation of practices which deprive the Tibetan people of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freedoms, including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079 \(XX\) New York, 1965](#)

Solemnly renews its call for the cessation of all practices which deprive the Tibetan people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ch they have always enjoyed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 Report on: The Questions of Tibet, The rule of Law, Geneva, 1959 \(Excerp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report on Tibet and the Chinese People's Republic, Geneva, 1960 \(Excerpt\)](#)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14 October 1987](#)

Gravely concerned by the recent disturbances in Lhasa which are reported to have caused many deaths

[West German Bundestag, Bonn, 15 October 1987](#)

The German Parliament notes that the situation in Tibet has changed for the worse during the last weeks.

[United States Congress, S. Con. Res. 129, Washington, DC -16 September 1988](#)

Expressing the support of the Congress for the Dalai Lama and his proposal to promote peace, protect the environment, and gain democracy for the people of Tibet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Written Declaration NO. 173
– 5 October 1988

Aware of the disturbances in Tibet and the Tibetan people's wish to strengthen its national independence and rights to survival as well as to the development of its culture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15 March 1989

Having regard to recent demonstrations in Tibet at which the Chinese security forces opened fire and numbers of people were killed and many others injured

United States Congress, S. Con. Res. 82, Washington, DC – 15 March 1989

Expressing the concern of the Senate for the ongoing human rights abuses in Tibet

Italian Parliament – Commission of Foreign Affairs, Rome – 12 April 1989

To inquire about the present situation in Tibet

United States Congress, H. Con. Res. 63, Washington, DC – 16 May 1989

Tibetans engaged in peaceful demonstrations in Lhasa were fired on by Chinese authorities, reportedly killing 30 to 60 persons and injuring hundreds

United States Congress, S. Con. Res. 79, Washington, DC – 5 October 1989

To congratulate His Holiness the XIV Dalai Lama of Tibet for being awarded the 1989 Nobel Peace Prize.

United States, 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 Fiscal Years 1988 and 1989, Washington, DC

Australian Senate Resolution – December 6, 1990,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June 6, 1991

Expresses its deep concern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Tibet

UN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Resolution 1991/10 Geneva, August 23, 1991

At its forty-third session, the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adopted, on 23 August 1991, resolution 1991/10 entitled "Situation in Tibet".

United States Congress, H. Con. Res. 106, Washington, DC – 27 May 1993

Urging the President to raise, at the highest level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issue of Chinese population transfer into Tibet in an effort to bring about an immediate end to that government's policy on this issue.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15 September 1993

A resolution on the detention of the Tibetans, Gendun Rinchen, Lobsang Yontan [sic] and Damchoe Pemo, and other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ibet.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17 May 1995
Panam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ject in Tibet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 13 July 1995
On the situation in Tibet and the disappearance of the six-year old Panchen Lama

Canada-China Relations - 15 June 1995
Motion Respecting Human Rights in China and Tibet adopted

United States Congress, H. Con. Res. 106, Washington, DC - 8 September 1995
Expressing the sense of the Senate welcoming His Holiness the Dalai Lama on his visit to the United States.

Australian Senate Resolution - 30 November 1995
Notes that China has announced the selection of a new Panchen Lama in an attempt to overrule the Dalai Lama's choice of five months ago

Basque Parliament, Basque Autonomous Country, Spain -12 December 1995
Declares its support... Pays homage to the Tibetan people

United States Congress, S. Con. Res. 43, Washington, DC - 13 December 1995
Expressing the sense of Congress regarding Wei Jingsheng; Gedhun Choekyi Nyima, the next Panchen Lama of Tibet; and the human rights practice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 14 December 1995
Resolution on the selection of the Panchen Lama and religious freedom in Tibet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18 April 1996
Resolu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resolution on China and Tibet. Submitted to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position of the EU countries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23 May 1996 *Resolu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 gravely concerned by reports from Beijing and Lhasa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of occupied Tibet have widened a ban on pictures of the Dalai Lama from monasteries and temples to include schools and private homes, whereas pictures of the Dalai Lama in Tibet had been allowed since 1979*

The statement from the Saami Parliament - 26 May 1996
On behalf of the Saami people in Norway, Sweden and Finland, the Nordic Saami Parliaments support the basic rights of the Tibetan people to decide upon their own futur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self-determination as laid down by the United Nations.

German Bundestag, Bonn, 20 June 1996
Since the resolution of 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passed on 15 October 1987 by all Parliamentary Groups in comm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ibet has not improved, but has further deteriorated.

[Belgian Parliament, 20 June 1996](#)

The Belgian Parliament approved on June 20th a long and detailed resolution on the situation in Tibet.

[Parliament of the Principality Liechtenstein, 21 June, 1996](#)

Petition concerning a resolution of the Parliament to the effect that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Receives the Dalai Lama

[Australian Senate Resolution – 17 September 1996](#)

Calls for the cessation of any practices which would deprive the Tibetan people of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freedoms

[Australian Senate Resolution 5 March 1997](#)

seeks immediate information from the Chinese Government on Ngawang Choephel's whereabouts and well-being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13 Mar 1997](#)

urged Beijing to give an official and positive response to the Dalai Lama's proposals

[United States Senate Resolution – 11 March 1997](#)

Expressing the sense of the Senate regarding United States opposition to the prison sentence of Tibetan ethnomusicologist Ngawang Choephel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ustralian Senate Resolution – 29 May 1997](#)

[Australian Senate Resolution 24 November 1997](#)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16 Jan 1998](#)

Resolution on the appointment of an EU special representative for Tibet

[The Parliament of the Czech Republic – 20 March 1997](#)

[European Parliament, 13 May 1998](#)

To take steps to ensure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UN rapporteur on Tibet

[Joint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 Irish Parliament, 21 July 1998](#)

[United States Senate Resolution – September 17, 1998](#)

[United States Senate Resolution – February 12, 1999](#)

[Saami Parliaments' resolution on Tibet](#)

[European Parliament, 13 April 2000](#)

[United States Senate Resolution – 10 March 2000](#)

[Resolution on Tibet by Sami Parliament](#)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EU human rights prioritie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upcoming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in Geneva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Religious freedom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solution on the Situation in Eastern Turkestan and Tibet](#)

[Senate Urges U.S. to Spotlight China's Rights Record at Geneva](#)

[House Resolution Urges China to End Religious Persecution](#)

[Beijing's application to host the 2008 Olympic Games](#)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 Resolution 1353
(XIV)

New York, 1959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the principles regarding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freedoms set out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0 December 1948,

Considering tha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freedoms to which the Tibetan people, like all others, are entitled include the right to civil and religious liberty for all without distinction,

Mindful also of the distinctive cultural and religious heritage of the people of Tibet and of the autonomy which they have traditionally enjoyed,

Gravely concerned at reports, including the official statements of His Holiness the Dalai Lama, to the effect tha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freedoms of the people of Tibet have been forcibly denied them,

Deploring the effect of these events in increasing international tension and embittering the relations between peoples at a time when earnest and positive efforts are being made by responsible leaders to reduce tension and improve international relations,

- 1) *Affirms its belief* that respect for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essential for the evolution of a peaceful world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 2) *Calls* for respect fo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Tibetan people and for their distinctive cultural and religious lif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 Resolution 1723
(XVI)

New York, 1961

The General Assembly,

Recalling its resolution 1353 (XIV) of 21 October 1959 on the question of Tibet,

Gravely concerned at the continuation of events in Tibet, including the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Tibetan people and the suppression of the distinctive cultural and religious life which they have traditionally enjoyed,

Noting with deep anxiety the severe hardships which these events have inflicted on the Tibetan people, as evidenced by the large-scale exodus of Tibetan refugees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Considering that these events violate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freedoms set out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nations, and have the deplorable effect of increasing international tension and embittering relations between peoples,

- 1) *Reaffirms its conviction* that respect for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essential for the evolution of a peaceful world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 2) *Solemnly renews* its call for the cessation of practices which deprive the Tibetan people of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freedoms, including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 3) *Expresses the hope* that Member States will make all possible efforts, as appropriate, towards achieving the purposes of the present resolutio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 Resolution 2079
(XX)

New York, 1965

The General Assembly

Bearing in mind the principles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et forth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affirming its resolutions 1353 (XIV) of 21 October 1959 and 1723 (XVI) of 20 December 1961 on the question of Tibet,

Gravely concerned at the continued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the people of Tibet and the continued suppression of their distinctive cultural and religious life, as evidenced by the exodus of refugees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 1) *Deplores* the continued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the people of Tibet;
- 2) *Reaffirms* that respect for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essential for the evolution of a peaceful world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 3) *Declares* its conviction tha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ibet and the suppression of the distinctive cultural and religious life of its people increase international tension and embitter relations between peoples;
- 4) *Solemnly* renews its call for the cessation of all practices which deprive the Tibetan people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ch they have always enjoyed;
- 5) *Appeals* to all States to use their best endeavors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present resolution.

ICJ Report on Tibet 1959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Report on:
The Question of Tibet
The rule of Law
Geneva, 1959

(EXCERPT)

Introduction to the evidence on Chinese activities in Tibet

The allegations agains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n be fitted into three broad legal categories:

- 1) Systematic disregard for the obligations under the Seventeen-Point Agreement of 1951;
- 2) Systematic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the people of Tibet;
- 3) Wanton killing of Tibetans and other acts capable of leading to the extinction of the Tibetans as a national and religious group, to the extent that it becomes necessary to consider the question of Genocide.

There is some inevitable overlap between these categori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respect for religious belief, where there is this obligation under the Seventeen-Point Agreement [Article 7] an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18].

The significance of these three legal categories may be briefly explained. Violation of the 1951 Agreement by China can be regarded as a release of the Tibetan Government from its obligations, with the result that Tibet regained the sovereignty which she surrendered under the Agreement. This question is discussed in the part of this report entitled "*The Position of Tibet in International Law.*" For this reason the violations of the

Agreement by China amount to more than a matter of domestic concern between Tibet and China. What is at stake is the very existence of Tibet as a member of the family of nations, and this matter concerns the whole family of nations. Evidence showing the systematic violation by China of the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is therefore printed *in extenso*.

Any systematic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any part of the world should, it is submitted, be a matter for discussion by the United Nations. For this reason the evidence which indicates violation on a systematic scale of the rights of the Tibetan people as human beings is printed *in extenso*. Most people will agree that in the sphere of human rights, some rights are fundamental. The rights of the Tibetans which appear to have been ruthlessly violated are of the most fundamental – even that of life itself. With violations of this gravity it is not a question of human rights being modifi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local conditions. It is a question of conduct which shocks the civilized world and does not even need to be fitted into a legal category. The evidence points to a systematic design to eradicate the separate national, cultural and religious life of Tibet.

Genocide is the gravest crime known to the law of nations. No allegation of Genocide should be made without the most careful consideration of evidence that killings, or other acts prohibited by the Genocide Convention, however extensive, are directed towards the destruction in whole or in part of a particular group which constitutes a race, a nation or a religion. The facts, as far as they are known are set out *in extenso*. It is submitted, with a full appreciation of the gravity of this accusation, that the evidence points at least to a prima facie case of Genocide agains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case merits full investigation by the United Nations.

The evidence submitted against China is printed verbatim in this report. Statements made by the official press and radio of the Chinese People's Republic are reproduced at perhaps inordinate length, and even so amount to no more than specimens of the Chinese account of the recent history of Tibet. Space does not permit a fuller inclusion, but it is considered that the selection is at least typical of the official Chinese accounts. The accounts given by Tibetan leaders in exile and refugees on the one hand, and Chinese spokesmen and Tibetan collaborators on the other are

reproduced with a minimum of editing and running commentary. By and large the accounts given by Tibetans are self-evidently linked to the specific legal category under which they are cited; accounts from Chinese sources are by and large self-evidently inconsistent, though in this case there is a certain amount of running commentary.

At the beginning of each section of evidence presented is a summary of contents, an assessment of the effect of the evidence and, in some cases, a critical discussion of the Chinese accounts. Finally, a summary of conclusions is offered. A note on the leading personalities involved precedes the general body of evidence, together with a list of abbreviations used in the extracts and in the commentary.

From the whole tangled mass of propaganda, allegation and counter-allegations made by the principal protagonists in the Tibetan situation, one statement stands out. The Dalai Lama in his statement at Mussoorie, India, on June 20th, 1959 said:

"I wish to make it clear that I have made these assertions against Chinese officials in Tibet in full knowledge of their gravity because I know them to be true. Perhaps the Beijing Government are not fully aware of the facts of the situation but if they are not prepared to accept these statements let them agree to an investigation on the point by an international commission. On our part I and my Government will readily agree to abide by the verdict of such an impartial body."

The issue on the evidence submitted in this report is to a large extent who is telling the truth. On this issue this proposal by the Dalai Lama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s setting up its Legal Inquiry Committee, but it is not known whether this Committee will be allowed to enter Tibet. Nor is it certain that a United Nations Commission, if one is formed, will be able to make on the spot inquiries in Tibet. But if entry is refused it will be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Government has not so far accepted the Dalai Lama's proposal. On the question of credibility the obvious inference is there to be drawn.

The Question of Genocide

Genocide is defined in the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Genocide, 9th December 1948, which was agreed in pursuance of the resolution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1) that Genocide is a crime against the law of nations.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took to prevent and punish Genocide. There is therefore an obligations upon each and every one of the States who were party to the Convention to take action if a case of Genocide comes to light.

The Convention defines both the *mens rea*(2) and the *actus reus* (3) of Genocide in specific terms. The *actus reus* is committed in one or more of several ways as defined in Article 2:

- a) killing;
- b) causing serious bodily or mental harm;
- c) subjection to living conditions leading to the total or partial destruction of the group;
- d)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the birth of children within the group;
- e) forcible transfer of children of the group to another.

Conspiracy to commit Genocide, incitement to commit Genocide, attempted Genocide and aiding and abetting Genocide are all declared punishable by Article 3. The *mens rea* of Genocide is defined as the intention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a national, ethnic, racial or religious group as such.(4)

It cannot be overemphasized that one must deliberate carefully before making an allegation of Genocide. It is probably the gravest crime known to the law of nations. For this reason, the evidence must be very carefully considered, and all inferences from the evidence must be logically supportable.

Evidence of the actus reus of Genocide:

- (i) Religious groups: The evidence that there has been widespread

killings of Buddhist monks and lamas in Tibet is clear and explicit. One need only refer to the evidence in this category under Section A (II). If this evidence is to be believed, there has been a destruction by killing of a part of a religious group.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believes that this evidence raises at the very least a case which requires thorough and careful investigation.

(ii) National groups: The account of wanton killings in Tibet points to killings on a wider scale than that of religious groups.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evidence of indiscriminate air attacks, and of deliberate shooting of Tibetans who were in no way engaged in hostilities. Evidence of such killings is given in Section B. It should also be stressed that the alleged deportation of 20,000 Tibetan children is directly contrary to Article 2 (e).⁽⁵⁾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hat this report be fully investigated.

The Memorandum contains important evidence on the forcible removal of children to China:

"Above all they have made thousands of homes unhappy by forcing young boys and girls to go to China for de-nationalization, thus getting them indoctrinated to revolt against our own culture, traditions and religion. To this end they have sent more than five thousand boys and girls up to now to China proper."

Here is clear prima facie evidence of a violation of Article 2(e) of the Genocide Convention.

Evidence of the mens rea of Genocide:

It is very rarely in criminal trials that direct evidence of *mens rea* is available. The fact that there is no official Chinese policy statement directed towards the destruction of the Tibetans is no ground for withholding an accusation of Genocide if an inference of the requisite intention can properly be drawn. For this purpose it is permissible to take into account acts which point to the extinction of a national or religious group whether or not such acts are in themselves acts of Genocide. For if a systematic intention to destroy a nation or religion can be shown by acts which are not declared criminal by the Genocide Convention, the acts on which

these inferences are based can properly be adduced as evidence of general intention. If in addition there are acts which are capable in law of amounting to Genocide, and such acts are part of a consistent pattern of destroying a nation or religion, the inference of intent in non-genocidal acts is equally valid in respect of acts which are within those prohibited by the Genocide Convention.

For this reason, the overall assessment of the evidence in Sections A and B is relevant and important. If such evidence points to an intention to destroy religion in Tibet, and to assimilate the Tibetan way of life to the Chinese, there is evidence of the required intent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a national or religious group. It has been argued that the activities of the Chinese in Tibet point to the conclusion that this was the intention behind the Chinese acts in the fields described in Sections A and B. The ruthless efficiency is otherwise difficult to explain. The evidence in these two sections should be carefully studied.

This inference has been drawn from these and other facts by Tibetans from the Dalai Lama downwards. The Tibetan opinions on the Chinese intentions are as follows:

Statement of the Dalai Lama in Mussoorie, June 20, 1959:

In the course of his press conference the Dalai Lama stated:

"The ultimate Chinese aim with regard to Tibet, as far as I can make out, seems to attempt the extermination of religion and culture and even the absorption of the Tibetan race. . . Besides the civilian and military personnel already in Tibet, five million Chinese settlers have arrived in eastern and north-eastern Tso, in addition to which four million Chinese settlers are planned to be sent to U and Sung provinces of Central Tibet. Many Tibetans have been deported, thereby resulting in the complete absorption of these Tibetans as a race, which is being undertaken by the Chinese."

Memorandum:

The statement already quoted from the Memorandum on the actus

reus of Genocide also contains the inference by the authors of the document that the aim was to get the children to "revolt against their own culture, traditions and religion."

Statement of Chaghoe Namgyal Dorje:

"... My experience of four years' work with the Chinese convinced me that their propaganda was false and that their real intention was to exterminate us as a race and destroy our religion and culture.

"Communists are enemies not only to Buddhism but to all religion. It has been told to me that more than 2,000 Lamas had been killed by the Chinese. I have personal knowledge of such attacks on 17 Lamas.

"Even if no help is coming we shall fight to death. We fight not because we hope to win but that we cannot live under Communism. We prefer death.

We are fighting not for a class or sect. We are fighting for our religion, our country, our race. If these cannot be preserved we will die a thousand deaths than surrender these to the Chinese."

These inferences were drawn by people who know as no one outside Tibet can know the full extent of Chinese brutality in Tibet. They are in a better position than any outsider to assess the motives behind the Chinese oppression, including the slaughter, the deportations and the less crude methods, of all of which there is abundant evidence.

It is therefore the considered view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that the evidence points to:

(a) a prima facie case of acts contrary to Article 2(a) and (e) of the Genocide Convention of 1948.

(b) a prima facie case of a systematic intention by such acts and other acts to destroy in whole or in part the Tibetans as a separate nation and the Buddhist religion in Tibet.

Accordingly, the Commission will recommend to its Legal Inquiry Committee that existing evidence of Genocide be fully checked, that further evidence, if available, be investigated, that unconfirmed be investigated and checked. But the final responsibility for this task rests with the formal organ of world authority and opinion. The Commission therefore earnestly hopes that this matter will be taken up by the United Nations. For what at the moment appears to be attempted Genocide may become the full act of Genocide unless prompt and adequate action is taken. The life of Tibet and the lives of Tibetans may be at stake, and somewhere there must be sufficient moral strength left in the world to seek the truth through the world's highest international organ.

Footnotes

- 1) Resolution 96(1) of December 11, 1946.
- 2) *mens rea*, a term from the criminal law, means the state of mind necessary to make criminal the conduct which is prohibited.
- 3) *Actus reus* means the conduct which the law prohibits.
- 4) Article 2.
- 5) The report was contained in an article in the London "Daily Mail" on January 1st, 1959. Whilst a newspaper report cannot without more be regarded as an authentic primary source, the statement of a competent and reputable journalist (Mr. Noel Barker) raises at least a case for investigation.



ICJ Report on Tibet 1960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Report on:
Tibet and the Chinese People's Republic
Geneva, 1960

(EXCERPT)

REPORT TO THE SECRETARY GENERAL

The Legal Inquiry Committee on Tibet has the pleasure to submit to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ts Report on those aspects of events in Tibet which the Committee was called upon by its terms of reference to consider. The Committee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GENOCIDE

According to the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Genocide, which w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in December, 1948, human groups against which genocide is recognized as a crime in international law are national, racial, ethnical and religious. The COMMITTEE found that acts of genocide had been committed in Tibet in an attempt to destroy the Tibetans as a religious group, and that such acts are acts of genocide independently of any conventional obligation. The COMMITTEE did not find that there was sufficient proof of the destruction of Tibetans as a race, nation or ethnic group as such by methods that can be regarded as genocide in international law. The evidence established four principal facts in relation to genocide:

(a) that the Chinese will not permit adherence to and practice of Buddhism in Tibet;

(b) that they have systematically set out to eradicate this religious belief in Tibet;

(c) that in pursuit of this design they have killed religious figures because their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was an encouragement and example to others;

(d) that they have forcibly transferred large numbers of Tibetan children to a Chinese materialist environment in order to prevent them from having a religious upbringing.

The COMMITTEE therefore found that genocide had been committed against this religious group by such methods.

HUMAN RIGHTS

The COMMITTEE examined evidence in relation to human righ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proclaim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he COMMITTEE in considering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took into account that economic and social rights are as much a part of human rights as are civil liberties. They found that the Chinese communist authorities in Tibet had violated human rights of both kinds.

The COMMITTE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in Tibet had violated the following human rights, which the COMMITTEE considered to be the standards of behavior in the common opinion of civilized nations:

ARTICLE 3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was violated by acts of murder, rape and arbitrary imprisonment.

ARTICLE 5

Torture and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were inflicted on the Tibetans on a large scale.

ARTICLE 9

Arbitrary arrests and detention were carried out.

ARTICLE 12

Rights of privacy, of home and family life were persistently violated by the forcible transfer of members of the family and by indoctrination turning children against their parents. Children from infancy upwards were removed contrary to the wishes of the parents.

ARTICLE 13

Freedom of movement within, to and from Tibet was denied by large-scale deportations. ARTICLE 16

The voluntary nature of marriage was denied by forcing monks and lamas to marry.

ARTICLE 17

The right not to be arbitrarily deprived of private property was violated by the confiscation and compulsory acquisition of private property otherwise than on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 freely expressed wish of the Tibetan People.

ARTICLE 18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were denied by acts of genocide against Buddhists in Tibet and by other systematic acts designed to eradicate religious belief in Tibet.

ARTICLE 19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was denied by the destruction of scriptures, the imprisonment of members of the Mimang group and the cruel punishments inflicted on critics of the regime.

ARTICLE 20

The right of free assembly and association was violated by the suppression of the Mimang movement and the prohibition of meetings other than those called by the Chinese.

ARTICLE 21

The right to democratic government was denied by the imposition from outside of rule by and und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RTICLE 22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the dignity and free development of the personality of man were denied. The economic resources of Tibet were used to meet the needs of the Chinese. Social changes were adverse to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of the Tibetan people. The old culture of Tibet, including its religion, was attacked in an attempt to eradicate it.

ARTICLE 24

The right to reasonable working conditions was violated by the exaction of labour under harsh and ill-paid conditions.

ARTICLE 25

A reasonable standard of living was denied by the use of the Tibetan economy to meet the needs of the Chinese settling in Tibet.

ARTICLE 26

The right to liberal education primarily in accordance with the choice of parents was denied by compulsory indoctrination, sometimes after deportation, in communist philosophy.

ARTICLE 27

The Tibetans were not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ir own community, a culture which the Chinese have set out to destroy.

Chinese allegations that the Tibetans enjoyed no human rights before the entry of the Chinese were found to be based on distorted and exaggerated accounts of life in Tibet. Accusations against the Tibetan "rebels" of rape, plunder and torture were found in cases of plunder to have been deliberately fabricated and in other cases unworthy of belief for this and other reasons.

THE STATUS OF TIBET

The view of the COMMITTEE was that Tibet was at the very least a *de facto* independent State when the Agreement of Peaceful Measures in Tibet was signed in 1951, and the repudiation of this agreement by the Tibetan Government in 1959 was found to be fully justified. In examining the evidence, the COMMITTEE took into account events in Tibet as related in authoritative accounts by officials and scholars familiar at first hand with the recent history of Tibet and official documents which have been published. These show that Tibet demonstrated from

1913 to 1950 the conditions of statehood as generally accepted under international law. In 1950 there was a people and a territory, and a government which functioned in that territory, conducting its own domestic affairs free from any outside authority. From 1913–1950 foreign relations of Tibet were conducted exclusively by the Government of Tibet and countries with whom Tibet had foreign relations are shown by official documents to have treated Tibet in practice as an independent State.

Tibet surrendered her independence by signing in 1951 the Agreement on Peaceful Measures for the Liberation of Tibet. Under that Agreement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Chinese People's Republic gave a number of undertakings, among them: promises to maintain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of Tibet, to maintain the status and functions of the Dalai Lama and the Panchen Lama, to protect freedom of religion and the monasteries and to refrain from compulsion in the matter of reforms in Tibet. The COMMITTEE found that these and other undertakings had been violated by the Chinese People's Republic, and that the Government of Tibet was entitled to repudiate the Agreement as it did on March 11, 1959.

On the status of Tibet the previous inquiry was limited to considering whether the question of Tibet was a matter essential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the Chinese People's Republic. The COMMITTEE considered that it should confine itself to this question and it was therefore not necessary to attempt a definitive analysis in term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of the exact juridical status of Tibet. The COMMITTEE was not concerned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status of Tibet in 1950 was one of de facto or de jure independence and was satisfied that Tibet's status was such as to make the Tibetan question one for the legitimate concern of the United Nations even on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matters "essential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 State.

Purshottam Trikamdass, Chairman

Arturo A. Alafiz
T.S. Fernando
K. Bentsi-Enchill
Ong Huck Lim

N.C. Chatterjee
R.P. Mookerjee
Rolf Christophersen
M.R. Seni Pramoj

Saami Parliaments' resolution on Tibet

3 March 2000

THE SITUATION IN TIBET

The Sami Parliament will, while discussing The Governmental Report to the Parliament no. 21 (1999 – 2000) Focusing on Human Dignity and Values, put the emphasize on the fact that the serious political situation in Tibet has still not changed. Today Tibet is still an occupied country, and reports tell over and over again about serious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the Tibetan people. Furthermore,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cultural and religious freedom are increasing.

The Sami Parliament is aware of the draft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hina, submitted to the 56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 Commission (UNHRC). This draft resolution also contains a paragraph expressing concern for the situation in Tibet.

In the Governmental Report to the Parliament no. 21 (1999 – 2000) Focusing on Human Dignity and Values, the Norwegian Government emphasizes the human right dialogue with China to be strengthened. Among other things the Government says that the Tibet issue is to be discussed with Chinese authorities in those connections where it is natural. From the Norwegian side the Chinese authorities are urged to open up a dialogue with H.H. Dalai Lama, and the importance of respect for the Tibetans possibility to exercise their religion and culture is underlined.

Hereby, the Sami Parliament urges Norway in the strongest possible way,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ir commitments, and co-sponsor the draft resolution regarding the human right situation in China. Additionally, the Sami Parliament encourages Norway to further accentuate the Tibetan situation in the draft resolution. At the same time, the Sami Parliament calls upon Norwegian authorities, stressing the membership of Norway in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to address the situation in Tibet in all their oral statements during this year UNHRC session.

European Parliament, 13 April 2000

The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Date 13 April 2000

– having regard to its earlier resolutions on the occupation of Tibet and the repression of its people by the Chinese authorities,

A. whereas respect for human rights is a prominent priority of EU policies and one of the founding principles of the Union,

B. whereas the Peking government is refusing to allow Mrs Mary Robinson,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have access to Tibet,

C. pointing out that informal talks under way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Tibetan religious authorities have not led to an improvement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ibet, particularly freedom of expression,

D. having regard to His Holiness the Dalai Lama's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t for a peaceful solution of the Tibetan problem,

E. having regard to the conclusions on China issued by the Council during the General Affairs Council meeting of 20 March 2000,

F. having regard to the 56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G. deeply concerned by the fact that the EU–China Human Rights dialogue has not produced enough progress on the ground and reiterating the importance it attaches to the opportunity presented by the EU–China Human Rights dialogue and Cooperation programme, which foresees joint work on the promotion and respec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China,

H. deeply concerned by the fact that the Tibetan cultural and spiritual heritage is threatened with extinction, inter alia by a large-scale transfer of ethnic Chinese to Tibet and the continuing and widespread restrictions on fundamental freedoms, notably freedom of assembly, expression, association and religion,

1. Condemns the ongoing discrimination of the Tibetan people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religious, political, educational, language and cultural grounds;
2. Calls on the Chinese government to open the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on the future of Tibet, with the Dalai Lama and on the basis of his five-point peace plan: (1) Transformation of the whole of Tibet into a zone of peace; (2) Abandonment of China's population-transfer policy; (3) Respect for the Tibetan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democratic freedoms; (4) Restoration and protection of Tibet's natural environment; (5) Commencement of earnest negotiations on the future autonomous status of Tibet;
3. Calls on the Commission and the Council to express publicly their concerns about the situation in Tibet and in China and to raise them in meetings with China at all levels and expects the Council to abandon its "no action" approach to China, which is prevent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China from being discussed;
4. Urges the Council to take the initiative, at the current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in Geneva, on the adoption of a resolution expressing concern at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in China, including the continual oppression of Tibet;
5. Instructs its President to forward this resolution to the Council, the Commission, the government of China, His Holiness the Dalai Lama and the Parliament in exile of Tibet.

Resolution on Tibet by Sami Parliament

30th September 2000

The Saami Conference, representing Saami organisations in Norway, Sweden, Finland and Russia, at its 17th meeting in Kiruna, Sweden:

1. In the strongest possible way, condemns the ongoing Chinese occupation of Tibet. This year it is 50 years since the Chinese army attacked Tibetan territory, and made independant Tibet an occupied country;
2. Expresses grave concern regarding the reports on serious violations of the Tibetan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he increasing restrictions on their exercize of cultural and religious freedom;
3. Gives strong support to the Tibetan people and their non-violent fight for freedom;
4. Expresses its deep concern for the survival of the Tibetan people and their distinct culture, identity and civilization;
5. Requests the governments of Finland, Norway, Russia and Sweden to encourage the Chinese authorities to enter into a dialogue and negotiations with His Holiness the Dalai Lama, with the aim to
 - end the occupation of Tibet;
 - end the Chinese population transfer policy, which threatens the very survival of the Tibetan people;
 - respec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the Tibetan people;
 - start the demilitarisation of Tibet;
 -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of Tibet.

Human rights: Religious freedom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5 February 2001

Human rights: Religious freedom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5-0106, 0116, 0124, 0142 and 0145/2001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freedom of relig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European Parliament,

? having regard to its previous resolution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China, on Tibet and on the Union's prioritie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March 2001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mmission in Geneva,

? having regard to the conclusions of the EU-PRC summit meeting of 21 December 1999 and the Council conclusions of 22 January 2001 on the EU-PRC dialogue on human rights,

? having regard to Article 18 on freedom of religion of the United Nations?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 whereas, in its report (COM(2000)552 final)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cation 'uilding a comprehensive partnership with China? the Commission notes that the situation in China has regressed in terms of respect for civil, political and religious rights, a finding which is endorsed in the conclusions of the General Affairs Council of 22 January 2001,

B. whereas, ever since making it compulsory for places of worship to be registered in 1994, the authorities of the PRC have been unceasing in their efforts to further limit the exercise of the freedom of religion,

C. whereas State control over religion is already evident in the

restricted number of religions that are officially recognised, and whereas any religious activity that has not been registered by the official associations is regarded as illegal,

D. whereas, although the zeal with which the policy of repressing religious activity is enforced varies depending on the attitude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supposedly autonomous Region of Tibet that policy is pursued systematically and implacably,

E. whereas the religious, cultural and national heritage of the Tibetan people is threatened with extinction,

F. whereas the Falun Gong organisation was officially declared illegal in China on 22 July 1999, an arrest warrant was issued for its founder, Li Hung-Zhi on 29 July, and in the last two years, according to reports, some 50 000 members of the Falun Gong movement have been arrested, of whom almost 25 000 are now in prison, have been sent to forced labour camp or have been forcibly committed to mental hospitals, while to date 137 of them have died after being ill-treated or tortured in the course of their arrest or detention,

G. noting that since 1989, when the Vatican set up its own Bishops' Conference, tensions between the authorities in Beijing and the non-official Catholic Church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nd many prominent members of the clergy of the non-official Catholic Church are still in prison, or have had restrictions placed on their freedom of movement, as a result of their refusal to support the official Church,

H. drawing attention to the policy of expulsion and systematic arrest of foreign Protestant priests and the harassment to which members of unregistered Protestant churches are subject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I. condemning the destruction of mosques and the arrest of persons who have taught the Koran without having received prior authorisation from the authorities,

1. Calls on China to release all those detained or imprisoned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internationally recognised rights to freedom of belief, religion and conscience;

2. Calls for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to be fully guaranteed, together with the exercise of the associated rights of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freedom of assembly;

3. Regrets that, after having sign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PRC has still not finalised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4. Reiterates its condemnation of the continued and sever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ibet and the ongoing discrimination practised against the Tibetan people by the PRC authorities on the basis of race or ethnic origin or religious, cultural or political beliefs;

5. Invites the PRC government to allow Falun Gong practitioners to practise their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in accordance with the PRC constitution;

6. Calls for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to submit a resolution to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at its meeting in Geneva to condemn all violations of religious rights and, in particular, those directed against Tibetan and Mongolian monks, certain Christian churches and certain Muslim communities and adherents of the Falun Gong movement;

7. Instructs its President to forward this resolution to the Council, the Commission, the parliaments of the Member States, the Office of the UNHC for Human Rights and the PRC Government and Parliament.



Beijing's application to host the 2008 Olympic Games

B5-0487, 0498, 0505 and 0524/2001

5 July 2001

The European Parliament,

- having regard to its previous resolutions on the situ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 having regard to the conclusions of the General Affairs Council of 19 March 2001, in which the Council expressed its concern at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C,
- recalling the city of Beijing's bid to host the 2008 Olympic Games,
- recalling that the Charter of the Olympic Games states that Olympism has as a goal 'to place sport at the service of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humankind, with the object of creating a peaceful society with the preservation of human dignity',

A. whereas the repress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freedom to hold demonstrations in favour of democracy that has been practised for decades, is continuing in the PRC, despite international protests,

B. having regard to the repression of religious, ethnic and other minorities, in particular Tibetans, Uighurs and Mongolians and the Falun Gong movement,

C. having regard to the frequent imposition of capital punishment, leading to over a thousand reported executions in China every year, as well as the widespread use of torture on the part of the Chinese police and military forces,

D. recalling that the PRC has still not ratifi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E. whereas the Chinese authorities have taken no significant initiatives on respect for human rights, despite the ongoing

political dialogue between the EU and the PRC,

F. concerned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and animal welfare issues in the PRC,

G. stressing that the plans relating to Beijing's bid to host the 2008 Olympic Games would involve the destruction of a large part of the old city and the obligatory transfer of the inhabitants to the surrounding areas,

H. recalling that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s due to designate, on 13 July 2001 in Moscow, the city that will host the 2008 Olympic Games,

1. Invite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to establish guidelines to includ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principles to be applied as a general rule to host countries of Olympic Games,

2. Regrets that the PRC clearly fails to uphold universal huma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cluding freedom of religion and therefore believes that this negative record and the repression in Tibet as well as in Ouighouristan and in South Mongolia, make it inappropriate to award the 2008 Olympic Games to Beijing;

3. Urge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n any case to make a tho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regard in particular to the recurrent water shortages, the impact of mass tourism and the social repercussions in the region surrounding Beijing;

4. Invite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to reconsider Beijing's candidacy when the authorities of the PRC have made a fundamental change in their policy on human rights, and the promotion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5. Instructs its President to forward this resolution to the Council, the Commission, the Presidents of the parliaments of the Member States, and to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第1回 海外세미나 및 學術視察
Academic Seminar & Historical Tour of Abroad



中-韓 交流의 어제와 오늘

- '崔溥 漂海錄' 과 中·韓 交流

한국민족연구원에서는 2008년7월22일 백상재단 후원으로 중국 浙江大學에서 '中-韓 交流의 어제와 오늘' - '崔溥 漂海錄과 中·韓 交流' 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3편의 논문과 관계자료를 정리하여 게재한다.

〈第 1 回〉

海外세미나 및 學術視察

〈期間〉

2008年 7月 21~25日
Date : July 21~25, 2008

〈學術세미나〉

日 時 : 2008 / 7月 22日

主 題 : '中-韓 交流의 어제와 오늘'
- 崔溥 '漂海錄' 과 中-韓 交流

場 所 : 中國 浙江大學

基調發題 : 趙政男 (高麗大學校 政經大學長)

司 會 : 崔哲鎬 (漂海錄研究會 會長)

發 表 : 中國에서의 '韓流'의 實態와 課題
金健人(中國 浙江大學 教授)
中-韓交流의 始源으로서의 〈崔溥 漂海錄〉의 意味
王金龍(中國 成人大學 教授)
韓-中間의 人的交流의 實態와 課題
金容讚(大邱 가톨릭大學 教授)

討 論 者 : 1-徐陽重(慶尙大 教授), 金景淑(公州大 教授)
2-崔錦煥(漂海錄研究會 顧問), 崔英鎬(惠化女高 教師)
崔賢鎬(培花女高 教師)
3-金哲洙(漂海錄研究會 副會長), 金景美(延世大 教授)

通 譯 : 尹京實, 崔麗梅

〈學術探訪〉

探 訪 地 : 崔溥 〈漂海錄〉의 史蹟地인 中國 浙江省 臨海縣
牛頭外洋, 桃渚城, 臨海古城 등

探 訪 團 : 學術會議 參席者 全員 (中國 參席者 包含)
- 案 內 : 王金龍 教授, 張菊青 (臨海 回浦高校)
- 取 材 - 金在元, 崔麗梅
- 寫 真 - 金希鮮



발
표
문
헌

2008

第1回 海外세미나 및 學術視察
Academic Seminar & Historical Tour of Abroad

中-韓 交流의 어제와 오늘

— ‘崔溥 漂海錄’ 과 中·韓 交流

2008

開會辭

趙政男 (高麗大學校 政經大學長)

“韓流”의 發展段階와 原因 分析

金健人 (中國 浙江大學校 教授)

崔溥《漂海錄》과 中-韓 文化交流

王金龍 (中國 成人大學校 教授)

韓-中 交流의 現況과 展望

金容贊 (大邱 가톨릭大學校 教授)

崔溥와 漂海錄

整理 : 崔哲鎬 (漂海錄研究會 會長)

개 회 사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中-韓交流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갖게 되는데 대해 이를 후원해 주신 한국의 百想財團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국과 한국, 이 두 동양의 오랜 이웃 국가는 각 각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오면서 나름대로의 서로 다른 독특한 동양의 문화를 만들어 온 대표적인 국가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들 두 나라는 그들이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웃국가로서 한국은 중국을, 중국은 한반도와 수많은 교류를 가져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쳐온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두 나라는 서로에게 더러는 따뜻한 태양을 받하기도, 또 더러는 비바람을 수반한 차가움으로 다가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상대 국가가 더 풍성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두 나라의 역사과정에서 특이한 공헌을 한 朝鮮의 선비 ‘崔溥’ 선생과 그가 남긴 ‘漂海錄’ 이 중국과 한국의 관계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다시 한번 학문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더 한층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기착한 浙江省 臨海 牛頭外洋으로부터 시작된 崔溥 선생의 기구했던 중국기행은 이제는 중-한 관계사를 이야기할 때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귀중한 역사적인 사료가 되어 우리들에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생이 절대 절명의 위난에도 꺾끗한 기개와 용기로 대처했던 高邁한 朝鮮의 선비정신, 생사의 갈림길에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견지했던 忠孝精神, 그리고 중국학계에서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 나 마르크폴로의 ‘東方見聞錄’ 을 능가한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朝鮮의 선비가 보여줬던 당시 중국의 전 분야에 대한 탁월한 식견 뿐 아니라, 당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농업기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찬연한 관찰기록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학계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의 교류의 역사가 崔溥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양국의 교류의 역사과정에서 崔溥라고 하는 출중한 선비가 계셨고, 그가 집필한 ‘漂海錄’ 이 존재할 수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 두 나라의 교류의 역사가 한층 더 심화되고, 또 확대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양국의 학자들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도 더한 정열을 ‘표해록’ 연구에 바쳐야 할 소명을 저 버려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점에서 더욱 오늘의 이 자리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开幕词

首先诚挚的感谢百想财因为我们中韩学者们主办的以“中韩交流的昨天与今天”为主题的学术交流会。

中韩两邻国各自发展着自己的历史，并且是创造具有独特东方文化的两个代表性国家。中韩两国从历史的开始到现在，作为邻国互相有着诸多的交流，彼此之间相互带来多种多样的影响，同时两国间的距离又近在咫尺。在这发展过程中，两国之间有过风有过雨，有过阳光有过灿烂，毫无疑问，这些经历最终会给我们的历史图案上画上美丽的景色。

今天的座谈会，可以通过崔溥老师给我们留下的『漂海录』使中国和韩国之间的关系发展再一次得到确认，同时也给予给我们更深的意义。在汪洋大海漂流，从浙江省临海牛头外洋开始，崔溥老师的纪录给中韩关系史上带来贵重的历史史料，两国之间的发展也离不开崔溥老师的所做的纪录。

崔溥老师在艰难的困境中以坚强的气概和勇气战胜困难，并有着高迈的朝鲜学士精神和在交叉路上丝毫没有动摇地忠孝精神。在中国学士届的圆仁先生著的『入唐求法巡礼行记』和马可·波罗的『东方见闻录』中不仅赞扬了朝鲜学士在当时对于中国范围内卓越的见识，而且对记载着当时中国的政治、经济、社会、文化和农业技术等多方面领域灿然的观察记载给予赞辞。随着时间的流逝，以中国和韩国为首在世界各国的学界里突出地发挥着它的价值光芒。

中国与韩国，韩国与中国的交流历史虽然不能说是以崔溥老师开始的，但是我们不可否认两国之间的交流历史过程离不开崔溥老师的『漂海录』，也正是因为有了崔溥老师的『漂海录』，使我们两国之间的历史交流有着更进一步的深化和扩大。在这点我们两国学者应该积极热情地对『漂海录』做以研究探讨，同时也是我们两国关系发展的使命。所以我相信通过今天的座谈会，能再一次对崔溥老师的『漂海录』做以确认。谢谢大家！

韩民族研究院院长 高丽大学校 政经大学长

“韩流”的发展阶段与原因分析

金健人 (中國 浙江大學教授)

中国大陆与朝鲜半岛之间的文化交流，自古频繁，具有着几千年的历史。1992年的中韩建交，使得一度中断近半世纪的交往史又得以重续，中国与韩国之间，从官方到民间，都掀起了学习、介绍、引进、利用对方文化的热潮。如果说几千年来都是中国文化作为强势文化流向朝鲜半岛的话，那么，最近十年来，我们看到的是韩国文化在中国大陆的蔓延，韩国文化不仅保持了与中国文化的对等交流，而且在不少领域，出现了韩国文化的强势进入，所谓“韩流”，便是对这种现象的俗称；而对这种现象的造势者与热捧者，人们便称之为“哈韩族”。

“韩流”自上世纪90年代末进入中国，分几波浪潮，先是家电和影视，音乐和服饰，而后扩展到饮食、旅游、留学等文化交流的各个领域。特别是电视连续剧《大长今》的播出，把“韩流”在全国各地推向了高潮。“韩流”在中国的产生、发展和变化，经历了这么几个阶段：

(一) 兴起阶段

1993年中央电视台引进第一部韩剧《嫉妒》，可作为“韩流”进入中国的“探路石”，播出后反响平平。1997年，中央电视台在8套影视频道播出了韩国电视连续剧《爱情是什么》，在中国观众中引起了极大的轰动，收视率高达4.2%。在第一次播出过程中，台总编室曾一天接到过200多个观众要求重播该剧的电话，这是播出者所没有料到的。1998年，中央电视台在2套重播该剧，在中国引发了一轮韩剧热。同年，以韩国宇田公司为代表的韩国音乐公司将大量韩国知名音乐人的作品介绍到中国，韩国影视和音乐便如星星之火开始在中华大地燃烧起来。这一时期可看作韩流的兴起阶段，主要表现为电视剧与音乐的进入，主要受众为青年女性和中学生。

(二) 发展阶段

2002年前后，可看作韩流的发展阶段。其特点为：韩剧在中国荧屏上占据了突出

地位，继《爱情是什么》之后，中央电视台又先后引进了《初恋》、《澡堂老板家的男人们》、《真相》、《奔》、《妈妈姐姐》、《四姐妹》、《看了又看》等。与此同时，北京电视台、凤凰电视台等地方电视台又陆续播出了《天桥风云》、《星梦奇缘》、《爱上女主播》、《蓝色生死恋》等连续剧，引起观众的强烈兴趣。特别是《蓝色生死恋》，中国内地竟有21个电视频道播出。在引进《看了又看》时，当时中央电视台最初只引进了前60集，播出最后一集时由于疏忽没有告知观众，结果栏目组的几部电话都被观众打爆。这些剧目的热播，使韩流在中国掀起愈来愈高的浪潮。内容也从都市爱情剧扩展到了家庭剧和历史剧等多种类型，影响层也从青年人扩展到中年人甚至于老年人，由较为单纯的女性也扩展为包括了部分成年男性。仅2002年，中国大陆共播放了67部韩国电视剧，播放次数达到316次，远远超过了播放次数仅为61次的日本电视剧。同时，韩国的时装饰品、烹调料理、美容健身、家电汽车等，也相继进入中国，引起了国人的关注。

（三）高潮阶段

2004年到2005年，韩流已进入高潮阶段。仅2004年，中国内地电视台，播放韩剧即达107部。从2004年10月开始一直播到2005年1月的《人鱼小姐》，还有历史剧《明成皇后》等，尽管都是在中央8套晚上11时以后播出，但收视率竟然还能高达10%。尤其像《明成皇后》这样的剧作，不仅把韩剧的影响力扩展到了男性观众，而且也由一般市民阶层扩展到了知识阶层。2005年9月，湖南卫视在轰动全国的超级女声比赛之后紧接着推出《大长今》，一举把韩流在中国的影响扩张到空前绝后的地步，可以说形成了韩流热潮高峰的峰顶。该剧2003年在韩国本土播出时即获得了超出60.8%的收视率，在中国台湾播出时，也达到了万人空巷的地步，而在中国大陆播出时，同样以平均收视率4%、平均收视份额17.3%的表现稳居全国同时段收视率之最。如果说好莱坞影片占据了中国的银幕，那么，韩国电视剧则占据了中国的荧屏，以至中国影视人纷纷站出来高呼“抵御韩流”。随着韩剧的深入人心，乘势而兴旺发达的便是韩国餐饮、美容、游戏、家电、汽车、旅游等等，均力展全面攻势，在中国呈现出时尚化、普及化、生活化、商业化的特点。

（四）停滞阶段

自2006年下半年起，韩流在中国出现了退潮，我们不妨把它看作停滞阶段。首先是广电总局对引进海外电视剧有了政策上的调整：“多国引进，不专美韩剧”。其实际结果便是，《小妇人》第二部成了2007年中国大陆市场引进的唯一一部韩国电视剧。从韩流在中国的滥觞开始，韩剧就是其核心动力。如今核心动力的骤然降温，势所必然地便使韩流在中国陷于停滞状态。接踵而至的，便是韩国制造业在中国的退却，

中韩服装贸易的韩国方逆差，现代、起亚等韩系车在中国车市上的遇冷……

中韩研究者普遍认为，“韩流”自始至终是以韩剧为中心而展开的。韩剧如同韩流的“开路先锋”，剧中韩国人前卫的穿着打扮成为韩国服饰的最好广告，精美的家居摆设和时尚的消费用品刺激着观众的消费欲望。韩剧的流行直接为韩国其他商品进入中国市场创造了更多的商机，无论是手机、服饰、化妆品、游戏、漫画等，甚至整形美容技术，都随着韩剧这一潮头，在中国冲开了市场。就这样，韩剧为韩国饮食、服饰、旅游以及其他经济文化形式进入中国打开了局面。

自1993年中央电视台引进第一部韩剧《嫉妒》，到1997年中央电视台在8套影视频道播出了韩国电视连续剧《爱情是什么》引起了极大的轰动，韩剧在中国打开了销路。1999年电视节目出口额为761万美元；2001年为1235万美元，其中韩剧出口达9515集，出口额达790万美元；2002年出口韩剧12363集，出口额达1639万美元；2003年电视节目出口额为4300万美元，其中韩剧占3698万美元；2005年，电影出口额6700万美元，电视剧出口额近1亿美元。韩国电视剧在中国的成功也引来部分电影在中国的走红。1997年中国国家图书馆举办“韩国电影周”活动，这是让中国观众直接接触到韩国电影，北京、成都、上海等地举办的“韩国电影回顾展”，使韩国电影较多地被中国观众熟悉。当然，尽管韩国电影在国内和国际上都取得了不俗的业绩，如2003年的《实尾岛》、2004年的《太极旗飘扬》，都在总人口不足五千万的国家吸引观众在千万人次以上，但在中国市场上，电影所取得的成功还是无法与韩剧相比的。中国观众更多地是通过音像店里的影碟和互联网上的下载来满足欣赏韩国电影的需要。

“韩流”在中国的持续火热状态除韩国影视的全面“入侵”外，还有一个比较大的因素不容忽视，那就是韩国音乐及舞蹈的影响。从“叛逆”青年组合HOT在中华大地发热燃烧，到“东方神起”在中国的崛起，并最终成为形成了后来的哈韩之势。是什么原因使韩国的音乐舞蹈在中国如此独领风骚，并一度让年轻人竞相追逐？韩国的音乐舞蹈如此吸引我们的秘诀在哪里？

韩国音乐影响中国的主要途径有两条，一条是随着影视剧的播映而一同传播的途径。韩国影视剧，一般都有比较优美的音乐，还穿插以令人难忘的主题曲。有人甚至这样评价：“看完一部韩剧总会有一种离别的感觉，离开了熟悉故事情节，韩剧里的音乐是最摄人魂魄的。每当看完一部喜欢的韩剧，都会喜欢里面时常播放的音乐。韩剧里的故事会随着时间的流逝而被遗忘，但是音乐却无法轻易忘记。”

“韩流”的另一重要表现即为韩国服饰在中国的泛滥。一部韩剧的走红会使得韩剧中男女主人公的衣饰打扮瞬间成为韩国和中国大街小巷的共同风景。从“冬日恋歌”中裴永俊的围巾热，到“巴黎恋人”带来的女短装的风靡，再加上近年遍布街头的“韩式乱搭”，韩国服饰不仅成为时尚潮流的代名词，而且成为商家最大的卖点。

独特的自然地理条件和民族风习，形成了韩民族特有的饮食文化。作为最早的一批打入中国的韩国料理店，主要经营者还是中国朝鲜族人士。随着中国之间经济文化交流的发展，正宗的韩国料理店也越来越多。当然，韩国电视剧《大长今》的热播，把韩国料理在中国的影响推上了一个新的台阶。韩国饮食以稻米饭为主，副食则主要是汤、酱汤、泡菜、酱类，还有用肉、干鱼丝、蔬菜、海藻等做成的食物。这些副食的大部分，都是些酱类和泡菜类发酵食品，种类繁多，数不胜数。此外，韩国人喜欢吃的汤类和炖菜类，十有八九都是用大豆大酱和辣椒酱调的味。韩国泡菜的种类繁多，不但支配着韩国人的口味，而且还走向了世界，在征服世界众多人的口味，据说泡菜的出口量是世界第一。

源远流长的朝鲜半岛饮食文化深深地打着土地和海洋的烙印，传统农业的文化，骑马民族的习俗，同时，还保留着古代中国的诸多影响，从中隐伏着中韩交流的文化脉络。而现代韩国料理的变化，首先体现在先进工业技术的支撑和西方文化的？透上，但民族心理和传统工艺的保留也不失其特点。

而韩国的旅游业，也是与韩流的影响关系非常密切的行业。根据1995年中韩往来数据统计显示，中国人访问韩国人数为17.8万余人，韩国人访问中国人数为40.4万余人。2004年据中国国家旅游局统计，韩国已经成为中国的第二大客源国。须注意的是2005年韩国访问中国人数达到355万，而当年日本访问中国的人数是339万，这也就是说，2005年韩国已经取代日本成为中国的第一大客源国。2006年来访韩国游客达362万，占来访全部外国游客的16.3%；访韩中国游客90万，占访韩全部外国游客的14.6%。现在中韩两国的旅客都已经成为两国旅游产业中稳定的消费者，给两国都带来了相当可观的经济收入。

韩国作为“亚洲四小龙”之一，在不到30年的时间里成功实现了产业演进和经济发展。然而，1997年的亚洲金融危机爆发，使韩国经济遭受了沉重的打击和巨大的损失，韩元大幅贬值50%，股市暴跌70%以上，外汇储备锐减至40亿美元，多家大型企业和银行倒闭。在韩国较快摆脱金融危机的过程中，韩流推动韩国经济发展方面还是功不可没的。韩国人普遍认识到，与十三亿人口的中国为邻，韩国要发展，就必须好好利用这一“天生”优势。韩国的企业家和一般国民对中国的期望值和关心度大大提升，韩国有这样的俗语：“中国有十三亿人口，卖牙签都可以赚大钱”。事实上也是这样，韩流成为韩国经济在中国的最佳推销员。

要考察和探讨“韩流”在中国流行的原因，我觉得首先需分析和研究韩国影视剧。“韩流”在中国的持续火热状态可谓与韩国影视的全面“入侵”密不可分。那么，是什么原因造就了韩剧在中国的成功？韩剧如此吸引人们的秘诀在哪里？

一般人都会认为，要发展影视产业提高产品质量，最好的仿效对象就是美国好莱

坞。其实不然，中国的“硬实力”和“软实力”都与美国差距太大，所以许多方面没法学。而韩国路子则更具现实性和可行性。关于中韩影视比较研究的意义，许多人认为目的是抵御韩剧入侵，其实这是非常表皮的，如仅限于此，那也是最为短视的；不少人会认为学习韩剧成功经验，补己之短，能够提高中国影视艺术水平，这也只是一般性的含义；其深层意义在于，企望整合亚洲资源，以与西方文化相抗衡，我们亚洲这样的人口占世界总人口60%以上的世界第一大洲，其丰富的民族文化遗产和传统文化资源，是整个亚洲文化产业的优势之所在，亚洲文化因素不能仅仅满足于成为西方主流电影的新的文化元素而已；还有更深一层的意义在于，通过比较研究，探索亚洲电影文化合作的可能性，今天的亚洲电影正在超越国界，不仅有电影工业的国际间合作，还存在着共同文化基盘上的美学和艺术的融合。

法国率先针对愈演愈烈的美国影视“文化帝国主义”全球化提出了“文化反弹”理论，在国际影坛产生了很大的影响，世界电影格局也开始了变化。尽管美国好莱坞依然占据着国际电影市场的主导地位，并加紧其全球发展计划，但世界范围内争取民族电影发展的呼声也越来越强大。也正是在这样的形势下，亚洲民族电影业开始了新的崛起。1998年，韩国正式提出“文化立国”战略。为实施这一战略，韩国先后颁布了“国民政府新文化政策”、“文化产业发展五年计划”、“文化产业推进计划”、“文化产业振兴基本法”等十几部法律法规，并于2001年成立了“韩国文化产业振兴院”。在“文化立国”战略中，影视业被视为“重中之重”。为此，韩国政府采取了一系列行之有效的措施，如大力支持影视业按市场经济规律办事；设立文艺振兴基金等专项基金；财政支持在国家预算中也提高到了1%以上，等等，为影视业的振兴创造了一个宽松的环境。除此之外，政府还通过文化登记制度、税收政策等鼓励企业向文化事业投资，以实现文化投资主体的多元化。例如，凡投资影视等文化项目的企业，皆可享受3%的税收优惠。除此之外，韩国政府还划拨资助和奖励经费，重点支持民族电影拍摄。在发行放映方面，政府也规定了本国电影和外国电影放映天数比例的配额政策。故而，韩国影视一举改变了上世纪60年代到90年代初、韩国本土文化几乎被美国、日本以及中国香港、台湾文化淹没的状况。

不仅国家在国家战略的高度给文化产业提供了良好的生态环境，而且，制作人和参与者们遵循各个产业的自身规律，根据市场的机制进行合理的运作，这同样非常重要。“好莱坞电影”的全球化主要表现在资金流通、生产制作、发行放映三个方面。韩国在借鉴其发展模式时走出了自己的路子，它的编剧、导演双中心制，它的拍摄1/3投放市场检验价值决定命运的商业运作方式，都是积极导入市场竞争机制，把作品的市场性、收视率、艺术性和伦理道德作为衡量标准，极大地调动了影视从业人员的创造性和竞争意识。

影视艺术就是用影像和声音讲述故事，如何最大限度地运用视像和声音两个信息磁道

表现艺术家的创作意旨和美学趣味，是每一个导演追求的目标。韩国影视在全球化背景下，保持了自己鲜明的民族文化特色，中国影视的文化属性，势必也得打上中国文化传统的深刻烙印，同时体现着鲜明的时代精神和当下色彩，并且，它的历史文化内容与影视形式天生俱来的工业文明息息相关。也就是说，影视艺术与高科技技术及中国美学的完美融合，为影视艺术的发展提供了广阔前景，并将成为21世纪中国影视文化发展的根本方向。它包括了全球化语境中的民族文化生存；影视艺术产品的跨国传播；借鉴韩国等国影视进入国际市场的成功经验；用现代工业的形式语言表现最传统的中国文化；等等。

这些表现在音乐、舞蹈、服饰、料理、旅游等不同行业，亦复如此。当然，一个事物的成功，相关的原因是多种多样的。正如许多论者都提高的，韩流在中国的成功流行，与中国在文化上的同源性，更容易为中国人认同和接受；韩国较早进入工业化和现代化，在同源的文化中又领先吸收了许多欧美国家的先进文化或时尚文化，对中国文化的发展产生了先导示范作用，这也是吸引国人的新鲜之处。另外，每一种不同的行业，又都具有各自的差异性和独特性，而这些，又需要读者到各个章节有关内容中去寻找具体答案了。

번역

“韓流”의 발전 단계와 원인 분석



金健人 (中國 浙江大學教授)

수 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중국대륙과 조선반도간의 문화교류는 1992년 중·한 수교를 계기로 근 반세기 동안 중단되었던 교류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과 한국은 정부 당국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학습·소개·도입·이용 등 붐을 조성하고 있다. 과거 수 천 년 이래 중국 문화는 조선반도에 강세 유입된 반면, 최근 10년 간 한국문화는 중국 대륙을 만연(蔓延)시켰다. 한국문화는 중국문화와 대등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한국문화의 진입이 강했다. 이러한 현상을 소위 ‘한류’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동조하거나 신봉하는 자를 가리켜 ‘합한족(哈韓族)’, 즉 한류 마니아라고 일컬었다.

‘한류’는 90년대 말에 중국으로 진입하여 우선 가정용 TV와 영화·드라마, 음악과 복식에서 시작, 후에는 음식, 여행, 유학 등 각종 문화영역으로 교류가 다소 파랑을 일으키며 확산되었다. 특히 TV 연속 드라마

‘대장금’의 방영으로 ‘한류’는 전국 각지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한류’는 중국에서 발생, 발전과 변화 등 몇 단계를 거쳤다.

발생단계

1993년 CCTV는 한국 드라마, ‘질투’를 수입하였는데, 이 드라마는 중국에 ‘한류’ 진출의 ‘길잡이’가 되지 않았나 싶다. 방영 후 반응은 평범했다. 1997년 CCTV8 채널에서 방영한 한국 연속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는 중국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시청률 4.2%나 기록했다. 초기 방영 시, CCTV의 편성부에 해당 드라마의 재방

영을 요구하는 시청자의 전화가 하루 200여 통씩이나 빗발쳤다. 담당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1998년 CCTV2 채널에서 해당 드라마를 재방영하면서 한국 드라마의 중국 열기를 증폭시켰다. 그 해 우전(宇田)을 망라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자국의 이름있는 작곡가의 작품을 대량으로 중국에 소개, 한국 영화·드라마와 가요가 병행,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중화 대륙을 연소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가 한류의 발생단계라 할 수 있다. TV드라마와 가요의 중국 진출은 주요 화제가 되었고, 주 시청자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과 중·고등학생이었다.

발전단계

2002년 전후를 한류의 발전단계로 볼 수 있다. 그 특징으로 한국 드라마가 중국 텔레비전의 화면을 점거하는 돌출 상황이 벌어진 점이다. '사랑이 뭐길래'의 후속으로 CCTV는 '첫사랑', '목욕탕 집 남자들', '실제상황', '맨발로 뛰어라', '엄마야 누나야', '네 자매 이야기', '보고 또 보고' 등을 들여 왔다. 이와 동시에 북경 TV방송국, 봉황 TV 등 지방 TV 방송국은 잇따라 '모텔', '별은 내 가슴에', '이브의 모든 것', '가을 동화' 등의 연속극을 방영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한층 돋우었다. 특히 '가을 동화'는 급기야 중국 내 21곳의 TV 방송국 채널에서 방영했다. '보고 또 보고'가 들어 왔을 당시, CCTV가 처음에 전반부 60회만 수입해 마지막 회를 방영할 때, 드라마의 후반부에 대해서 시청자한테 알리지 않자 프로그램 담당 팀의 전화기에 불이 났다. 인기리에 방영된 이런 작품 덕분에 중국에서의 한류는 점차 큰 물결이 일게 되었다. 내용은 애정 드라마에서 출발하여 홈 드라마, 사극 등의 여러 가지 유형으로 확장되었고, 시청자도 청년층에서 중년, 노인층, 단순한 여성에서 남성 일부까지로 확산되었다. 2002년에만 총 67편의 한국 TV드라마가 중국 대륙에서 방영되었다. 방영횟수는 316회로 일본 TV드라마의 방영 횟수, 61회를 훨씬 상회했다. 동시에 한국의 패션 장식품·의류·음식·조리·미용·헬스·가전제품·자동차 등이 연이어 중국에 진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고조(高潮)단계

2004년에서 2005년까지 한류는 이미 고조단계에 진입했다. 2004년에만 중국 내륙의 TV방송국에서 방영한 드라마 수는 107편에 이르렀다. 2004년 10월에 시작하여 2005년 1월까지 계속된 '인어 아가씨', 그리고 '명성황후' 등 모두 CCTV 8채널에서 밤 11시 이후

에 방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놀랍게도 높게는 10%까지 이르렀다. 더욱이 '명성황후' 같은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을 남성 시청자까지 확산시켰으며 나아가 일반 시민, 지식층까지로 확대되었다. 2005년 9월, 호남 위성TV는 전국을 뒤흔든 슈퍼 걸 보이즈 경연이 끝난 직후 '대장금'을 방영했다. 한류는 일거에 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전무후무한 경지로 이르도록 했다. 실로 한류의 열기는 최고조에 다다랐다. 그 드라마는 2003년 한국 본토에서 방영이 시작하자마자 시청률이 60.8%를 상회하였으며, 중국 대만에서는 거리에 사람이 텅 빌 정도였다. 마찬가지로 중국 대륙에서도 평균 시청률 4%, 평균 시청 점유율 17.3%는 전국 동시간대 고정 점유율이었다. 할리우드 영화 필름이 중국 화면을 점거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한국 TV드라마가 중국의 스크린을 차지하여, 중국 영화·드라마 제작자 등은 공공연하게 '한류거부'를 외치기도 했다. 한국 드라마가 인심을 파고들며 여세를 몰아 한국 음식·미용·오락·가전 제품·자동차·여행 등등이 연이어 전면공세를 전개, 패션화·보급화·생활화·상업화 등 중국에서 주기적인 특징을 드러냈다.

정체(停滯) 단계

2006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한류는 퇴조를 드러냈다. 이를 정체단계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 같다. 우선 라디오 텔레비전 총국이 해외 드라마 수입을 조정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른바 '수입 다국화, 미·한국산 작품 비전유(非專有)'가 그것이다. 실질적인 결과가 바로 나타났다. 2007년 중국 대륙 시장에 진출한 한국 TV드라마는 '작은 아씨들' 2부가 고작이었다. 중국에서 한류의 남상(濫觴)은 한국드라마가 핵심 동력이었다. 지금처럼 핵심 동력이 돌연 기세가 꺾인다면 필연적으로 중국의 한류는 정체상태로 함몰될 것이며, 연이어 꼬리를 맞물린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에서 퇴장될 것이다. 중·한 의류 분야는 한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대·기아 등 한국의 자동차도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냉대를 받지 않을까.

중·한 연구자들은 보편적으로 '한류'가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여긴다. 한국드라마는 '한류의 선봉'이며, 드라마 출연진들이 입고 나온 옷과 화장품 등은 한국의 류, 화장품의 가장 좋은 광고가 되었고 아름다운 집안 인테리어와 세련된 소비용품은 시청자들의 소비욕구를 자극시켰다. 한국 드라마의 유행은 중국시장에 더 많은 한국상품이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휴대폰·의류·화장품·게임·만화뿐만 아니라 성형수술기술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 드라마 방영 후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 드라마는 한국의 음식·의류·게임 및 기타 경제문화상품 등을 중국에 유입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1993년부터 중앙방송은 한국 드라마 〈질투〉를 방송하기 시작했으며, 1997년 한국 연속극 〈사랑이 뭐길래〉를 방송하여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부터 한국 드라마가 중국 시장의 판로를 열게 된 것이다. 1999년 TV드라마 프로그램의 수출액은 미화 761만 달러이며, 2001년에는 1,235만 달러에 달한다. 그 중 한국 드라마의 수출량은 9,515회이며, 수출액은 790만달러이다. 2002년 한국 드라마 수출량은 12,363회이며, 수출액은 1,639만 달러에 이른다. 2003년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출액은 4,300만 달러이며, 그 중 한국 드라마 수출액은 3,698만 달러다. 2005년 영화수출액은 6,700만달러고, 드라마 수출액은 1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에서의 한국 드라마의 성공은 영화에까지 그 영향을 끼쳐, 몇 편의 한국 영화 역시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1997년 중국 국가 도서관에서 거행된 ‘한국영화주간’을 통해 중국 관객들은 직접 한국 영화를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북경, 성도, 상해 등에서 개최된 ‘한국 영화 회고전’은 더 많은 중국 관객들에게 한국 영화에 익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 내에서 또한 국제적으로 모두 뛰어난 인정을 받은 2003년 작품 〈실미도〉와 2004년 작품 〈태극기를 휘날리며〉는 전체 인구가 5,000만이 채 안 되는 나라에서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중국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얻은 성공은 여전히 한국 드라마에 비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많은 중국인들은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와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한국 영화를 접하고 있다.

중국 내 한류에서 한국 영화·드라마의 전면적인 소위 ‘침입’ 외에 또 하나 비교적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한국 음악과 안무의 영향이다. 중국대지를 뜨겁게 달구었던 ‘반항아’ 이미지의 아이돌 그룹 HOT부터 다른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가 중국에서 우뚝 솟으면서 후의 한류 매니아 붐을 형성케 했다. 중국에서 왜 유독 한국의 음악과 안무가 이 같은 각광을 받았을까? 또한 중국 젊은이들은 왜 이들에게 그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한국의 음악과 안무가 중국인들을 흡인시키는 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 음악의 중국에 대한 영향은 두 갈래의 주요 경로를 거쳤다. 한 갈래는 영화·드라마와 병행하여 들어온 경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 모두 아름다운 음악이 삽입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그 주제곡을 잊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는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면 늘 일종의 이별의 감정, 친숙해진 이야기 줄거리와 헤어지는 아쉬움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으며, 드라마 배경음악은 사람의 혼백을 빨아들인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항상 배경 음악을 즐긴다. 드라마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지지만, 음악은 기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한류’에서 파생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중국에서 범람하고 있는 한국의 옷차림이다.

한국의 인기 드라마는 극중 남녀 주인공의 의상과 치장은 한국과 중국의 길거리 풍경을 순식간에 변모시켰다. '겨울연가' 주인공 배영준이 두른 목도리의 인기에서 '파리의 연인'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간편한 캐주얼 차림까지 곁들여 최근 몇 해 동안 길거리를 휩쓸며, 소위 걸맞지 않은 한국스타일 모방 현상을 가져 왔다. 한국의 옷차림이 패션 유행의 대명사, 사업의 최대 판매 포인트가 되고 말았다.

독특한 자연지리 조건과 민족풍습으로 한민족의 특유한 음식문화를 일구어냈다. 최초로 중국으로 진출한 업체인 한국식당의 주요 경영자는 조선족 출신 인사였다. 중국간 경제문화 발전에 따라 정통 한국 요리점이 나날이 늘었다. 한국 TV드라마, '대장금'의 인기로 방영 영향으로 중국의 한국 식당은 다시 한 단계 도약하였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한국 음식은 쌀을 주식으로 삼고 주요 반찬으로는 국·된장국·김치·장류(醬類) 그리고 고기·건어물류·채소·해초류 등으로 조리한 음식이다. 이러한 반찬 대부분이 모두 장류, 김치류 등 발효식품이며 가짓수가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외에도 한국인이 즐겨 먹는 국 종류와 찜 종류의 80% 내지 90%는 콩으로 만든 된장과 고추장의 맛을 지니고 있다. 종류가 가지가지인 한국 김치는 한국인의 구미를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로 치달아, 많은 세계인들의 입맛을 정복하고 있다. 들은 바에 의하면 김치의 수출량이 세계 제일이라 한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조선반도의 음식 문화는 땅과 바다의 맛이 짙게 묻어 났으며, 전통 농업 문화, 기마민족의 습속은 아직도 고대 중국에서 받은 제 영향을 보존하고 있다. 그 안에 중·한 문화 교류의 맥락이 잠복하고 있다. 현대 한국요리는 우선 선진공업기술의 지원과 서양 문화의 삼투작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민족심리와 전통 공예를 보존한 덕으로 그 특징을 잃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여행업은 한류 영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5년 중·한 관광객 통계에 의하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17만 8천 여 명,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40만 4천 여 명이였다. 2004년 중국 국가 여유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제 2위의 중국 입국 관광 국가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5년 중국 방문 한국인 수는 355만, 이에 비해 같은 해 일본 방문자 수는 339만으로, 이는 2005년 한국이 이미 일본을 제치고 제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2006년 한국의 관광객 수는 362만으로 중국을 찾은 전 외국 관광객 수의 16.3%를 차지한 반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90만으로 한국을 방문한 전 외국 관광객 수의 14.6%를 점유했다. 현재 중·한 양국의 관광객은 이미 양국 여행 산업에서 안정된 소비자 구실을 하여 양국 모두에 가시적인 경제 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작은 네 마리 용' 국가 중의 하나로, 30년이 채 못된 시간에 산업진보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과 거대한 손실을 입어, 한국화폐 원의 가치는 50% 절하, 주식시장은 70% 이상 폭락, 외화보유는 40억 미화로 감소되었다. 많은 대기업과 은행이 문을 닫았다. 한국이 비교적 조기에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한류가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13억 인구의 중국을 이웃 국가로서 잘 이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천생(天生)' 적 우세라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다. 한국의 기업과 일반 국민은 중국에 대한 기대치와 관심도를 한껏 고양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13억 인구에 이쑤시개만 팔더라도 목돈을 챙길 수 있다' 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사실상 그랬다. 한류는 중국에 대한 한국경제의 최적 세일즈맨이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류' 에 대한 고찰과 원인분석을 위해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류' 가 중국 내에서 이처럼 뜨거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한국 영화·드라마의 전면적인 '침입' 과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성공한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 드라마가 이처럼 사람들을 흡인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일반인 모두 영화·드라마 산업의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모방 대상은 미국의 할리우드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의 설비나 경제력 등의 '하드웨어 요소' 와 제도나 정책 등의 '소프트웨어 요소' 는 모두 미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 본받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방식은 훨씬 구체적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중·한 영화·드라마에 관한 비교연구는 의미가 있다. 허다한 사람들이 한국드라마의 침입 방어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실 이는 지극히 표피(表皮)에 지나지 않고, 이 목적에만 한정한다면 이는 가장 근시안적인 판단일 것이다. 즉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드라마의 성공사례를 공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중국 영화·드라마의 예술수준을 능히 제고시킬 수 있다. 이는 바로 일반성의 함의(含意)다. 또한 아시아의 자원의 정합(整合)이라는 심층적 의미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서양문화에 필적할 수 있는 곳은 세계 총인구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세계 제1의 대륙이며, 아시아 인들이 보유한 풍부한 민족 문화 유산과 전통문화 자원이다. 바로 이러한 우산과 자원이 모든 아시아산업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소재지다. 아시아의 문화적 요소가 오직 서양 주류의 새로운 문화요소에 매달려 만족에 급급할 수만은 없다. 또한 비교연구를 통한 아시아 영화문화의 합작 가능성 모색에 다른 심층적 의미를 둘 수 있다. 오늘날 아시아 영화는 국경을 초월, 영화산업의 국제간 합작은 물론 기존의 공동 문화기반을 바탕으로 미학과 예술적 융합을 기하고 있다.

프랑스는 '문화 반등' 이론을 제기하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영화의 '문화 제국주

의 세계화를 앞장서서 겨누고 있다. 국제 영화계에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면서 세계영화의 골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할리우드가 국제 영화시장에서 여전히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며 자체의 세계 발전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민족영화 발전을 쟁취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합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아시아 민족영화 산업이 솟아 오르기 시작했다. 1998년 한국은 정식으로 '문화입국' 정책을 내 놓았다. 이러한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서 한국은 연이어 '국민정부 신문화 정책', '문화산업 5년 계획', '문화산업 추진계획',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등 10여 개의 법률, 법규를 공포했으며, 아울러 2001년에는 '한국 문화산업 진흥원'을 설립했다. '문화입국' 전략 중 영화·드라마가 '중요한 산업보다 더 중요한' 산업으로 간주되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일련의 효과적인 시행조치를 채택했다. 즉 영화·드라마 산업에 대해 시장경제 법칙에 따른 대폭적인 재정 지원, 문예예술 진흥 전용 기금 수립, 국가예산의 1%이상까지 재정지원을 제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영화·드라마 산업의 진흥을 위해 풍족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 이외에도 정부는 문화등기제도를 통과시키고 세금정책 등 문화사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장려책을 실시, 문화 투자주체의 다원화를 실현시켰다. 예를 들면 영화·드라마 등 문화 분야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은 3%의 세금 우대를 향수(享受)하는 것 등이다. 이 밖에도 한국정부는 보조금과 경비 장려금 대체, 민족 영화·드라마 촬영의 집중 지원 등을 실시했다. 상업 배급 부문에서도 정부는 자국 영화와 외국 영화의 상업 일수 비례의 할당 정책을 정했다. 이에 한국 영화와 TV드라마는 6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한국문화가 미국, 일본 및 중국 홍콩, 대만 문화에 의해 침몰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일거에 전환시켰다.

국가는 자국의 전략적 고급 문화산업을 위해 양호한 생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제작자, 참여자들의 각 산업 자체 규율의 준수, 시장 매커니즘의 합리적인 운용 등도 모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할리우드 영화'의 세계화는 자금유통, 제작, 영화배급 등의 세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그 발전양식을 본보기로 삼으면서 자신의 방식을 개척했다. 즉 시나리오, 감독의 쌍방 중심제로, 촬영 1/3을 검증용으로 시장에 선보인 후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상업운영 방식, 즉 시장 경쟁체제를 적극 도입하여 작품의 시장성, 시청률, 예술성과 윤리도덕의 표준을 평가했으며, 영화·드라마 종사자들의 창조성과 경쟁의식을 최대한 동원시켰다.

영화·드라마 예술은 영상과 음성을 이용하여 스토리를 구성하는 행위다. 여하히 영상과 음성이라는 두 가지를 최대한도로 이용하여 예술가의 창작의도와 미적 의향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지가 모든 감독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세계화되고 있는 한국 영화·드라마는 자국의 선명한 민족문화 특색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문화가 깊이 내재한 중국 영화·드라마

의 문화 속성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선명한 시대정신과 색채를 체현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문화내용과 영화·드라마 형식 모두 공업문명과 마치 서로 호흡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영화·드라마 예술과 하이테크 및 중국미학의 완벽한 융합, 영화·드라마 예술의 발전을 위한 광활한 전망 제공 등. 이들 요소가 장차 21세기 중국 영화·드라마 문화발전의 근본방향인 것이다. 또한 세계화 과정에서 민족문화 특색을 잃지 않아야 하며, 영화·드라마 예술 상품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파되어야 한다. 한국 등 국가의 영화·드라마의 국제시장 성공의 사례를 거울삼고, 현대 공업 문명을 이용, 최대한 전통적인 중국문화를 표현해야만 한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등등이 있다.

이 표현은 기타 다른 분야인 음악·안무·의류·요리·여행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하나의 성공에는 당연히 각양각종의 상관(相關)원인이 있다. 많은 논객 모두가 한류가 중국에서 성공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즉 중국과 문화적으로 동원성(同源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더욱 쉽게 받아 들였으며, 한국은 비교적 일찍 공업화와 현대화에 진입했고, 동원(同源)의 문화에서 한국이 먼저 많은 서구 선진문화 혹은 패션문화를 흡수하였는데, 이것이 중국문화의 발전에 시범적인 역할을 하여 중국인들이 신선하게 흡인했다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분야는 모두 그 분야만의 차이성과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독자가 각 장의 관련내용에서 구체적인 답안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崔溥《漂海录》 与中韩文化交流

王金龍 (中國 成人大學教授)



一、受到国际重视的崔溥漂海及其《漂海录》

崔溥(1454—1504)字渊渊,号锦南,朝鲜全罗道罗州(今韩国全罗南道罗州)人。1488年(明朝弘治元年、朝鲜成宗十九年)闰正月初三日,时任弘文馆副校理、济州三邑推刷敬差官的他,带陪吏、护送军等42人从济州别刀浦渡海返里奔父丧,因为“暴风所逆”而漂流海上,直到闰正月十六日到泊于中国浙江台州府临海县的牛头外洋,十七日舍舟登陆。开始,他们被疑为犯境的“倭寇”,经过逐级审核,查明身份,然后转送北京,再送达九连城,于六月四日渡过鸭绿江回到朝鲜。

对于崔溥一行43人漂海入境,中国明朝政府极为重视。一方面,因为这是倭患时期“系干海洋船只重事”⁽¹⁾,务必迅即逐级报达兵部结案,于是有桃渚千户所和把总松、海(台州松门卫、海门卫)备倭指挥的初审,绍兴三司(都指挥使司、布政使司、按察使司)的会审,并经由杭州镇守太监绣衣三司大人决定转送北京兵部,然后由兵部入奏朝廷。另一方面,因为查明崔溥等系朝鲜友人,“汝邦屡岁朝贡,义有君臣之好,既无侵逆之情,当遇以礼……转送赴京,遣还本土”⁽²⁾。于是一路皆被敬待,“所食之物,系是朝廷与的,作数支销”⁽³⁾,“及行沿途卫所量拨官军防护赴京”⁽⁴⁾;在北京,兵部移咨礼部后,“礼部奏闻讨赏”⁽⁵⁾,使崔溥等受到弘治帝的赏赐⁽⁶⁾;然后“付官崔溥站马、廩给,余人脚力、口粮,通与车辆装载行李,及行该府差官一员伴送,沿途军卫量拨军夫防护。至辽东,听镇巡等官另差通事人员,送朝鲜地界,令其自行回还”⁽⁷⁾。崔溥由衷地感慨:“皇上怀抚远人之恩重且大也!”⁽⁸⁾

对于崔溥漂海,朝鲜政府十分关心、重视。因为一,崔溥奉王命衔“济州

三邑推刷敬差官”在王事未了的情况下，“漂海无归处”；二，崔溥“再登文科（第一），为国王近臣”⁽⁹⁾，是该朝儒家中杰出的俊才；三，跟当时中国一样，在“以孝治国”的礼义大环境下，崔溥丧父却不能顺利奔丧、治丧。在渔阳驿，谢恩使臣告诉崔溥：“上闻尔漂海无归处，启下礼曹，令各道观察使通谕沿海各官，不轻搜觅，急速启闻。且于对马岛及日本诸岛，使送人书契修答时，右词缘并录。通谕右承旨庆俊次知启依允。圣恩何可量哉！”⁽¹⁰⁾之后，即1492年（明朝弘治五年、朝鲜成宗二十三年）国王李康靖召见崔溥，在询知其漂流始末后，深为其精神所感动，赞誉：“跋涉死地亦能华国！”⁽¹¹⁾

期间，崔溥回国当年7月，朝鲜国王遣使来北京，感谢明朝政府礼送崔溥等43人回国。1492年，崔溥守孝脱丧后，以书状官随谢恩使来北京。1497年，他又以相礼差质正官随圣节使再来北京，谱写了一曲中朝两国深厚情谊的史歌！

崔溥回国后，“敬奉传旨”，在青坡驿写成《漂海录》进呈国王。因他写的都是亲身经历的第一手材料，内容广泛，简练生动，所以深受朝廷的重视。1573年（明朝万历元年、朝鲜宣祖六年），其外甥柳希春（时任校书提调）将该书以校正本予以刊行问世，被誉为“摹写中原之巨笔”⁽¹²⁾。1769年，日本的清田君锦把它译成日文，改名《唐土行程记》。1965年，美国的约翰·迈斯凯尔将它译成英文，名为《锦南漂海录译注》。1979年，崔溥旁裔崔基泓将它译成本国文在汉城出版。1992年，中国由葛振家点注出版《漂海录——中国行纪》。

综上所述而言之，崔溥漂海及其《漂海录》，深受国际的关注和重视。

现在，我们从“中韩文化交流”的视角言：崔溥漂海，纯属偶然。在偶然的漂流历程中，他作为一代朝臣和儒士，在中国由南到北，进行了广泛的文化交流；《漂海录》正是记载当年中朝两国文化交流的重要典籍——真实地记录、见证了中朝文化交流的方方面面，并产生了深刻的影响，成为而今中韩文化交流的纽带和桥梁之一。

二、《漂海录》见证了明代中韩两国的文化交流

1、崔溥在中国以汉字为载体进行的文化交流活动

崔溥漂海到中国，人地生疏，语言不通，衣冠异样，他凭籍的就是精通汉文化，以汉字为载体，与各地、各阶层的人们进行广泛的文化交流，既解决当时诸多实际的问题，又建立、增进情谊，同时显现其儒士的精神风貌和博闻强记的才华。

中国汉字的起源，可以追溯到六七千年前新石器时代晚期仰韶文化陶器的刻画符号；作为一种比较成熟的文字体系形成的标志——殷商甲骨文，距今也有

3000 多年。有关专家考究，箕子入朝鲜，也许已将甲骨文传入朝鲜；至晚在战国时期（前 475—前 221），汉字已传入朝鲜。诚然，1446 年（崔溥出生前 8 年），朝鲜世宗王已创立了本国文字——谚文，但由于尊中国为“上国”，“所读而尊崇者《四书五经》⁽¹³⁾；衣冠礼乐则一遵华制”⁽¹⁴⁾，故朝鲜精通汉文化者不乏其人，崔溥就是其中的佼佼者之一。

崔溥运用汉字进行文化交流，主要表现在桃渚、绍兴、杭州、北京等地，面对明朝各级政府官员的各种提问，对答如流，坦然陈词，辩明身份。如果他不精通本国的历史文化和汉文化，不能对答，或答非所问，那么，身份就难以明白，其后果就难以想象。

比如在绍兴，三司相说：“汝若是朝鲜人，汝国历代沿革、都邑、山川、人物、俗尚、祀典、丧制、户口、兵制、田赋、冠裳之制，仔细写来，质之诸史，以考是非。”当时，崔溥除了户口、兵制、田赋这些涉入国家机密、答之“我以儒臣未知其详”而有意回避外，其余的都像数家珍一样作了详尽地回答，使“总兵官三使相即馈臣以茶果，仍书单字以赐”⁽¹⁵⁾。我想，上述这些问题，即便现在韩半岛的人也未必尽知。

在杭州，按察提调学校副使和另一大人发问：你国科目之制如何？其试士如何？文章体格如何？经书你可历数其名？易字何义？易之位数寓于何物？非图书则不能作易乎……等等。这些难题依然难不倒崔溥，两大人相顾目击，谓臣曰：“你实读书士，此地人固不识也”⁽¹⁶⁾。无怪知情的武林驿掌事顾壁告诉崔溥：“缘你供词明辨，审之非倭，今已议定差了指挥杨旺送你赴京，转送你回……你宜可宽心。”⁽¹⁷⁾

崔溥运用汉字进行真正意义的纯文化交流，也是多方面的。比如在台州健跳，他与举人张辅会面，张辅写了《送朝鲜崔校理序》。在杭州，有一人问：“景泰年间，我国给事中官张宁奉使你国，做却金亭诗《皇华集》，你晓得否？”崔溥不但知其事，而且还背咏出其中《题汉江楼》的名句：“光摇青雀舫，影落白鷗洲。望远天疑尽，凌虚地欲浮”。使“其人喜形于色”⁽¹⁸⁾。他如在西水驿，“驿丞何荣以诗三绝见遗，臣亦和之”⁽¹⁹⁾；在浒墅镇与御史三大人交流“作古（中国人谓死者）”与“物故（朝鲜人谓死者）”⁽²⁰⁾；过淮河时，依据《禹贡》的记载，与傅荣讨论黄河与淮河的关系⁽²¹⁾；在鲁桥驿与陈萱、傅荣论及“医、道、佛”三法及明代犹称“大唐”的缘由⁽²²⁾……等等，不胜枚举。

崔溥对诗词的态度：“我以格致诚正为学，不用意学夫诗词也。若或有人先倡，不得不和耳”⁽²³⁾。在桃渚，“臣（指崔溥）即做谢诗以拜”刘泽⁽²⁴⁾；在绍兴，“臣即做谢诗再拜”三使相⁽²⁵⁾；在杭州，“臣即做诗以谢”布政司大人和按

察司副使⁽²⁶⁾；在姑苏驿，“臣作诗以谢”按察御史二大人⁽²⁷⁾；在兵部，郎中等“指庭中槐阴为题令做绝句，又以渡海为题令做唐律”⁽²⁸⁾……崔溥除了自己做诗，中国文人也有诗赠送给他，在辽东显得寨里，被里人偷去“江南人所赠诗稿”⁽²⁹⁾就是明证。

现在我们探究：当年，崔溥为什么用汉文撰写《漂海录》？因由应该是：一、尽管1446年以来已有谚文，但其时仍然汉文并用——进呈国王可以用汉文，更无论其他；二、崔溥精通汉文化，在整个漂流途中均以汉字为载体与中国各方面的人士进行文化交流，保留了现成的、大量的汉字记录材料，整理起来极其便捷，可以争取时间早些回家治丧谒母慰弟，因此，他在青坡驿吏家仅用了“8天”⁽³⁰⁾时间便完成“一行日录撰集以进”⁽³¹⁾，即写成《漂海录》进呈国王。如果崔溥将漂流途中积累起来的这么多的汉文资料先译成谚文，再进行写作，那么，8天时间肯定是不够的。

2、崔溥在文化交流中体现的儒学思想和儒士品质

中国儒学最初传入韩半岛，与战国时期汉字的传入应该是同步的；儒学大规模东传，当在汉代。随着中国新儒学——宋明理学的兴起，逐渐传入韩半岛的主要是朱子学派。“我国人生子，先教以《小学》、《家礼》（引者注：即《朱子家礼》），科举亦取精通者”⁽³²⁾。

崔溥出生于儒士家庭，从小接受儒家正统教育，“以经学穷理为业”⁽³³⁾，因此在漂流的逆境中，始终以儒家理念自律正己，并规范着一行43人的举止，表现出一个爱国者的高尚品质，一个儒者的风范情操，显示了人格的魅力，令人敬佩。今仅择要而言——

在儒家学说中，“孝悌忠信”的首要内容是“孝”。崔溥认为“求忠臣于孝子之门，未有不尽孝于亲而忠于君者”⁽³⁴⁾；“尊儒道，人皆以入孝出恭、忠君信友为职分事耳”⁽³⁵⁾。因此一遵《家礼》“闻亲丧遂行”，“我奔初丧，情不可少留……为人子者，其可顷刻濡滞乎”⁽³⁶⁾？隐儒王乙源以酒肉款待他，他说：“守亲丧，不饮酒、食肉、茹荤及甘旨之味，以终三年”⁽³⁷⁾。于是以茶代酒。最为突出的是他一路上头戴丧冠，身穿孝服，虽旷日持久而无怨，历长途跋涉而不易。他认为“释丧即吉，非孝也；以诈欺人，非信也。宁至于死，不忍处非孝非信之地”⁽³⁸⁾。

在封建社会里，皇帝、国王拥有“家天下”，因此，儒家把“忠君”和“爱国”紧密地联系在一起。在桃渚，薛旻问：“你国王姓讳何？”崔溥答：“孝子不忍举父母之名……况为臣子其可以国君之讳轻与人说乎？”薛旻说：“越界无妨。”

崔溥反驳：“我不是朝鲜之臣乎？为人臣者，其可以越界而负其国，异其行，变其言乎？”薛旻又问：“你既为军资监主簿，何以曰不知兵粮之数？”崔溥说：“我为军资监未满月见递，故未详其数”⁽³⁹⁾。因为这涉及国家机密，崔溥就机巧地回避。在艰难的漂流途中，祖国和人民的利益始终植根在心中。他坚请傅荣教以水车之制，说：“我国多水田，屡值旱干，若学此制以教东民，以益农务，则……可为我东人千万世无穷之利也”⁽⁴⁰⁾。回国后，“前司直崔溥造水车以进”⁽⁴¹⁾。

儒家奉行“仁义礼智信”，礼是其重要的内涵之一。崔溥在漂流狼籍的境况下执礼如故，更是难能可贵。当他们从牛头外洋登陆，“冒雨穿林逃遁奔匿”，进入第一个里社时，崔溥告诫所有随从：“我国本礼义之国，虽漂流窘遽之间，亦当示以威仪，使此地人知我国礼节如是。凡所到处，陪吏等拜跪于我，军人等拜跪于陪吏，无有过差。且或于里前，或于城中，有群聚来观者，必作揖礼，无敢肆突！”他们真地这样做了，致使当地人感叹：“闻贵国礼仪邦久矣，果协所闻”⁽⁴²⁾。

三、《漂流录》传递了中朝两国的文化讯息

1、《漂海录》向中国传递朝鲜的讯息

这主要有历史文化沿革⁽⁴³⁾、科目之制⁽⁴⁴⁾、学校及礼刑之制⁽⁴⁵⁾等；本文着重及于中朝两国的关系。

中朝两国的关系，源远流长，可以追溯到3000多年前商周之际的箕子入朝。明朝的创立者朱元璋采取“柔远”政策，与高丽及随后的朝鲜建立友好的宗藩关系；朝鲜朝的建立者李成桂尊中国为“上国”，实行“至诚事大”的国策，认为这是“保国之道”。明成化年间，朝鲜有个韩氏“入我国为大行皇帝（引者注：指明宪宗朱见深）乳母”⁽⁴⁶⁾。崔溥自辽东登程，至朝鲜馆，“馆前立标匾‘畏天保国’四字”⁽⁴⁷⁾就是见证。两国关系一直非常友好，使臣不绝于道。仅1488年2—5月，崔溥所知和遇见的就有：朝鲜贺册封使安宰相处良等24人⁽⁴⁸⁾、谢恩使知中枢成健等16人⁽⁴⁹⁾、圣节使参判蔡寿等19人⁽⁵⁰⁾往返于中朝两国，以及中国翰林学士董越、给事中王敞赴朝而还⁽⁵¹⁾。

其时，朝鲜年号遵大明年号，衣遵华服，礼遵《家礼》，刑从《大明律》，儒士皆治《四书五经》，诚如崔溥所说：“大明初出海上，万邦所照，况我国与大国为一家，贡献不绝”⁽⁵²⁾。明朝对于朝鲜，在贡赐与通商方面，一直都给予特殊的照顾。

2、《漂海录》向朝鲜传递中国的讯息

《漂海录》言简而要，事详而博，内容涉及明朝弘治初年政治、军事、经济、文化、交通以及市井风情等各方面的情况，不胜枚举；本文着重及于浙东运河。

中国南北大运河，跟绵亘北方的万里长城一样，是华夏民族创造的世界最伟大的工程之一，属线性文化遗产，举世瞩目。它的开凿，始于隋朝文帝开皇四年（584年），至炀帝大业六年（610年），其中邗沟旧道系春秋（前770—前476年）时吴王夫差所开，“隋人广之，舟楫始通焉”⁽⁵³⁾。那是以洛阳为中心，北到涿郡，南达余杭，长达4800多里的大运河。崔溥经过的，是元代经过截弯取直（缩短1800多里）、疏浚，明朝加以维修，北起通县，南到杭州的大运河。其实，中国南北大运河还要往南延伸——从杭州再到宁波，即包含浙东运河（亦称杭甬运河），520年前亲历浙东运河和京杭运河全程的第一个外国人——崔溥的《漂海录》就见证了浙东运河。

《漂海录》记载：崔溥等从宁波北渡江（属奉化江。奉化江、甬江、姚江交汇处于宁波的“三江口”；甬江即奉化江、姚江之下游，流经镇海出海）开始乘船，先后经过姚江、上虞江、曹娥江、鉴水、西兴河、钱塘江等河流，历宁波、鄞县、慈溪、余姚、上虞、绍兴、萧山、杭州等8市、县（区）⁽⁵⁴⁾。过姚江时，西坝厅和新堰皆“以石断流为堰，使与外江不得相通，两旁设机械，以竹绳为缆，挽舟而过”⁽⁵⁵⁾；过上虞江时，在下新坝、中坝又“挽舟而过”⁽⁵⁶⁾。挽舟而过，俗称“研坝”，即在水位高低不同的两条河流交接处，筑一堤坝以间隔拦截水流，旁置机械，将船只微微升高，沿着堤坝或拖上高水位的河道，或滑向低水位的河道，从而沟通这两条河流。崔溥历经的就是浙东运河！

浙东运河是中国最早的运河之一，在知名运河邗沟、鸿沟等问世前，就出现了“山阴故水道”（绍兴东郭至曹娥江旁，20多公里）。晋代，又疏凿了从绍兴到西兴的运河（50多公里），与山阴故水道相连，形成浙东运河的基本骨架⁽⁵⁷⁾。有专家指出：至迟到一千年前的北宋初，浙东运河就已成为南北大运河的重要组成部分……南北大运河在一个相当漫长的历史时期不仅是国家内河航运的大动脉，更是中国内陆交通连接海外贸易与中外文化交流的一条开放大通道⁽⁵⁸⁾。

四、《漂海录》是中韩两国文化交流的纽带和桥梁

抚今追昔，温故知新。中韩建交以来，韩国不少有识之士，包括政府官员、学者、记者、师生和崔溥裔亲前来大陆，沿着崔溥当年走过的路线实地踏访，进

行文化交流，接续、增进传统友谊，从而谱写以《漂海录》为桥梁的中韩两国人民友好往来的新篇章。

2002年7月，由崔溥祖籍耽津崔氏大宗会牵头，崔秉一先生资助，在中国宁海县越溪建立了“崔溥漂流事迹碑”；2005年12月，由崔溥漂海录纪念事业会牵头，崔溥故里罗州市政府资助，在中国临海市桃渚城内建立了“崔溥漂海录·中韩民间友好碑”，这是中韩文化交流中以《漂海录》为共同话题、里程碑式的大事，并为以后的文化交流活动提供新的契机和话题。

愿中韩两国人民世代友好！

注释：

- 1) 《漂海录·卷之二·二月十一日》。
- 2) 《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一日》。
- 3) 《漂海录·卷之二·二月初七日》。
- 4) 《漂海录·卷之三·四月初七日》。
- 5) 《漂海录·卷之三·四月十六日》。
- 6) 《漂海录·卷之三·四月十九日》。
- 7) 《漂海录·卷之三·四月初七日》。
- 8) 《漂海录·卷之三·四月十六日》。
- 9) 《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一日》。
- 10) 《漂海录·卷之三·四月二十七日》。
- 11) 《成宗康靖大王实录·戊申十九年·七月壬戌》。
- 12) 《漂海录·柳希春题跋》。
- 13) 四书五经：中国儒学典籍，四书指《论语》、《孟子》、《大学》、《中庸》；五经指《周易》、《尚书》、《诗经》、《礼记》、《春秋》。
- 14) 《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一日》。
- 15) 《漂海录·卷之一·二月初四日》。
- 16) 《漂海录·卷之二·二月初七日》。
- 17) 《漂海录·卷之二·二月初九日》。
- 18) 《漂海录·卷之二·二月初八日》。
- 19) 《漂海录·卷之二·二月十五日》。
- 20) 《漂海录·卷之二·二月十八日》。
- 21) 《漂海录·卷之二·二月二十七日》。
- 22) 《漂海录·卷之二·三月初八日》。
- 23) 《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九日》。
- 24) 《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一日》。
- 25) 《漂海录·卷之一·二月初四日》。
- 26) 《漂海录·卷之二·二月初九日》。
- 27) 《漂海录·卷之二·二月十七日》。

- 28) 《漂海录·卷之三·三月二十九日》。
- 29) 《漂海录·卷之三·五月二十九日》。
- 30) 杨万鼎:《关于锦南崔溥撰进漂海录受难及戊午被祸的考察》。
- 31) 《漂海录·卷之一》开篇语。
- 32) 《漂海录·卷之三·三月二十九日》。
- 33) 《漂海录·卷之二·二月十七日》。
- 34) 《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二日》。
- 35) 《漂海录·卷之二·二月十一日》。
- 36) 《漂海录·卷之一·闰正月初四日》。
- 37) 《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八日》。
- 38) 《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六日》。
- 39) 《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二日》。
- 40) 《漂海录·卷之二·三月二十三日》。
- 41) 《成宗康靖大王实录·戊申十九年·八月乙未》。
- 42) 《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七日》。
- 43) 《漂海录·卷之一·二月初四日》。
- 44) 《漂海录·卷之二·二月初七日》。
- 45) 《漂海录·卷之二·二月十八日》。
- 46) 《漂海录·卷之二·二月二十二日》。
- 47) 《漂海录·卷之三·五月二十九日》。
- 48) 《漂海录·卷之三·三月二十九日》。
- 49) 《漂海录·卷之三·四月二十七日》。
- 50) 《漂海录·卷之三·五月十六日》。
- 51) 《漂海录·卷之三·四月二十九日》。
- 52) 《漂海录·卷之二·二月十八日》。
- 53) 《漂海录·卷之二·二月二十五日》。
- 54) 《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九日、二月初一日、初二日、初三日、初四日》，
《漂海录·卷之二·二月初五日、初六日》。
- 55) 《漂海录·卷之一·二月初一日》。
- 56) 《漂海录·卷之一·二月初二日》。
- 57) 张学勤 颜越虎:《浙东运河,“延伸”运河文化》。
- 58) 潘承玉:《大运河包含浙东运河的新证明》。

번역

崔溥 《漂海錄》과 中-韓 문화교류



王金龍 (中國 成人大學教授)

국제적 관심대상인 최부 표해 및 표해록

최부(1454~1504)의 자는 연연, 호는 금남이며 조선 전라도 나주(현 한국 전라남도 나주)태생이다. 1488년(명조 홍치원년, 조선 성종 19년) 윤정월 초3일, 당시 홍문관 부교리, 제주삼읍추쇄경차관인 그는 배리, 호송군 등 42명을 대동하고, 부친의 분상(奔喪)차 제주 별도포에서 도해(渡海), 귀향 도중 폭풍우로 인해 해상에서 표류했다. 윤정월 16일에 중국 절강 태주부 임해현의 우두외양에 표박(漂泊), 17일에 배를 버리고 등륙했다. 처음에 국경을 침범한 왜구혐의로 체포되어 수 차례의 심사 끝에 신분이 밝혀진 후 북경으로 전송(轉送), 그 후 구련성(九連城)을 거쳐 6월 4일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귀국했다.

최부 일행 43명의 입경(入境)은 중국 명조 정부에게 중대사였다. 왜구의 환난시기

에 “바다와 관련된 선박”은¹⁾ 신속한 보고 채널을 통해 병부(兵部)의 종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저 천호소와 파총송, 해비왜지휘(태주 송문위, 해문위)의 초심(初審), 소흥삼사(도지휘사사, 포정사사, 안찰사사)의 합동 심의, 항주진수태감과 수의삼사대인을 경유 북경의 병부에 전송, 병부는 조정에 상주(上奏)했다. 최부 등은 조선의 우인(友人)으로, “당신 나라는 여러 해 동안 조공을 해왔고, 군신간의 의리가 있는 나라로 침범한 것이 아니므로 예우로 대우할 것이며… 북경으로 호송, 본국으로 송환시킬 것이다.”²⁾ 신분이 판명된 후 줄곧 경대(敬待)를 받았다. “양식은 조정에서 공급한 것이며, 수량이 정해져 있다”³⁾ “연도(沿道)의 위소(衛所)는 관군을 배정, 북경까지 호송토록 배려한다”⁴⁾ 북

경에서 병부는 예부에 알아본 후, “예부는 수상(授賞)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⁵⁾며 최부 등에게 홍치 황제의 상을 받도록 했다.⁶⁾ 또한 “최부에게 역마와 양식을 제공하며, 다른 일 행에게는 각자 알맞은 식량과 짐을 실을 수 있는 수레 제공을 하고, 해당 부는 관리를 선정 하여 그들을 호송토록 하고, 연도의 위소는 병사를 배정,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요동에도 착하면 진순(鎭巡) 등 관리와 상의, 통역원을 차출, 조선의 국경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⁷⁾고 지시했다. 최부는, “황상이 이방인에게 베푸는 은혜가 참으로 막중하다”⁸⁾며 충심으로 감격했다.

최부의 표해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중요시했다. 이유의 하나로 최부는 “제주삼읍추쇄경차관”이라는 왕이 명한 직분을 완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류 실종” 되었고, 둘째는 최부가 “문과 중시(重試)에 일등으로 등제(登第)한 국왕의 근신(近臣)”⁹⁾으로 당시 조정의 걸출한 유가(儒家)의 준재(俊才)였으며, 셋째로 당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효로 치국(治國)”하는 예의(禮義)의 대법도(大法道)하에서 부친을 순리대로 분상(奔喪), 치상(治喪)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양역에서 사은사신이 최부에게, “주상이 당신이 표해되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보고를 듣고, 예조에게 명하여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해안의 관서에 알려 긴급하게 그를 수색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라고 명령했으며, 대마도나 일본의 여러 섬에서 온 사신이나 회신을 보낼 때 당신의 표류사실을 병기하도록 우승지 경준에게 지시했으니, 성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소”¹⁰⁾ 라고 말했다. 이후, 즉 1492년(명홍치5년, 조선성종23년)에 국왕 이강정(李康靖)은 최부를 소견(召見)하여 최부의 표류 전말을 듣고 그의 놀라운 정신력에 감동, “사지(死地)를 발섭(跋涉)하면서도 나라를 잊었도다”¹¹⁾ 라며 칭찬했다.

최부가 귀국한 당년 7월에 조선 국왕은 사신을 북경에 파견, 최부 등 43명을 예(禮)로서 귀국시킨 명조 정부에 감사했다. 1492년 최부는 수효(守孝) 탈상한 후 서장관으로 사은사를 수행, 북경에 갔다. 1497년 그는 상례차질정관(相禮差質正官)으로 성절사를 따라 다시 북경에 가서 중조 양국의 돈독한 우정을 다지면서 역사의 한 장면을 아로새겼다.

최부는 귀국 후 “왕의 전지를 받들어” 청과역에서 표해록을 완성, 국왕에게 진정(進呈)했다. 그는 몸소 겪은 경험을 기술했는데, 이는 귀중한 자료임은 물론 내용이 광범하고, 문장이 생동하고 간결하여 조정의 깊은 관심을 받았다. 1573년(명조만력원년, 조선선조6년) 당시 교서제조(敎書提調)인 그의 외손 유희춘이 교정본을 간행, 세상에 알려 “중원을 묘사한 거필(巨筆)”¹²⁾이란 영예를 얻었다. 1769년 일본의 키요다(清田君錦)가 “당토행정기”로 개명, 일문으로 번역했고, 1965년 미국의 존 메스킬이 명문으로 번역, 제목을 “금남표해록 역주”라 했다. 1979년 최부의 방손 최기홍(崔基泓)은 본국문으로 번역, 출판했으며, 1992

년 중국의 거편자(葛振家)가 점주본으로 “표해록-중국기행”을 출간했다. 간략히 말한다면 최부와 표해록이 국제적으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 “중·한문화교류”의 시각에서 본다면 최부 표해는 완전한 우연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우연한 표류 역정(歷程)에서 당대의 신하이며, 유학자인 그는 중국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광범한 문화교류를 진행시켰다. 표해록은 바로 당대 중조(中朝) 양국문화를 기술한 중요한 고전인 동시에 다큐멘터리다. 각 방면의 중조 문화교류 역사를 증거한 표해록은 그 영향력이 심대하여, 오늘날까지도 중·한 문화교류의 유대와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표해록이 명대 중·한 양국의 문화교류를 증명하다

1) 중국에서 문화교류의 메신저 역할을 한 최부

최부는 표해 후 중국에 도착했다. 사람과 지역은 생소했고 언어는 불통, 의관도 상이했기 때문에 그는 정통(精通)했던 한자 서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각지, 각 계층의 인물과 광범한 문화교류를 진행하면서 당면한 제반 문제를 해결했고, 또한 우의를 건립, 증진시키는 동시에 유학자의 정신과 풍모, 박문강기(博聞強記)한 재능을 드러내 보였다.

중국 한자의 기원은 6, 7천년 전 신석기 시대 말기 양소문화(仰韶文化)도기의 각화부호(刻畫符號)로 거슬러 올라 간다. 비교적 성숙된 문자체계를 형성한 표지(標志), 즉 은상(殷商)의 갑골문 출현은 3000여 년 전의 일이다.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 기자(箕子)가 조선에 들어 갔을 때 조선에 갑골문이 전입(傳入)됐다 한다. 전국시기(기원 전 475~221년)말까지 한자는 이미 조선에 전래되었다. 최부가 출생 8년 전, 즉 1446년에 조선 세종은 본국문자, 즉 언문을 창제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조선은 중국을 “상국”으로 존대했기 때문에 “사서오경을 존숭(尊崇)¹³⁾했으며 의관(衣冠)과 예악(禮樂)은 중국의 제도를 따랐다.”¹⁴⁾ 따라서 조선에는 한문화(漢文化)에 정통한 사람이 적지 않았으며, 최부 역시 그 중 출중·한 인물이었다.

최부는 한자로 문화교류를 진행했는데 특히 도저, 소흥, 향주, 북경 등지에서 명조의 각급(各級)관원의 각종 질문에 의연한 어조로 유창하게 답변하며 자신의 신분을 소명(疏明)했다. 만일 그가 자국의 역사 문화와 한문화에 정통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신분을 밝힐 방법이 없어서 분명 궁지에 몰렸을 것이다.

소흥에서 삼사상(三司相)이, “당신이 조선인이라면 당신 나라의 역대 연혁, 도읍, 산천, 인물, 풍속, 예법, 상제, 호구, 병제, 전부(田賦), 관상제도 등을 자세히 써서 제출하면 따져 본 후 시비를 기리겠소.” 당시 최부는 호구, 병제, 전부 등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나는 유

신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지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집에 있는 보화의 수량을 밝히듯이 자세하게 답변했다. 이를 본 “총병관 삼사상은 즉시 다과를 내놓는 한편 하사한 품목이 기재된 리스트를 주었다.”¹⁵⁾ 이러한 최부의 자세와 처신은 오늘날 한반도의 사람들도 새겨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항주에서 안찰제조학교 부사와 어떤 대인이, 당신 나라의 과목(科目, 즉 과거)제도는 어떻게? 시험 과목은? 문체는? 읽은 경서는? 역(易)이란 무슨 뜻이오? 역의 원리(位數)는 어느 사물에서 나왔소? 도서(圖書)가 아니면 역을 만들 수 없소? 등등 난해한 질문에도 최부가 막힘없이 답변하자, 대인 둘은 최부에게, “당신은 참으로 독서를 많이 한 분이오. 이 나라 사람조차도 응당 모르는 일이오”¹⁶⁾라며 멍하니 서로 마주보았다. 그간의 상황을 꿰고 있는 무림역의 장사(掌事) 고벽은, “당신의 공술서로 왜인이 아님이 판명되었소. 지휘 양왕을 차출하여 당신을 북경까지 호송하도록 결정했소. 귀국할 수 있으니…시름을 놓으시오.”¹⁷⁾ 라고 최부에게 알려 주었다.

최부가 한자로 진행시킨 교류는 순수한 문화교류로서 이의 의미는 다방면에 걸쳐 참으로 진정한 것이었다. 실례로, 태주의 건도에서 “송조선최교리서(送朝?崔校理序)”란 글을 썼던 장보와의 만남을 들 수가 있다. 항주에서는 누군가가, “경태 연간에 내 나라 급사중 장녕이 귀국에 사신으로 가서 황화집의 금정시(金亭詩)를 지었는데, 알고 있소?” 최부는 물론 그 일을 알고 있었다. 그 중 “제한강루(題漢江樓)”시의 명구(名句), ‘햇빛은 청작배를 흔들고, 백구 모래밭에 그림자 진다. 멀리 바라보니 하늘 끝간 데 없고, 하늘 높이 오르니 땅이 솟아 있는 것 같네’ 를 읊조리니, 그는 “희색이 만면했다.”¹⁸⁾ 서수역에서, “역장 하영이 세 절구의 시를 선사했을 때 신이 화답했다.”¹⁹⁾ 호서진에서 어사(御使) 3대인과 마주했을 때, “중국인은 죽음을 작고(作古)라 하고 있다” 와 “조선인은 죽음을 물고(物故)라 부르고 있다.”²⁰⁾ 또한 회하를 지날 때 “우공(禹貢)이란 중국의 고대 지리서를 인용하며 부영과 황하와 회하의 관계를 토론했다.”²¹⁾ 노교역에서 진훤, 부영과 “의(醫), 도, 불”의 3도(道) 및 명대에도 여전히 “대당”이라고 부르는 연유²²⁾...등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최부는 시사(詩詞)에 대해, “나는 격지성정(格致誠正)을 학문으로 삼는다. 시가에는 뜻을 두지 않고, 남이 선창하면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²³⁾라 했다. 도저에서는, “신(최부 지칭)은 시와 절로써”²⁴⁾ 유태에게 감사를 표시했고, 소흥에서는, “신은 즉시 시와 절로써”²⁵⁾ 삼사상(三使相)에 사례했다. 항주에서, “신은 바로 시를 지어” 포정사 대인과 안찰사 부사에 답례했으며,²⁶⁾ 고소역에서, “신은 시를 지어”²⁷⁾ 안찰어사 두 대인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병부에서는 낭중 등이, “뜰에 있는 괴양목을 가리키며 그것을 제목으로 절구시를 지어 보라 했으며, 또한 도해(渡海)를 제목으로 당률(當律)로 시작(詩作)”²⁸⁾ 하라 했다 …….

최부가 작시(作詩)했음은 물론이고, 중국 문인도 그에게 시를 지어 선물했다. 요동의 현득채리에서 마을 사람들에 의해 “강남사람들로부터 받은 시고(詩稿)”²⁹⁾를 도둑맞았다고 기술했는데, 이것이 바로 증거라 할 수 있다.

당시 최부가 표해록을 한문으로 찬술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의 하나로, 1446년 이후 비록 언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는 여전히 한문을 병용했기 때문에 국왕에게 한문으로 찬진(撰進)했을 것이며, 두 번째는 최부가 한문화(漢文化)에 정통했기 때문에 표류 전 과정에서 한문으로 중국 각 방면의 인사와 소통하면서 남긴 대량의 한자기록으로 급히 정리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한시라도 빨리 귀가하여 치상(治喪)하고 모친과 동생을 위로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청과역리의 집에 머물면서 “8일”³⁰⁾ 만에 “일행의 일기를 찬집”³¹⁾한 표해록을 국왕에 올렸다. 최부가 표류 도중 축적한 방대한 한문기록을 언문으로 다시 작성했다면 8일 간의 시간은 충분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문화교류 중 최부가 체현(體現)시킨 유학사상과 선비 정신

중국 유학이 한반도 최초로 전입된 시기는 전국(戰國)시기에 전래된 한자와 보조를 맞추었다. 유학이 대규모로 동전(東傳)한 것은 바로 한대(漢代)였다. 뒤이어 중국 신유학(新儒學), 즉 송의 명리학(明理學)이 흥기(興起)하여 한반도의 주요 주자학파에 점차 전입되었다. “내 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우선 소학, 가례(필자 주: 주자가례)를 가르치고, 과거 역시 그것에 정통한 사람을 취한다.”³²⁾

최부는 유가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유가의 정통교육을 받았으며, “경학궁리를 업으로 삼았다.”³³⁾ 표류의 역경에서도 시종 유학이념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바르게 하여, 자신을 포함 일행 43명의 행동거지에 모범을 보였다. 애국자로서의 고상한 인품, 유학자의 풍모와 정조와 인격적 매력으로 사람들을 탄복케 했다. 여기서는 그의 덕목을 간략히만 소개했을 뿐이다.

유가의 학설에서 “효제충신(孝悌忠信)” 중 으뜸은 “효”다. 최부는,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한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자가 임금에게 충성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³⁴⁾ 그리고 “유학을 존중하고, 모두 입효출공(入孝出恭)하며 충군신우(忠君信友)를 직분으로 삼고 있다.”³⁵⁾ 가례를 준수하여 “친상(親喪)중이며”, “초상(初喪)에 분상(奔喪)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으며… 사람으로서 어찌 촌각인들 지체할 수 있겠는가?”³⁶⁾ 라고 언급했다. 은유(隱儒) 왕을원이 술과 고기로 그를 대접하려고 했을 때, 최부는, “친상을 당하면 술과 고기, 비린내 나는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3년을 마칠 때까지 먹지 않는다.”³⁷⁾ 먼

서 술 대신에 차를 들었다. 가장 이채로운 모습은 상관(喪冠)을 시종 머리에 쓰고 다녔다는 점이다. 몸에 상복을 걸치고 오랫동안 불평하나 없이 정도(長途)를 밟(跋涉)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상(喪)을 벗는 것은 바로 길(吉)이고 효가 아니며, 남을 속이는 것은 신의가 아니다. 비록 죽음에 이를 지라도 효가 아니고, 신의가 아닌 처신은 참을 수 없다”³⁸⁾ 고까지 말했을 정도다.

봉건사회에서 황제와 국왕은 “천하를 개인의 소유로 했다(家天下).” 그래서 유가(儒家)는 “충군(忠君)”과 “애국”을 밀접하게 결부시켰다. 도저에서 설민은, “당신 국왕의 성은 무엇인가?” 라고 묻자, 최부는, “효자는 부모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신하된 자가 임금의 이름을 남에게 경솔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답변했다. 설민이 다시, “국경을 넘었으니 무방하다” 라고 말하자, 최부는, “내가 조선 신하가 아니란 말인가? 신하 된 자가 국경을 벗어 났다고 해서 국가를 저 바리고 행동을 달리하며 말을 바꾸는 일은 할 수 없다” 라고 반박했다.

설민이, “군자감 주부를 역임한 당신이 어찌서 군량의 수량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재차 묻자, 최부는 이 질문이 국가기밀 사항임을 알고, “한 달도 안돼 탄 곳으로 갔기 때문이다.”³⁹⁾ 라며 답변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험난한 표류 도중에서도 조국과 백성의 이익에 관한 생각이 시종 그의 심중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부영에게 수차 제작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집요하게 매달렸다. “내 나라는 논이 많기 때문에 자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소. 제작방법을 백성에게 가르친다면 농업에 도움이 될 것이니, 그렇게 해주면... 우리 백성에게 천세 만세 길이길이 이익이 될 것이오.”⁴⁰⁾ 귀국 후 “전 사직(司直) 최부는 수차를 제조 하기에 이르렀다.”⁴¹⁾

유가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신봉하는데, 그 중 예(禮)가 중요한 덕목의 하나이다. 최부는 표류의 극한상황에서도 원칙의 예를 지켰다. 더욱 돋보이는 귀한 행동이다. 그들이 우두외양에서 등륙한 후, 비를 무릅쓰고 숲을 뚫으며 서둘러 달아나 숨었다. 첫 번째 마을에 들었을 때, 최부는 모든 일행에게, “우리나라는 본래 예의지국이다. 표류되어 궁색하고 황당한 처지지만, 위(威儀)를 갖춰 이곳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예절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가는 곳마다 배리(陪吏) 등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하며, 군인도 배리에게 같은 방법으로 절을 하는 등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또한 마을에서나, 성 안에서 우리를 보려고 모여든 군중·한테 반드시 읍례(揖禮)를 해야 하고, 망동을 하여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훈계했다. 현지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감탄을 자아냈다. “귀국은 예의의 나라라고 오랫동안 들어 왔는데, 과연 소문대로다.”⁴²⁾

표해록이 중조 양국의 문화 정보를 전달하다

1) 표해록이 조선의 정보를 중국에 전달하다

주요 정보는 역사문화 연혁,⁴³⁾ 과거제도,⁴⁴⁾ 학교 및 형(刑)⁴⁵⁾ 제도 등인데,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중조의 양국관계에 중점을 두겠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조 양국 관계는 3,000년 전, 상주(商周)시대의 기자(箕子)가 입조(入朝)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명조(明朝)의 창건자, 주원장은 먼 나라를 회유하는 이른바 “유원(柔遠)” 정책을 채택했다. 고려, 그 뒤 조선과의 설정된 우호는 제후로 봉한 종실(宗室)관계였다. 조선조의 창건자, 이성계는 중국을 “상국(上國)”으로 존대했으며, “지성사대(至誠事大)”를 국책으로 정했으니, 이는 “보국지도(保國之道)”의 정책으로 여겨진다. 명성화연간 조선의 어느 한(韓)씨는 “내 나라로 입국, 대행황제(필자 주: 명 헌종, 주건심을 지칭)의 유모가 되었다.”⁴⁶⁾ 최부는 요동을 출발, 조선관에 도착했는데 “관 앞의 풋말에 쓰여진 ‘외천보국(畏天保國)’의 4글자”⁴⁷⁾가 이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양국 관계는 매우 우호적 이어서 길에 사신이 끊이지 않았다. 1488년 불과 2월과 5월의 기간 동안 최부가 들고 조우(遭遇)한 인적 왕래만 봐도, 조선 하책봉사 안처량 등 24명,⁴⁸⁾ 사은사 지중추 성진 등 16명,⁴⁹⁾ 성절사 참관 채수 등 19명⁵⁰⁾이 중조 양국을 왕복했고, 중국 한림학사 동월과 급사중 왕창이 조선을 다녀오고 있었다.⁵¹⁾

당시 조선은 대명(大明)연호, 의복은 중국 복식, 예는 가례, 형(刑)은 대명률(大明律)을 따랐고, 유학자는 사서오경을 독서했다. 최부가 언급한 것처럼 “명나라는 바다에서 처음으로 빛이 나와 만방을 비추고 있으며 내 나라와는 한 집이라 공헌(貢獻)이 끊이지 않았다.”⁵²⁾ 명조는 공사(貢賜)와 통상 방면에 있어서 조선에 대해 줄곧 특수한 배려를 기울였다.

2) 표해록이 조선에 중국의 정보를 전달하다

표해록의 문체는 간결하지만, 내용은 상세하고 방대했다. 명조 초기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통 및 시정풍속 등 각 방면의 정황에 대한 기록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다. 본 장에서는 절동(浙東)운하에 대해 살펴 보겠다.

중국 남북 대운하는 북방의 끊임 없이 뻗어 있는 만리장성처럼 화하(華夏)민족이 창조한 위대한 공정(工程)의 하나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선형(線形)문화유산이다. 운하의 굴착은 수나라 문제 개황(開皇) 4년, 즉 584년에 시작하여 양제대업(大業)6년, 즉 610년까지였으며, 그 중 옛 운하 이름인 한구(邢溝)는 춘추(기원전 770~476년)시대 오왕 부차(夫差)가

개통한 후, “수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넓혀 배가 다니기 시작했다.”⁵³⁾ 운하는 낙양을 중심으로 북으로 탁군(涿郡), 남으로 여항(余杭)에 이르는 장장 4,800여 리의 대운하였다. 원대(元代)가 굽은 곳을 똑바로 만들어(1,800여 리 단축)개통한 후 준설, 명조의 보수(補修)를 거쳐 북으로 통현, 남으로 항주에 이르는 대운하를 최부는 경과했다. 사실 중국의 남북대운하는 남으로 항주에서 영파까지 더 뻗어 있다. 즉 절동운하(항용(杭甬)운하로도 불린다)다. 520년 전 절동운하와 경향운하의 전정(全程)을 외국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최부는 경과했다. 표해록의 절동운하에 대한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최부 등이 북도강(봉화강에 속한다. 봉화강, 용강, 요강의 합류지점을 영파의 삼강구(三江口)라 부르며, 용강은 바로 봉화강, 요강의 하류로 진해를 거쳐 바다로 흘러 들어 간다)에서 배를 타고 요강, 상우강, 조아강, 감수, 서흥하, 전당강 등을 경과했고, 영파, 은현, 자계, 소흥, 소산, 항주 등 8곳의 시와 현(구)을 거쳤다.⁵⁴⁾ 요강 경과 시 “서파청과 신언 모두, 돌로 물길을 막아 제방을 만들어 외부의 강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했고, 양쪽에 기계를 설치하고 대나무로 만든 밧줄로 배를 잡아 당겼다.”⁵⁵⁾ 또한 상우강 통과 시 하신파, 중파에서도 “배를 당겨 올렸다.”⁵⁶⁾ 배를 잡아 당겨 통과시키는, 속칭 “연파(研壩)”, 즉 수위(水位)의 고저(高低)가 같지 않은 두 개의 하류(河流)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제방을 축조하여 물의 흐름을 막고, 제방 옆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 배를 약간 높이 올린 후, 제방을 끼고 수위가 높은 하류(河流) 위로 배를 잡아 당기든가 혹은 수위가 낮은 하류로 미끄러지게 하여 이 두 개의 하류를 소통시켰다. 최부가 경험한 곳이 바로 절동운하인 것이다.

절동운하는 가장 초기의 중국운하 중의 하나다. 지명도가 있는 한구, 홍구(鴻溝) 등이 세상에 선을 보이기 전에 “산양고수도(山陽故水道, 소흥 동쪽 성벽에서 조아강변에 이르는 20여 킬로미터)가 있었다. 진대(晉代)에는 소흥에서 서흥까지의 운하(50여 킬로)를 파서 소통시켰는데 산양고수도와 서로 연결시켜 절동운하의 기본 골격을 형성케 했다.”⁵⁷⁾ 어느 전문가는 적어도 천 년 전의 북송(北宋)초기에 절동운하가 이미 형성되어 남북대운하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고… 남북대운하는 장구한 역사 동안 국가 내 항운(航運)의 대동맥 역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교통과 연결(連接)한 해외무역과 중외(中外)문화교류를 개방시킨 대통로였던 것이다.⁵⁸⁾

표해록은 중·한 양국 문화교류의 유대와 교량이다

무금추석(撫今追昔)이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과거를 되새기며 옛 것을 익히고 배워 지식을 새롭게하여 현실문제에 직면하라는 말이다. 한국의 적지 않은 식자, 정부 공무원

원, 학자, 교사와 학생 및 최부의 후예가 대륙을 내방하여 당시 최부가 걸었던 길을 따라 실지답사하면서 문화교류를 진행시키며, 계속 전통우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표해록은 중·한 양국민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우의의 새로운 장을 연출하고 있다.

2002년 7월, 최부의 본관 탐진 최씨 대종회의 노력과 최병일 선생의 재정지원을 받아 중국의 영해현 월계에 “최부표류사적비”를 건립했고, 2005년 12월 최부표해록 기념사업회의 주도로, 최부 고향 나주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중국 임해시 도저성 내에 “최부표해록 중·한 민간우호비”를 건립한 바 있다. 이는 이정표를 세운 대업으로, 중·한 문화교류 중심에 표해록이 공동화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표해록은 문화교류 활동에 새로운 계기와 화두를 제공할 것이다.

중·한 양국 국민의 영원한 우의를 바란다.

〈주석〉

- 1) 《漂海录·卷之二·二月十一日》。
- 2) 《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一日》。
- 3) 《漂海录·卷之二·二月初七日》。
- 4) 《漂海录·卷之三·四月初七日》。
- 5) 《漂海录·卷之三·四月十六日》。
- 6) 《漂海录·卷之三·四月十九日》。
- 7) 《漂海录·卷之三·四月初七日》。
- 8) 《漂海录·卷之三·四月十六日》。
- 9) 《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月十一日》。
- 10) 《漂海录·卷之三·四月二十七日》。
- 11) 《成宗康靖大王实录·戊申十九年·七月壬戌》。
- 12) 《漂海录·柳希春题跋》。
- 13) 四书五经：中国儒学典籍，四书指《论语》、《孟子》、《大学》、《中庸》；五经指《周易》、《尚书》、《诗经》、《礼记》、《春秋》。
- 14) 《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一日》。
- 15) 《漂海录·卷之一·二月初四日》。
- 16) 《漂海录·卷之二·二月初七日》。
- 17) 《漂海录·卷之二·二月初九日》。
- 18) 《漂海录·卷之二·二月初八日》。
- 19) 《漂海录·卷之二·二月十五日》。
- 20) 《漂海录·卷之二·二月十八日》。
- 21) 《漂海录·卷之二·二月二十七日》。
- 22) 《漂海录·卷之二·三月初八日》。
- 23) 《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九日》。

- 24) 《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一日》。
- 25) 《漂海录·卷之一·二月初四日》。
- 26) 《漂海录·卷之二·二月初九日》。
- 27) 《漂海录·卷之二·二月十七日》。
- 28) 《漂海录·卷之三·三月二十九日》。
- 29) 《漂海录·卷之三·五月二十九日》。
- 30) 杨万鼎:《关于锦南崔溥撰进漂海录受难及戊午被祸的考察》。
- 31) 《漂海录·卷之一》开篇语。
- 32) 《漂海录·卷之三·三月二十九日》。
- 33) 《漂海录·卷之二·二月十七日》。
- 34) 《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二日》。
- 35) 《漂海录·卷之二·二月十一日》。
- 36) 《漂海录·卷之一·闰正月初四日》。
- 37) 《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八日》。
- 38) 《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六日》。
- 39) 《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二日》。
- 40) 《漂海录·卷之二·三月二十三日》。
- 41) 《成宗康靖大王实录·戊申十九年·八月乙未》。
- 42) 《漂海录·卷之一·闰正月十七日》。
- 43) 《漂海录·卷之一·二月初四日》。
- 44) 《漂海录·卷之二·二月初七日》。
- 45) 《漂海录·卷之二·二月十八日》。
- 46) 《漂海录·卷之二·二月二十二日》。
- 47) 《漂海录·卷之三·五月二十九日》。
- 48) 《漂海录·卷之三·三月二十九日》。
- 49) 《漂海录·卷之三·四月二十七日》。
- 50) 《漂海录·卷之三·五月十六日》。
- 51) 《漂海录·卷之三·四月二十九日》。
- 52) 《漂海录·卷之二·二月十八日》。
- 53) 《漂海录·卷之二·二月二十五日》。
- 54) 《漂海录·卷之一·闰正月二十九日、二月初一日、初二日、初三日、初四日》，
《漂海录·卷之二·二月初五日、初六日》。
- 55) 《漂海录·卷之一·二月初一日》。
- 56) 《漂海录·卷之一·二月初二日》。
- 57) 张学勤 颜越虎:《浙东运河,“延伸”运河文化》。
- 58) 潘承玉:《大运河包含浙东运河的新证明》。

韓-中 교류의 현황과 전망



金容贊 (大邱가톨릭대학교 教授)

서론

1992년 체결된 한·중수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간의 교류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했다. 즉 '한류(韓流)'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상품들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로 인해 한·중 경제교류도 활성화되어 상호 무역이 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교류와 경제교류가 인적교류를 촉진시킴에 따라 한·중간의 관광, 유학, 취업 등의 인적 교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한·중수교 이후 양국간 교류의 활성화는 중국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중 각각 69.3%와 68.6%가 한국 및 한국 제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전체 응답 기업의 47.83%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42.3%가 보통의 입장을 제시해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정준규·김명신, 2007: 3, 5, 18) 한편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이미지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4.4%가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쁘게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4%에 머물러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호감도도 중국인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강내영, 2008: 483)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항(抗)한류'의 확산과 중국의 동북공정, 한·중 FTA체결 논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국의 다양한 교류는 지속

적으로 확대 및 심화될 것이나 현상유지 또는 쇠퇴를 경험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의 한·중 교류의 현황을 문화, 경제,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조망한 후 각 영역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중 교류의 장단기적인 전망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중 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1. 한·중 문화교류의 현황

한·중 문화교류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항공협정의 체결로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문화교류를 위한 토대가 형성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문화협정에 기초해 한·중문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양국간의 문화교류 계획을 형성하고 시행에 옮겼다.(김도희, 2007: 315)

한·중 문화교류에서 공연과 전시행사 개최 및 교류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중국 국무원 신문관공실과 한국 국정홍보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감지중국(感知中國)·한국행’ 행사와 ‘2007년 한·중교류의 해’ 프로그램과 같은 대형 문화행사 및 교류이 외에도 개별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들의 문화교류가 활성화 되어있다.

한편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제작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면 1994년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 CCTV에서 방영된 이래 드라마 ‘대장금’은 1억 8천만 명이 시청하는 인기를 누렸으며 ‘엽기적인 그녀’ 등의 한국 영화와 대중가수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은 중국 내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 흐름을 형성시켰다. 한류열풍에 따라 한국정부는 베이징에 한국센터와 상하이에 한국문화산업 중국서비스센터를 설립했다. 한류와 비교해 한국에 유입된 중국문화를 ‘한풍(漢風)’으로 명명하고 있다. 한류에 비해 한풍은 아직 미약한 수준으로 중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소개하는 다큐 프로그램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김도희, 2007: 322~325)

최근 한류의 형성과 발전에 비해 중국 문화상품의 한국으로의 진출이 부진하자 한류현상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규제와 경계심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산 미디어 상품에 대한 제약과 드라마 방송 제한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중국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조치가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 미디어산업의 구조개혁과 미디어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시너지 효과 제고 등의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장수현, 2007: 11~12)

한편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국 내에서 반중국 감정을 촉발시켰다. 2004년 한국방송공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비호감층이 58.2%를 차지할 정도로 동북공정은 중국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이옥연, 2004: 128~130) 또한 한국에서는 '중국 위협론' 또는 '중국 경계론' 등이 제기되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과거사 연구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특히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양국 내 일반 국민들 내에서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성장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2. 한·중 문화교류의 전망

현재의 한국과 중국간 문화교류는 앞으로도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한·중 문화교류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할 점들이 있다. 우선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간의 수급 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중국 드라마나 여타의 미디어용 문화상품이 한국인들에게 선호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문화상품이 과거 지향적이라고 한다면 한류는 최근 한국 내 상류층의 모습만을 그리면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보다는 왜곡된 이미지의 양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중국의 문화상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증진과 동시에 중국 내에서 향한류¹⁾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문화상품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 즉 한류가 가지고 있는 한국 중심주의는 한·중간의 문화교류가 아닌 한국문화의 수출과 중국의 일방적인 수용으로 여겨져 반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한·중 문화교류에서 학술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어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 촉발된 한국의 고구려사(高句麗史)연구도 과거 역사연구가 한·중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학술교류가 교량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인 기여는 미미했다. 따라서 양국정부의 지원에 의한 학술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민간차원의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한국과 중국사회 지식인그룹의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이 확대되고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민간 학자들의 활발한 공동 연구와 토론, 공동 발표 등은

1) 정서 2006년부터 한국드라마의 인기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한국 영화도 높은 흥행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불법 DVD와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등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한 향한류 정서의 확대가 한류 열풍의 퇴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의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 1위에 한국이 꼽히는 상황이 발생했다.(강내영, 2008: 458-460)

<표 1> 한국의 중국 및 세계 수출입과 무역수지 현황

1993년~2005년 (단위: 백만달러)

연도	대중국 무역			대세계 무역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1993	5,151	3,929	1,222	82,236	83,800	-1,564
1994	6,203	5,463	740	96,013	102,348	-6,335
1995	9,144	7,401	1,742	125,058	135,119	-10,061
1995	11,377	8,539	2,839	129,715	150,339	-20,624
1997	13,572	10,117	3,456	136,164	144,616	-8,452
1998	11,944	6,484	5,460	132,313	93,282	39,031
1999	13,685	8,867	4,818	143,685	119,752	23,933
2000	18,455	12,799	5,656	172,268	160,481	11,786
2001	18,190	13,303	4,888	150,439	141,098	9,341
2002	23,754	17,400	6,354	162,471	152,126	10,344
2003	35,110	21,909	13,201	193,817	178,872	14,945
2004	49,763	29,585	20,178	253,845	224,463	29,382
2005	56,463	35,205	21,258	258,900	236,922	21,978

출처: 이두원, 2006: 5쪽에서 재인용, 2005년의 경우 11월까지의 자료임.

전문가 차원에서 상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일반 국민들 사이에 비합리적으로 내재해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중, 반한 감정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1. 한·중 수교 이후 경제관계의 활성화

한·중 경제교류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산업구조의 보완성 등이 양국간의 수출입을 연평균 15% 이상 증가시키는데 기여했으며 2003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제1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또한 중국 무역에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2000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에서 얻은 흑자규모는 한국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이두원, 2006: 5)

한편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한국기업의 중국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05년의 경우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는 중국이 유치한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의 1/3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지역적으로 보면 한국과 인접한 산둥, 천진, 요녕, 상해 등지에 집중되었던 투자지역이 점차 남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분야도 제조업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두원, 2006: 6~7)

2. 한·중 경제교류의 전망

앞으로 중국 경제는 현재의 고성장 기조가 둔화되어 경착륙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 이후 위엔화 절상, 인건비 상승, 고령화와 소득격차 심화 등의 요인과 고성장-고물가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경착륙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경착륙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경제성장의 목표로 제시했다. 2006년 제시된 '조화로운 세계' 테제는 도농간, 지역간 발전의 조화, 사람과 환경의 조화 등 각 부문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친환경, 고효율 성장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질적 성장을 위해 내수 확대와 수출구조 고도화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내에서는 중국 경제상황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중 경제관계의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출되고 있다. 즉 중국 수출 품목을 기존 부품위주에서 고부가가치 품목위주로 전환하고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시에 요구되는 서비스, 환경 및 에너지, 유통 부문에서 한·중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고 교류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10~13, 18~19)

한편 한·중 경제교류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 최근 모색되고 있는 것이 한·중 FTA이다. 한·중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로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기초해 한·중 경제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과 중국은 WTO체제의 약화에 따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체결과 지역자유무역협정체결의 활성화라는 추세에 부합해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중간에도 FTA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민간연구를 기초로 2007년 말까지 정부가 포함되는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2005년 한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최초로 중국에 대해 WTO에서의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다.

한국 내에서는 한·중 FTA체결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긍정적인 효과로는 수출증대와 상품무역 이외의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을 포함하는 영역까지 중국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출되고 있다. 우선 중국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 체계가 허술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가능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게 될 경우 중국 발 경제위기로 인해 심대한 경제적 타

〈표 2〉 한중 관광교류, 1997년~2006년

(단위: 명)

연도	방중관광(한국→중국)		방한관광(중국→한국)	
	순수관광	전체	순수관광	전체
1997	185,704	584,487	35,578	214,244
1998	71,282	484,009	54,300	210,662
1999	237,328	820,120	137,816	316,639
2000	415,791	1,033,250	194,266	442,794
2001	596,992	1,297,746	222,170	482,227
2002	867,522	1,722,128	237,904	539,466
2003	694,918	1,569,245	190,492	512,768
2004	1,191,691	2,334,781	264,910	627,264
2005	1,638,838	2,963,162	314,433	710,243
2006	-	-	392,142	896,969

출처: 최경은, 2007: 529쪽에서 재인용.

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중 FTA를 고려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의 확대와 기술 획득 및 산업경쟁력 제고, 동북지방에 대한 투자 유치 등을 기대하고 있다.(김시중, 2007: 149~153)

장기적으로 보면 한·중 FTA체결은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중 교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어느 수준의 FTA를 체결하느냐이다. 중국의 경우 상품무역에 대한 철폐를 우선시 할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 가급적이면 비관세장벽, 서비스무역, 투자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까지 포함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측이 제기하는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의 분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중간의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중 인적교류의 현황과 전망

1. 한·중 인적교류의 현황

1998년 중국정부에 의해 중국 국민들의 방한관광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한·중간의 관광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리적 인접성, 경제교류, 한국 내 문화관광 자원 등이 중국인의 한국방문에 영향을 미쳐왔지만 최근에는 중국 내 한류 현상이 중국인 방한

2) 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족의 한국 내 고용으로 인한 중국 송금액은 2004년 기준 5억 7,570만 위엔(달러 기준 약 7,000만 달러)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 내 한국기업을 통한 임금 소득을 합할 경우 연간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두원, 2006: 20) 다른 연구에서는 2002년의 경우 조선족이 한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이 4억 7천만 달러에 달하며 2001년 연변계정수입의 2배에 달한다는 수치도 제시하고 있다.(정천구, 200쪽에서 재인용) 따라서 송금과 임금은 조선족의 소득증대 및 조선족 거주지역인 중국 동북 3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 출신 국적별 체류외국인 수 상위 5개국 현황

2007년 (단위: 명, %)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16-60세	전체		
총	계	1,066,273	842,809	202,455	223,464	21.0%	
중	국	4) 503,427	401,001	88,656	102,426	20.3%	
한	국	계	328,621	294,173	26,910	34,448	10.5%
미	국	112,268	106,321	2,546	5,947	5.3%	
베	트	71,074	56,082	14,921	14,992	21.1%	
필	리	50,873	36,453	14,109	14,420	28.3%	
태	국	47,813	32,926	14,713	14,887	31.1%	
일	본	41,053	40,178	463	875	2.1%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관광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의 43.9%가 한국관광 선택에 한류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해 중국인의 방한관광 증가에 한류현상이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경은, 2007: 529, 532)

한편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수도 1997년 5만 명에서 2000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2004년부터 매년 10만 명 씩 증가해 2007년 말에는 약 70만 명의 한국인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세계일보, 2007년 8월 24일자) 거주 한국인의 증가로 중국 내 한인촌이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베이징의 왕징신청(望京新城) 지역의 경우 7만 명의 한국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산둥성 칭다오시의 청양(城陽)구, 톈진의 메이장 등에도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동아일보, 2007년 8월 11일자)

한편 한·중교류의 발전은 중국 내 조선족의 한국 방문과 취업을 활성화했다.²⁾ 조선족은 한국 내 체류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법 체류자 중의 상당수는 방문취업자와 특별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입국해 체류하고 있다. 조선족들은 한·중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입국했고 일부는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머물면서 정착한 경우들도 있다. 한·중수교의 영향으로 조선족의 한국 입출국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한국정부는 중국 동포들을 사실상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배제했던 기존 '재외동포법'을 수정해 조선족을 재외동포에 포함시켰다. 또한 조선족을 적극적으로 한국 내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문취업제와 특별고용허가제도³⁾를 신설해 취업을 허용하고 지원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최근 조선족의 한국 입국과 취업이 증가했으며 전체적인 외국인의 이주와 체류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여성과 한국남성의 국제결혼도 증가해 중국인의

3) 방문취업제와 특별고용허가제의 경우 다른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처럼 3년 체류 후 출국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대상자를 재외동포로 한정함으로써 조선족의 한국 내 고용을 촉진시켰으며 방문취업의 경우는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이라는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윤영미, 2008: 26쪽)

4)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을 포함한 수치이다.

입국과 체류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여성들이 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귀화를 통한 한국국적 취득자 중 절대다수를 중국인이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중 경제교류의 증가는 한국과 중국간의 인적교류 이외에도 조선족의 중국 내 이동을 촉발시켰다.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이후 조선족의 이촌향도 현상이 두드러져 조선족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20만 명 정도가 농촌 지역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으며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지역 확대에 따라 산둥과 상해 등의 연해지역으로의 이주와 진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이두원, 2006: 15)

한편 교육 분야에서의 인적교류도 증가해왔다. 1995년과 1998년 체결된 「대한민국 교육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교류와 협력합의」를 통해 대표단 교류, 유학생 교류, 학술교류, 외국어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양국의 교육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초를 마련했다. 이후 2001년과 2004년에도 「교류협력과 협력회의」에 양국 정부가 조인했다. 이러한 정부간 협력을 토대로 현재 중국의 130개 대학과 한국의 120개 대학이 교육교류를 실행하고 있으며, 정부장학생의 교환과 교사 교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유학생의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말 중국의 한국유학생 수는 5만 4천 명에 달하고 한국 내 중국유학생도 2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한국에서는 중국유학생이 외국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한국유학생이 외국인유학생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김도희, 2007: 317~318)

2. 한·중 인적교류의 전망

한·중간의 관광의 경우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향후 현재의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유학생의 교류도 중국 국력의 성장에 따라 현재보다는 그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한류의 영향에 따라 증가했던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의 수는 다소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교류가 지속되어 오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관광객과 유학생 수의 급감하는 것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정부는 현재 관광과 유학에 있어서 불균등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보다 많은 중국인의 한국 관광과 우수인력의 한국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유학과 한국 내 활용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그동안 조선족에 대한 여러 조치들을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과 갈등을 빚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심스럽게 전개해왔으나 최근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방문취업제와 특별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중국 조선족의 입국과 취업을 대폭 허용하는 변화를 추

진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조선족의 한국 입국과 고용은 지속될 것이며 시장의 수요와 조선족의 이주 희망 정도에 따라 확대 또는 감소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

조선족의 입국과 취업제도의 시행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현재의 제도들을 통해 조선족이 입국하더라도 3년의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귀국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3>에서처럼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정착하게 되고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면 한·중간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중국 조선족의 불법체류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으로의 전환 추진과 동시에 본국으로의 귀환을 목표로 한 조치들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내 조선족의 국내 이동에 기여했던 한국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변화하면서 조선족의 국내 이동은 과거와 달리 다소 둔화될 것이다. 즉 한국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국 전역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해짐에 따라 조선족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현지 인력의 활용과 이를 통한 중국 주류사회와의 관계 구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향(向)중국인력'과 '중국향(向)한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선족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력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다.(이두원, 2006: 9) 앞으로 중소기업이 대거 중국에 다시 진출하면서 투자를 늘리지 않는 한 한국 기업의 조선족 인력의 활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즉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악화된 사업 환경의 영향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과 조선족 고용 증대라는 상황을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결론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문화, 경제, 인적인 측면에서 확대와 심화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양국간의 문화교류는 불균등성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왔으며 인적교류도 문화와 경제교류의 영향을 받아 증가되어 왔다. 특히 한국정부의 조선족을 위한 취업제도의 도입으로 중국 조선족의 한국 노동시장 유입은 계속되어왔다. 경제교류는 한·중 수교 이후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지속해온 영역이다. 양국간 경제분야에서의 상호 의존도는 계속해서 심화되어왔으며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중 교류의 확대와 심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중국 내에서 한류의 쇠퇴와 향한류의 등장, 중국의

동북공정, 한·중 FTA 논의의 진전, 중국 조선족의 한국 입국과 고용의 확대 등이다. 이러한 변수들 중 한·중 FTA의 경우 체결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한·중 교류의 모든 영역에 있어 직접적 영향이 미칠 것이다. '높은 수준'의 FTA의 경우 지적재산권, 서비스 분야를 포괄해야하기 때문에 경제교류 이외에도 문화교류와 인적교류를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의 체결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을 동시에 양산할 것이다. 따라서 체결 준비과정과 실제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외부협상'과 함께 '내부협상'인 국내협상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피해 부문에 대한 사전 보완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해 한·중교류의 심화와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미칠 정치, 외교적인 측면의 함의와 긍정성도 양국 정부는 공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향산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같은 한국 문화상품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국 문화상품의 한국 진출도 공히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중국에 대한 내용이 아닌 현재 중국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의 고구려사연구는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모색해야 하며, 향후 국가의 주권과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공동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적교류와 관련해 한·중 모두 현재의 관광과 유학 목적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면서도 전문가와 지식인 그룹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현재 조선족을 위한 취업허용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불법체류와 불법적인 방법의 영구 정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지난 5월 한·중정상간의 '한·중공동성명'은 향후 단기간 내 한·중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성명에서는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과 통신과 금융,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 분야 확대, 사증 편리화 조치 검토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세계일보, 2008년 5월 29일자) 발표된 공동성명은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한·중 교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들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포괄적인 한·중 교류 증대 방안의 모색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내영, “중국의 항(抗)한류 현상 연구: 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제43집.
- 김도희, “한·중 문화교류의 현황과 사회적 영향,” 『현대중국연구』제9집 2호.
-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전망,” 『국제통상연구』제12권 제3호.
- 삼성경제연구소, “한·중 경제관계의 회고와 전망,” 『CEO Information』 제618호.
- 윤영미, “한국적 다문화정책의 주요이슈와 과제,” 『새 정부의 다문화정책: 과제와 방향』(서울: 다문화정책포럼, 2008).
- 이두원, “한·중 경제교류가 조선족 경제에 미친 역할,” 『동북아경제연구』 Vol. 18, No. 1.
- 이옥연, “한·중 문화교류와 한·중 ‘공동의 집’,” 『역사비평』통권 69호.
- 장수현, “중국에서의 한류의 의미와 전망,” 『중국 이슈리포트』제2007-25호.
- 정준규·김명신, “한·중수교 15주년, 중국이 평가한 한국과 한국기업,” 『중국 이슈리포트』제2007-32호.
- 정천구, “조선족, 탈북자 그리고 한·중관계,” 『통일전략』제6권 제1호.
- 최경은, “중국인의 방한관광에 대한 한류의 영향,” 『대한지리학회지』제42권 제4호.
- 『동아일보』2007년 8월 11자.
- 『세계일보』2007년 8월 24일자.
- 『세계일보』2008년 5월 29일자.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면역

中韩交流现状与展望

金容贊 (大邱Catholic大學校)

번역·崔麗梅

自1992年中韩建交以来，两国友好合作关系在各个领域都取得了快速发展。以韩流为代表，让众多中国人了解和认同了韩国文化，并且使两国之间的经济友好合作有了进一步的提高。通过促进文化交流、经济交流和人际交流，中韩两国间的观光、留学、就业等各领域有了迅速的发展。但是通过网络，中国“抗韩流”的扩散和韩国对中国的“东北工程”、签订中韩FTA等反对因素，使两国间多种交流是否要继续扩大还是维持现状，还是将衰退下去等是此刻关键的视点。

中韩文化交流现状与展望

中韩关系自1994年韩国总统金泳三访华时签订的“大韩民国和中华人民共和国政府间关于文化合作协议”时正式开始。在文化交流上起着较大作用的是文艺演出和展示会的召开。另外韩国影视剧和音乐等领域也给两国文化交流做出了巨大的贡献，特别是韩剧『大长今』的播出吸引了1亿8千万名中国观众的爱戴，同时韩国歌手也纷纷走向中国舞台形成了无可阻挡的韩流热潮。

最近相对韩流的形成和发展，中国文化商品进入韩国产生了萧条现象，对此中国出现了多种制约规定和警惕之心。中国对韩国媒体、韩剧播放等采用了制约措施，并且中国也在努力加强文化产业的竞争力。由于“东北工程”，韩国产生了“反中”之情，根据2004年韩国放送公司的舆论调查表明，韩国人对中国有非好感的人占58.2%，同时韩国又陆续提出“中国威胁论”和“中国警戒论”，使两国人民产生了排外心理。

以现状来看中韩两国将会继续扩大友好关系，但是在文化交流方面，首先，在电视连续剧、电影、音乐等领域里中韩供需不等问题上要有进一步的改善，其次中韩两国要增加学术上的交流。

中韩经济交流现状与展望

中韩两国经济交流在两国建交以后有了显著的提高。自2003年以后中国成为韩国的第一出口国，特别是在2000年以后，中韩贸易取得的盈余占韩国总贸易盈余的一半以上。另外从1999年初起韩国企业对华投资有了明显的增加，就2005年来讲，韩国企业对华投资额竟占中国总海外投资额的1/3，同时从单纯产业领域扩大到制造业等多

项领域。

预测中国将以放慢经济增长速度并且具有硬着陆的危险性。北京奥运过后，会产生人民币升值、人工费增长、高龄化及消费落差等现象。在存在着硬着陆危险的情况下中国政府将以质的生长取代量的生长，所以韩国正在筹备符合中国经济状况变化的中韩经济关系构筑。在韩国对于签订中韩 F T A 具有期待和忧虑。令人期待的是在中国市场可增加出口和扩大商品贸易以外的服务行业、知识产业等，但是让人忧虑的首先是中国农产品的流入使韩国国内的农产品受冲击，在开放制造业领域上也有不少的损失。其次如韩国加深与中国经济的依赖度，那么因中国引起的经济危机会给韩国经济带来巨大的打击。所以以长期的角度来看在某种程度上签订中韩 F T A 不仅会给两国带来经济效果，还会在中韩交流上得以进一步的提高。

中韩人际交流现状与展望

1998年 根据中国政府允许中国国民访韩观光制度，两国人民的观光交流正式开始。根据问卷调查，访韩中国旅客中43.9%的人是因为受到“韩流”的影响，可以看出韩流对中国人民起着相当大的作用。在中国的韩国人从 1997年的5万名扩大到 2000年的20万名，从 2004年起每年均增加10万余人，到 2007年止共有70万名韩国人居住在中国，同时在部分地区还设有韩人村。

在中韩友好交流的发展下韩方为中国朝鲜族同胞开放了访问就业制度。现在在韩朝鲜族人数占总外国人的首屈位置，合法居留者中大部分都是以访问就业和特别雇佣许可制进入韩国。随着中韩经济的发展，促使很多中国国内朝鲜族们纷纷进入韩企，并且移居到各沿海城市和山东半岛。在教育领域上，中韩两国的交流也有着显著的增加。在两国政府的积极支持下，中国的130所大学和韩国120所大学之间积极的进行着教育交流。就留学生来说，2006年末在华韩国留学生人数达5万4千余名，在韩的中国留学生数达2万余名，另外两国留学生都占据着留学生总数的第一位。

中韩两国观光人数不会有数字上变化，并且将会继续保持增长趋向。随着中国国力的发展两国间的教育交流也会逐渐增加，但是受“韩流”影响的观光旅客和留学生多少会有减少现象，但在短时间内不会大幅度减少。在朝鲜族的问题上，两国政府正在积极探讨人力雇佣方案，对于在韩非法居留的朝鲜族，韩国政府将以遣送回国的方法来解决这一难题。根据韩国企业在中国的发展趋势，对人才要求也有了质的变化。从以前雇佣朝鲜族到现在雇佣汉族员工等这发展过程，可让人看得出韩企将对朝鲜族员工的需求逐步进入萎缩状态。

总之，自中韩两国建交到以来，从文化、经济、人力等方面都有了飞跃的发展。中韩交流的扩大和深化变化可以看出是从20世纪开始的，其原因是从中国的韩流浪潮、韩流衰退、抗韩流、东北工程、中韩 F T A 论争到中国朝鲜族进韩和就业等问题。在这些问题上两国政府为了友好关系发展做出了积极的努力，在实现中韩联合声明中“战略性合作伙伴关系”；两国阐明要强化两国间的外交、安保、经济、社会和文化等领域的交流与合作。

崔溥와 漂海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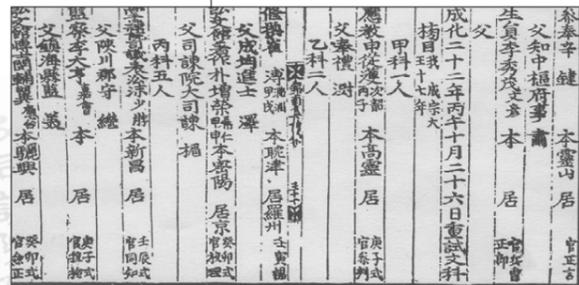
崔哲鎬 (漂海錄研究會會長)

표해록이란?

1488년 조선 성종조 홍문관(弘文館) 부교리(副校理)인 최부(崔溥)가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濟州)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부친의 부고를 받고, 수행원 42명과 함께 귀향하다가 흑산도 근해에서 폭풍우를 만나, 서해에서 근 14일간 표류(漂流) 끝에 九死一生으로 그 해 윤 정월 16일에 절강성(浙江省) 임해(臨海)의 우두외양(牛頭外洋)에 표착(漂着)하였다. 처음에는 임해(臨海)의 군민(軍民)으로부터 왜구(倭寇)로 오인(誤認) 받아 해안 경비대가 있는 도저소(桃渚所; 현 도저성)로 끌려가 5일간의 고된 심문(訊問)을 받았다. 결국 조선의 관리 신분임이 밝혀져 항주, 북경을 잇는 경향대운하(京杭大運河)를 따라 8,800여 리의 남·북을 관통, 중국에 체류한지 136일 만에 그 해 6월 4북경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전원 무사히 환국했다.

최부는 귀향하여 부친을 치상(治喪)하지 않고, 성종의 명령으로 청과역에 머물면서 체험담을 일기체로 찬진(撰進)하였으니, 이 책이 표해록(漂海錄)이다. 표해록은 최부의 외손(外孫)인 미암 유희춘(柳希春)이 목각본으로 최부

사후 근 70년 만에 최초로 출간했다. 해외에서는 1769년 일본에서 덕천(德川)시대의 유학자인 키오다(清田君錦)가 당토행정기(唐土行程記)로 개명(改名), 일어 고문으로 번역 출간했고, 1958년 미국 컬럼비



아대학 교수인 John Meskill은 표해록을 영역(英譯)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65년 이를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일본스님 원인(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와 더불어 표해록을 고대 중국의 3대 기행문(紀行文)으로 손꼽고 있으며, 중국의 학자는 표해록이 해양문화의 정채(精彩)이며, 문헌상으로도 다른 중국견문록보다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79년 최기홍(崔基泓)이 국역본을 출간, 독자에게 널리 소개했는데, 그 이후 표해록 연구의 기폭제가 되었다. 국내의 언론에서는 한국일보가 이 출간 사실을 특집으로 보도했다. 현재 각 대학에서 표해록 연구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출판사도 세대별 표해록을 연이어 출판하고 있다.

표해록의 의미

표해록은 당시 중국 명조(明朝)의 해방(海防), 해금(海禁)정책에 의해, 양자강 이남을 가 볼 수 없었던 조선, 일본인 등에게는 보기 힘든 자료일 뿐 아니라 또한 최부가 중국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명나라의 초기의 정치, 군사, 문화, 생활정황 등 각 방면에 걸쳐 빼놓지 않고 기록하여, 그가 남긴 기록의 일부는 현존의 중국 문헌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귀중한 문헌적 가치가 있다.

표류 당시, 불과 35세인 최부는 난파선에 의지한 채 바다에서 근 14일간 생사기로의 표류 후, 간신히 중국의 어느 해안에 등록하여 필설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은 끝에 5개월 만에 표류사(漂流史)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원 무사히 귀국하게 되는데, 표류 중 극한 상황에서 우락부락한 군인, 종자, 선원 등 42명을 설득하여 위기를 극복해 낸 일이라든가, 중국의 해안에 등록 후 왜구로 피체(被逮), 죽음의 직전 상황까지 갔으면서도 혐의를 벗어난 그의 리더십과 행동규범은 미증유(未曾有)의 소중한 정신사적 가치이기도 하다.

전 여정동안 보여준 최부의 인의예(仁義禮)와 효사상(孝思想), 당당한 태도와 신념, 또한 중국의 문화, 역사에 대해 중국인보다 더 해박한 지식은 중국의 군민을 감복케 만들었고, 급기야는 이는 명의 황제까지 보고가 된다.

피의자로 심문당하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국가관과 안보관은 당당했다. 어느 일간 신문 논설자는 그의 칼럼에서, “누가 북방외교를 잘 했나?” 라고 최부의 자세를 인용, 작금의 우리나라 외교담당 공직자의 자세를 일갈하였다. 또한 조난자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부는 명나라 초기 조정의 난맥상(亂脈相), 심지어 황제를 비판하기도 하여 호송하는 중국 관리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시도 상복(喪服)을 벗지 않는 끈뚱함을 보였다. 상을 준 명나라 황제에게 사은(謝恩)차 입궐했을 때도, 길복(吉服)으로 갈아입으라는 중국 관리의 집요

한 설득에도 최부가 말을 듣지 않자, 하는 수없이 황제에 예를 표시할 때는 길복으로 갈아 입고, 쫓겨나설 때는 상복으로 다시 갈아입는다는 절충안이 타협되기도 했다.

최부의 실용정신(實用精神)도 빼 놓을 수 없다. 최부는 귀환하는 도중 중국의 소흥지방을 지날 때, 그 지역의 논에서 농부가 수차(水車)로 물을 대는 광경을 목격하고, 당시 조선에게는 첨단 장비라 할 수 있는 수차의 설계도를 숙지하여 돌아와 호서지방에 가뭄이 심했을 때, 이를 직접 재작하여 사용했다.

비록 약기(略記)하였지만, 표해록에서 보여준 최부의 리더십, 국가관, 안보의식, 효사상, 인의예(仁義禮) 등은 520년의 시공을 훌쩍 넘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관의 랜드마크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적 기록유산인 표해록의 존재를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고, 이에 대한 신진 연구학자들도 드문 현실이 안타깝지만, 작금에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 최부와 그의 표해록을 프로그램화 시킨다니 그나마 위안이 된다.

금남(錦南)최부(崔溥)는 누구인가?

금남(錦南) 최부(崔溥)의 자(字)는 연연(淵淵)이고, 본관은 탐진(耽津), 단종 2년, 1454에 전남 나주 곡강면(曲江面) 성지촌(聖智村)에서 출생했다. 최부는 나이 29세에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이듬해에 교서관(校書館) 저작(著作)으로 관직을 시작, 사헌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문재(文才)를 인정받아, 동국통감(東國通鑑), 여지승람(輿地勝覽)의 편찬에 참여 하였다. 성종 18년, 1487년에 홍문관 부교리, 그 해 11월에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488년 정월 30일 나주로부터 부친의 부고를 받고, 동년 윤정월 3일 분상(奔喪)차 수행원 42명과 함께 승선하여 나주로 귀로(歸路)중 바다에서 폭풍우를 조우(遭遇), 대양에 표류하기 시작하여 귀국까지 136일간의 중국 대륙의 표류체험을 일기형식으로 저작했다. 그 후 최부는 사헌부 지평(持平), 예문관 응교(藝文官 應教), 예빈시정(禮賓寺正) 등을 역임했다. 1496년 5월 호서지방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연산은 최부를 호서에 보내 중국에서 배워온 수차(水車)제조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여 가뭄을 극



복하도록 했다.

연산군 4년, 1498년 7월 최부는 무오사화에 연루, 스승인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집을 소장했다는 이유로 장형(杖刑)을 받고, 단천(端川)으로 유배되었다. 다시 연산군 10년, 1504년에 갑자사화로 형사(刑死)되었으니, 그의 나이 51세였다. 중종 2년, 1507년에 신원(伸冤), 승정원 도승지로 추증되었다. 최부의 묘소는 현재 전남 무안군 몽탄면에 있다.

최부의 가족도(家屬圖)

최부는 해남 정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3녀를 두었다. 맏사위 유계림(柳桂隣)으로부터 성춘(成春), 희춘(希春), 둘째 사위 나질(羅咥)한테서 사선(士愼), 사돈(士惇), 사침(士忱), 사척(士揚)을, 셋째 사위 김분(金雰)에게서 도제(道濟), 덕제(德濟)를, 서자(庶子) 적(迪)에서 손자 만령(萬齡)을 얻었다.

최부와 유희춘(柳希春)

최부의 외손으로, 16세기 중반에 주로 활동했던 인물로, 1513년 전라도 해남에서 태어나, 1577년에 작고하였다. 26세 때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간 이래, 여러 정치적 사건의 부침을 겪으며 학자로서 성장했다. 한때에는 임금의 경연관(經筵官)으로 활약했으며, 말년에는 사헌부 대사헌과 홍문관 부제학 등의 고위 관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미암일기(眉巖日記)

유희춘의 말년에 해당되는 1567년부터 1577년까지 약 11년간 꾸준히 기록한 친필 일기로서, 기록자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담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유희춘으로 대표되는 16세기 양반계급의 생활과 그와 관련된 생활사적, 사회사적 면모를 추적할 수가 있다. 한편 임진왜란 때 선조25년 이전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다 타고 없어져 선조실록(宣祖實錄)을 편찬할 때 사료가 없었으므로 이 책은 울곡 이이(栗谷 李珣)의 경연 일기(經筵日記)와 더불어 조선실록의 첫 10년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한다. 미암일기는 1963년 보물 제260호로 지정되었다.

미암일기에 기재된 최부와 표해록

최부의 표해록은 최부 사후 근 70년 만에 그의 외손인 유희춘(1513~1577)에 의해 최초 개간(開刊), 조선의 일반인에게 소개 되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미암일기에 생생하게 기

록되어 있다.

○1568년 6월17일: 우상 홍지(洪遲)가 말하기를, “갑자(연산군 10, 1504) 10월에 최부가 초옥(招獄)의 남간(南間)에 들고 김전(金銓)과 언필(彦弼) 등은 서일간(西一間)에 들었는데. 연산이 최선생의 형을 행하라고 명하자, 김전 등 5, 6인이 모두 찾아가 작별을 하는데 최선생이 차분하게 술을 평소 다를 바 없이 받아 마시며, ‘공들은 잘 있게’ 하였다니, 죽음에 임한 정신력이 보통사람보다는 뛰어난 분이다” 라 했다.

○1568년 8월 1일: 나중부(羅仲孚)를 붙잡아 두고 함께 금남선생집을 교정하였다.

○1568년 10월 24일: 아침에 외조 금남선생의 제사를 지냈다. 기일이기 때문이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장, 약 두분께도 제사를 지냈다. 돌아온 기쁨을 고한 것이다.

○1570년 5월 28일: 2절지 장지(狀紙) 4권과 송인묵 2자루를 민충원에게 보내 정주목사 윤대용에게 보내 속히 표해록을 인쇄해서 보내게 했다.

○1568년 7월 22일: 서원(書員) 김근이 관서에서 돌아왔는데 정주에서 인출하여 보낸 표해록을 가지고 왔기에 나는 즉시 장책(粧冊)하는 제원(諸員)에게 맡기면서 여기에 들어갈 종이까지 쫓다.

○1571년 5월 24일: 나는 “금남선생의 사실”을 초기(草記)하였다.

○1571년 6월 18일: 금남집을 개간(開刊)하기 위하여 글씨를 나누어 18읍에 판각을 나누어 정하였으니 모두 42판이다.

○1571년 9월 6일: 김계(형언)에게 특별히 보낸 바가 있고 또 평안 황해 2감사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그것은 표해록의 판을 서울 한강으로 수송케 하여 나주의 배로 실어 오려는 것이다.

○1571년 11월 2일: 2명의 전주 사람이 관서에서 돌아왔는데 윤감사가 도내에 둔 각판(刻板)을 타도로 보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15건을 인쇄해서 보내왔다. 전라감사 이양원이 찾아와 답소를 나누고 표해록 15건을 받아 나주에서 개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다.

○1572년 11월 8일: 이양원이 전라감사도의 영리 이용조를 보내 서(書)를 보내 왔는데 내용인즉 표해록을 남원부에 맡겨 각판을 분정하여 개간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아주 기쁘다.

○1573년 6월 25일: 전라감사 이중호가 이르러 나는 표해록을 남원에서 개간해줄 것을 부탁하고 잠시 술을 수작하다가 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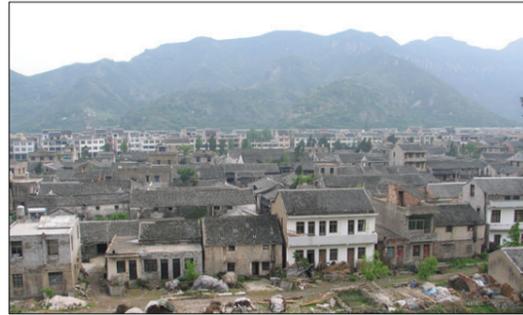
○1573년 7월 20일: 집에 돌아와 보니 표해록이 이미 남원에서 개판(改版)이 되어 1건이 인출되어 나는 보고 몹시 기뻐다.

○1575년 11월 4일: 나주의 경주인(京主人) 손봉조는 우리 외조 최금남이 바다에 표류

했을 때에 모셨던 효자(孝子)의 손이다.

○ 1576년: 6월 24일: 조한(趙佃)이 보낸 표해록 인쇄할 종이를 남원으로 보냈다. 인쇄하기위해서이다.

○ 1576년 6월 27일: 남원부사 이관(李瓘)의 자 효원(效元) 조원(調元)의 답서에, “표해록은 정(精)하게



도저성 전경.

수장(修粧)하여 근일에 속히 보내 드리겠습니다” 했고, 다음 달 5일 경에 와서 뵈겠다고 하였다.

○ 1576년 7월 1일: 조한의 종의로 남원에서 표해록을 인쇄하여 수장(修粧)했기 때문에 이제 봉해서 보낸다.

나주목사 김명원이 금남집을 보내왔다. 그것은 내가 발문에 임인춘(壬寅春)을 동(冬)으로 고쳐서 인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도저성(桃渚城)

桃渚, “渚”는 물의 옆이라는 뜻이고, “桃”는 그 지역에서 복숭아가 많이 생산된다 해서 ‘도저’라 했다. 도저는 삼문만(三門灣)과 태주만(台州灣)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옛날부터 “바다로부터 태주로 들어오는 요충지”로 바다를 지키는 전선이며, 육지로 통하는 태주부의 전략요충지였다. 왜구의 침요가 빈번하여 명나라 홍무17년(1384)부터 북으로는 산둥, 남으로는 절강 연해의 요충지에 성과 연못을 쌓고 대비했다.

도저성은 명나라 정통8년(1443)에 호부우시랑(戶部右侍郎), 초굉(焦宏)의 감독으로 건립되었다. 당시 절강 동남쪽 해안에는 왜구침략에 대비하여 41개소(所)의 방어소가 있었는데, 도저성은 그 중의 하나다. 명나라 군대 편제는 백호소(百戶所)에 대략 110명의 병사가 배치되었고, 우두머리를 백호(百戶)라 불렀고, 1120명 배치된 곳을 천호소(千戶所), 그 우두머리를 천호(千戶), 5600 병사가 배치된 곳을 위(衛)라 했으며, 그 우두머리를 지휘사(指揮使)라 했다. 도저성은 천호소(千戶所)가 있었던 곳이며, 해문위(海門衛)의 관할 하에 있었다. 그 당시 태주에는 태주위(台州衛), 해문위(海門衛), 송문위(松門衛)가 있었는데, 해문위와 송문위는 과총송해비왜지휘(把總松海備倭指揮)에 속했다. 도저성은 산과 물을 끼고 있으며 현재 규모는 평균 높이 4.5미터, 길이 1400미터, 넓이는 10미터이며, 동, 남, 서쪽으

로 3개의 성문이 있으며, 성문 밖에는 용성(甕城, 성문을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큰 성문 밖에 쌓은 작은 성)이 축성되어 있다. 성 둘레에 11개의 적대(敵臺, 적군을 감시하는 망대), 일명,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다. 1963년 성급(浙江省級)문화재였다가 2001년에 국가문화재로 승격되었는데,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준비를 하고 있다한다. 현재 도저는 행정구역상 임해시에 속해 있다.

도저(桃渚)와 척계광(戚繼光)

척계광(1528-1587)은 산둥성 등주(登州, 現 蓬萊縣) 출신으로 대대로 장군을 배출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군사연구가였던 척계광의 부친은 56세에 척계광을 낳았는데, 무예뿐만이 아니라 경서, 병법서, 역사서 등을 아들에게 몸소 가르쳤다고 전한다. 척계광은 청년 장교로 시작하여 가정32년, 1553년에 사령관으로 승진, 3영, 25개 위소를 관할하며 산둥에서 해상으로 침범하는 왜구를 방비하였고, 1555년 가을 절강성으로 파견되어, 이곳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도저성은 척계광이 왜군과 싸워 9전9승의 대첩을 이룬 역사적 현장이다. 명나라 가정 40년(1561)에 형부낭중, 임해출신 하룡(何龍)은 서북쪽 모서리에 있는 적대(敵臺) 위에 세운 비에 비문의 글을 지어 새겼는데, 비문에는 척계광 장군의 불멸의 항왜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가 1560년 절강현(浙江縣) 참장(參將)으로 있을 때, 왜구(倭寇)를 소탕하기 위하여 편찬한 병법서, 즉 기효신서(紀效新書)는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 선조는 명나라의 이여송(李如松)의 군대가 기효신서의 전법으로 왜군을 격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책을 입수하여 그 전법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기효신서에 의거한 부대편제 방식은 1894년까지 계속되어오다가 갑오개혁으로 근대적인 군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다 한다. 이 병법은 절강지방에서 나왔다고 하여 절강병법(浙江兵法)이라고도 한다.

최부와 도저

1488년 윤정월 16일 최부 일행 43명은 바다에서 표류 끝에, 중국 태주부(台州府) 임해 해안의 우두외양(牛頭外洋)에 상륙하였다. 17일, 상륙 후 그들은 배를 버리고 서리(西里), 선암(仙岩), 당두채(塘頭寨) 등을 거쳐 19일 도저성으로 체송(遞送)되었다. 우두외양은 행정구



도저성 항왜 진열관(척계광 장군).

역으로는 당시 임해현 20도에 속해 있었고, 군사적으로는 도저 천호소의 관할 하에 있었고, 또한 도저 천호소의 관아가 도저성 내에 있었기 때문에 최부 일행은 상륙 후, 서리 등 여러 지방을 거쳐 바로 도저성으로 압송되었던 것이다. 침범한 왜구로 오인되었기 때문에 도저의 천호소와 파총송해비왜지휘의 엄격한 심문을 받았다. 그들이 조선인임이 밝혀지자, 도저의 군민의 환송을 받으며, 당월 23일 최부 일행은 도저성을 떠나 귀로에 올랐다. 최부와 도저의 관계는 역사적, 그리고 현실적인 의미가 크다. 즉 최부는 척계광이 왜구와 싸웠던 시기인 1559년보다 71년 앞선 1488년에 도저성에 도착했다. 도저성이 건축된 1443년으로 보면 45년 후의 일이다.

그 당시 최부가 목격했던 도저성과 도저 천호소의 군사시설은 모두 당시 건축 당시 그대로였기 때문에 도저성에 관한 최부의 기술, 즉 성에는 중문이 있다든가, 문의 빗장, 성 위의 망루, 성내의 상점과 주민들의 생활상, 당시 군의 책임자의 이름 등등에 관한 기록은 이곳의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도저성 연구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도저는 최부 일행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바다에서 14일 동안이나 폭풍우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긴 일행들이 상륙한 후, 압송된 종착역이 도저이며, 이곳에서 신분이 밝혀져 귀국 길에 오른 시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2006년 2월 15일, 즉 최부가 다녀간 518년 후에 '최부표해록기념사업회'가 주관하여 최부의 고향인 나주시의 재정적 도움으로 도저성내에 "최부표해록 중·한 민간우호비"와 비각을 건립, 성대한 제막식을 가진 바 있다. 최부 표해록 기념비는 양국의 우의의 교량 역할을 하며 양 국민들이 끊임없이 왕래를 하면서 전통적인 우의를 더욱 다지고 있다.

최부의 일화(逸話)

최부와 송흠(宋欽)

지지당(知止堂) 송흠(1459~1547)은 신평 송씨로 전라도 장성에서 태어나,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서 관직을 시작했으나 연산군 학정에 못 이겨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후학들이나 가르치는데 전념했다. 중종반정 이후 벼슬길이 다시 열려 보성 순천 여산 등 전라도의 여러 수령을 역임하고, 나주 광주 등의 목사나 부사도 지냈으며 담양부사, 전라감사, 한성부좌윤, 이조와 병조의 판서에 오르고 우참찬과 관중추부사 등의 고관대작을 역임하기도 했다. 송흠은 최부의 이웃 고을 출신으로 최부가 대선배의 위치에 있었다. 이웃 고을에 최부가 귀향해 있음을 안 송흠이 선배를 찾아 말을 타고 갔었다. 후배 송흠을 반갑게 맞이한 최부는 서울에서 고향까지는 어떤 말을 타고 왔느냐고 송흠에게 물었다. 송흠은 나라에서 휴가차 오는 관리에게 내주는 말을 타고 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기 집에서 최부

의 집까지는 어떤 말을 타고 왔느냐고 묻자, 같은 말을 타고 왔노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부는 화를 내면서, 공무로 타고 왔으니 서울에서 고향까지는 괜찮으나, 고향집에서 자신의 집까지는 사무(私務)로 온 일인데 왜 나라의 말을 타고 왔느냐고 꾸짖으며 상경하면 나라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겠노라고 했다는 것이다. 최부는 상경하여 고향 후배에 대한 정도 있고 끝내 나라에 고발하여 송흙은 처벌을 받았다. 송흙은 그 때의 충고를 거울삼아 공직에 재직 시 수신(修身)을 게을리 하지 않아, 고위관직을 역임하였으며, 또한 청백리의 대표적인 인물로 후세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인연으로 탐진 최씨와 신평 송씨는 가깝게 지내고 있다 한다.

조위(曹偉)아들과 최부 딸의 러브 스토리

조위가 연산군의 폭정을 죽음으로써 비판하려 하는데, 4,5세 된 아들이 죽음을 당할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마침 집에 드나드는 스님에게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대를 잇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들이 떠날 때 값진 물건을 많이 주어 보냈는데, 아이 모친도 옥지환 한 벌을 품속에 넣어 보냈다.

조위는 연산군의 비행을 비판하다가 의주로 유배되어 죽었고, 그의 부인은 제주 관비가 되었다. 스님은 조위의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길렀는데, 이 아이 14, 5세 때 부친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기에, 스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니, 아이는 부모가 살던 집을 찾아보고 싶어 했다. 스님이 아이를 조위의 옛 집터에 데리고 가니, 아이는 거기를 떠나려 하지 않고 통곡했다. 스님은 아이 몰래 몸을 숨겨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스님을 찾다가 어디론가 헤매며 걸었다. 아이가 허물어진 담을 넘어 한 집에 들어가 살펴보니, 외딴 초당에서 한 소녀가 글을 읽고 있었다. 아이는 문구명으로 옥지환 하나를 던져 놓고, 거기를 떠나 나와 길에서 스님을 만나 돌아왔다. 당시 글을 읽고 있던 소녀는 최부(崔溥)의 딸이었고, 문구명으로 던져진 옥지환을 보고, 나가서 집안을 다 살펴보았으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자, 어떤 연분으로 생각하고 앞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최부도 김종직의 문하생으로 국정을 비방했다고 하여 유배되었다가, 갑자사화 때 형사(刑死)했다. 이때 최부는 종형에게 그 딸을 보내 데리고 있게 했다. 인조반정으로 연산군이 물러난 후, 연산군에 의해 해를 입었던 신하들의 자손들을 수습해 등용하니, 조위의 아들도 급제하여 무장 현감이 되었다. 이때 조 현감이 결혼을 하려고 처녀를 구하는데, 마침 최부의 딸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 최부의 딸은 옥지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옥지환의 주인공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현감은 곧 갖고 있던 또 하나의 옥지환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그 옥지환의 주인공임을 확인하게 한 다음에 결혼했다는 이야기다.

이 설화는 북한의 문예출판사가 1983년도부터 펴내기 시작한 ‘조선고전문학선집’의 자해필담(紫海筆談), 동아회집(東野彙集), 송도기이(松都紀異)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한국의 보리출판사가 상기 선집의 표기법을 손질하여 2006년에 다시 펴냈다.

국내외 최부 표해록 역본과 연구서

- 1769년 6월: 일본의 유학자 키요다(靑田君錦)가 ‘唐土行程記’로 改名하여 일본어 고문체로 황도서림(皇都書林) 등 네 곳의 서점에서 출간하다
- 1958년: 미국 Columbia 대학교수 Jon Meskill이 표해록을 영어로 원역, 박사학위취득하다
- 1965년: 미국 Columbia 대학교수 John Meskill의 영역본,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의 제목으로 Arizona 대학 출판부에서 단행본으로 펴내다
- 1979년 9월: 최기홍(崔基泓)이 한문서적 ‘표해록’을 국역하여 삼화인쇄에서 펴내다
- 1981년 5월: 박화목이 엮은 ‘최부의 표류기’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청소년용으로 편집하여 펴내다
- 1989년 9월: 최기홍이 번역한 ‘금남선생 표해록’이 도서출판 교양사에서 펴내다
- 1992년 6월: 중국 갈진가(葛振家)가 점주본(點注本)으로 ‘표해록-중국기행’의 제목으로 사회과학문헌출판사에서 펴내다
- 1995년 6월: 중국 갈진가 국내외 표해록 연구 학자의 논문을 수집하여 ‘최부표해록연구’의 제목으로 펴내다
- 1998년 5월: 제주대 윤치부(尹致富)가 ‘표해록’ 주해본(註解本)을 도서출판 박이정에서 출간하다
- 2002년 10월: 중국 갈진가 ‘최부 표해록 評注’를 선장서국(線裝書局)에서 펴내다
- 2004년 10월: 동국대 서인범 등이 공역(共譯)과 해제(解題)로 한길사에서 표해록을 출간하다
- 2006년 1월: 고려대 박원호가 최부표해록 역주본과 연구서를 고려대학 출판부에서 펴내다
- 2006년: 해남문화원이 최기홍의 국역본을 실은 ‘금남집’을 출간하다
- 2006년 9월: 북한 학자 김찬순이 국역한 표해록을 보리출판사가 ‘표해록, 조선 선비 중국을 표류하다’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다
- 2007년 5월: 김성미가 ‘동방의 마르코폴로 최부’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를 위한 표해



록으로 편집, 도서출판 푸른숲에서 펴내다

○2007년 9월: 김충수가 표해록을 청소년을 위한 내용으로 편집, 웅진주니어 출판사에서 펴내다

주요 표해록 관련 국내외 신문, 방송 보도

○1989년 9월 30일자에서 금남선생 표해록을 최기홍이 우리말로 옮겼다는 내용으로 표해록에 관한 기사를 특집 보도하다

○ '금남선생 표해록을 따라서' 의 제호로 한국일보 기자와 최부의 후손 및 학자들의 표해록 답사기를 1994년 6월 16일자와, 7월 7일자 2회로 연재하다

○1997년 9월 15일부터 동년 12월 15일까지 명지대 박태근 교수의 최부 표해록 특집을 14회 연재하다

◇光明日報(중국): 1992년 12월 10일자에 중국의 갈진가 교수가 표해록 점주본을 출판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최부 및 그의 저서 표해록에 대해 소개하다

◇人民日報(중국): 1995년 6월 27일 북경에서 개최한 표해록 국제 학술대회의 내용을 소개하다

◇조선일보: 이규태(李圭泰)는 그의 칼럼에서 최부와 표해록을 수시로 소개하다

◇KBS: 1997년 7월8일 '조선왕조실록' 의 60분 프로그램에서 '조선 선비 최부 표류기' 방영하다



표해록 관련 국제 학술대회

○1995년 6월 22일 북경의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회의실 2층에서 표해록 국제학술 대회 개최. 주제발표자는 한국측에서 최기홍 표해록 국역자, 고병익(高柄翊) 전 서울대 총장, 김재선(金在先) 원광대 교수, 최래옥(崔來沃) 한양대 교수, 양만정(楊萬鼎) 향토사학자; 미국측에서 John Meskill 교수; 중국측에서 북경대 양통방(楊通方) 교수, 갈진가 교수, 심의림(沈儀琳)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일



본측에서는 마키다(牧田諦亮) 전 경도대(京都大) 교수 등이 참여했다.

○2002년 7월 11일 절강성 영해(寧海)의 호텔 회의실에서 북경대 갈진가 교수, 명지대 박태근(朴泰根)교수, 목포 국립대 교수이며 미암 유희춘의 후예인 유원적(柳元迪), 왕금룡(王金龍) 표해록 연구가, 최금환(崔錦煥), 최철호(崔哲鎬) 최부 후예가 주제발표를 했다.

최부 표해록 사적비

○2002년 7월 11일 절강성 영해현에 소재한 희망 소학교 구내에 최금환의 선친인 최병일이 재정지원을 하여 건립했다. 소학교의 뒤편은 월계순검사가 있던 자리다. 건립장소에 대한 표해록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1488년 윤 1월 25일: 저녁 때 영해현 월계순검사에 도착하였다. 성은 산꼭대기에 있었으며 무장한 군졸들이 바닷가에 늘어서 있었다. 적용은 그 부하와 함께 배에서 내려 성 안으로 들어가 유숙하였으나 우리 일행은 바닷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2006년 2월 15일 전남 나주시 재정지원으로 절강성, 임해시 중국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도저성내, 최부가 심문을 받았던 근처에 건립했다.

○근간 강소성 무석(無錫)에 있는 공원에 건립된 최부표해록사적비를 여행자들이 보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아직 참배치 못했다.

임해(臨海)의 조선인 표류 역사

임해와 조선간의 민간교류가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1488년 명치원년이었고, 다른 하나는 1741년 청건륭 6년이였다. 1488년 명치원년에 조선 홍문관 부교리 최부 등 43명이 제주 추쇄경차관으로 제주에서 임무 수행 중, 부친의 부고를 받고 귀향 도중,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서 표류 끝에 그 해 윤정월 16일



표해록 기념비 앞에서 사업추진위의 기념촬영.

임해의 우두외양에 표착하였다. 처음에는 임해군민으로부터 왜구로 오인 받아 도저소로 끌려가 5일간 신문을 받았으나, 결국 신분이 밝혀져 항주, 북경 등을 거쳐 6월 4일 압록강을 건너 귀국하였다. 홍치5년 1492년에, 최부는 서장관으로 북경, 1497년 홍치 10년에 상례질정관(相禮質定官)으로 성절사를 수행하여 재차 북경으로 가서 임해군민으로부터 받은 감동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1741년, 청건륭 6년 여름에 조선 전라도의 무역선이 폭풍을 만나, 임해에 표박(漂泊)하였다. 태주관부에서 20여 명의 조선 상인들을 임해의 천녕사(天寧寺, 현 龍興寺)에 유숙케 하였다. 천태(天台)의 저명 인물이었던 제주화(濟周華) 선생이 일찍이 “광여기(廣興記)”를 통해서 조선상황을 흥미 있게 읽었는데, 소식을 접하자마자 임해로 와 천녕사에서 유숙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을 접촉, 광여기의 기술과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5일간 관찰하면서 마침내 그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얻어, 1천 2백자에 이르는 “고려풍속기”를 집필하게 된다.

조선의 상인중에는 문사가 적지 않았다. 그 중 성이 송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수재였다. 하루는 승방 탁자에 제주화(濟周華)의 문집인 수교록(需郊錄)을 보더니, 즉시 그 책을 집어 들고 오랫동안 읽으면서 손을 놓지 않았다. 천녕사 주지인 해인선사는 이를 흠족하게 여겨 이 책을 선물하기로 하였다. 송씨는 마치 진귀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다음 날 두문불출, 침실에 칩거하면서, 서문을, “늦봄 우연히 태주에 표착, 뜻하지 않게 천녕사에 기거하며 태주의 고승 명사를 만나고, 수교록을 얻게 되었다. 몰두하여 읽어 보니, 막혔던 생각이 일순 확 트이며 깨달음을 얻으니 실로 대단한 우연이었다” 라고 해서 이 책은 우득집(偶得集) 이라는 이름도 갖게 되었다. 2개월 후, 20여 명은 청조 정부 지시로 각 주현의 재정적 도움을 받으며 귀국 길에 올랐다고 한다.

고대 한국과 임해의 교류관계

송대 학자인 진기경(陳耆卿, 1180~1237)이 저작하여 가정 16년, 즉 1223년에 편찬된 가정적성지(嘉定赤城志)에 의하면, 임해와 고대 한국의 정치적, 군사상 교류는 가장 중요한 방면으로, 당함형중(唐咸亨中 670~674), 조정은 신라문무왕의 아우인 김인문(金仁問)을 우효위원의대장군(右驍衛員外大將軍)으로 삼아, 임해군공(臨海郡公)의 작위를 내렸고, 함형5년(674년)에 신라 무열왕의 장남인 김법민(金法敏)은 고구려 반군을 이용, 백제를 공략했다는 이유로 조정은 그 작위를 박탈하고 김인문이 대신 취득하게 하였다. 임해 작위를 받은 신라 왕족이 신라왕에 등극하였으니, 이는 신라와 임해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기술 되어 있다. 한편 민간교류의 역사는 당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가, 임해는 신라상인의 취거지(聚居地)였다 한다. 송의 가정적성지(嘉定赤城志)에 의하면 임해의 두 곳이 “신라”로 명명되었는데, 한 곳은 “신라서(新羅嶼)”로 현의 동남 30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상인들이 이 일대에 선박을 정박시킨 후 조류의 변화 순풍을 기다렸던 것 같다. 현재의 신교진(訊橋鎭)의 쇄상암(??岩)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신라산(新羅山)”으로 현의 서쪽 30리에 위치하며 팔첩산(八疊山)과 마주하고 있다 했는데 가정적성지의 그림을 보면 신라산은 팔첩산의 남쪽, 즉 지금의 성문 부근 뒷산에 해당된다. 팔첩산은 성에서 20리인 바, 적성지의 신라산 30리 운운은 실제와 달라, 3리의 오기인 것 같다. 이 산이 송산(松山)과 잇닿아 있으며, 산상에는 많은 고묘(古墓)가 있어 신라상인들이 객사한 후, 이 산에 안장한 이후로 신라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 같다고 기술되어 있다. 현재는 신라인들의 묘는 찾아볼 수 없고, 아직도 신라산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다. 다른 고문헌에 의하면, 북송 천경9년(1031)에는 임해 상인 진유충(陳惟忠)등 64명이 고려로 떠났으며, 보원원년(1038)에는 임해 상인 진유적(陳惟積)과 명주(明州, 현 영파) 상인 진량(陳亮)등 147명이 고려 등지로 떠났다고 기술되어 있다.

임해 출신의 왕사기(王士琦 1551~1618)는 1598년 산동 우참정(右參政)으로 있을 때, 충사령관 유정(劉縉)과 병력 20,000명을 인솔하여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전남 지역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이에 선조는 왕사기에게 3번이나 그 공적을 치하하는 서장(書狀)을 보냈으며, 전주의 군민은 그를 기려 “去思碑 (주: 관리가 전임할 때 주민이 그 관리를 위하여 세운 송덕비)” 를 건립하였다 한다. 임해의 장가도진(張家渡津)에 그의 묘가 있다.

* 필자 주: 선조31년(1598년) 8월 17일과 선조 32년 10월 1일자의 선조실록에 왕사기 활약상에 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전주 주민이 세웠다는 왕사기의 거사비는 국내 사학자나 전주 일대 지역의 향토사학자 등에 소재 여부를 탐문했으나, 아직도 그 실재가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최부 표해록의 기술 내용 발췌

○1488년 1월 30일

막쇠가 제주에 도착하였는데, 상복을 가져와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알렸다

○1488년 윤 1월 3일(양력 1488년 2월 15일 경):바다에서 표류하다

동풍은 약간 순한 듯했고, 바다는 질푸르렀다. 서원들이 조수를 따라 노를 저어 간신히 초란도(草蘭島) 서안에 배를 정박시킬 수 있었다. 새벽1시쯤 닻을 올려 보니 부서져 있었

고, 때마침 불어오는 북풍에 배는 의지할 곳이 없는 처절한 상황이 벌어졌다.

○1488년 윤 1월 4일: 바다에서 표류하다

배는 난파된 채 어느덧 서해로 나가고 있었다. 동북쪽을 바라보니 아득하게 점같은 섬이 보였는데, 아마 흑산도인 듯하였다.

○1488년 윤 1월 12일: 영파부 근처에서 도적을 만나다

오후 4시경 어느 큰 섬에 도착했는데, 배 2척이 우리를 보고 다가 왔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대당 영파부 하산이란 곳이라고 알려 준 후, 그들이 지정한 곳에 배를 대라고 했다. 밥 11시쯤 되어 작두 등으로 무장한 20 여명의 괴한들이 우리 배의 선실로 난입하여 금, 은 등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하며 작두로 목을 치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1488년 윤 1월 13일: 다시 대양에서 표류하다

구사일생으로 괴한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탈출하여, 배를 가까스로 수습해 다시 바다로 나가 표류했다.

○1488년 윤 1월 16일: 우두외양에 도착하다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더욱 빨라지고 비가 내렸다. 배는 바람을 따라 속도가 빨라져 삼 시간에 두 섬 사이에 이르렀다. 두 섬을 살펴보니 중선 6척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었다. 잠시 후 여섯 척의 배가 우리를 포위하였다. 한 척에 8-9명이 타고 있었다.

그들이 글을 써서 내게 보였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나는 조선국 신하로 왕명을 받들고 섬을 순찰 하던 중 부친상을 당하여 집으로 돌아가다가 폭풍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여기는 대체 어느 나라 바다요?”

“여기는 우두외양으로 대당국(大唐國) 태주부 임해현에 속해 있소.”

우리는 바닷가에 닻을 내렸다.

** 필자 주: 대당국이라고 한 것은 1488년 3월 8일 최부가 노교역을 지날 때 호송관리에 물었다, “지금은 명나라 시대인데도 대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요?”라고 묻자 그 관리는, “다른 이유는 없소. 오랜 관습에서 그러는 것뿐이요.” 아마도 지방의 일반 사람은 아직도 당나라 시대인 줄 알고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1488년 윤 1월 17일: 배를 버리고 물에 오르다

“나는 조선국 신하인데 왕명을 받들고 섬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친상을 당하여 돌아가던 중 폭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바닷가에 닿게 되었소. 그래서 배를 버리고 물에 올라 무작정 인가를 보고 찾아 왔소. 이런 사정을 관청에 알려서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 주기 바

라오.” 나는 인신과 관대, 문서 등을 신표로 그들에게 제시했다. 우리는 호송인이 가르쳐 준 동네 앞에 있는 불당으로 가서 젖은 옷을 바람에 말렸다.

○1488년 윤 1월 18일: 쫓기면서 길을 재촉하다

큰 비가 쏟아지는 밤중에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이 마을 저 마을로 끌고 갔다. 이 마을 사람들은 난폭하기 이를 데 없었다. 우리 일행을 곤장으로 마구 치고 마음대로 겁탈하는 등 너무 모질게 굴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날이 셀 무렵 큰 다리가 있는 동네에 도착하여 마을 이름을 물으니 선암리(仙岩里)라 했다. 계속 쫓기면서 길을 재촉, 몇 고개를 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발을 떼어 놓지 못하고 길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일찍이 바다에서 죽느니만 못 하였구나” 모두 마주 앉아 대성통곡하였다. 안성사(安性寺)란 절에서 묵었다.

** 필자 주: 최부가 물건을 겁탈 당했던 큰 다리가 아직도 현존해 있다*

○1488년 윤 1월 19일: 도저소에 도착하다 -

계속 큰 비가 내렸다. 나는 더 이상 걸음도 땀 수 없어 길가에 누워버렸다. 일행들이 교대로 나를 업고 고개를 넘으니 해문위도저소(海門衛桃渚所)가 나타났다. 성의 전후 7-8리 간에는 갑옷을 입은 군졸이 창과 총, 방패 등으로 부장한 채 성을 지키고 있었다. 성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으며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성 안에는 점포가 준비하였으며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물자가 풍부한 듯 보였다. 우리 일행의 왜구 여부에 대해 엄한 심문을 받다.

*필자 주: 도저성의 당시 모습을 기술했는데, 현 중국문헌에는 없기 때문에 도저성 연구에 소중한 문헌자료라 이용하고 있다.

○1488년 윤 1월 20일: 도저소에 머물다 -

계속 심문을 받다.

** 필자 주: 520년 전 최부가 다니던 도로 등이 도저성 내에 아직도 그대로 있다.*

○1488년 윤 1월 21일: 도저소에 머물다 -

한 백발 노인이 와 있기에 내가 물었다.

“천태산과 안탕산은 여기서 얼마나 되오?”

“천태산은 천태현 북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틀쯤 가면 되고, 천태산 남쪽에서 하루쯤 가면 안탕산이 있소.”

“이 성의 주산(主山)은 어느 산이오?”

“석주산(石柱山)이오.”

산은 정말 석벽이 산을 이루고 있었는데 산꼭대기에는 여섯 개의 큰 바위가 마치 기둥처럼 서 있었다.

심문이 계속 되었다.

** 필자 주: 도저성에서 석주산이 뚜렷하게 보인다.*

○1488년 윤 1월 22일: 계속 도저소에서 머물다 -

공술서 내용을 가지고 다투었다.

조선의 병참을 파악하려고 설민이 집요하게 물었다.

“당신은 군자감 주부를 지냈다면 어찌하여 군량의 수량을 모른다 하였소?”

“한 달도 안 돼 탄 곳으로 갔기 때문이오.”

“표류하면서 굶은 게 며칠이나 되었소?”

“초사흘부터 열하루까지 못 먹었소.”

“그런데도 어찌 굶어 죽지 않았소?”

“간혹 마른 쌀을 씹었으며 오줌도 받아 마셨고 또 비를 기다렸다가 옷에 빗물을 적서 그 물을 짜서 마시기도 했기 때문이오. 죽기 직전에 목숨이 이어져서 이렇게 산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오.”

“당신의 나이는 몇이오?”

“서른 다섯이오.”

“당신네 나라 임금의 성과 휘는?”

“효자는 차마 부모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신하된 자가 국왕의 휘를 경솔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겠소?”

“멀리 나라 밖에 있으니 괜찮지 않겠소?”

“내기 비록 여기에 있는데 조선의 신하가 아니란 말이오? 신하된 자가 멀리 나라 밖에 있다 해서 어찌 행동을 달리하며 말에 변함이 있을 수 있겠소?”

태주는 산이 높고 크며 울창한 수풀이 하늘을 가리고 사람이 매우 많으며 집들이 웅장하고 화려하니 정말 별천지라 아니할 수 없었다.

** 필자 주: 최부는 병참은 국가기밀 사항이라 군자감을 지냈으니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었겠지만 답변을 교묘히 피해 나갔다. 그의 철저한 안보관과, 그의 유학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488년 윤1월 23일(1488년 3월 5일경): 도저소를 출발하다

밤중에 허청과 적용이 동네 이장을 불러 전에 안장을 빼앗은 사람을 붙잡아 보고하도록 하여 안장은 돌려받았으나 빼앗긴 것과 망건 등은 찾지 못했다.

○1488년 윤 1월 24일: 건도소에 도착하다.

새벽에 천암리(穿岩里)를 지났다. 동네 서쪽에 있는 산 위에 깎아지른듯한 석벽이 높이 솟아 있고 활 모양으로 가운데가 높게 흰 큰 굴이 있었는데 마치 무지개와 같은 문이 있어서 동네 이름도 천암리라고 지은 것 같았다.

* 필자 주: 이직도 천암리의 바위 동굴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병오년 등과소록(登科小錄)을 꺼내더니 “이것은 내가 과거에 급제한 방록” 이라면서, 방록 중에 있는 장보(張輔)라는 두 글자를 가리키더니 “이것은 나의 성명이오. 당신네 나라에서도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존경하고 있소?” 하고 묻는 것이었다.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나를 초대하여 집에 가봤더니, 그의 집 앞 돌기둥에는 정말로 용이 새겨져 있었고, 2층 3칸으로 된 대문위에 큰 글씨로 ‘병오과장보지가(丙午科張輔之家)’ 라고 쓴 문패가 달려 있었다. 그가 이런 등제쯤을 가지고 과시하기에 나도 조금은 과장해서, “나는 일찍이 과거에 두 번이나 급제하였으며 한 해 봉록으로 받는 쌀이 2백 석이나 되고 대문은 3층이나 되오” 라고 말하자 증거를 요구했다. 대문은 보여 줄 수 없고 대신 소지하고 있던 문과 증시소록을 보여 주자, 장보는 무릎을 꿇더니, “나는 근처에도 못 가겠소” 라고 물러섰다.

* 필자 주: ①장보는 최부에 대한 “송조선최교리서” 라는 송별사를 남겼다. 이 송별사는 영해현지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문헌에 최부 일행의 표류 사실이 기재된 유일한 문헌이다.

②최부가 장보에게 봉록으로 2백석 등 좀 과장해서 언급한 것을 두고, “당도행정기” 의 “考”에서 淸田君鎰은 이를 말도 안 되는 허풍이라고 비아냥거렸다.

○1488년 윤1월 25일: 월계순검사에 도착하다.

저녁 때 영해현 월계순검사에 도착하였다. 성은 산꼭대기에 있었으며 무장한 군졸들이 바닷가에 늘어 서있었다. 우리 일행은 바닷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 필자 주: 최부가 서성거렸던 장소에 최부표해록 사적비가 건립되어 있다.

○1488년 윤 1월 26일 영해현을 지나다

다시 길을 계속하여 백교령(白嶠嶺)에 도착하자 군졸 20여 명이 가마를 메고 와 우리를

맞아 주었다.

○1488년 윤 1월 29일 영파부를 지나다

○1488년 2월6일(1488년 3월 17일경): 항주에 도착하다.

전당강은 밀물 때는 호수가 되고, 썰물 때는 육지가 된다고 하였다. 항주 사람들이 해마다 물밀이 가장 크게 되는 8월 18일에 유람을 하는 곳이라 하였다. 역전에서 배에서 내려 강기슭으로 올라 수레를 타고 10여 리쯤 되는 절강으로 가 다시 배에 올라 강을 건넜다. 강물은 산을 따라 꾸불꾸불 흐르고 있었는데 산에 부딪친 불결이 되돌아오는 기세가 있어 절강이라고 하는 듯했다. 저수지에 이르니 육화탑(六和塔)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 필자 주: 강의 역류현상은 아직도 장관이며, 육화탑은 관광의 명소가 되어 있다.*

○1488년 2월 4일:소흥부에 도착하다

그들이 내게 물었다.

“추쇄(推刷)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제주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뱃길이 험한데다 매우 멀어 죄를 짓고는 그 곳으로 도망을 가는 자들이 많소, 그들을 찾아내 데리고 오는 일을 말하오.”

그들이 다시 물었다.

“제주는 중국에서 얼마나 되오?”

나는 짐짓 과장해서 말했다.

알 수가 없소. 바람을 잘 만나면 하루에 천 리는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엔 우리가 제주에서 출발하여 큰 바람을 등진 채 날아가듯 빠른 속도로 왔는데 보름가량 걸렸소, 그런 즉 중국과 제주의 거리는 수만 리가 될 것이오.”

** 필자 주: 최부의 안보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488년 2월 11일: 항주에 머물다

고벽이 말했다.

“항주성 서쪽 팔반령(八般嶺)에 오래된 절이 있는데, 그 이름이 고려사(高麗寺)요. 절앞에서 있는 두 개의 비석은 옛 일을 적고 있소. 여기서 15리쯤 되는데 조(趙)나라와 송나라 때 고려의 사신이 와서 세운 것이오.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까지 절을 지었던 것으로 보아 귀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교를 숭상하고 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소.”

** 필자 주: 고려사는 현재 복원되어 있다.*

1488년 2월 16일: 소주에 도착하다

다시 노를 저어 윤산교를 지나니 왼쪽에 배로 만든 부교가 있었다. 거기서 3리쯤 지나 보대교(寶帶橋)에 도착했다. 이 다리에도 55개의 홍문이 이어져 있었는데 배와 수레가 왕래하는 요충이었다. 보대교는 추응박(鄒應博)이 다시 만들었다고 하였다.

** 필자 주: 최부 기록의 정밀성이 엿 보인다. 수년 전 최부의 발자취를 따라 답사했을 때, 보대교의 홍문을 세 보았더니 부서진 것을 제외하고선 과연 그 숫자가 맞았다.*

○1488년 2월 17일: 고소역전에서 유숙하다

집관정에 이르러 배를 뺐다. 정자의 서쪽으로 큰 탑이 보였는데 그곳이 한산선사(寒山禪寺)로, “고소성 밖 한산사”라 함은 바로 이 절을 두고 한 말이었다. 지명을 물으니, 풍교(楓橋)라 했고, 강 이름은 사독하(射瀆河)라고 했다.

관리가 물었다.

“당신네 나라는 무슨 비결이 있어서 수나라와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소?”

“모신(모신)과 맹장이 있고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는 백만 대군이라는 수, 당을 두 번이나 물리칠 수 있었소.”

** 필자 주: ①지금의 한산사는 당나라 시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으로 유명하며 ②고구려에 대한 언급은 현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도에 대해 국내 관련 학자들에 의해 곧잘 인용되고 있다. 작은 지방의 관리까지도 고구려가 우리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있었던 터였다.*

○1488년 3월 5일: 유성진을 지나다

역을 떠나 황가갑(黃家岡)에 이르렀는데 갑 위에는 미산만익비(尾山萬翼碑)가 있었다. 양왕에게 만익비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거절하다가 내가 간청하니 마지못해 허락하였다.

그 비문에는 다음과 같았다.

** 필자 주: 미산 만익비의 비문은 중국의 문헌에도 없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를 통해 경향대운하의 수운(修運)에 대해 사실(史實)을 알 수 있었다.*

○1488년 3월 8일: 노교역을 지나다

성이 유라는 태감이 북경으로 부임하고 있었는데, 깃발 갑옷 징소리 북소리 악기소리가 요란하여 산천을 뒤흔들고 있었다. 노교갑(魯橋岡)에 이르자 유 태감은 위엄을 과시하려는

듯 뱃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등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었다. 호송관리, 부영이 내게 물었다.

“귀국에도 이런 태감이 있소?”

“우리나라의 환관은 다만 궁중의 청소나 왕명을 전달하는 일 외에 관의 일에는 일체 참견을 하지 못하오.”

부영이 다시 말했다.

“태상 황제는 내관을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문무관들은 모두 그들에게 매달려 있는 형편이랍시오.”

** 필자 주: 1488년 3월 21일 최부는 창주를 지나며 호송 관리에게, “좌천당하는 귀국의 신하들이 많은데, 어찌서 내시 같은 사람들은 제외되고 있소? 오히려 득의양양하고 있지 않소?” 라며 명 정부의 태감(太監, 환관)의 득세와 그 폐해에 일침을 가한다. 또한 명나라 황제가 공자에 예로써 절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 부당성을 비판했다. 이처럼 최부는 조난자의 처지에 있으면서도 태도가 당당했다.*

○1488년 3월 21일: 창주를 지나다

내가 부영에게 말했다

“천자도 열국의 신하에게 절하오?” 라고 물으니 부영은 실제로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공자의 도는 천하 만대에 무궁하오. 천자는 그 도(道)로써 천하를 평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천자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현에 대한 예로써 임해야 할 것인데 어찌서 절해야 할 자리에서 절하지 않는단 말이오?”

내 말에 부영은 잠자코 있었다.

○1488년 3월 23일: 정해현을 지나다

내가 호송인 부영에게 부탁하였다.

“수차(水車)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소.”

“어디서 수차를 보았소?”

“전에 소흥부를 지날 때 호숫가에서 수차로 눈에 물을 대는 사람을 보았소. 적은 인력으로 많은 물을 댈 수 있어 가물었을 때 농사짓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소.”

** 필자 주: 최부는 고난의 여정에도 조선에 없는 수차를 보고 최초로 그 제조법을 배워왔다. 연산군은 최부에게 수차를 만들도록 하여 호서지방의 가뭄 극복에 크게 기여케 했다.*

○1488년 3월 29일: 병부를 방문하다

낭중 대호(戴豪)가 물었다.

“당신네 나라 국왕은 글을 좋아 하오?”

“우리 국왕은 하루에 네 번 유신과 만나는데 학문을 좋아하여 싫증을 내지 않으며 남에게 배우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지요.”

* 필자 주: 일본의 德川時代 유학자인 키요다는 그의 “당도행정기”의 “考”에서 왕이 하루에 4번까지 유신을 대면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아냥 거렸는데, 표해록 국역자인 최기홍(崔基泓)이 그의 1995년 북경 국제 학술대회의 주제발표에서, “최부의 발언은 거짓이 아님을 명쾌하게 알 수 있다. 즉 大東野乘에 채록된, 용재총화(龍齋叢話) 권2 성현(成僎 1439~1504) 撰에서, 成廟는 학문에 뜻을 둔 독히 하여 세 번 講書하고 밤중을 이용하여 玉堂(주: 弘文館의 부제학(副提學), 교리(校理), 부교리(副校理), 수찬, 부수찬을 통틀어 일컫는 말) 入直志士를 안으로 들어 오게 하여 그와 함께 강론했다” 라고 논쟁의 시비를 명확히 가렸다. 같이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한 고병익(高柄翊)박사 등 국내학자는 전공 학자들도 찾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기뻐했다.

○1488년 4월 18일: 예부를 방문하다

“내일 아침 일찍 대궐에 들어가면 상으로 옷을 하사할 것이니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하오.”

“나는 지금 상중의 몸인지라 예복은 예에 맞지 않소이다.”

○1488년 4월 20일: 황제에 사은하다

이상이 직접 내 상관을 벗긴 후 사모까지 씌우면서 말했다

“지금 이 문에서 길복으로 바꾸어 입고 궐에 들어가 사례를 마친 후 돌아갈 때 다시 상복으로 갈아입으면 잠깐 사이가 아니겠소. 한사코 고집만 부려서는 아니 되오.”

나는 대궐에가 서 황제에게 다섯 번 절을 하고 머리를 세 번 조아린 다음 단문(端門)을 통해 승천문(承天門, 현 천안문)으로 나왔다. 동쪽의 장안 좌문으로 나와서 상복으로 갈아 입고 옥하관으로 돌아 왔다.

* 필자 주: 전 서울대 총장이었던 고병익 박사의 “상복의 윤리” 논문의 원인이 되었다.

○1488년 5월 19일: 광녕역에서 머물다.

“예부터 배가 표류하면 죽는 사람이 열에 반은 되는데 우리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사상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행운이고, 가는 곳마다 큰 고초를 겪지 않고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두 번째 행운이며 북경에서 상까지 받고 빈손으로 왔다가 돌아 갈 때는 한 짐을 지고 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세 번째 행운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세 가지 행운이 어떻게 해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수행원들이 무릎을 꿇고 나에게 말했다.

○1488년 5월 16일: 광녕역에 이르러 성절사신을 만나다.

밤에 달빛을 받으며 사신은 뜰로 나를 불러 술자리를 만들어 위로하여 주었다.

* 필자 주: 이 구절을 둘러싸고, 일본의 키요다는 그의 당도행정기의考에서 상중인 몸으로 술을 들었다고 힐뜯고 있고, Meskill의 영문 역본에서도 최부가 술을 마신 것처럼 번역했는데, 오역이고, 오해다. 주연자리에 최부를 참석케 했을 뿐 음주를 했다는 기술은 없다. 漂海錄 原漢文에는, “夜乘月 使臣座中庭 邀臣至前 設酌以慰” 라고 기술된바, Meskill 교수는 그의 영역본에서, “At night the Envoy sat in the central garden in the moonlight and invited me to come before him. He served me to console me.” 라고 오역했다.

○1488년 5월 26일

통역인 천호 왕현이 와서 말했다.

“몇 달 사이에 귀국의 사신인 한찬과 이세필이 여행 중에 객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남쪽 월에서부터 북쪽 연까지 그 멀고 먼 길을 여행하면서도 귀하는 물론 일행을 온전히 보전하여 이제 환국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시련을 준 다음 복을 내리려는 하늘의 뜻일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를 보전한 것은 모두 황제의 은혜이며 또한 돌아가신 제 선친의 영혼이 도와 주셨기 때문이오.”

〈참고자료〉

- 嘉定赤城志, 宋代 陳耆卿(1180-1237)編著
- 台州總志
- 寧海縣志, 張輔의 “送朝鮮崔校理序”
- 臨海縣志

- 眉巖日記, 柳希春
- 漂海錄, 1979년 崔基泓 翻譯本, 1989년 教養社 刊
- 朝鮮 宣祖實錄
- 錦南漂海錄, 高柄翊 前 서울대 總長, 東亞交涉史의 研究, 1970년 서울대학교 출판부
- 王金龍의 台州風情 雜誌의 “史事爲緣” 寄稿文과 기타 論文
- 桃渚城內 古蹟, 桃渚鎮 景點解釋詞
- 漂海錄, 葛振家 教授 点注本, 1992년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漂海錄研究, 葛振家 編著, 1995년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漂海錄 主題發表 論文集, 1995년 교양사
- 漂海錄 國際學術大會 主題發表 論文集, 1995년 北京
- John Meskill 教授의 漂海錄 博士學位論文, 1958년 컬럼비아 대학
- 마키다(牧田諦亮) 前 京都大 교수의 唐土行程記 談議, 策彦入明記의 研究 下卷
- 晚之(崔基泓)文集, 教養社會 刊
- 朴泰根 教授의 崔溥의 漂海錄 踏查記, 1997년 한국일보
- 錦南輯, 海南文化院 刊
- 歷史文化研究 24輯, 韓國外大 刊
- 民族研究 31號, 韓國民族研究院 發行
- 조선 최고의 명저들, 신병주, 2006년, 휴머니스트
- 폭포는 왜지가 다 먹었지요, 2006년 보리출판사
- 한국사 시민강좌 42집, 2008년 일조각

Archives

先住民族 - Ainu Mosir 2008 - 편집부

「先住民族サミット」アイヌモシリ2008



© Ainumosir 2008



北海道洞爺湖에서 열린 선진국 G8사미트를 앞 둔 7월1일, 「先住民族사미트」 아이누모시리 2008이北海道平取町에서 개최되었다. G8에 병행하여 선주민들이 이러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11개국에서 온 17명의 선주민대표들과 아이누들은 350여명이 참가자들 앞에서 “지금이야말로 선주민족들이 소리를 높일 때”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최종일인 7월4일에는札幌에서 이번 대회의 결의문인 先住民族權利宣言인 ‘ニ風谷宣言’ 과 ‘일본정부에 대한 건의문’을 아래와 같이 각각 채택했다. <편집부>



「先住民族サミット」アイヌモシリ2008
 Indigenous Peoples Summit in Ainu Mosir 2008
 Ainumosir otta Hoski wano Okay Utar Ukoytak 2008



NIBUTANI DECLARATION OF THE
 2008 INDIGENOUS PEOPLES SUMMIT IN AINU MOSIR

INTRODUCTION

Iramkarapte – “Let me touch your heart softly in greeting” in the Ainu language.

We, Indigenous Peoples from Japan and around the world have gathered in Ainu Mosir, known as Hokkaido, Japan, in the traditional land of the Ainu people, for the 2008 Indigenous Peoples Summit in Ainu Mosir in advance of the G8 Summit in 2008. We represent over 600 participants from Ainu Mosir (Hokkaido), Uchinanchu (Okinawa), the United States, Canada, Hawai'i, Guam, Australia, Bangladesh, the Philippines, Norway, Mexico, Guatemala, Nicaragua, Taiwan, and Aotearoa (New Zealand).

We are united as Indigenous Peoples because we share each other's fundamental values and understandings of our place in the world which includes our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nature. The theme of our summit is Mawkopirka which means in Ainu “Good Luck” or “Be Happy,” and which underscores our Indigenous values and notions of well-being, and illustrates the good faith in which we approach this Summit and all the peoples gathere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Indigenous Peoples, have gathered around a G8 Summit, to reflect on the issues addressed by the G8 and analyse how these relate to us. This Summit was made possible by the Ainu through the Indigenous Peoples Summit Steering Committee and we thank and congratulate them for their commitment and work to make this happen.

With our collective wisdom and knowledge we discerned and agreed on the key messages we would like to relay to the G8. We learned more about the situation of the Ainu and about each others situation and aspirations. We are also gathered to celebrate the adoption of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DRIP) on September 13, 2007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is is a historic landmark and a collective achievement of Indigenous Peoples movements from the local to the global.

We welcome the “Resolution calling for the Recognition of the Ainu as Indigenous Peoples of Japan” passed by the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June 6, 2008, and accepted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also on June 6, 2008. We celebrate this gain with the Ainu people which results from their centuries’ old struggle.

OUR ISSUES AND CONCERNS

We want to express our profound concern over the state of the planet. Mother Nature nurtures us. We believe that the economic growth model and modernization promoted by the G8, which suggests that we can control and dominate nature, is flawed. This dominant thinking and practice is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 the global food crisis, high oil prices, increasing poverty and dispari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elusive search for peace, the themes which the G8 nations precisely want to address in this Hokkaido Toyako Summit. Some of our issues and concerns are the following;

- continuing egregious violations of our civil,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rights.
 - militarization of our communities, arbitrary arrests, extrajudicial killings of indigenous activists and use of national security and anti-terrorism laws to criminalize legitimate resistance actions against destructive projects leading to increasing conflicts in our territories
 - grabbing of our lands by the state, corporations and landlords
 - continuing racism and discrimination against us and against our use of our own languages and practice of our cultures
 - non-recognition of our collective identities as indigenous peoples
 - theft of ou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ver our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traditional knowledge, including biopiracy of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knowledge.
 - desecration and destruction of sacred and religious sites.
-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actual and potential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measures which include;
 - displacement from our lands because of expansion of biofuel monocrop production, establishment of carbon sinks in our forests, building of more large scale hydro-electric dams.
 - market-based mechanisms such as emissions trading leading to more centralized, top-down management of our forests under the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REDD) scheme.
- food crisis and increasing hunger due to:
 - decreased control and access to sources of subsistence (forests, hunting grounds, agricultural lands, waters, grazing lands, etc.) and basis of traditional livelihoods.
 - dumping of highly subsidized, cheap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rich countries to the poor countries.
 - the shift away from production of food crops to crops for biofuels
 - hoarding and speculation on food commodity prices

- aggressive promotion of chemically intensive industrial agriculture and use of genetically-modified seeds
- increased extraction of oil, gas and minerals from our territories, in violation of our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leading to more environmental degradation, forced displacements and poverty in our midst.
- increasing loss of indigenous languages and cultures decreasing further the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of the world.

OUR PROPOSALS TO THE G8

It is in our values of reciprocity, mutual respect, regard for the earth as our mother and all creation as our relatives, collectivity and solidarity; in our indigenous cosmologies and philosophies; in our traditional livelihoods, lifestyl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practices that we can find the most effective paths to a sustainable world. We sadly note that these values and practices are being marginalized in a highly commercialized, consumerist, atomized and individualistic world when they could instead be a guide not only for Indigenous Peoples but for the rest of humanity.

We therefore call on the G8 to do the following;

1. Effectively implement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use this as the main framework to guide the development of al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vestments and policies and programmes affecting Indigenous Peoples.
2. That the Governments of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respect the demands of the Indigenous Peoples in their countries that they adopt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press the Governments of New Zealand and Australia to do likewise.
3. Ensure and facilitate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Peoples in all the processes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establish a Working Group on Local Adaptation and Mitigation Measures of Indigenous Peoples.
4. Jointly assess and evaluate with Indigenous Peoples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mitigation measures on them and their communities and undertake actions to address these.
5. Remove, as par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large hydro-electric dams and stop all funding for these. Reject proposals to include nuclear energy as clean energy.
6. Promote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small-scale, locally-controlled, renewable energy projects using the sun, wind, water and ocean tides in our communities through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7. Reform migration laws to allow for the migration of Indigenous Peoples who are forced to leave their countries because of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such as the submersion of small-island states and low-lying coastal areas, the erosion and destruction of their lands due to melting of permafrost, strong typhoons and hurricanes, and desertification due to droughts.

8.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our campaigns to get corporations and national governments to compensate us, through financial and other means, for the environment services (clean air, clean water, fertile soils, etc.) we are providing to the world because of our sustainable management and use of our forests, watersheds, and our conserv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to ensure maintenance of biodiversity.
9. Protect, respect and ensure our rights to food, to subsistence, to practice of our traditional livelihoods, and to self-determined development. This means the following;
 - Ensure our control and access to our sources of subsistence and traditional livelihoods such as rotational agriculture, pastoralism, hunting, gathering and trapping, high mountain agriculture, marine and coastal livelihoods, handicraft development, etc.
 - Stop the dumping of cheap, highly subsidized agricultural products in our communities.
 - Implement a moratorium on the expansion of biofuel production on our territories unless our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is obtained.
 - Strictly regulate speculation on food commodity prices.
 - Criminalize hoarding of food by food cartels and syndicates.
10. Stop the promotion of chemical-intensive industrial agriculture in our communities and the dissemin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seeds in our territories. The continuing use and export of banned toxic chemicals, fertilizers and pesticides to Indigenous communities, especiall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should be banned and criminalized.
11. Stop facilitating the entr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volved in extraction of minerals, oil, gas, coal, etc. in our communities without ensuring that th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f the affected communities are obtained. Corporations from G8 countries which have been involved in environmental destruction of our territories and who have committe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us should be brought to justice and should be required to compensate the communities where they have polluted or otherwise caused damage.
12. Support our campaigns against the militarization of our communities, extrajudicial killings and stop the labeling of Indigenous activists as terrorists and the use of laws such as national security acts and anti-terrorism to curtail our legitimate resistance against destructive projects and policies.
13. Support, through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our efforts to bring our complaints against States, who are violating our rights, before the Treaty Bodies of the United Nations, the regional commissions or courts on human rights such as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the African Commission on Peoples and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14. Support the inclusion of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in the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Charter on Human Rights and ensure that this becomes an integral part of the newly established ASE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15. Provide support for establishing more cultural centres and museums in our communities, and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grammes promoting intercultural and bilingual education, use of Indigenous learning and teaching methods – including education through the traditional oral mediums of Indigenous Peoples and through honouring local ways of learning and knowing – as well as language courses to teach Indigenous languages.

16. Give effect to the protection of Indigenous Peoples' sacred sites in recognition of their human rights and intergenerational responsibilities to practice, teach, and maintain their spirituality and indigeneity through their traditional languages, customs, ceremonies, and rituals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sacred in the futures of those yet to be born.
17. Stop the theft and piracy of our traditional Indigenous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which include indigenous designs, arts, crafts, song and music), bio-genetic resources including our human genetic resources, by biotechnology corporations, cultural industry, and even by States and individual scientists and researchers.
18. Reform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s including the TRIP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Substantive Patent Law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mong others, to respect and protect the collective traditional knowledge and cultural expressions of Indigenous Peoples.
19. Stop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use of depleted uranium as a weapon. Stop the dumping of radioactive nuclear wastes as well as other toxic waste in Indigenous Peoples' territories.
20. To strongly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each nation, and to ensure that the marginalization of and violence against Indigenous women, minority women, and all other women will be stopped.
21. Remove US military bases located in Indigenous Peoples territories and bring to justice the military personnel who have been charged with rape and sexual assault of Indigenous women. The forced drafting and recruitment of Indigenous youth to the military should also be stopped.
22. To strongly encourage the Japanese Government, jointly with the Ainu community, to interpret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for implementation in Japan as national law, and to further develop concrete actions and policy reforms to amplify and clarify the Resolution recognizing Ainu as Indigenous Peoples. We protest the fact that there is only one Ainu out of 8 persons included in the panel to discuss furth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solution. We call on the Government to increase the number of Ainu representatives in the Panel.

PROPOSALS TO OURSELVES, INDIGENOUS PEOPLES

We also discussed what we should do as, Indigenous Peoples, to implement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to strengthen our solidarity with each other and with support groups and NGOs.

1. Establish a network of Indigenous Peoples to continue the task of organizing summits in connection with the G8 Summits in the future. Indigenous Peoples in Canada are encouraged to organize themselves so that they can host an Indigenous Peoples' Summit during the 2010 G8 Summit in Canada. We will also encourage the advocates of Indigenous Peoples rights in Italy to try to organize a summit for Indigenous Peoples at the 2009 G8 Summit in Italy.

2. Ensure that we, Indigenous Peoples all over the world, take up the responsibility to implement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hemselves, and enter into constructive dialogue with States, the UN System and the other intergovernmental bodies to discuss how they can effectively implement the Declaration at the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3. Use the 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the Expert Mechanism on Indigenous Peoples' Rights,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indigenous people, as mechanisms to monitor and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UNDRIP by the aforementioned actors.
4. Ensure widespread dissemination of the UNDRIP through the use of multimedia, the translation of this into languages understood by Indigenous Peoples, and the preparation of popular versions which can easily communicate the substance of the UNDRIP.
5. Work towards getting the UNDRIP integrated as part of the education curriculum of schools starting from pre-school to higher learning institutions.
6. Establish and replicate the experiences of the Maori and others in setting up language nests where Indigenous Peoples can learn how to speak fluently their languages to arrest the loss of indigenous languages in the world.
7. Organize and sponsor more education and training-workshops for our peoples where they can learn more about the UNDRIP, how to implement it and learn more about the existing instruments and mechanisms within the United Nations, the regional human rights bodies and courts on human rights where they may bring their concerns if the UNDRIP is not adequately implemented by States.
8. Establish international tribunals to hear and address Indigenous Peoples' issues and adjudicate issues which are not adequately addressed und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9. Establishment of an Indigenous Peoples Green Fund to support the initiatives of Indigenous Peoples to establish and strengthen their traditional livelihoods, their arts and crafts and other forms of development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ir visions of their self-determined development.
10. Support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o practice and to enjoy their cultural history and the right to protect and to teach their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digenous-owned and controlled cultural centres within states and local jurisdictions.
11. Support the struggle by Indigenous peoples for land justice and for the return of forests and traditional lands to the ownership and control of Indigenous peoples.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will not only benefit Indigenous Peoples but will also benefit the earth and the rest of the world. If we are allowed to continue practicing our sustainable ways of caring for the earth and caring for our relatives, not only human beings, but also plants, animals and all other living things, these practices will redound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If we are able to continue speaking our languages and practicing our diverse cultures, then the world's cultural heritage will be enriched. If our diverse economic, cultural, spiritual, social and political systems are allowed to co-exist with other dominant systems then we can bequeath to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a more diverse and viable world.

Agreed upon on July 4, 2008 by the following representatives:

Asia:

Ainu (Japan): Ukaji Shizue, Kayano Shirô, Hideo Akibe, Shimazaki Naomi, Yûki Kôji, Sakai Mina, Kibata Kamuisanihi, Kibata Hirofumi, Hitoresi (Kawakami Hiroko), Sakai Atsushi

Ami (Taiwan): Sing 'Olam

Igorot (the Philippines): Victoria Tauli-Corpuz, Chairperson of the United Nations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Kanakana'ey (the Philippines): Joan Carling

Juma (Bangladesh): Dipty

The Pacific:

Chamoru (Guam): Fanai Castro

Hawai'i: Puanani Burgess, Puaena Burgess

Ngati Maniapoto (Maori, Aotearoa): Hohepa Rauputu

Ngati Ranginui, Ngati Tutwharetoa (Maori, Aotearoa): Zack Bishara

Nga Puhî, Ngati Kahu, Te Rarawa (Maori, Aotearoa): Eddie Walker

Ngai Tahu (Maori, Aotearoa): Steven Kent

Taranaki, Te Ati Awa, Ngati Maniapoto, Te Ati Haunui A Paparangi (Maori, Aotearoa): Liana Poutu

Uchinanchû (Japan): Nakaima Kenta

Yorta Yorta (Australia): Wayne Atkinson

Europe:

Saami Nation: Magne Ove Varsi

The Americas:

Maya Kachikel (Guatemala): Rosalina Tuyuc

Miskito (Nicaragua): Rose Cunningham

Nauha (Mexico): Marcos Matias Alonso

Cherokee (USA): Jacqueline Wasilewski

Comanche (USA): Ladonna Harris and Laura Harris (Americans for Indian Opportunities)

Isleta and Taos Pueblo (USA): Ron Looking Elk

Jemez Pueblo (USA): Paul Tosa

Mohawk Nation (Canada): Ben Powless

Lakota Sioux (USA)

Sutikal'h Nation (Canada): Attila Nelson

「先住民族サミット」アイヌモシリ2008
Indigenous Peoples Summit in Ainu Mosir 2008
Ainumosir otta Hoski wano Okay Utar Ukoytak 2008



An Appeal to the Japanese Government from the Indigenous Peoples Summit in Ainu Mosir 2008

As Indigenous Peoples of the world, together with United Nations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Chairperson Victoria Tauli-Corpuz, we have gathered here in Ainu Mosir (Hokkaido) in advance of the Hokkaido Toyako Summit, to draft this Appeal to the Japanese Government. As representatives of the Indigenous Peoples of the world, we hereby affirm that Ainu people are an Indigenous People of Japan, and strongly support the vote by the House of Councillors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in favor of the resolution recognizing the Ainu people as an Indigenous People of Japan which was adop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recognized Ainu as an Indigenous People of Japan, should consider developing legislation at the governmental level, in order to promptly implement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itself voted in favor of on September 13, 2007. First of all,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reflect on its previous Ainu policies, and should issue an official apology to the Ainu people in clear language in a public forum.

We cannot accept the current situation that out of eight committee members, only one Ainu representative has been selected to serve on the "Expert Meeting Concerning Ainu Affairs" which will be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refore, for the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this committee, we demand that more than half of the committee members should be selected from the Ainu community, to guarantee an equal relationship between Ainu people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as regards the selection of committee members, Ainu peoples' opinions should be respected.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work on the immediate recovery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s elaborated in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in particular, all rights originally belonging to the Ainu People, such as the rights of self-determination, language and natural resources.

Education from early childhood, including those youth who will inherit the future, is important to all Japanese citizens, not only Ainu people. We urge the Japanese Government to promptly implement measures which emphasize youth education, such as adopting the Ainu language as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Japan, making it available in compulsory education, and creating history textbooks from Ainu perspectives.

The Ainu people are comprised of Indigenous communities who inhabited a wide range of regions, not only Hokkaido, but including Honshu (mainland Japan), Sakhalin (former Karafuto), Kurile Islands (former Chishima), and Kamchatka. Based on this fact, we deman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nclude the Ainu people as a sovereign people in negotiations concerning the return of the so-called "Northern Territories."

Furthermore, Japan is a multiethnic nation comprised by the peoples of Okinawa (Uchinanchū), Resident Koreans, and other communities.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clearly articulate an effort to build a society founded on the concept of a multiethnic, multicultural nation-state.

Indigenous Peoples Summit in Ainu Mosir 2008

Resolved on July 4, 2008

Abstract

China' s policy on national minorities and Tibet independence movement

Jae-ho Lee
(Researcher of GA Communication)

keyword: the Dalai Lama, Tibet, plan, 2008 March, China-Tibet relation

With the 2008 Beijing Olympic ahead, Tibet independence demonstration led by monks and blood suppress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are spreading over. The way of Olympic torch relay was impeded by the pro-Tibet demonstration and protest. The Parliament of Europe and the Parliament of US adopted statements and acts protesting bloodshed in Tibet to press the Chinese government.

Tibet independence will not be achieved unless China' s radical systemic change happens. The Dalai Lama and the Tibetan government in exile understand the Beijing Olympic as the last chance to achieve Tibetan independence and put all their efforts to form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But China' s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position will deter it and the issue of Tibet independence will be disregarded. The high level of Tibetan autonomy, which the Dalai Lama and his supporters claim, is negotiable bu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not accept it. The Chinese government keeps ignoring the Tibetan government in exile and waits for death of the Dalai Lama or weakening of their influence. I insist, however, that is not good plan not only for Tibet but for China itself.

The Chinese government has to reopen negotiation with the Dalai Lama and consider seriously the alternative of the high level of Tibetan autonomy. To Tibetan people, their culture and tradition is very critical but their independence is negotiable. This alternative is not impossible.

Review of China's Tibet policy

Jae-won Kim

(Researcher of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keyword: China, Tibet, policy, review, permanent territory.

China pulled Tibet into its sphere of influence in the age of Ch'ing dynasty. But actually, it was not annexed by China but subjected by it. It was the age of Republic of China, when China began to claim Tibet as its territory.

Since China's annexation of Tibet in 1951, China have utilized various policies to confirm Tibet as its permanent territory. China divided the territory of Tibet into Tibet Autonomous Region, Gansu Province, Sichuan Povince, Qinghai Province, and Yunnan Province. Furthermore, it divided the Tibetan people, and leaders of Tibet to make it easy to be governed.

On one hand, to conciliate Tibetan people, the Chinese government has given amount of subsidy and investment to Tibet to develop Tibetan econom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ibetan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Chinese government has no hesitation to use its force to suppress pro-Tibet demonstration and to crush their will for independence. Ultimately, the birth control policy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immigration of Chinese people to Tibet will confirm Tibet as its permanent territory.

The Dalai Lama and the Tibetan government in exile gave up its claim of independence officially in 1997. It can be evaluated as the result of the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Dalai Lama' s plan for Tibet

Young-ju Na
(Lecturer of the Korea University)

keyword: the Dalai Lama, Tibet, plan, 2008 March, China-Tibet
relation.

The Dalai Lama' s existence is the center of the issue of Tibet independence. Studying on the Dalai Lama' s plan for Tibet - What it is, how it has changed, what the limit of his plan is - is critical for the Tibet issue. The Chinese government pointed the Dalai Lama as the leader of 2008 March commotion even though the Dalai Lama denied the suspect. This situation means that China wants to condemn the Dalai Lama who is trusted by international society, and secularize, exculturate and depoliticize the Tibet issue by ignoring of the Dalai Lama' s religious and political importance.

This article will analyze and evaluate the Dalai Lama' s plan for Tibet' s present and future. As the first step, I will investigate China-Tibet relation historically and politically and the origin of the institution the Dalai Lama, political and religious position of the Dalai Lama. On these ground, I will examine the Dalai Lama' s plan for Tibet independence, constitution or self-governance. As the second step, I will search the root cause of frequent demonstrations and riots in Tibet including 2008 March commotion. On that ground, I will investigate the limit of these demonstrations and riots and the Dalai Lama' s plan for Tibet.

The developmental stages and the cause of the Korean cultural wave phenomenon(韓流)

Jin, Jian-ren(金健人)
(Professor of Zhejiang University - 浙江大學)

keyword: Hallyu, developmental stage, cultural interchange, Korea, China.

The millenium history of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resumed since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1992, after suspension for a half-century. In the past, the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over Korea was the main stream of interchange between two countries, but during the past 10 years, the influence of Korean culture has been not only equal to that of Chinese culture but also overwhelming to that in many spheres. This phenomenon is called 'Hallyu' (韓流). And many Korean culture maniacs appeared in China who called as 'Hahanzu' (哈韓族).

'Hallyu' (韓流) has penetrated into China since the late 1990s through television programs, movies, dramas, music, and fashion. And then the wave has spreaded over the spheres of food, travel, study abroad, and so forth. Especially, the TV drama 'Dae Jang Geum' (大長今) developed 'Hallyu' into its peak stage.

The period around 2002 can be recognized as development stage of 'Hallyu'. Thanks to many popular cultural products, 'Hallyu' has been great wave in China. The stratum of 'Hallyu' consumer in China has expanded from the youth to the middle ages and the old, from young women to some of men.

In the middle of 2000s, the decline of 'Hallyu' has begun and counter-Hallyu, people who dislike or hate Hallyu has appeared.

**‘Choi Pu’ s Diary: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and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Jin-long Wang(王金龍)
(Writer and researcher on Pyo Hae Rok China)

keyword: Choi Pu, record, drift, cultural interchange, Korea,
China.

Choi Pu(1454~1504) had sailed from Jeju island to Korean peninsula with 42 companions to offer incense for his dead father in 1488. But on his way back to Jeju island, he was overtaken by a storm and drifted in the sea for 14 days. When he and his companions landed at Niutouwaiyang(牛頭外洋) of L?nh?ixi?n(臨海縣) in southeastern China, they were under arrest as suspects of Japanese pirates. After being examined, they were sent to Beijing and returned to Korean peninsula. It took 6 months for Choi Pu to return to his homeland after his drift.

After his return to his homeland, he wrote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and presented it to the King of Chosun. His record is invaluable and very comprehensive. His record has drawn international attention for long time. Yu Hee-chun, the child of his daughter wrote the revision of his record in 1573, Kiyoda(清田君錦) of Japan translate it into Japanese in 1769, John Meskill of US translated it into English in 1965, Choi Gi-hong, the descendant of Choi Pu translate it into Korean character in 1979 (it was written with Chinese character originally), and Gezhenjia(葛振家) of China translate it into simplified Chinese character with notes and comments in 1992 .

Even though his travel across China from south to North and the birth of ‘Choi Pu’ s Diary: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were coincidences, he and his record contributed to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two countries. Even today, the record testifies the history of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two countries and contributes that of today.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Yong-chan Kim
(Professor of Cathoic University of Daegu)

keyword: interchange, Hallyu, Korean cultural wave, FTA, Korea, China.

Since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of 1992, interchange between two countries have been expanded in various spheres. With the Korean cultural wave phenomenon, 'Hallyu' (韓流), Korea's cultural products has won popularity and contribute to a significant improvement of Chinese people's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Interchange of tourists, students, and businessmen has increased continually. The sphere of economic interchange got the most rapid improvement. Economic interdependence of two countries has deepen continually.

In 2000s, factors which may affect interchange between two countries in the long term appeared. Decline of Hallyu in China, appearance of counter-Hallyu, China's NorthEast Project, Korea-China FTA discussion, employment of Choseonjok(Korean Chinese) in Korea and so forth.

Especially, Korea-China FTA is critical to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High level' of FTA which includ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ervice sphere will improve economic interchange, cultural interchange, and human interchange much more. To maximize its positive effect and minimize its negative effect, Korean government has to negotiate eternally and internally with prudence and prepare remedial measures.

『민족연구』 논문투고와 집필요령 및 심사과정

한국민족연구원이 연 4회 계간으로 발간하는 『민족연구』는 세계의 민족과 민족문제를 중심적인 연구과제로 설정, 현대세계의 제반 민족문제의 근원적 실체와 이의 발전적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의 장입니다. 본 연구원은 관련학과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환영합니다.

I. 논문투고

1. 편집대상: 민족주의 이론, 각 지역과 개별 국가의 민족문제와 민족정책, 소수민족 현황 등과 관련된 논문.
2.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예정의 논문은 편집대상에서 제외함.
3. 원고는 '한글' 혹은 'MS워드' 파일로 작성하여 출력본 1부와 디스켓을 아래주소로 우송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기 바람.

4. 연락처
한국민족연구원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82-10
전화번호: 010-4716-3616
Fax: 925-3906
Email: goodsociety123@hanmail.net

II. 논문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120매 혹은 A4용지 15-20매 내외.
2. 한자와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의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넣어 표기.
3.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요령.

1) 각주 작성 요령

(1) 저서의 경우

- 조정남, 『러시아민족주의 연구』(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 292쪽.
-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p. 95.

(2) 논문의 경우

- 조정남, “중국의 화교정책 분석,” 『민족연구』 제5호, 150-151쪽.
- Alejandro Portes,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4, pp. 799-801.

2)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저서의 경우

- 조정남, 『러시아민족주의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
-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2) 논문의 경우

- 조정남, “중국의 화교정책 분석” 『민족연구』 제5호.
- Alejandro Portes,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4.

III. 논문심사

1. 본 연구지의 편집의도와 무관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음.
2.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투고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위촉함.
3. 심사위원 3인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개별 심사위원의 “가, 수정, 불가”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게재여부가 결정됨.
4. 심사 판정 기준표 (심사위원 3인 기준)

가, 가, 가 가, 가, 수정	가,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불가	가, 불가, 불가 수정, 수정, 불가 수정,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5. 수정과정에서 논문 필자는 수정한 부분을 별도의 양식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함.

IV. 『민족연구』 발행일 및 논문투고 마감일

민족연구 발행일	논문 마감일
2006년 3월 1일	2005년 12월 31일
2006년 6월 1일	2006년 3월 31일
2006년 9월 1일	2006년 6월 31일
2006년 12월 1일	2006년 9월 31일

한국민족연구원

한국민족연구원은 새로운 시대환경의 도래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종과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문제 등에 대한 학문적이며 실제적인 연구 조사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연구원은 민족문제에 관한 전문 연구지인 『민족연구』를 연간 4회 발행·보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cncho.pe.kr/krce>)를 통해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인적구성

원 장 : 趙政男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위원 : 葛振家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金秀雄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 Dmitry V. MYONG (국립 알마티대학교 교수)
 保坂祐二 (세종대학교 교수), 洪敏植 (강원대학교 교수),
 우평균, 김인성, 조화성, 김용찬, 조현구
 연구원 : 고병국, 김태영, 강권찬, 박지원, 이용승, 김혜림, 김희선
 유정석, 송중호, 정려정, 김재원



발행처

<p>민족연구 35</p> <p>〈계간〉</p> <p>ISSN 1229-2796</p>	<p>〈저널 편집부〉</p> <p>-----</p> <p>편집 : 한국민족연구원 편집인 : 조 정 남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 우/142-881 (☎ 010-4716-3616)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발행일 : 2008년 9월 1일(연 4회 간)</p> <p>-----</p> <p>발행처 : 교양사회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p>	<p>〈편집위원〉</p> <p>김경숙 (공주대학교 교수)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김인성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기완 (창원대학교 교수) 조정남 (고려대학교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Dmitry V. MYONG(국립알마티국립대학 교수)</p> <p>〈편집주간〉</p> <p>김용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p>
--	---	---



정기구독 안내

<교양사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시메이츠의 민족연구의 정기구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메이츠의 민족연구」는 모두 정기구독제입니다.
- 정기구독자들에게 한해 직접 개별 주소로 우송되며 서점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과월 호는 재고가 있을 때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절차

1. 아래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
2. 해당하는 구독료를 <우체국 012187-01-002824> (예금주 : 교양사회)로 입금.
3. 아래의 <정기구독신청서>를 <교양사회>로 우송하거나 E-mail로 보내 주십시오.

연 락 처

<저널 출판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우편번호:142-881)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 <절취선> -----

정기구독 신청서



저널명	간별	구독 권수	금 액	구독희망	기타
시메이츠의 민족연구	계간	4권(1년분)	₩ 60,000	~	
		8권(2년분)	₩ 100,000	~	
구독자	구독자명(기관)				전화
	주소	우편번호	E-mail		

